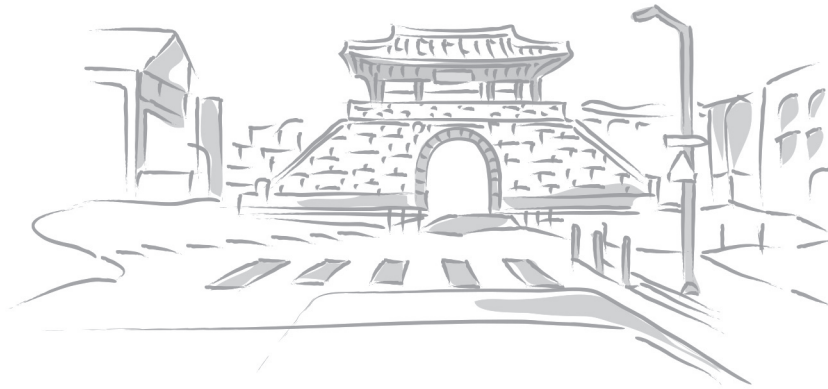


홍성군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매뉴얼

최종보고서 2017. 9

가이드라인



홍성군

제 출 문

홍성군수 귀하

본 보고서를 홍성군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매뉴얼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9월

충남연구원
원장 강현수

CONTENTS

I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001	
1. 개요	2	
1) 배경 및 목적	2	
2) 수립체계	2	
3) 기본개념 적용	3	
4) 가이드라인 활용주체 및 활용	4	
5)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핵심전략	5	
2. 유형별 가이드라인	11	
2.1 공공건축물	11	
1) 개요 및 기본방향	11	
2) 가이드라인 구성체계	12	
3) 공공건축물의 현황 조사	13	
4)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14	
5)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14	
2.1.1 가이드라인	15	
1) 업무시설	15	
2.1.2 체크리스트	30	
1) 체크리스트 작성	30	
2) 체크리스트	30	
2.2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32	
1) 개요 및 기본방향	32	
2) 구성체계	33	
3) 공공공간의 현황조사	33	
4)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34	
5)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34	
6)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디자인의 차별성	35	
7)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세부 전략	35	
2.2.1 유형별 가이드라인	37	
1) 가로공간	37	
2) 광장	68	
3) 친수공간	70	
4) 공원	76	
5) 기타 공공공간	82	

2.2.2 체크리스트	87
1) 체크리스트 작성	87
2) 체크리스트	87
3) 관련법규	92
2.3 공공시설물	111
1) 개요 및 기본방향	111
2) 목적	111
3) 적용방안 및 적용대상	111
2.3.1 공공시설물 권역별 가이드라인	116
1) 공통 가이드라인	116
2) 권역별 가이드라인	117
2.3.2 공공시설물 요소별 가이드라인	122
1) 도로기반시설물	122
2) 가로시설물	139
2.3.3 체크리스트	155
1) 체크리스트 작성	155
2) 체크리스트	155
2.4 공공정보매체	162
1) 개요 및 기본방향	162
2.4.1 가이드라인	165
1) 교통안전표지	165
2) 안내표지	166
3) 공공교통표지	167
4) 방향안내표지	168
5) 자전거 도로표지	170
2.4.2 체크리스트	171
1) 체크리스트 작성	171
2) 체크리스트	171
2.5 옥외광고물	174
1) 개요 및 기본방향	174
2) 설치 권역 설정	177
3)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	177

2.5.1 유형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187
1) 가로형(건물명형, 일반형, 연립형)	187
2) 돌출형(일반형, 연립형)	192
3) 지주형	194
4) 기타(옥상광고 디지털광고, 창문이용광고)	196
2.5.2 체크리스트	199
1) 체크리스트 작성	199
2) 체크리스트	199
2.6 색채	200
1) 개요	200
2) 기본방향	201
3) 색채현황조사 및 분석	201
2.6.1 색채가이드라인	206
1) 기본방향	206
2) 기초색 범위 및 적용방향	207
3) 권역별 색채계획	209
4) 권역별 적용지침	210
2.6.2 건축재료 및 권장색채 가이드라인	220
1) 기본방향	220
2) 지붕재료 및 권장색채	221
3) 벽체재료 및 권장색채	223
4) 공공시설물 재료 및 권장색채	225
5) 재료색채 및 규제 사항	226
2.6.3 색채가이드라인 활용매뉴얼	227
1) 색채표기방법의 이해	227
2) 체크리스트 활용(예시)	228
3) 체크리스트 작성	229
4) 권역별 색채 팔레트	233

II. 표준형 디자인 239

기본설계 도면

III. 부록 249

1. 개요

1)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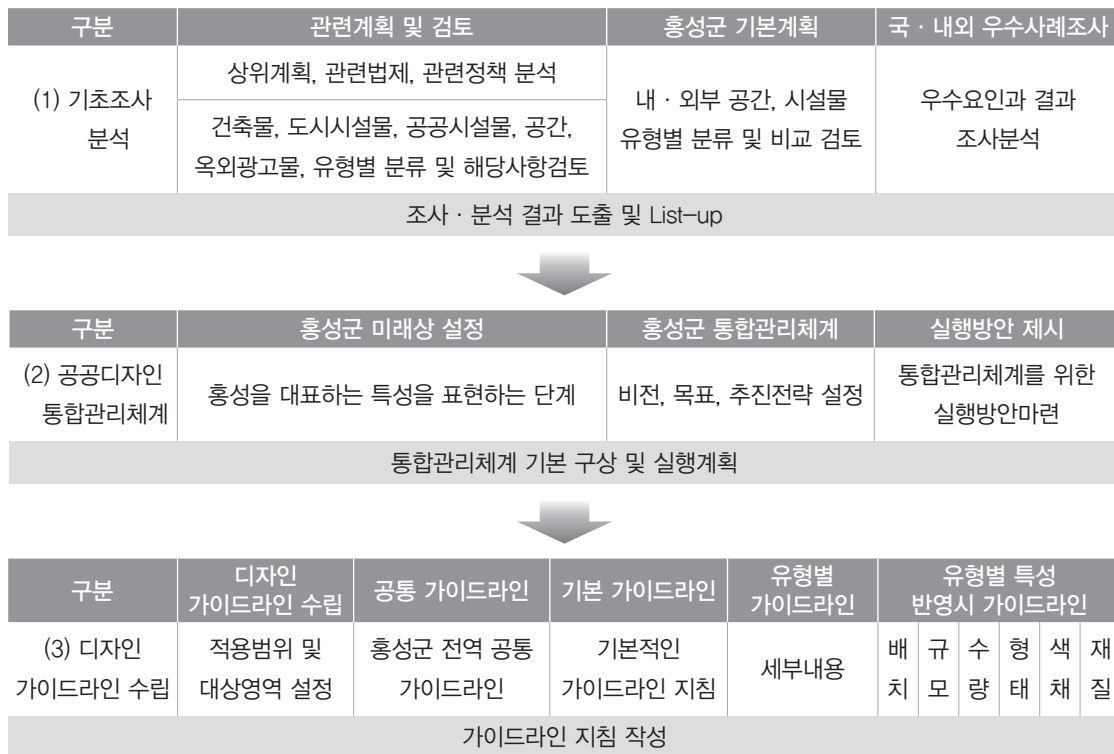
(1) 배경

- 홍성군의 공공디자인을 위해 제시한 기준으로서 홍성군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체계에서 제시된 홍성군의 비전과 목표를 토대로 통합관리체계 형성 필요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건축물,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정보매체, 옥외광고물, 환경색채 등에 대한 도시공간 및 시설물의 관리와 관계계획 추진을 위해 부분별 기본방향 및 기준을 규정
- 본 가이드라인은 홍성군 공공디자인의 심의, 자문, 발주, 실행 및 유지 관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명시된 규정들은 제반 여건 및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모든 규정은 디자인의 심의, 자문, 발주, 실행, 유지, 관리 시 고려사항으로 간주 되어야함

(2) 목표

-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일관되고 종합적인 유니버설 디자인 및 배리어 프리 디자인 설계적용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2) 수립체계



3) 기본개념 적용

(1) 기본개념

- 충남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홍성군 경관계획 등 상위계획을 바탕으로 한 연계성 있고 체계적인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실천적 · 체계적인 실행계획 마련”
- 홍성군 공공디자인 기본개념을 가이드라인에 적용

인간중심 디자인

공공시설물의 구조적 형태 및 기능, 수량, 크기 등을 적절하게 통합하여 사람이 우선인 안전한 공간창출



상생 디자인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인터랙티브 디자인 개발로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친환경 디자인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친환경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도시이미지 확보



지역정체성 디자인

홍성군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조사, 분석하여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간, 주민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창출



(2) 유형별 가이드라인 적용방향

구분	기본방향
공공건축물	- 이용자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외부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방적 공간구조를 지향하도록 함
공공공간	- 공공공간은 도시의 공공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네트워크를 통하여 도시 이미지 정립
공공시설물	- 공공시설물은 안전성과 편리성 기능에 충실해야 하며, 시설물에 모듈개념을 적용하고, 통합적인 시설물 디자인 추구
공공정보매체	- 공공정보매체는 정보의 전달이라는 본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함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은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효과적이고 보다 합리적으로 디자인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을 제시함
색채	- 상위계획 및 홍성군 색채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홍성군의 색채를 정립하여 통합성 유도
조형개념추출	- 홍성군의 역사·문화적 형태, 색채, 소재를 부분적으로 특화해 홍성군의 아이덴티티를 충족시킴

4) 가이드라인 활용주체 및 활용

(1) 활용주체

- 디자인 가이드라인 활용주체는 공공기관, 수행업체, 외부전문가 및 심의위원으로서 원활한 사업수행과 실행을 위한 활용체계 정립
- 공공기관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적용과 통합디자인 관리, 심의내용 사전검토 및 일관성을 가지는 공공디자인 통합관리기반으로 활용
- 수행업체에서는 디자인 목적과 원칙 공유, 디자인 기준 적용, 디자인 심의를 고려한 디자인 설계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
- 외부전문가 및 심의위원은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시 객관성 확보 및 일관된 심의·자문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

(2) 가이드라인 활용

- 홍성군 공공디자인 통합관리매뉴얼 활용과정은 디자인 원칙과 방향성을 공유하여 공공디자인 실행의 일관성을 확보토록 함
-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발주부서의 참고자료로 활용
-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중간점검을 위한 자기진단의 기준으로 활용
- 다양한 시설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지표로 활용
-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심의기준으로 활용

5)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핵심전략

범죄예방 디자인(CPTED)

▶ 범죄발생을 저감시키는 디자인 추구

- 범죄와 관련 있는 물리적 사회적 요인들을 통제함으로서 특정 유형의 범죄 또는 불안감을 예방하고 저감시키는 맞춤형 디자인전략

- 범죄예방디자인의 패러다임 변화

1세대 범죄예방디자인
물리적요소 강화

물리적환경개선 초점

2세대 범죄예방디자인
사회문화적요소 강화

물리적환경개선
+ 주민참여와 유대강화

- 공공시설, 주택단지, 정류장 주변 등 생활기반 시설물에 대한 CPTED 및 친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활동 수행
- 주·야간의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의 보행에 안전한 공공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개념 적용
- 골목길의 가로등, 비상벨 및 옐로우 카펫, CCTV 설치 및 그래픽 요소 적용
- 공공공간 및 공공건축물을 설계할 때 사각지대를 없애 범죄자들에게 범죄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고 공용시설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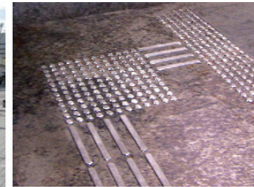


범죄에 대한 자연적 감시 및 접근 통제, 활동의 활성화 등 상호보완적인 관점을 고려한
범죄예방 공공디자인으로 주민의 삶의 질 증대

유니버설 디자인

▶ 이용자의 감성적 측면을 배려한 디자인

-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다양한 이용자들이 심리적·물리적으로 안전하고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
-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적 수준의 건축·공공 시설물 등의 물리적 환경 및 행정·교육·복지 등의 사회적 환경 가치 제고



▶ 다양한 이용자의 환경 고려

- 지원성, 접근성, 안전성, 보편성 뿐 아니라 경제성, 심미성, 친환경성까지 고려한 디자인 연출
- 보행자가 불편함 없이 연속적인 통행 동선을 확보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이 구현되도록 단차없는 보도, 보차도 분리, 턱낮추기 등을 고려한 계획
- 각종 공공디자인 요소나 정보전달, 이미지의 측면에서 연속성을 부여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배려한 디자인 계획
- 장애인 주차구역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통행로 설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의 편리성, 쾌적성, 안전성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축

고령친화 디자인

▶ 노인친화적 환경이 아닌 고령친화적 디자인 계획

- 고령친화 디자인(Aging-Friendly)은 노인만을 위한 노인친화 디자인(Elder-Friendly)이 아니라,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용하기 안전하고 편리한 좋은 디자인 개념

▶ 안전을 위한 물리적 경의 재정비와 색채디자인 필요

- 고령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적절한 인프라확보
- 고령자의 시인성을 고려한 유니버설 컬러디자인 및 그래픽 요소 도입과 철저한 계획 수립 필요
- 고령자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지원하는 교통, 공간, 시설물 등의 재설계와 재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필요
- 고령자의 신체적 기능변화를 고려하여 보도 노면 관리, 조명 재정비, 전동휠체어 전용도로 설치 등의 보행환경 개선
-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고려한 횡단보도 보행시간 확보
- 노인 운전자를 고려한 도로 설계와 표지판 정비
- 편의시설 및 교통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



고령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홍성군의 고령친화적 도시환경 구현을 위한 공공디자인 마련

여성친화 디자인

▶ 여성이 이용하기 안전하고 편리한 디자인 구현

- 기존의 공공시설물을 기본적으로 여성의 성장과 안전, 편리성이 구현되도록 하는 디자인
- 유니버설 요소를 적용한 공공시설물 및 안내 표지판 디자인, 제작, 설치
- 여성의 보행환경을 고려한 보도 포장 및 보행속도를 고려한 횡단보도 신호체계 마련



▶ 여성·아동을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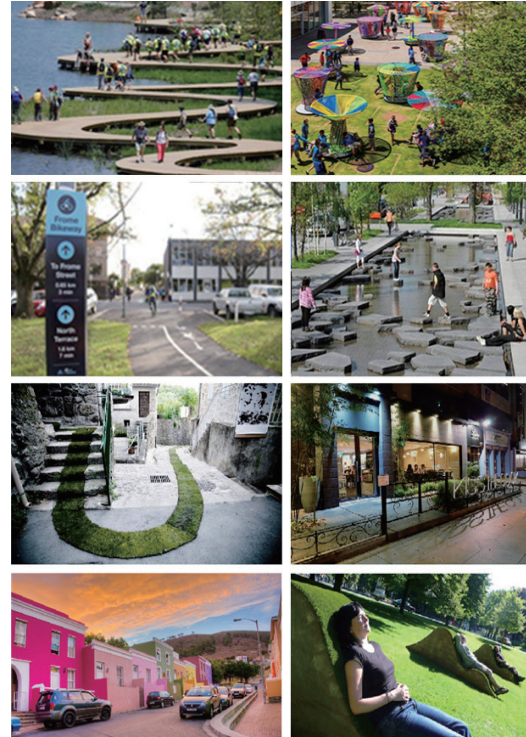
- 물리적·사회적 장애가 제거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범죄와 각종 사고 및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
- 주차장내 안전시설 확보 및 여성전용 주차장 설치, 조명 등 여성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 방안 마련
- 사각지대 없는 CCTV 설치, 방범체계 개선, 조명 확보



여성친화거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역 환경의 여성친화적 요소를 증진시키고
여성과 약자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 공공디자인 방안 마련

▶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한 참여유도

- 도시의 물리적 ·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협력하여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는 도시
-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을 위한 공공서비스 디자인 제공
- 신체활동적 거리 및 지역디자인 정책과 수립
-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 계단이용을 촉진하는 표지 설치



▶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한 디자인

- 공공공간에 산책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프로그램 도입으로 지역주민의 소통 공간 조성
- 녹색교통대책으로서 자전거 이용 장려를 고려한 자전거도로 정비, 공공자전거 운영 등의 인프라 개선사업을 통한 이용자의 건강 및 도시 공해 저감 효과 제공
- 공공건축물 내, 건강계단 설치로 계단이용을 통한 이용자의 건강 증진, 에너지 절약 동참, 사회공헌 참여 확대 등의 효과 기대
- 농촌 건강한 마을 만들기, 걷기 좋은 길 조성, Health Park 조성
-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
-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일상에서 마주하는 흥성의 다양한 영역과 주민의 건강을 고려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이미지 구축

친환경도시 디자인

▶ ‘유기농업특구 홍성’을 위한 환경개선

- 특구 이미지에 부합하는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한 공공 디자인 방안 마련 필요
- 농업특구 마을별 주거경관의 통일된 정체성 부여
- 주거 환경개선, 각 마을의 고유성 및 테마를 살리고, 농촌 공간환경개선 등 추진
- 농촌마을 환경디자인 개선을 통한 지역색 제공

▶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공존의 디자인 추구

- 사람들의 편의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균형을 통해 보다 더 지속 가능한 공간 및 디자인 창출 도모
- 친환경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활용 가로등
- 친환경적 가치 활용을 위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 그린 에너지 기술을 공공 디자인과 융합하여 하나의 조형물로도 충분한 멋을 느낄 수 있는 기능성과 경관성 향상 도모



자연과의 균형을 통해 지속가능한 가치 향상 및 친환경 이미지에 부합하는
홍성군 공공디자인 조성

2. 유형별 가이드라인

2.1 공공건축물

1) 개요 및 기본방향

(1) 정의

○ 건축물이란?

[사 전] 건축물이란,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혹은 그것이 제공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지면에 고정되는 구조물

[관련계획] 홍성군 경관계획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관 련 법]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4호 공공업무시설, 제5호 문화집회시설, 제8호 운수시설, 제11호 노유자 시설 중 공공용도의 건축물

○ 공공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공공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홍성군의 공공건축물 디자인의 기본 원칙으로 건축물을 구성하는 구성체계를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설계 및 관리가 되도록 제시한 지침

(2) 목적

- 홍성군 공공건축물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모든 이용자(장애인, 어린이, 여성, 고령자 등의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한 공공건축물의 전반에 걸친 디자인 원칙과 기준 마련
- 지역성 및 상징성을 반영한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

(3) 적용 대상분류

- 건축법 제3조 5에 의해 건축물 용도별 분류
- 홍성군의 공공건축물을 크게 업무시설, 문화복지 시설, 교통·안내시설, 환경시설 등으로 나누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각각의 대상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

업무시설	문화복지시설	교통·안내시설	환경시설
- 군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 문예회관 - 노인종합복지관	- 철도역사 - 버스터미널 - 공공안내소	- 공중화장실

공공건축물의 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홍성군의 공간권역에 바탕을 둔 지역이미지에
부합되도록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2) 가이드라인 구성체계

-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 후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건물배치, 외부공간, 건물하단부, 건물입면, 건축경관, 친환경 건축, 기타건물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적용(단, 제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합리적 적용)
- 디자인 권장 및 비권장 사례 이미지, 설계지침과 관련된 삽도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구분	내용
건물배치	- 건축물 배치에 따라 반영되어야 할 사항
외부공간	- 공공건축물 외부공간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건물하단부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영되어야 할 사항과 쾌적한 공간 형성을 위한 사항
건물입면	-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건축경관	- 주변 경관과 연계하여 건축물이 반영되어야 할 사항
친환경 건축	-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반영하여야 할 사항
기타 건물	- 기타 건물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의 반영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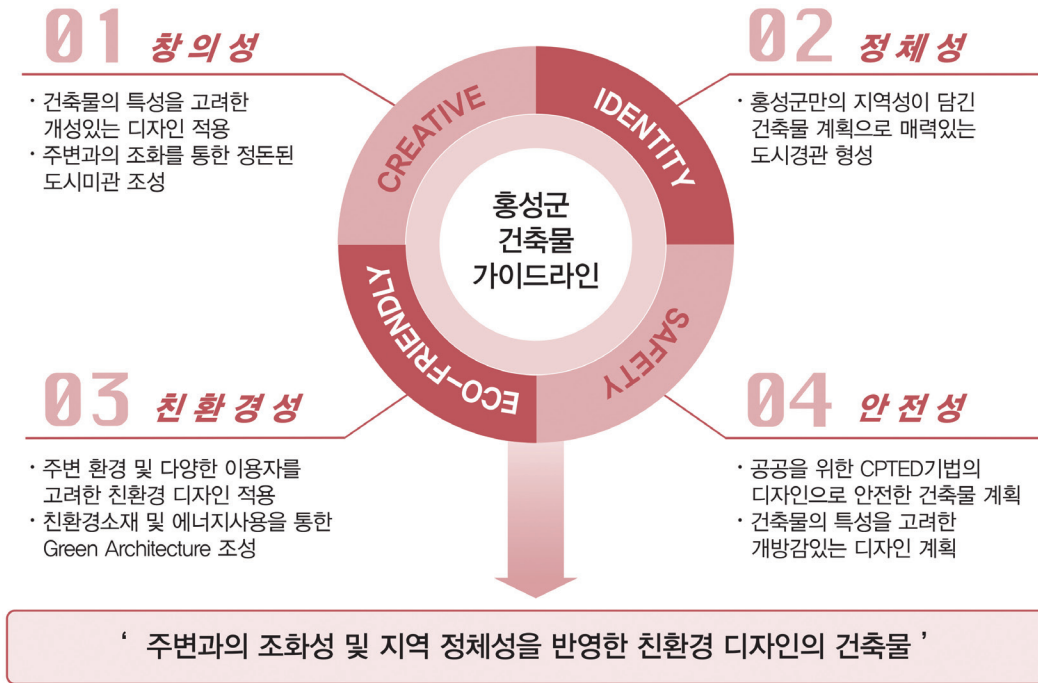
3) 공공건축물의 현황 조사

(1) 현황분석

보건소 정문에 주차장 배치로 통행에 위험요소	과도한 형태의 화장실 크기	획일적인 형태 지향
		
공공기관의 현관 계단 개선 필요 -배리어 프리 디자인 적용	기차역건물의 노후화로 지역이미지 저하	지역 특성이나 미관을 고려한 형태로 개선 필요
		
주출입구에 경사가 없어 장애인의 이용불편 및 관리 부재	버스터미널 건물의 노후화로 및 주출입구 택시승차장 설치	복지관 출입구 부분 협소 및 외부색채 개선
		

4)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 홍성군 공공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도시의 경관을 형성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개념을 준수함



5)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 01** 홍성군의 건축물은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고려한 대표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 02** 홍성군의 건축물은 친환경성과 내구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03**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심적 역할을 하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 04** 건축물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한 디자인이어야 한다.
- 05** 건축물 이용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CPTED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다.

2.1.1 가이드라인

1) 업무시설

(1) 군청사,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① 현황 및 문제점

- 창의성
 - 대부분 평지붕 형태로 노후화된 벽면 및 복잡한 경관 형성
- 정체성
 - 오래된 건물들로 노후 되어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며, 지역성을 반영하지 않은 형태
- 친환경성
 - 친환경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절약형 공공건축물 지향
- 안전성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취약 및 개방성 낮음

② 기본방향

-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공공성 및 효율성이 우선시 된 공간을 지향
-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에서 건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동선계획 수립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모든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공공공간환경 구축
- 옥상·벽면 녹화사업,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지능형 건축물 인증 추진, 재생 골재 등 건축폐자재활용 및 친환경 건축재료 사용

③ 가이드라인

★건강도시 ■유니버설 ▲친환경

항목	내용	비중		
		매우 중요	중요	보통
건물 배치	- 평지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하나, 경사지에 위치한 경우 지형을 이용한 입체적 배치 계획을 권장		○	
	- 건축 설계 시 차고지와 수납공간, 업무공간의 효율적 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권장		○	
	■ 이용자를 배려하여 편리한 동선과 쾌적한 공간환경을 제공		○	
	- 건축물 배치 시 지정된 건축선에서 일정간격을 후퇴시키도록 유도하여 개방감 확보	○		
	- 대중교통수단이나 자전거, 개인차량 등을 통해 접근이 용이하도록 접근 동선계획을 수립 할 것을 권장		○	
	- 차고지 전면 외부공간에는 장애물 설치를 금지	○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하여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	○		
	- 업무용 차량과 이용자의 주차 공간 분리를 권장하고 충분한 주차공간의 확보를 권장	○		
	- 보행 동선을 고려해 시설물에 의한 통행 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을 권장	○		
	■ 장애물 없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 폭 1.2m 이상의 안전통로를 확보	○		
	- 장애인의 이용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해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준수	○		
	- 옥외주차장의 경우 청사 출입부 앞에 계획하는 것을 지양		○	
외부 공간	- 보행자 위주로 보행 진입 동선을 계획	○		
	- 건축선 지정 및 공공공지(Inter space) 확보로 정돈된 가로경관 조성		○	
	- 공공공지 조성 시 가로와 동일한 재질 및 패턴을 사용하여 일체적인 가로경관 형성		○	
	▲ 건축물의 가각부는 쌈지공원 조성 또는 조경처리		○	
	- 외부 주차공간은 건축물 후면 또는 지하에 배치하고, 전면공간에는 불필요한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		○	
	■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진출입부의 장애물 설치를 지양하고 보도턱 제거를 권장	○		
	- 차량 진출입부와 인접 보행가로의 구분이 용이하도록 포장을 계획하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디자인할 것을 권장		○	
	■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차고지 앞 보도에 노면표지의 설치를 권장		○	

	- 야간조명시설 설치로 이용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권장	○		
	- 전면공지의 개방화를 통해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유도			○
	- 개방감 있는 디자인의 담장을 계획하고, 위압감을 주는 높이의 담장을 지양			○
	- 홍보게시물 설치를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설치 시 건축물을 가리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여 설치			○
건물 하단부	- 지형의 고저차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건물 주 진입구의 계단 설치는 지양		○	
	- 건물 진입부 이용자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경사로를 설치		○	
	- 민원실은 건물 주 진입부에서 가까운 곳에 배치		○	
	- 건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2c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계획	○		
건물 입면	- 건축물의 수명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장식적이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디자인은 지양		○	
	- 권위적 디자인에서 탈피하여 친근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자연재료 사용을 권장(예 : 석재, 목재, 노출콘크리트, 벽돌, 벽돌타일, 테라코타 등)			○
	- 관련 건축물군과 통합된 외관 디자인을 권장		○	
	- 건물의 측후면 입면은 정면과 함께 통합디자인을 권장하며 공공기관을 홍보하는 직설적인 입면 디자인은 지양		○	
건축 경관	- 가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인접 건물의 전면 건축선과 일치하게 배치 하는 것을 권장		○	
	- 공공건축물로서 공간적, 시간적 개방감을 제공할 수 있는 디자인 권장			○
	- 주변 건축물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높이 제한을 권장		○	
	- 휴게 공간 및 조형물 등의 야간 조명계획을 통해 경관 연출을 권장		○	
친환경 건축	- 자연채광 확보를 위하여 천창형 로비를 권장		○	
	- 열섬현상 방지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옥상 녹화를 권장			○
	- 여름철의 열섬현상을 감소시켜 에너지 소비를 절감시키도록 식재 계획			○
	- 담장의 설치 대신 개방감을 위해 관목 식재 조성을 권장			○

기타 건물	- 옥외안내도는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출입구 및 방문자 동선 상에 설치	○		
	-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 안내를 함께 표시하는 것을 권장			○
	- 공공기관의 홍보물, 게시물 등의 무분별한 외부 부착을 금지	○		
	- 화장실, 주차장, 장애인 시설 등은 픽토그램 기준을 적용	○		
	- 건축부지 내 설치되는 시설물들 간에 기능 및 디자인 연계성을 고려하여 통합 계획을 권장		○	
	- 건축물의 미관을 저해하는 설비시설의 노출을 지양		○	
	★ 계단이용을 촉진하는 안내표지 설치 권장	○		

④ 디자인

구분	내용
지붕	- 지나친 장식성을 지양하되 지역적 정체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옥탑부 지붕 디자인 사용 권장 - 에너지 절감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의 옥상정원 또는 휴게공간으로 조성
재질	-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 가진 경관특성을 고려한 재질 사용 - 건물의 외벽은 개방감 및 반사율이 낮은 유리재질 사용을 권장
색채	- 가급적 건축물 마감 자체색의 사용을 권장하며, 부득이 도색할 경우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
조명	- 청사 내 공공공간에 설치되는 벤치 및 파고라는 야간에 범죄예방을 위해 가로등 아래 설치할 것을 권장 - 로비공간은 개방적이고 편안한 이미지를 주기위해 조명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

⑤ 권장 & 비권장사례

		
[O] 접근성이 용이한 개방형 외부공간	[O] 출입구의 단차이가 없어 접근성 양호	[X] 외부공간에 주차장을 배치하여 접근성 낮음

(2) 복지 · 문화 시설 – 노인종합복지관, 문예회관

① 기본방향

- 주변 환경을 배려하고 시설의 특성에 맞는 건축계획 및 시민의 휴게공간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조성
- 역사지구 또는 문화재를 존중한 역할 요소를 살린 공간계획
-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친근한 문화, 복지시설 계획
- 고령자를 배려한 노인안전 컬러디자인 적용

② 현황 및 문제점

- 창의성
 - 건물 외부공간 전면에 녹지 및 휴식공간이 부족
 - 종합복지관의 건물 외관은 노약자를 위한 색채환경 개선 필요
- 정체성
 - 일부 지역성을 반영한 형태 필요
- 친환경성
 - 에너지 절감을 위한 건축단열소재의 사용이 적음
- 안전성
 - 종합복지관은 휠체어 및 노약자를 위한 가로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차량방지턱이 없어 후진시 안전사고에 문제점이 발생
 - 노인복지관 건물전면에 주차장이 위치하여 통행에 안전문제 발생

③ 가이드라인

■ 유니버설

항목	내용	비중		
		매우 중요	중요	보통
건물 배치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진출입부와 차도와의 거리 확보를 권장	○		
	- 대중교통수단이나 자가용, 자전거, 보행 등을 통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	
	- 저층부에는 소규모 광장이나 공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의 확보를 권장		○	
	- 게시판 등 홍보시설이 필요한 경우 건물 입면과 통합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		○	
	- 업무용 차량과 이용자의 주차공간 분리를 권장하고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		○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하고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권장	○		
	■ 장애인 및 노약자와 같은 보행약자를 배려하여 급격한 경사도 계획을 지양	○		
	- 장애인의 이용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해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준수	○		
	- 주변의 건축물이나 장애물로 인해 시각적으로 차폐되지 않는 장소에 위치하도록 계획	○		
	■ 이용자의 동선 유도를 위해 가로와 연계되는 보행로를 계획하는 것을 권장		○	
외부 공간	- 기능이나 목적을 위한 차별성보다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
	- 외부 공간에 사용자가 직접 가꿀 수 있는 화단이나 정원, 휴게시설의 설치를 권장		○	
	- 이용자 휴게공간에 녹지공간을 조성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계획			○
	-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간격을 이격하고 이격된 공간은 조경처리		○	
	- 외부공간은 주민들이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개방된 형태의 광장과 휴식공간을 조성		○	
	- 주차장은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건축물 후면으로 배치		○	
	- 진입부는 과도한 규모, 지나친 장식성을 가지는 게이트 설치를 지양하고 건축물의 이미지를 고려한 휴먼스케일의 디자인 권장		○	
	- 전면 공지에 행사 및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간을 계획하는 것을 권장		○	
	- 외부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옥상 공원이나 발코니 등을 활용할 것을 권장			○

건물 하단부	- 외래부는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가로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			○
	■ 차량 진출입의 안전을 위한 장치마련으로 반사경 및 반사판, 진출구획턱 등 단차두기 등의 도입 필요	○		
	- 자연채광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개방감을 높인 공간 조성을 권장		○	
	■ 램프와 경사로에는 미끄럼 방지 시설을 반드시 확보	○		
	- 저층부에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이용자 편의를 배려하는 것을 권장		○	
	- 동선을 알리는 노면 표지를 권장		○	
	■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 폭은 1.2m 이상으로 계획	○		
	-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에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			○
건물 입면	- 건물의 측후면 입면은 정면과 함께 통합디자인을 권장하며 직설적인 입면디자인은 지양		○	
	- 부지의 사방에서 출입하는 빈도가 높으므로 건물의 측·후면이 보행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설계		○	
	- 지나치게 차별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건물의 배치와 형태, 재료 등을 디자인			○
	- 랜드마크적 건축물 디자인을 권장하며 내구성 및 관리를 고려하여 계획			○
건축 경관	- 대지가 협소한 경우 보행로 확보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에 따른 건축선 비정렬을 허용		○	
	- 건축물의 진입부와 인접도로 간 단차 발생을 지양		○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계획을 권장		○	
	- 휴게 공간 및 조형물 등의 야간 조명계획을 통해 경관 연출을 권장			○
친환경 건축	- 열섬현상 방지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옥상녹화를 권장			○
	- 옥상 녹화, 실내·외 연접부 녹화로 경관개선 및 친환경 이미지를 조성			○
	- 자연채광을 위한 창문 설치를 권장		○	
	- 천창 및 채광창을 활용한 로비, 휴게시설 등의 공간 도입을 권장			○
	- 에너지 절감형 차세대 조명 가구인 LED설치를 확대시켜 에너지를 절감			○
	- 옥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차폐용 식재를 계획을 권장			○

기타 건물	- 옥외안내도는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출입구 및 방문자 동선 상에 설치	○		
	- 홍보게시물로 인한 건축물 미관 저해를 막기 위해 홍보게시물의 설치 장소를 제한		○	
	-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 안내를 함께 표시하는 것을 권장			○
	- 동선 및 안내를 위한 노면 사인의 설치를 권장			○
	- 화장실, 주차장, 장애인 시설 등은 인식이 용이하도록 표준 픽토그램 기준 적용	○		
	- 건축물 내·외부의 사인시스템을 통일하여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		○	
	- 광택이 강한 내부 마감재의 사용은 지양		○	
	- 상징성 제고를 위해 예술적 조형물의 설치를 권장		○	

④ 디자인

구분	내용
지붕	- 평지붕의 경우 옥상녹화 및 옥상정원을 설치하여 휴게공간 조성
재질	- 광택이 강한 마감재의 사용은 지양 -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친환경 재질의 사용 권장
색채	- 현란한 색채와 과장된 패턴의 디자인을 지양하고, 기능에 충실하며 이용자에게 친근감과 안정감을 주는 색채 사용 권장 - 종합복지관의 특성을 고려한 외관색채개선으로 안정감 및 편안함 제공 - 공간별 성격에 맞는 컬러를 적용하여 어르신들이 컬러테라피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

⑤ 권장 & 비권장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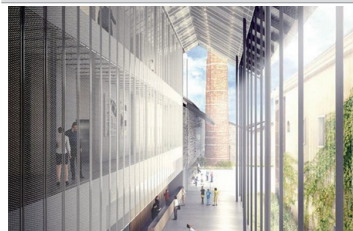
[O] 예술 조형물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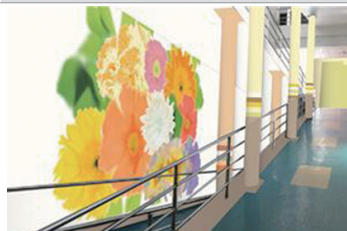
[O] 외부공간은 휴식공간으로 조성



[O] 장애인 주차공간 확보



[O] 빛이 내부로 통하는 개방형 공간



[O] 복지시설 내부 공간개선을 위한 색채권장



[X] 건물출입구 전면 주차장을 배치하여 보행자 사고의 위험성

(3) 교통시설 -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① 기본방향

- 주변 환경을 배려하고 시설의 특성에 맞는 건축계획 및 시민의 휴게공간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조성
- 역사지구 또는 문화재를 존중한 역할 요소를 살린 공간계획
-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역사 및 터미널 계획

② 현황 및 문제점

- 창의성
 - 버스터미널은 건물의 외관에 옥외광고물들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여 터미널을 인지하기 어려움이 있음
 - 추후 건물의 기능에 어울리는 특색있고 차별화된 디자인의 건축물 필요
- 정체성
 - 철도역사 광장이 협소하고, 관광안내표지, 파고라, 벤치, 가로화분대, 역사인물, 동상 등이 복잡하게 설치
 - 과도한 규모의 관광안내표지가 설치되어 주변경관 가림
- 친환경성
 - 에너지 절약형 성능이 높은 건축물 확대
- 안전성
 - 보행약자를 배려하지 않은 계획으로 인해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되고 있음

③ 가이드라인

Ⓢ 범죄예방 ■ 유니버설

항목	내용	비중		
		매우 중요	중요	보통
건물 배치	-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자전거, 보행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접근이 용이하도록 접근 동선계획을 수립		○	
	Ⓢ 시각적으로 개방된 장소에 위치하도록 계획	○		
	- 대형차량 및 일반차량의 주차장을 구분하여 계획	○		
	■ 접근을 위한 전면 외부공간에는 장애물 설치를 금지	○		
	- 철도역사 광장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의 확보를 권장		○	
	- 철도역사 및 터미널 등의 교통시설 출입구 상부에는 캐노피 설치 권장		○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하여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	○		
	- 업무용 차량과 이용자의 주차 공간 분리를 권장하고 충분한 주차공간의 확보를 권장	○		
	- 보행 동선을 고려해 시설물에 의한 통행 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을 권장	○		
	■ 장애물 없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 폭 1.2m 이상의 안전통로를 확보	○		
	- 장애인의 이용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해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준수	○		
외부 공간	■ 보행자 위주로 보행 진입 동선을 계획	○		
	-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진출입부의 장애물 설치를 지양하고 보도턱 제거를 권장	○		
	- 차량 진출입부와 인접 보행가로의 구분이 용이하도록 포장을 계획하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디자인할 것을 권장		○	
	-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간격을 이격하고 이격된 공간은 조경처리		○	
	- 외부공간은 개방된 형태의 광장과 휴식공간을 조성		○	
	- 주차장은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건축물 후면으로 배치		○	
	- 진입부는 과도한 규모, 지나친 장식성을 가지는 게이트 설치를 지양하고 건축물의 이미지를 고려한 휴먼스케일의 디자인 권장		○	
	■ 외부공간은 바닥 단차이가 없도록 조성			○
건물 하단부	Ⓢ 외부공간의 야간조명시설 설치로 이용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권장	○		
	- 전면공지의 개방화를 통해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유도			○
	- 주변에 충분한 식재로 이용자를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			○

건물 하단부	- 불필요한 계단과 혼란스러운 저층부 부속물 설치를 지양		○	
	■ 이용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확보			○
	- 자연채광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개방감을 높인 공간 조성을 권장		○	
	- 저층부에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이용자 편의를 배려하는 것을 권장		○	
	- 동선을 알리는 노면 표지를 권장		○	
건물 입면	■ 건물 진입부 이용자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경사로를 설치		○	
	- 건축물의 수명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장식적이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디자인은 지양		○	
	- 건물의 측후면 입면은 정면과 함께 통합디자인을 권장하며 지역적 특성을 살린 디자인 권장		○	
	■ 보행약자를 배려한 램프 및 경사로 설치 시 핸드레일 등 미끄럼 방지를 위한 보호 장치 계획		○	
건축 경관	- 교통시설의 외관이미지는 지나친 차별성 보다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배치, 형태, 재료 등을 디자인 할 것을 권장		○	
	- 공공건축물로서 공간적, 시간적 개방감을 제공할 수 있는 디자인 권장			○
	- 조화로운 경관형성을 위해 지나치게 돌출된 입면 요소를 지양		○	
친환경 건축	- 휴게 공간 및 조형물 등의 야간 조명계획을 통해 경관 연출을 권장		○	
	- 자연채광 확보를 위하여 천창형 로비를 권장		○	
기타 건물	- 여름철의 열섬현상을 감소시켜 에너지 소비를 절감시키도록 식재 계획			○
	- 옥외안내도는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출입구 및 방문자 동선 상에 설치	○		
	-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 안내를 함께 표시하는 것을 권장			○
	Ⓢ 야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동선을 중심으로 가로등 설치를 계획		○	
	- 화장실, 주차장, 장애인 시설 등은 픽토그램을 사용하여 인식이 용이하도록 계획	○		
	- 건축부지 내 설치되는 시설물들 간에 기능 및 디자인 연계성을 고려하여 통합 계획을 권장		○	
	- 건축물의 미관을 저해하는 설비시설의 노출을 지양		○	

④ 디자인

구 분	내용
지붕	- 평지붕의 경우 옥상녹화 및 옥상정원을 설치하여 휴게공간 조성
재질	- 광택이 강한 마감재의 사용은 지양 -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친환경 재질의 사용 권장
색채	- 현란한 색채와 과장된 패턴의 디자인을 지양하고, 기능에 충실하며 이용자에게 친근감과 안정감을 주는 색채 사용 권장

⑤ 권장 & 비권장사례



(4) 환경시설 – 공중화장실

① 기본방향

- 공중화장실은 개방적이면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
- 진입로에 단 차이를 없애고, 화장실과 진입로의 차이가 높은 경우 경사로를 설치

② 현황 및 문제점

- 여성, 장애인, 어린이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시설이 부족
- 공중화장실의 접근성 및 외관상태가 불량하여 개선 필요
- 해안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일반사용자 및 장애인의 편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③ 가이드라인

●범죄예방 ■유니버설

항목	내용	비중		
		매우 중요	중요	보통
건물 배치	● 위치 선정 시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에 배치 할 것을 권장	○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해 '편의시설의 구조 ·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준수	○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	○		
	● 공중화장실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고립된 지역이나 골목, 막힌 공간 등에 설치하지 않으며, 보행자가 많은 가로변에 설치할 것을 권장	○		
외부 공간	● 주간 및 야간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디자인을 할 것을 권장	○		
	● 야간이용시 심리적 안정감 확보를 위한 조명계획을 권장	○		
건물 하단부	– 공간구성은 위생적 측면을 고려하여 자연광의 유입이 풍부하고 통풍이 원활하게 계획	○		
	■ 이용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확보			○
	■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바닥면 단차이가 없게 계획		○	
	■ 램프와 경사로에는 미끄럼 방지 시설을 반드시 확보	○		
	■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확보	○		
건물 입면	– 고채도 색채의 도료를 이용한 도색이나 슈퍼그래픽은 지양		○	
	–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미지를 강조하여 디자인할 것을 권장			○
	– 일반 건축물과 구분될 수 있도록 형태 및 배치 재료 등을 고려하여 계획		○	
	– 화장실 입구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		○	
	– 인지가 쉬운 픽토그램의 효과적인 활용을 권장			○
건축 경관	– 공공건축물로서 공간적, 시간적 개방감을 제공할 수 있는 디자인 권장			○
	– 조화로운 경관형성을 위해 지나치게 돌출된 입면 요소를 지양		○	
	– 휴게 공간 및 조형물 등의 야간 조명계획을 통해 경관 연출을 권장		○	
범죄예방 디자인	● 주요 출입구에는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CCTV로 감시중이라는 사인을 부착하여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	○		
	● 비상벨 또는 비상호출장치를 화장실내 1개소 이상 설치 권장		○	
	●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에서 내부가 시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구조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	○		
기타 건물 내부	■ 내부디자인은 사용의 편의성, 유지관리 및 청결에 중점을 두고 설계 할 것을 권장			○
	– 내부공간구성은 위생적 측면을 고려하여 자연광의 유입이 충분하고, 통풍이 원활한 구조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		○	
	■ 여성화장실에 접이식 또는 벽면 수납형 유아침대를 설치하여, 베이비 부스 기능하도록 함		○	
	●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남녀 화장실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며,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디자인할 것을 권장	○		

④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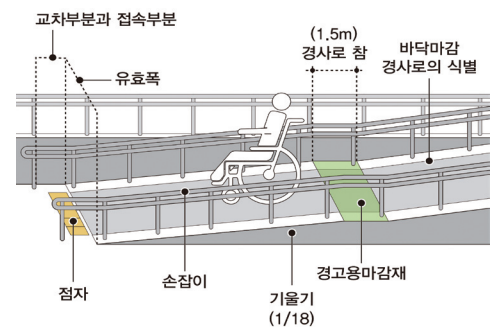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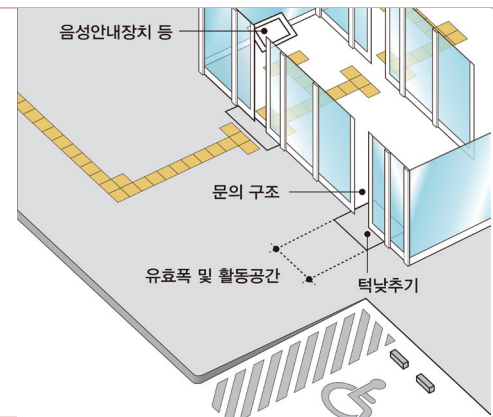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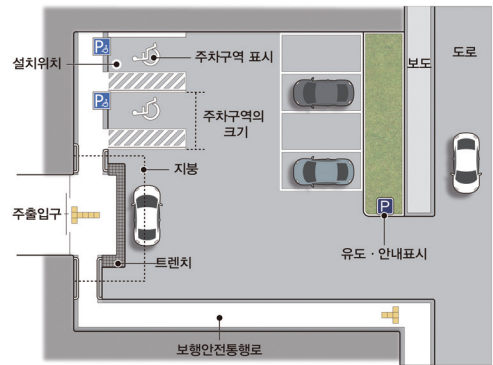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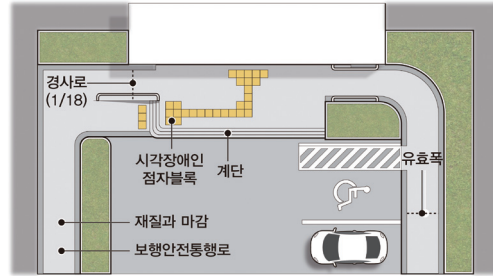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지붕	- 평지붕의 경우 옥상녹화
재질	- 광택이 강한 마감재의 사용은 지양 -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친환경 재질의 사용 권장 - 화장실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질 설치
색채	- 건물외부는 현란한 색채와 과장된 패턴의 디자인을 지양하고, 기능에 충실하며 내부는 이용자에게 친근감과 안정감을 주는 색채 사용 권장

⑤ 권장 & 비권장사례

		
[O] 개방형 외관과 자연채광 구조의 화장실	[O] 친환경 소재사용과 단순한 형태	[O] 개방형 외관과 접근성이 높은 화장실
		
[O] 내부색채를 밝게 적용한 사례	[O]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설치기준 적용	[X] 관리부재로 이용불편

(5) 공공건축물의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① 대지 내 보도 및 접근로	- 장애인의 이용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해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준수 - 대지 내 보행자 통로는 자동차 도로와는 반드시 분리 - 휠체어 사용자가通行할 수 있는 보도의 유효 폭은 최소한 1.2m 이상, 2개 이상의 보도가 만나는 지점 부터는 최소한 1.5m 이상 확보 - 경사로의 기울기는 1/18 이하로 하고, 손잡이를 반드시 설치 - 배수구, 공동구의 덮개 등은 보도 위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
② 장애인 주차장	- 차도와 분리된 안전접근통행로가 주출입구까지 연결되는 위치에 설치 -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평탄하며 배수가 잘되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 - 주차구역의 폭은 3.5m 이상, 최소 3.3m 이상(길이 5m 이상) 계획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의 통로는 차도와 완전 분리되어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 - 주차장 내 차로를 통과시 보행자 우선 통행 표시가 된 안전통행로를 반드시 설치 - 주차구역의 바닥에 식별 가능한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시 - 유도·안내표시의 주차장의 입구에 높이 1.5m~1.8m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설치
③ 건물출입구 (주출입구)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출입구는 유도 및 안내표시 설치 - 주출입구에는 건물과 건물 내 편의시설의 안내표시 또는 안내소 설치 - 주출입구의 폭은 0.9m 이상으로 계획 - 통행량이 많은 주출입구문의 통과 유효 폭은 1.2m 이상으로 계획 - 주출입구에는 턱, 문지방 등 휠체어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이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장애물 설치불가 - 단차가 있어 턱 낮추기를 할 경우에도 그 폭이 2.4m 미만이어야 하고, 기울기 1/18, 단차 2cm 이하로 계획
④ 경사로	- 계단과 병행 설치된 경사로는 통과 유효 폭을 0.9m 이상으로 계획 - 계단 등 또 다른 이동로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 유효 폭을 1.2m 이상으로 계획 - 시작과 끝지점, 방향전환지점은 1.5m 이상의 활동공간으로 계획 - 경사로의 기울기는 1/18 이하 원칙으로 계획 - 직진방향 경사로 참의 길이는 최소한 1.5m 이상으로 계획 - 방향을 전환하여야 하는 지점의 경사로 참은 반드시 수평면으로 계획 - 바닥마감재는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평탄하게 마감처리



2.1.2 체크리스트

1) 체크리스트 작성

- 항목별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의 적용유무를 확인하고 피드백 할 수 있도록 권장
- 항목별 세부내용과 적용대상 구분은 세부가이드라인 내용 참조
- 체크리스트 작성시 부분적용, 미적용 항목에 대해서는 사유 기재

평 가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사항 없음

2) 체크리스트

구 분	세부항목	평가	권장	지양
공통항목	- 진출입부 등 보행로의 경사로를 설치하여 보행약자의 접근성을 확대하였는가?		○	
	- 유지관리에 용이한 재료로 계획되었는가?		○	
	- 담장 설치 대신 개방감을 위해 관목 식재 조성을 계획하였는가?		○	
	- 건축물의 미관을 저해하는 설비시설의 노출을 지양하였는가?			○
	- 전면공지의 개방화를 통해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는가?		○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획이 고려되었는가?		○	
	- 계단이용을 촉진하는 표지를 설치하였는가?		○	
공공청사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은 분리하여 계획하였는가?		○	
	- 업무용 차량과 이용자의 주차공간을 분리 하였는가?		○	
	- 외부 진입부로부터 주 건축물까지 안내 사인시설 및 동선체계가 고려되었는가?		○	
	- 위압감을 주는 규모의 캐노피 및 아케이드의 설치를 지양하였는가?			○
	- 보행동선부터 주 건축물까지 보행동선이 연속성을 가지도록 계획되었는가?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획되었는가?		○	

문화복지 시설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차도와 거리를 확보하였는가?		○	
	-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하였는가?		○	
	- 급격한 경사도 계획을 지양하였는가?			○
	- 건축물 내 단차를 최소화하고 안전장치를 확보하였는가?		○	
	- 1층 출입구 및 로비 진입부에 층별 안내도 및 배치도를 계획하였는가?		○	
	- 내·외부 공간에 공공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계획을 하였는가?		○	
	- 자연채광을 위하여 창문 설치를 고려하였는가?		○	
	-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간 계획하였는가?		○	
교통시설 및 안내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은 분리하여 계획하였는가?		○	
	- 외부 진입부로부터 주 건축물까지 안내 사인시설 및 동선 체계가 고려되었는가?		○	
	- 보행동선 부터 주 건축물까지 보행동선이 연속성을 가지도록 계획되었는가?		○	
	- 건축물 내 단차를 최소화하고 안전장치를 확보하였는가?		○	
	- 1층 출입구 및 로비 진입부에 층별 안내도 및 배치도를 계획하였는가?		○	
환경시설 (공공 화장실)	- 자연광의 유입이 충분하고 통풍이 원활하게 계획되었는가?		○	
	- 고채도 도색 및 슈퍼그래픽 적용을 지양하였는가?			○
	- 인지가 쉬운 픽토그램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가?		○	
	- 화장실 입구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였는가?		○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였는가?		○	
	- 공중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을 독립적으로 조성하고, 장애인 화장실 설치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	
	-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에서 내부가 시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구조로 되었는가?		○	
	- 주요 출입구에는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되 눈에 잘 띄도록 높은 곳에 위치하고, 감시중이라는 사인을 부착하였는가?		○	
	- 내부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내부디자인은 사용의 편의성, 유지관리 및 청결에 중점을 두고 설계하였는가?		○	
	- 화장실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질을 설치하였는가?		○	

2.2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1) 개요 및 기본방향

(1) 정의

○ 공공공간이란?

[사 전] 공공공간이란,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외부 및 준 외부영역에 조성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되는 공간으로 가로/ 공원/ 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시설물을 말함
 [건축기본법]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
 [관 련 계 획] 홍성군 상위기관인 충청남도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 공공공간이란 공공성을 지닌 영역에 조성되어 주민에게 공개되는 공간

○ 공공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공공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홍성군의 공공공간 디자인의 기본 원칙으로 공공공간을 구성하는 구성체계를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설계 및 관리가 되도록 제시한 지침

(2) 목적

- 홍성군 공공공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공공공간의 전반에 걸쳐 디자인 원칙과 기준 마련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의 공공성을 증진시키고 공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유기적 상호작용 도모

(3) 적용 대상

- 홍성군의 공공공간을 크게 가로공간 / 광장 / 친수공간 / 공원 / 기타 공공공간으로 나누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며, 각각의 대상에 대한 방향 제시

가로공간	광장	친수공간	공원	기타 공공공간
자동차도로 횡단보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수변공간(해안) 수변공간 (하천/저수지) 도시 내 수경공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옥외주차장 공개공지/ 공공공지

공공공간의 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홍성군의 공간권역계획에 바탕을 둔 지역이미지에 부합되도록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2) 구성체계

- 공공공간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 후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형태·구조, 설치·배치, 재질·색채, 기타의 항목으로 나뉘어 적용(단, 제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합리적 적용)
- 권장 및 비권장 사례 이미지, 설계지침과 관련된 삽도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구 분	내용
구조·배치	공공공간의 시각적 속성과 전체를 이루는 요소의 규정
설치	공공공간 내 시설물 간의 설치 및 상호관계 규정
재질	공공공간을 구성하는 재료의 속성 규정
색채·패턴	공공공간을 구성하는 색채와 패턴의 속성 규정
식재	공공공간을 구성하는 식재의 속성 규정

3) 공공공간의 현황조사

차도와 보도 - 차도와 보도의 구분 불분명	횡단보도와 보도 - 유니버설 디자인:연속성 확보 필요	자전거전용도로 -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배치
		
보도 - 노후화되고 불량한 보행환경	횡단보도 -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	보도 - 보행로 공간 미확보로 위험노출
		
공원 - 진입부분에 단차 발생	친수공간 - 야간의 안전성 확보 필요	옥외주차장 - 도로전면부에 그대로 노출
		

4)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 홍성군 공공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도시의 공공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공공공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도시 이미지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개념을 준수함



5)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 | | |
|-----------|--|
| 01 | 이동과 휴식이라는 본래 기능이 우선되어야 한다. |
| 02 | 안전한 공공공간이 도시환경의 밑바탕으로 본질적이고 매력적인 도시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
| 03 | 공공공간은 특정인이 아닌 어느 누구나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중시해야 한다. |
| 04 | 범죄 및 위험요소가 발생되지 않는 안전한 공공공간으로 계획한다. |
| 05 | 보행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개방감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

6)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디자인의 차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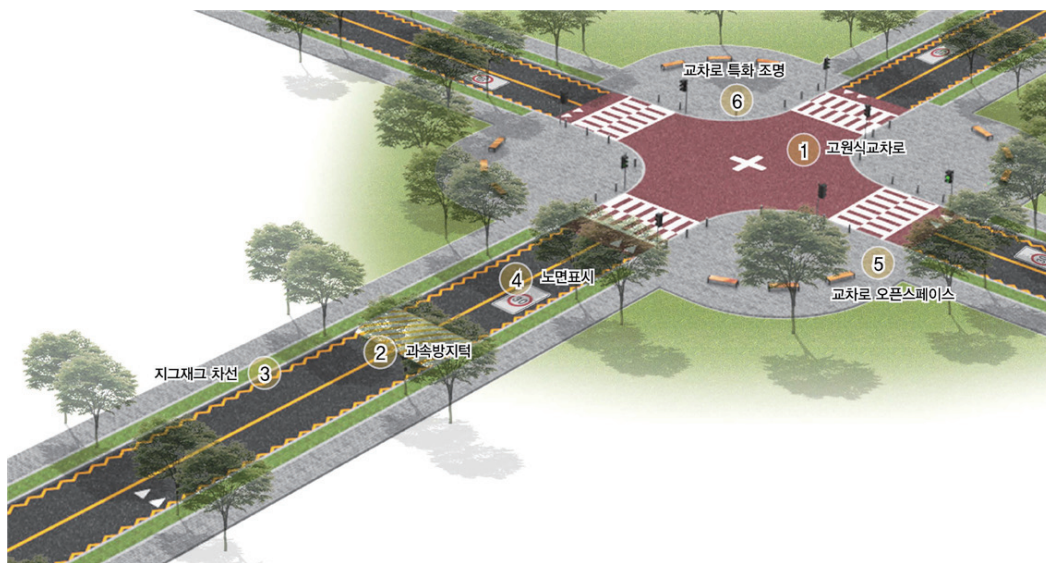


7)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세부 전략

Sensible Design [합리적인 디자인]

- 고려자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이상적인 도시 건설을 위한 공공공간 디자인 전략
- : Slow design / Safe Design / Share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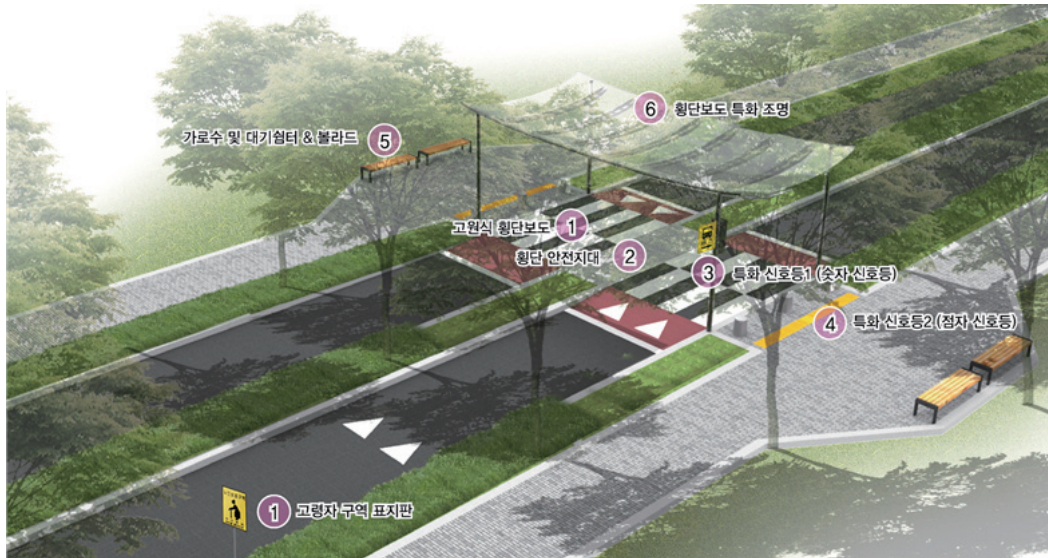
○ Slow Design [여유 있는 디자인]



- 차량의 속도저감을 위한 디자인
- 쉬운 인지를 통해 사전 인식이 가능한 디자인
- 이용자의 보행 능력을 고려한 디자인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공공공간 디자인

○ Safe Design [안전한 디자인]



- 안전한 보행을 위한 디자인
- 시각적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 유비쿼터스를 접목한 자동제어 디자인

안전한 생활을 위한
공공공간 디자인

○ Share Design [공유하는 디자인]



- 편리하고 원활한 옥외활동을 위한 디자인
- 사회적인 고립을 예방하는 디자인
-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디자인

공유 생활을 위한
공공공간 디자인

2.2.1 유형별 가이드라인

1) 가로공간

(1) 자동차 도로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자동차 전용 도로와 일반 도로의 차도 등 교통 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기본방향	- 자동차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는 개방적인 가로공간 형성 및 공공시각매체와 시설물의 통합디자인 도입 - 보·차도 영역이 선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경계석이나 볼라드 설치를 권장 - 주행 속도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보행자가 우선시 되는 환경을 조성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편의성	보차 미분리로 보행자의 통행과 안전을 방해 및 불법 주정차
	조화성	불법주차로 인한 협소한 도로로 인한 경관성 저해
	안전성	경계가 불분명한 보·차도 경계로 인한 주행성 방해 및 보행자 이용의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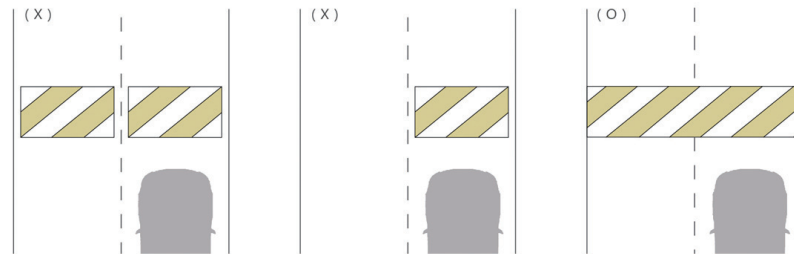
③ 가이드라인

★건강도시 ●범죄예방 ●고령친화 ◆여성친화 ■유니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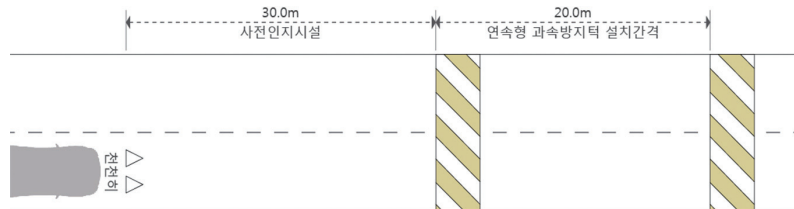
구조 · 배치	- 보도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운전자의 주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획 - 주요 도로 및 교차점에서 충분한 시야범위를 확보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코너를 배제하여 진행 방향을 쉽게 인지하도록 계획 - 도로선형 및 적절한 경사변화를 통하여 주요 경관자원에 대한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계획 ★ 주거지역이나 지역의 공공시설 또는 생물서식지 등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로의 바깥쪽에 환경시설대 또는 방음시설을 설치 - 도로 설계시 과도한 절개지 노출 등으로 자연경관이 훼손 방지 및 복원계획 마련
	속도저감시설 ● 고령자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차량감속 및 가로 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속도 저감 시설 (과속방지턱, 고원식교차로, 시게인, 소형화전교차로 등) 설치 ▷ 과속방지턱 - 과속방지턱은 형상에 따라 볼록/오목 원호형, 볼록/오목 사다리꼴, 가상방지턱 등으로 구분되며, 설치되는 위치 등에 따라 적합한 형상을 고려하여 설치 - 속도저감 효과 최대화를 위한 과속방지턱의 설치 높이는 10.0cm, 설치 길이는 3.6m로 하며, 단일 형은 지양하고 가급적 연속형 과속방지턱 설치 권장

- 양방향 도로에서 도로의 편측설치 형태, 방향별 설치위치가 상이한 형태, 중앙차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을 비워서 설치하는 형태 지양
- 과속방지턱 전방 20~30m에 운전자의 인지성 향상을 위한 노면 표시 및 교통안전표지시설 설치
- 과속방지턱의 인지성 향상을 위해 조명시설을 병행할 수 있으며, 주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간접조명보다는 과속방지턱 직전에 설치하는 직접조명 설치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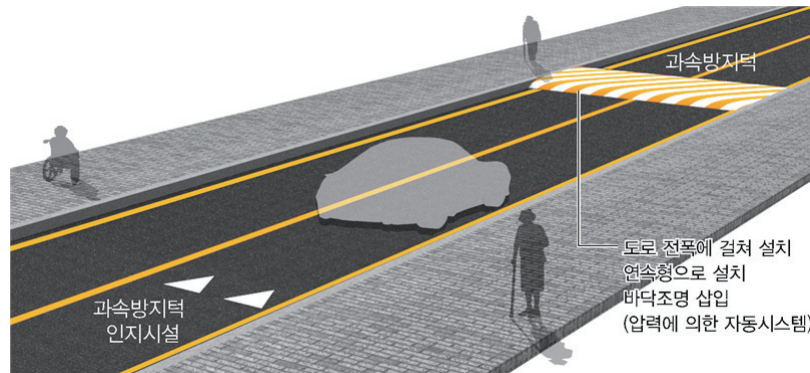
과속방지턱 설치 예시도



과속방지턱 설치간격 및 사전인지시설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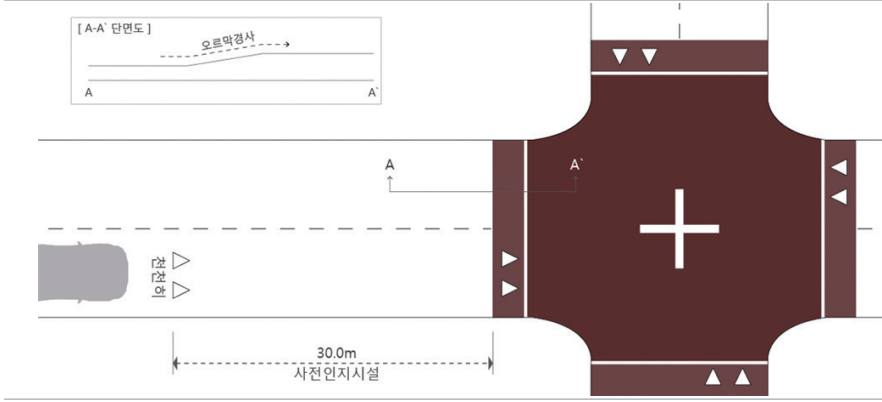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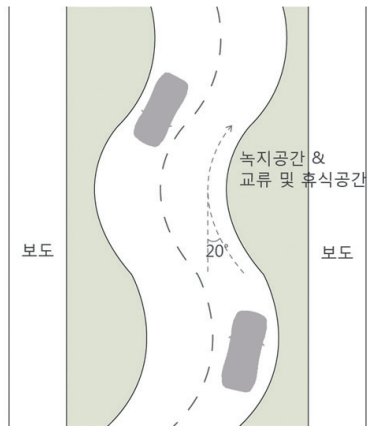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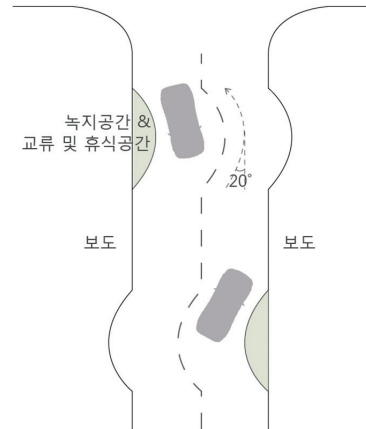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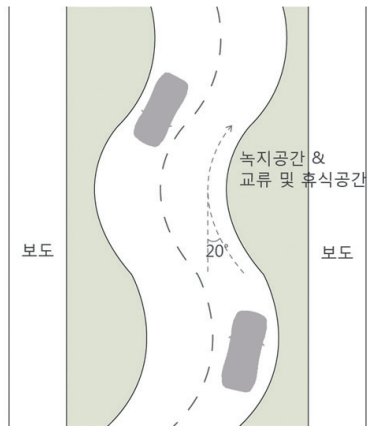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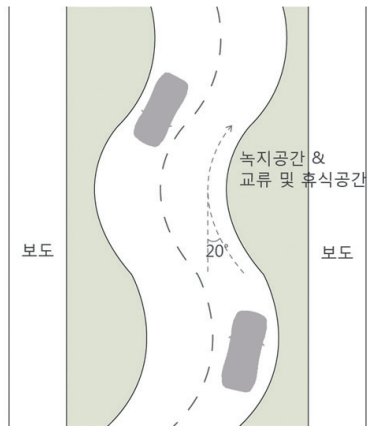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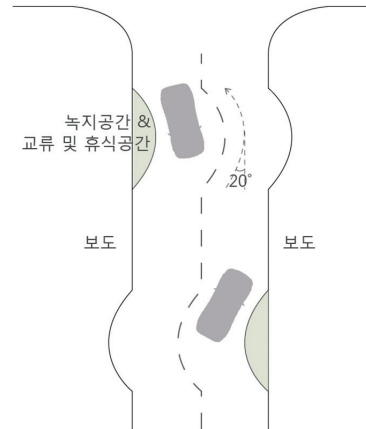
과속방지턱 설치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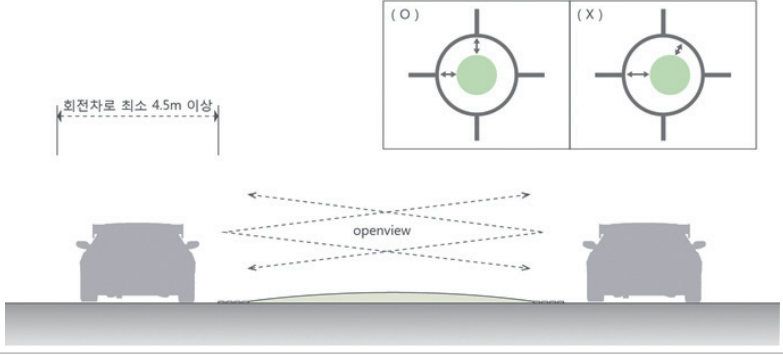


▷ 고원식교차로

- 고원식교차로는 교차로에서의 속도저감 효과를 위해 10.0cm 높이로 설치
- 고원식교차로 전방 20~30m에 운전자의 인지성 향상을 위한 사전 노면 표시 및 교통안전 표지 설치
- 횡단보도부는 고령자 및 교통약자 이용의 안전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인접한 보도의 높이와 동일

구조
·
배치

구조 · 배치	- 야간의 경우, 시인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전인지표시, 오르막경사부 표시, 교차로 주요부분에 조명시설 설치 권장			
	고원식교차로 설치 예시도 			
	▷ 시케인 - 직선의 도로를 곡선 형태로 변화하여 차량의 속도를 저감시키는 기법 - 새롭게 조성되는 대상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곡선의 형태가 연계되는 자유곡선형 시케인, 기존의 직선형 도로에 정비 및 개선의 목적으로 부분적 시케인 조성 - 비상차량의 진출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 시케인 구간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보행능력이 낮은 고령자 및 교통약자를 배려하여 가능한 최단거리로 횡단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권장 - 쾌적하고 푸른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시케인의 곡선 부분은 녹지공간 및 교류/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형성 -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차량이 차선을 넘어서는 것을 예방하고, 녹지대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차도와 녹지대 경계부는 차도 포장과 다른 재질의 소재 적용			
	시케인 예시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자유곡선형 시케인(신규구간)</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부분적 시케인(정비 및 개선구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body> </table>	자유곡선형 시케인(신규구간)	부분적 시케인(정비 및 개선구간)	
자유곡선형 시케인(신규구간)	부분적 시케인(정비 및 개선구간)			
				

	▷ 소형회전교차로 - 교차 지점의 중앙에 원형의 교통섬을 설치하고 교차점에 유입하는 차량을 이 교통섬 주위로 한 방향으로 회전시켜 처리하는 회전교차로 설치로 안전한 차도 환경 형성 - 회전교차로가 있음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노면표시·표지판을 30.0m 전방에 설치함 - 쾌적한 차도 형성을 위해 중앙교통섬에 녹지대로 조성하며, 쾌적한 도로경관 및 시야 확보를 위해 가급적 잔디 및 초화 위주 식재 권장 - 중앙교통섬에 다양한 조경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나, 수평적으로 거대한 시설물과 같은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 지양 소형회전교차로 예시도 
설치	- 친환경적이고 빗물이 고이는 노면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횡단기울기를 고려하고 레인가든과 같은 배수시스템을 도입 - 교통관련 공공시각매체와 시설물을 통합하여 시설물의 수량 및 규모 최소화 권장 ■ 안전시설물은 주변 경관을 차폐하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와 위치에 설치 - 도로 위에 설치되는 모든 공공시설물 및 공공정보매체는 본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고 -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조도의 조명시설 설치
재료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 ■ 포장재 선택 시 관련법규를 고려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은 주재질과 구별되는 재료의 사용을 권장
색채 · 패턴	■ 눈부심이 없고 시각적으로 안정감 있는 색채의 사용을 권장 ● ■ 보행능력이 낮은 고령자 및 교통약자의 시각적 인지성 향상과 교통사고 저감을 고려하여 포장면에 속도제한 및 서행 등의 노면 표지를 명확히 표기 ● 시각 및 인지능력이 낮은 고령자를 배려하는 디자인 도입 권장 속도제한 및 서행 노면표시도 

식재	- 운전자의 시각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녹시율을 높이기 위하여 차도변, 중앙분리대에 식재 도입 계획 - 계획식재를 이용한 중앙녹지대 계획 시 지피초화부터 교목의 복합 다층식재를 통해 경관성 및 기능성 향상 도모 ★ 도로의 대기오염원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환경정화기능이 있는 수종을 도입										
	환경정화 도입 수종(예시)										
	구분	공장, 도로변과 같이 오염 농도가 높은 곳에서 알맞는 종류 주택가 등 오염 정도가 심하지 않는 곳에서 알맞는 나무 종류									
	교목	은행나무, 톨립나무, 양버즘나무, 은단풍나무, 가중나무(가죽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참느릅나무(8종) 느티나무, 팽나무, 오동나무, 배롱나무, 밤나무, 백목련, 벚나무, 서어나무, 칠엽수, 회화나무, 감나무, 때죽나무, 층층나무, 자두나무(자도나무)(14종)									
	관목	무궁화, 개나리, 낙상홍, 수수꽃다리, 산수유(5종) 매화나무(매실나무), 박태기, 자목련(3종)									
횡단보도 주변 가로수 식재											
- 가각부에는 운전자의 시선을 차단하는 시설물 설치나 수목식재 금지 - 횡단보도를 대기하는 보행자에 대한 인지성 향상을 위해 일부 구간은 식재를 제외하거나 지양											
횡단보도 주변 가로수 제외 및 지양 구간											
<table> <tr> <th>설계속도(km/h)</th><th>식재제외구간(m)</th><th>식재지양구간(m)</th></tr> <tr> <td>30</td><td>2.8 이하</td><td>2.8 초과 26.8 이하</td></tr> <tr> <td>60</td><td>8.5 이하</td><td>8.5 초과 69.4 이하</td></tr> </table> * 식재제외지역 및 지양지역은 횡단보도 경계부에서부터의 거리를 말함 * 식재제외지역에 지피 및 초화류의 식재는 가능함			설계속도(km/h)	식재제외구간(m)	식재지양구간(m)	30	2.8 이하	2.8 초과 26.8 이하	60	8.5 이하	8.5 초과 69.4 이하
설계속도(km/h)	식재제외구간(m)	식재지양구간(m)									
30	2.8 이하	2.8 초과 26.8 이하									
60	8.5 이하	8.5 초과 69.4 이하									
횡단보도 주변 가로수 식재 예시도											
교차로 주변 가로수 식재											
- 교차로 주변은 운전자의 시선을 차단하는 시설물 설치나 수목식재 금지 - 교차로 부근을 보행하는 사람에 대한 인지성 향상을 위해 직선과 곡선의 접점으로부터 약 10.0m 구간에는 식재를 제외 - 가로수 식재 제외뿐만 아니라, 가로등, 표지판, 분전반 등의 가로시설물도 설치를 제외하여 개방적인 경관 및 안전한 도시 형성 고려한 계획 수립											

식재	교차로 주변 가로수 식재 예시도
기타	- 도로의 노후화로 인한 바닥 균열 등을 방지하는 것을 금지 - 도로표지판 및 안전시설물은 명확한 인지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높이와 위치에 설치 -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하여 도로의 폭원과 구조, 위계에 따라 조명의 간격, 광원을 선택하여 야간 조명 설치 권장 ■ 보행로의 기울기는 고령자 및 여성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8% 이하의 기울기 권장
권장 & 비권장 사례	[O] 녹지대를 이용한 중앙분리대 설치 [O] 재질 변화를 이용한 고원식 교차로 [O] 도로 특성을 고려한 야간조명 [X] 도로의 배수 불량으로 인한 물고임 발생 [X] 노후화되고 불량한 도로 포장 [X] 불법 주차차로 인한 보행공간 협소

(2) 횡단보도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사람이 가로로 건너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도로 표지를 설치하여 차도 위에 마련한 길
기본방향	- 자동차 등의 교통위험으로부터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교통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으로 안전성을 고려한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

②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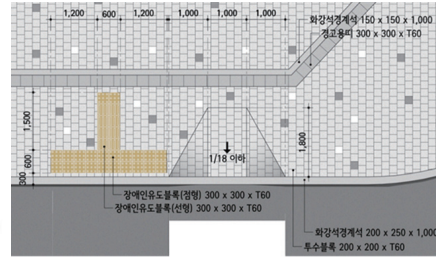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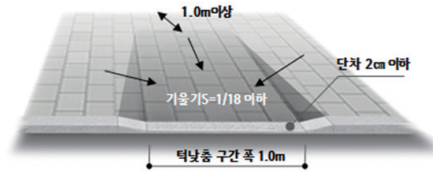
현황 및 문제점	편의성	횡단보도와 보도경계의 단차 발생으로 이용의 불편 초래
	조화성	횡단보도 전면부에 위치한 공공시설물 및 기준에 맞지 않은 점자블럭
	지속성	노후화로 인한 요철이 있는 횡단보도의 관리 필요
	안전성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 위치한 횡단보도

③ 가이드라인

●범죄예방 ●고령친화 ◆여성친화 ■유니버설

구조 · 배치	■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시야확보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 ■ 횡단보도는 자전거, 보행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속성 있는 접근 동선계획의 수립 권장 ● ◆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이용자 및 장애인, 고령자 등의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자유롭게 이동,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와 보도의 단차가 없도록 설계 ● 보행 능력이 낮은 고령자를 위한 도로 중앙부 안전지대 설치(중로 이상일 경우 설치) 녹지대와 연계하여 심리적 쾌적성을 부가적으로 유도 ●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의 보호구역 및 보행우선구역의 횡단보도에는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를 권장하고, 녹색신호 시간은 교통약자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계획 할 것을 권장 ● 고령자의 시각적 특성을 고려하여 움직이는 형태나, 점차 줄어드는 통과 신호 표시 등과 같이 특화된 형태의 신호등 설치 권장 - 횡단보도 경계부는 보도 및 횡단보도의 폭에 따라 부분경사로와 전면경사로 중에서 선택하여 턱낮춤 적용할 것을 권장
	횡단보도 부분턱낮춤 ■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고용 블록과 지체장애자 및 노약자를 위한 부분턱낮춤을 함께 설치하여 원활한 보행 유도 ● 턱낮춤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경사로를 함께 두어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제공 - 횡단보도 전체를 턱 낮추기 하는 것은 지양하고 필요한 최소폭(100~150cm)만 턱 낮추기 실시

횡단보도 부분턱낮춤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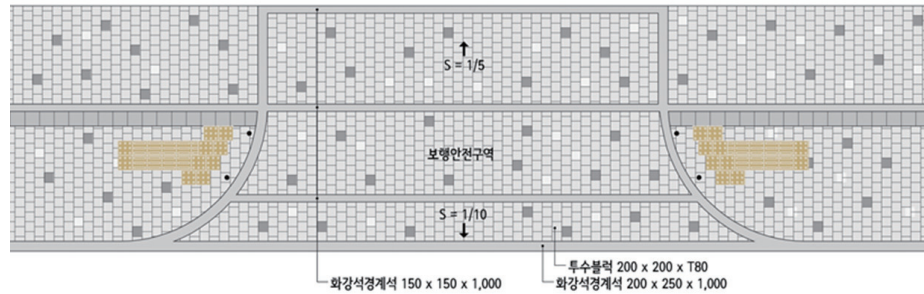


고원식 횡단보도

구조
·
배치

- 이면도로 진입로, 아파트 단지 등에 설치되는 횡단보도는 보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함프형 횡단보도 설치할 것을 권장
- 보도 폭이 4m 이상인 경우 : 최소한 200cm 이상의 수평면 확보
- 보도 폭이 4m 미만인 경우 : 최소한 150cm 이상의 수평면 확보
- 공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한 바닥패턴의 통일성을 고려
- 횡단보도 진입부와 차도의 경계턱을 낮춰 보행자의 접근성 향상
- 횡단보도의 전면경사로 턱낮춤 조성 시에만 볼라드를 설치하되 횡단보도의 중앙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1.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을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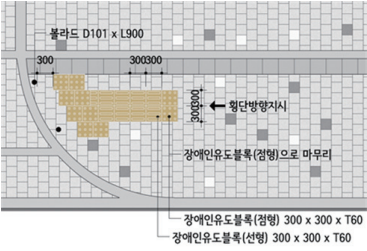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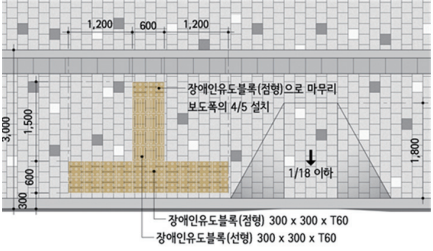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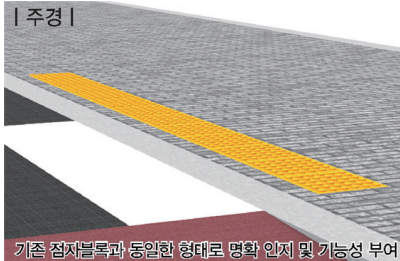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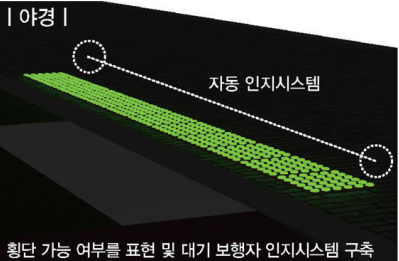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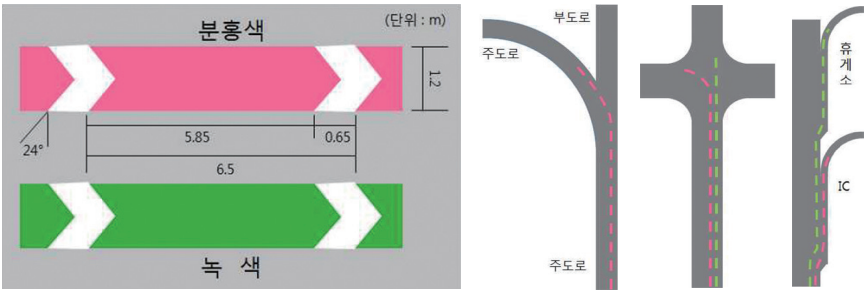
고원식 횡단보도 예시도



점자블록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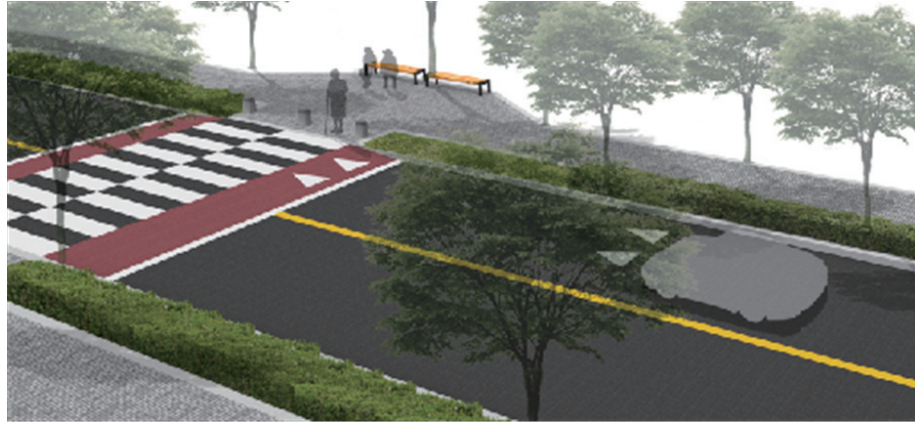
- 부분 턱낮춤 횡단보도의 경우 부분턱낮춤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횡단보도 폭만큼 점자 블록을 설치하고 전면 턱낮춤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폭 만큼 설치
- 횡단지점의 연석이 곡선부인 경우, 곡선을 따라 계단식으로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선형블록으로 횡단방향 지시
- 차량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0c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 횡단보도나 보행섬의 진입부 등에는 90cm 정도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중앙에 설치
- 점자블록 색상은 황색계열의 점형블록(경고, 정지, 주의 의미)과 선형블록(유도기능, 진행의미)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점자블록 재질은 스테인레스 등 미끄러지기 쉬운 소재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고무재질 등의 사용 지양

설치	차량진입 구간 평면도  횡단보도 구간 평면도  ● 야간 인지 능력이 낮은 고령자의 야간 이용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 신호등과 함께 점등 되는 특화된 점자블럭 활용 권장 횡단보도 점자블럭 설치 예시도 주경  야경 
재료	- 횡단보도에는 고휘도의 반사재료(발색도료)를 사용 가능 - 고원식 횡단보도는 연결되는 공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도와 동일한 포장재 마감권장 - 쾌적하고 안전한 차량 및 보행자의 이용을 위하여 내구성 강한 재질을 사용
색채 · 패턴	■ 운전자의 경로선택 혼란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향유도 Color Lane 설치를 권장하되 무분별한 설치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협의·승인 후 시행 ■ 지정된 도색칼라를 적용하여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 권장 - 방향유도용 유색포장은 하이패스용 유색포장과 유사하게 설치하며, 설치길이는 교차로 전방 400m, 두께는 1.2m, 갈매기 표시는 6.5m마다 표시 방향유도용 유색포장의 규격 및 색채 예시도 
기타	- 횡단보도와 보도의 경계부분에는 배수구 및 맨홀 설치 금지 ■ 사고위험성이 높은 교차횡단보도나 교통광장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명을 추가 설치하고 야간에 표식판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명을 설치할 것을 권장 ■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의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횡단보도 진입부 벽과 인도에 삼각형 모양의 엘로우카펫 조성 권장

- 횡단보도 대기자에 대한 인지성 향상을 위해 적정구간은 가로수를 제외하여 식재

● ■ 신체적 능력이 낮은 고령자 및 보행약자를 위해 배후 쉼터 조성 권장

횡단보도변 가로수 설치 및 대기쉼터 조성 예시도



구조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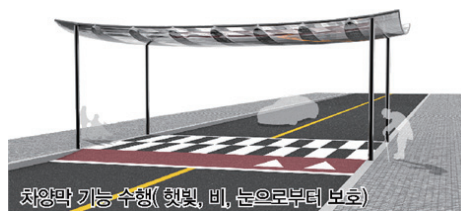
횡단보도 특화 조명(제안)

● ■ 횡단보도의 명확한 인지 및 고령자 및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성 향상을 위해 특화된 조명시설 설치 권장

- 차양막의 역할을 부가적으로 수행하여 우천시 등의 보행 안전성 및 편의성 향상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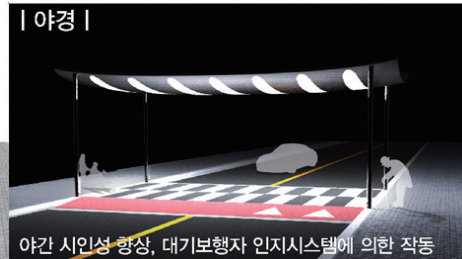
횡단보도 특화조명 설치 예시도

| 주경 |



차양막 기능 수행(햇빛, 비, 눈으로부터 보호)

| 야경 |



야간 시인성 향상, 대기보행자 인지시스템에 의한 작동

-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가로등은 야간에도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을 위해 보행등 겸용으로 설치 권장

- 보행자의 야간이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수평면조도(노면조도)보다는 보행자가 잘 보이는 밝기 기준인 연직면 조도 기준 사용

- 횡단보도 조명은 연속조명만으로 횡단보도 조명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추가 설치하고 무조명 구간은 주변 밝기를 고려하여 설치위치 결정

설치

횡단보도 조명기준

조명구간		연직면 조도(lx)	
		평균	최소
연속조명 구간	상업지역	20~30	4
	주거/공업지역	10~20	4
	기타지역	10~15	4
무조명 구간		30 이하	2

* 용도지역은 구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에 따름

* 횡단보도 전체를 비추기 위해 수평면조도는 6lx 이상



[O] 보행안전을 고려한 고원식횡단보도



[O] 야간 안전성을 고려한 바닥 조명



[O]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옐로우카펫



[O] 횡단보도 이용의 안전성을 고려한 신호기 설치



[X] 설치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횡단보도 앞 시설물



[X] 횡단보도와 보도의 단차 발생

(3) 보도

① 정의 및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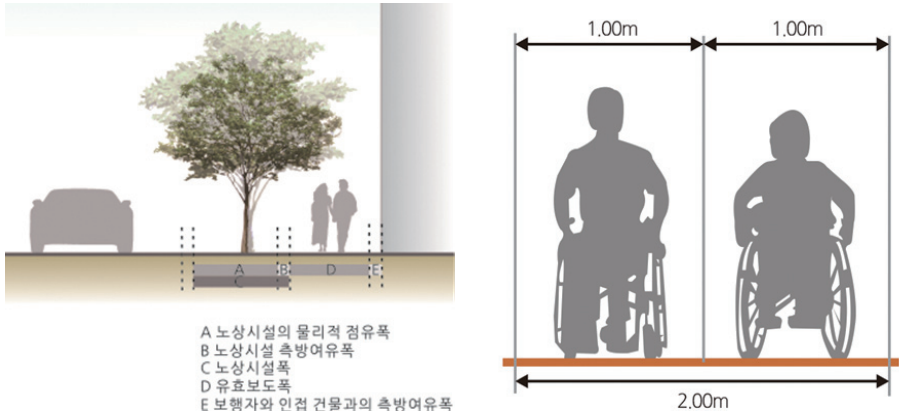
정의	-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연석선(緣石線) · 안전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에 의해서 구획된 도로의 부분으로 차도와는 공간적으로 분리된 길
기본방향	- 보행자중심의 가로를 위해 보행구간 내 턱이나 돌출물을 제한하여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 - 보도 폭에 따른 시설물 설치 기준을 확립하여 유효 보도 폭을 확보 - 시설물 배치시 개방감을 확보하고 보도 위 시설물의 설치 및 규모 최소화 계획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편의성	좁은 보도 위 무질서한 가로시설물로 장애인 및 고령자등의 교통약자 통행의 불편 초래
	조화성	보도의 색채, 형태, 재질의 이질감으로 인해 연속성이 결여된 가로경관
	지속성	노후화되고 불량한 노면 환경 및 보도의 다양한 패턴으로 통일성 결여
	안전성	보차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며, 보도 미조성으로 보행의 안전상 문제 야기

③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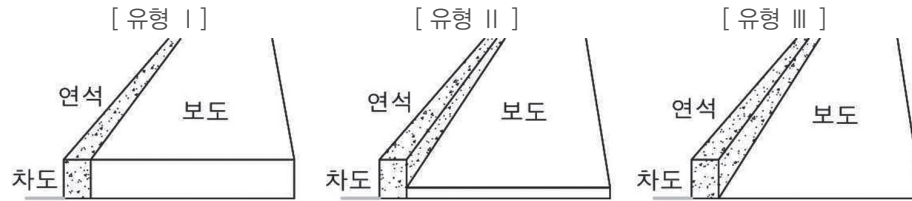
★건강도시 ●범죄예방 ●고령친화 ◆여성친화 ■유니버설

구조 · 배치	■ 휠체어 등의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용을 고려하여 최소 2.0m 이상의 유효폭 확보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최소 1.2m 이상으로 확보 (보도 유효 폭은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름) ■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전면경사로 또는 부분경사로 설치 권장 - 부분적 턱 낮춤 구간을 제외하고는 단차 없는 형태의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인 보행이 가능하도록 조성 - 보도에는 은닉공간이 없도록 가능한 곧고 넓게 설계함 ■ 횡단보도 진입부와 차도의 경계부를 부분적 턱 낮춤 구간으로 조성하여 보행자의 접근성 향상 도모 - 보도와 연결 공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닥패턴의 통일성을 고려 - 보도는 연석이나 웬스 등의 가로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명확한 분리 권장
	유효보도폭의 개념과 최소 유효보도폭  A 노상시설의 물리적 접유폭 B 노상시설 축방여유폭 C 노상시설폭 D 유효보도폭 E 보행자와 인접 건물과의 축방여유폭

경계석(연석)

-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0.15~0.25cm 이하로 설치

보도면 형식



연석의 형식 예

구분	[경사형 (완경사형)]	[수직형 I (급경사형)]	[수직형 II (직사각형)]
측 구 검 용 연 석			
연 석			

설치위치에 따른 연석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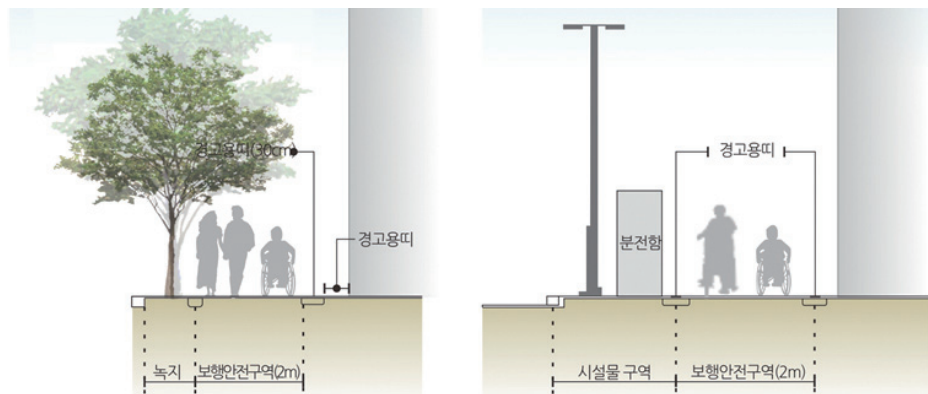
설치위치 / 연석종류	경사형 (완경사형)	수직형 I (급경사형)	수직형 II (직사각형)
연석과 잔디로 구성된 폭이 넓은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경우	◎		
평면교차로나 입체교차로에서 도류섬 또는 분리대에 설치되는 연석	◎		
차도에 접속하여 충분한 길어깨 설치,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경우	◎		
자전거도로가 연석으로 차도와 분리할 경우	◎		
도시부에서 차량속도가 저속이고 보도로 구분될 경우		◎	
폭이 좁은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경우		◎	○

◎ : 일반적 적용 형식 / ○ : 도로여건에 따라 사용가능형식

설치

- 가로시설물의 규모 및 수량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여 개방적인 보행환경 형성
- 볼라드 겸용의 보행 조명등은 가로시설물에서 1.5m의 간격을 두어 보행자, 휠체어 이용자, 자전거 이용자가 통과하기 쉽도록 하며 기타 가로시설물과 중첩되지 않도록 조성
- ★ 일정 거리마다 휴식 및 교류를 위한 시설 설치하여 편안하고 인간중심적 가로환경 조성
- 보행을 방해하는 가로시설물의 이설 및 지중화를 통해 유효 보도폭 확보
- 보호펜스는 가능한 설치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여 개방감 있는 공간을 조성
- 보호펜스의 설치가 불가피한 장소에는 다른 시설물과 통합하여 설치하고 보도의 폭이 충분한 경우 가로수와 연계하여 띠녹지 조성 등으로 대체할 것을 권장
-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평탄성을 유지하며 보도블록 간 틈새가 치밀하도록 시공
- ◆ 여성 보행자 환경을 고려하여 하이힐 끼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음부 간격을 고려하여 보도 포장 설치
- 지팡이 및 보조보행기, 휠체어 사용 고령자를 고려하여 블록 줄눈 간격 최소화
- ★ 보행로의 선형은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 보도블록 설치 시 훼손 발생을 줄이고 정비가 용이하도록 엇갈림 설치를 하도록 권장
-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CPTED기법을 도입한 범죄예방시설물, CCTV, 조명시설 등 설치(안심하교길 / 귀가길)

| 보행안전지대 확보 예시 |



보도 폭별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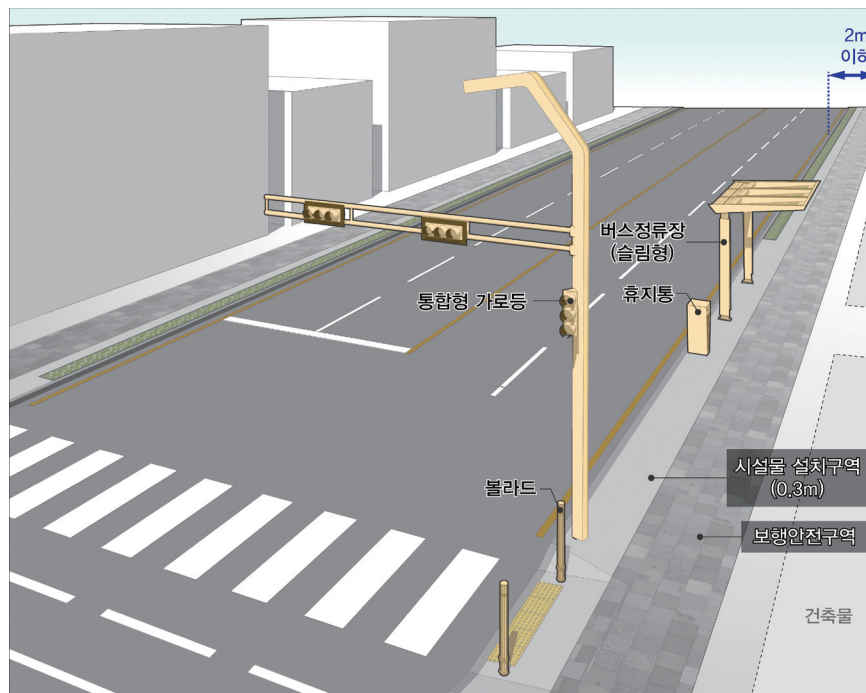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보도의 최소 폭을 1.5m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휠체어가 양방향 교행이 가능한 2m를 보도의 최소 유효 폭으로 확보위의 기준에 따라 보도 폭의 기준을 2m 미만 / 2m~4m / 4m 이상으로 구분하여 제시
- 보도폭에 따른 시설물 설치 기준을 확립하여 유효 보도 폭을 확보하고, 안전한 거리조성

① 보도 폭 2m 미만

- 보도폭 2m 미만일 경우, 자전거도로의 설치를 지양
- 최소 보도폭 1.5m 미만일 경우, 가로수 식재 및 가로시설물 설치를 지양
- 공공시설물은 통행이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화를 권장
- 공공시설물의 설치 시 공공건축물이나 공개공지, 완충녹지 등을 활용하여 통합설치를 권장
- 통행로 확보 용이성을 위해 버스정류장은 슬림형을 권장
- 점자블럭은 감지용 점형블럭만 설치하는 것을 권장
- 사인시설물은 인한 지주 시설물과 통합하여 설치

시설물	가능여부	시설물	가능여부	시설물	가능여부
버스정류장	기본형 ×	가로등	○	자전거도로	×
	슬림형 ○				
벤치	×	볼라드	○	안내표지판	×
휴지통	○	가로화분대	×	방향유도표지판	×
가로수	△	가로판매대	×	펜스	△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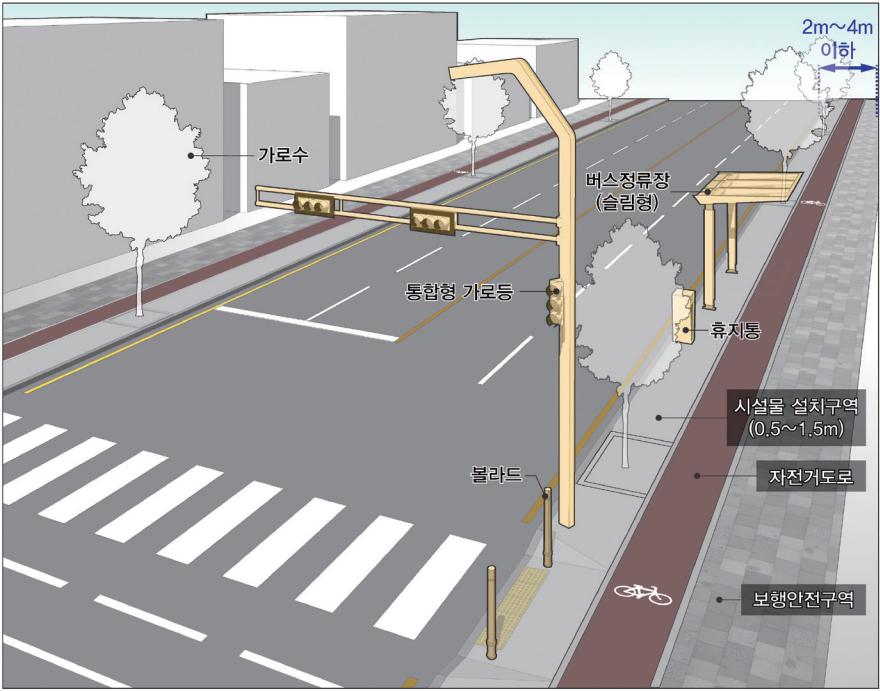


② 보도폭 2m~4m 미만

- 유효 보도폭 내에 보행을 방해하는 가로시설물의 설치를 지양
-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이 3m 이하일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 지양
- 자전거도로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이 3m 이상일 경우 설치를 권장
- 자전거도로(최소폭 1.1m) 설치 시 보행안전구역이 최소 유효폭(2m 이상)을 확보한 보도에만 계획
- 포장면에 자전거도로 노면 표지를 명확히 표기하고 자전거 횡단보도를 도입
- 가로수 식재 시 가급적 지지대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
- 벤치를 차도 쪽에 설치할 경우 사용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차도와 벤치 사이에 거리를 확보

시설물		가능여부	시설물	가능여부	시설물	가능여부
버스정류장	기본형	△	가로등	○	자전거도로	○
	슬림형	○				
벤치		○	볼라드	○	안내표지판	○
휴지통		○	가로화분대	△	방향유도표지판	○
가로수		○	가로판매대	△	펜스	△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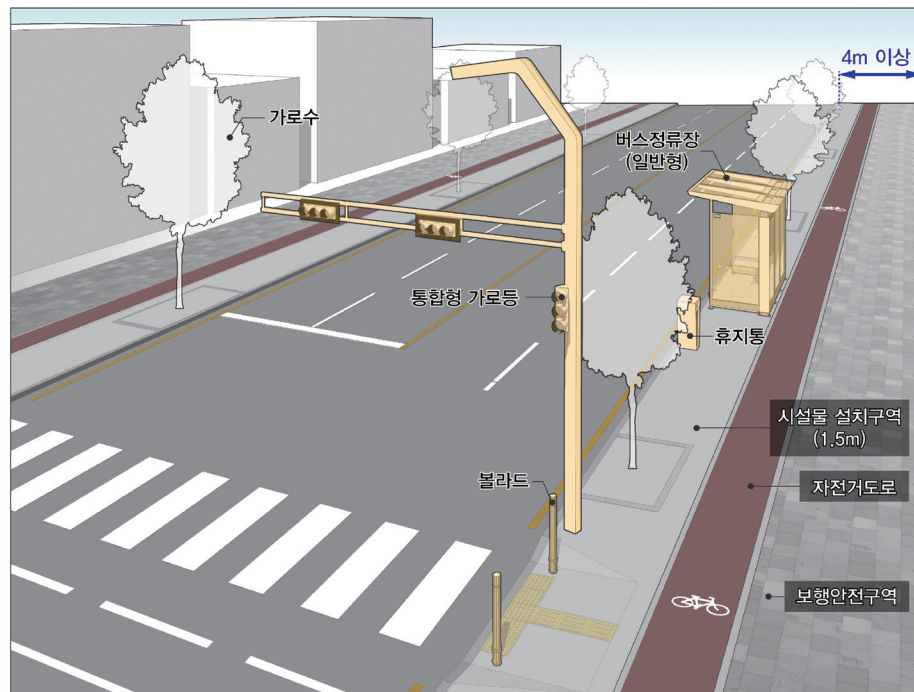


설치

③ 보도폭 4m 이상

- 보도폭 4m 이상일 경우, 제한시설물은 없으며 시설물구역 내에 통합하여 설치
- 자전거도로와 차도 사이에 목 0.5m 이상의 완충녹지 설치를 권장
- 점자블럭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 시설물을 제외한 통행구역 내 고정 가로시설물의 설치를 금지
- 가로가판대와 관광안내소는 보도폭 4m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만 설치 권장

시설물	가능여부	시설물	가능여부	시설물	가능여부
버스정류장	기본형 ○	가로등	○	자전거도로	○
	슬림형 ×				
벤치	○	블라드	○	안내표지판	○
휴지통	○	가로화분대	○	방향유도표지판	○
가로수	○	가로판매대	○	펜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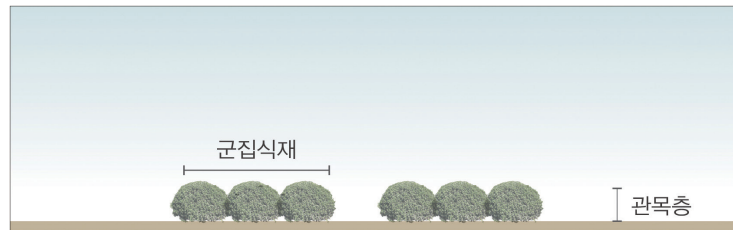
- 복사열 저감 및 친환경적인 수순환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투수성 재료나 견고한 친환경 재질의 블록을 권장
- 블록형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단위 규격이 큰 제품으로 하고 지나치게 많은 재료의 혼용 금지
 - 보도포장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내구성, 미끄럼 저항성, 평탄성, 투·배수성 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갖춘 소재 사용
 - ★ 내포 순례자 길의 보행로 포장은 석재, 사고석, 잔디, 점토블럭 등의 소재를 사용
 - ◆ ■ 장애인, 어린이, 여성, 고령자 등의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단단하게 고정된 표면 처리의 블록형 선정

| 교통약자를 고려한 보도 포장 재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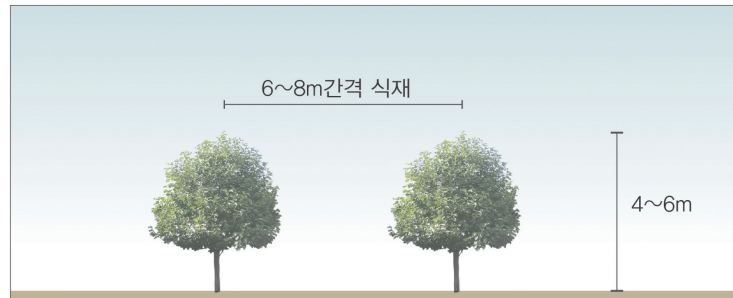
권장			
비 권장			

- 원색의 사용을 금지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과도하지 않은 간결한 저채도의 주조색 권장
- 동일한 구간 내 무분별한 패턴의 혼재를 지양하며 장식보다는 기능을 우선시하는 디자인을 권장
- ★ 천년여행길의 보행로는 패턴을 차별화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
- 저채도, 저명도의 단순한 패턴 적용으로 가로의 배경이 되도록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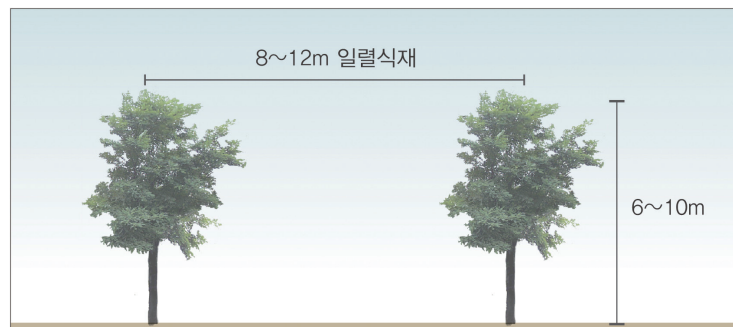
- 에너지를 절감하고 가로수와 식재, 투수포장, 레인가든 등을 통해 강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설계 권장
- 가로수의 적용가능 수종은 천년관아 앞 아문길- 소나무, 느티나무, 무궁화, 홍주성 문화마당(산벚나무, 이팝나무, 맥문동, 내포 천주교 순례자길은 살구나무, 매화나무, 무궁화 등을 식재)
- 상가간판의 가림을 최소화하는 수관폭이 좁고 지엽이 치밀하지 않은 수종을 선택하고 군집하여 식재
- 식재간격은 수고가 높은 경우(교목층) 8~12m 간격으로 일렬식재, 수고가 중간인 경우(아교목층), 6~8m 간격으로 식재하며, 수고가 낮은 경우 관목층 군집식재를 권장
- 보도 유효 폭이 충분한 경우 녹지율 향상을 고려하여 수목보호덮개를 지양하고 관목, 지피류 등을 도입한 가로 녹지대의 설치 권장
- 보도 폭이 2m 이하의 보도의 경우, 수목의 식재보다는 플랜터를 활용한 조경 권장
- 수고가 낮은 경우(관목층)



- 수고가 중간인 경우(아교목층)



- 수고가 높은 경우(교목층)



기타	- 특화 거리의 경우 바닥 패턴 일부를 안내표지로 활용하여 설치하도록 권장 ■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해 황색계열의 점형블록(경고, 정지, 주의 의미)과 선형블록(유도 기능, 진행의미)을 기준에 준수하여 설치 ■ 점자블록 재질은 스테인레스 등 미끄러지기 쉬운 소재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고무재질 등의 사용 지양 - 보행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충분한 시야확보를 위해서 바닥에서부터 0.85m 높이지점에서 측정한 조도값이 40lx 이상 되도록 함
권장 & 비권장 사례	 
	[O] 저채도의 단순한 패턴의 보도블럭 [O] 투수성을 고려한 가로녹지대
	 
	[O] 보행로 공간 폭이 넓어 편리성이 높음 [X] 보행자의 위험을 초래하는 보행환경
	 
	[X] 규격 및 기준에 맞지 않는 점자블럭 및 볼라드 설치 [X] 보도에 방치되어 있는 볼라드 기초부로 보행안전에 위협

(4) 자전거도로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등으로 차도나 보도와 구분해 설치된 도로를 뜻함
기본방향	- 실제 이용 가능한 단절 없는 연속성 있는 자전거도로의 설치와 폭원의 확보 - 이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명확히 구분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편의성	부분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자전거 도로로 인해 실질적 이용이 어려움
	조화성	자전거도로를 침범한 가로시설물들로 인하여 이용에 방해
	안전성	명확하지 않은 보도와 자전거도로와의 구분으로 자전거이용자의 위험 초래

③ 가이드라인

★건강도시 ◎범죄예방 ■유니버설

- ★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
 -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15)]에 제시된 설계속도와 도로선형 기준을 준용(기존의 차도나 보도에 설치되는 자전거도로 예외)
 - 자전거도로의 횡단구성은 자전거도로의 유형, 도로의 기능, 교통량, 설치장소, 인접 차로의 제한속도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횡단구성 요소의 규모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계획 및 설계 시에 적정기준을 적용하고, 안전성 및 효율성을 종합적 검토
 - 자전거 우선도로의 지정, 운영을 위한 노면표시 설치 및 횡단구성 설계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15)]에 제시된 기준 준용
 -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계 시 일방향은 배제하고, 양방향을 고려한 설계 원칙을 준용
단, 차로에 분리형으로 설치되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 일방향 양측설계 원칙으로 함
- 자전거 전용도로는 측면에 당해도로의 부분으로써 가능한 폭 0.5m 이상의 측방여유를 확보하도록 설계
- 자전거 전용도로의 선형, 경사, 기타 구조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계획

| 자전거전용도로 폭 기준 |

구분	자전거 전용도로 폭(m)		
	도시지역	지방지역	공원 및 하천
양방향	2.4	3.0	3.0
일방향	1.5	1.5	1.5

* 일방향 설계 시 도로 폭은 1.5m 적용. 단, 1.5m를 확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최소폭 1.2m 적용

구조 · 배치	자전거전용도로 예	
	〈Alt1〉_노면표시(Two Line & 칼라아스콘)	〈Alt2〉_노면표시(Two Line) & 경계석
		
	〈Alt3〉_노면표시(Two Line) & 경계석 & 휠스	〈Alt4〉_노면표시(Two Line) & 차선규제봉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말함 - 도시지역, 지방지역 및 강변, 하천 등 설치장소에 따라 설치유형을 구분하여 설치 - 이면도로 진입로, 아파트 단지 등에 설치되는 횡단보도는 보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할 것을 권장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분리 설치 시 자전거도로는 차도 측으로 설치 단, 조경 및 식수대 등으로 인해 자전거이용자의 시거 및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 - 도시지역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폭은 분리 시 자전거도로 폭 1.5m 이상, 보행자도로의 유효보도폭 2.0m 이상이고, 비분리시는 3.0m 이상으로 설치

– 하천변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폭은 분리시 자전거도로 폭 2.4m(양방향) 이상, 보행자도로의 유효보도폭 1.5m 이상이고, 비분리시는 3.0m 이상으로 설치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폭 기준

구분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폭(m)			
	도시지역		하천변	
	자전거도로	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분리형	1.5	2.0	2.4	1.5
비분리형	3.0		3.0	

* 일방향 설계 시 도로폭은 1.5m 적용. 단, 1.5m를 확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최소폭 1.2m 적용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예

〈Alt1〉_경계석



〈Alt2〉_경계석 & 칼라아스콘



〈Alt3〉_경계석 & 경고용띠



〈Alt4〉_경계석 & 휀스



〈Alt5〉_경계석 & 스토퍼



〈Alt6〉_경계석 & 관목



구조 · 배치	자전거전용차로 - 자전거전용차로는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를 말함 - 자전거전용차로의 폭은 1.5m 이상으로 설치(단 부득이한 경우는 최소폭 1.2m까지 설치) 자전거전용차로 폭 기준 <table> <tr> <th>구분</th><th>자전거 전용차로 폭(m)</th></tr> <tr> <td>양방향</td><td>1.5</td></tr> </table>	구분	자전거 전용차로 폭(m)	양방향	1.5
구분	자전거 전용차로 폭(m)				
양방향	1.5				
설치	★ ■ 자전거도로 상부 및 양측면에는 안전성 및 주행성 등을 고려하여 가로시설물 및 장애물을 설치 지양 ■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보호 펜스 등의 안전시설 설치 - 녹지대 등을 활용한 차도 및 보행로와의 분리시설 설치 -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 설치 ■ 자전거도로 이용지침 및 정보를 설명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 주요 거점에는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야간 이용이 빈번한 구간에는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CPTED기법을 도입한 범죄 예방시설물, CCTV, 조명시설 등 설치 -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자전거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제공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도의 시설 설치 권장				
재료	■ 자전거도로의 포장면은 평탄성이 유지되고, 투수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이용성 및 안전성을 확보 - 차도 등과 교차되는 구간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도록 이질적인 재질 및 색채 적용의 노면 처리를 권장				
색채 · 패턴	- 다른 도로부분과 구별이 쉽도록 다른 색상의 포장계획으로 고채도의 원색을 지양하고 저채도의 단색으로 계획 - 도로 포장면에 자전거 도로 노면 표지를 진입방향과 수평을 맞춰 명확히 표기 할 것				
기타	★ 일정 거리마다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 및 교류를 위한 휴게공간 조성 - 도로와 자전거 도로와의 경계는 녹지대 설치 권장				



[O] 보/차도와의 경계 명확



[O] 야간이용성을 고려한 조명시설



[O] 차로와 분리된 안전한 자전거도로



[X] 연속성 없는 자전거도로



[X] 자전거도로를 침범한 가로시설물



[X]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자전거도로

(5) 공공공간 개선예상도

○ 역사문화권역 : 조양문 주변

• 개선전



• 개선후(예상)



○ 역사문화권역 : 여성친화거리

- 개선전



- 개선후(예상)



○ 역사문화권역 : 조양문 주변

• 개선전



• 개선후(예상)



○ 역사문화권역 : 조양문~장군오거리

- 개선전



- 개선후(예상)



○ 역사문화권역 : 조양문~장군오거리

• 개선전



• 개선후(예상)



○ 역사문화권역 : 홍주교 앞 4거리

• 개선전



• 개선후(예상)



2) 광장

(1)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도시 속의 개방된 장소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
기본방향	- 환경에 어울리는 수종과 식재를 선택하여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보행자가 쉽게 접근하여 모이고 머무를 수 있는 곳으로 보행가로의 연계성을 극대화하여 접근성과 개방성 향상 도모
관련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2항 제3호 각목의 광장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편의성	경계적으로 인한 턱 발생 및 계단진입부 등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은 공간연출
	조화성	장소성을 부각하기 위한 조형물 설치로 상징성을 제공하나, 이용성이 낮은 광장
	지속성	구심점과 장소성을 부각하고 보행자에게 편의 및 쉼터 제공
	안전성	범죄예방 및 이용의 안전을 고려한 CCTV 설치

③ 가이드라인

★건강도시 ●범죄예방 ●고령친화 ◆여성친화 ■유니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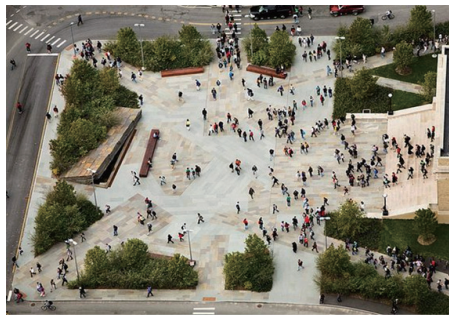
구조 배치	- 광장 중앙부, 대중교통 주 · 진출입부, 보행동선의 주요 교차점 등에는 충분한 공간 확보 - 환경에 어울리는 수종과 식재를 선택하여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인접보도를 포함한 주변환경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장애인, 어린이, 고령자 등의 교통약자의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조성 ★ 각종 이벤트와 집회, 다양한 건강을 위한 활동과 휴식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연출
설치	- 도로일체형 교차점 광장의 경우 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치 - 주요 통행 동선상에 고정 시설물 배치 금지 - 지나치게 화려하고 장식적인 상징조형물 및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과도한 규모 및 디자인의 설치 지양 - 바닥분수, 디지털 미디어 시설 등 공간 활용도가 높은 시설물 및 지역적 특성을 나타낸 홍보시설물 설치 권장 ● 정보매체를 도입하여 보행자에게 안내정보를 제공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 권장
재료	-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재료를 사용하여 통합적 경관이 되도록 조성
색채 패턴	- 지역의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절제된 패턴 및 색채를 적용하고 마감재질과 패턴의 변화로 정/동적 공간 적절히 배분 권장
기타	- 환경에 어울리는 수종과 식재를 선택하여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O] 식재를 이용한 친환경 이미지



[O] 다양한 활동과 휴식이 가능한 공간



[O] 접근성이 용이한 열린공간



[X] 높은 식재 설치로 운전자 시야 방해



[X] 시민들의 활동 및 이용을 고려하지 않은 광장



[X]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과도한 규모의 상징조형물

3) 친수공간

(1) 수변공간(해안)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바다와 육지가 맞닿은 부분에 도시민의 휴식 및 교류 등을 위해 설치되는 공간
기본방향	- 우수한 해안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지역특성화 계획 및 이용성 향상을 고려한 공간 연출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편의성	수변공간의 옹벽부에 설치된 가로형 난간 웬스는 다양한 이용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세로형의 웬스 설치 필요
	조화성	해안으로의 조망확보가 가능한 공간의 미사용으로 활용성 미흡
	지속성	우수한 해안경관 조망을 위한 가로공원 및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나, 이용성 저하
	안전성	수변에 야간의 이용 및 범죄예방을 위한 가로등, CCTV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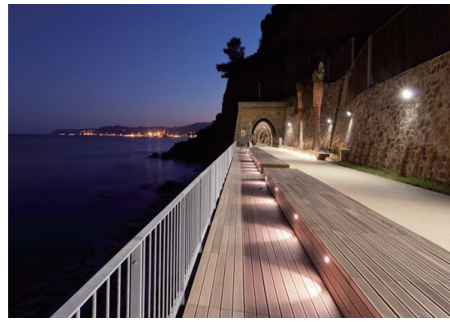
③ 가이드라인

★건강도시 ■유니버설 ▲친환경

구조 배치	- 해안에 면한 건물은 저층으로 배치하고 후면의 건물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데크 및 쉼터 조성으로 친수경관 계획 - 주요 조망장소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위압적 경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관리가 필요 ★ 우수한 해안경관 조망 및 다양한 수변경관의 창출을 위해 친수호안, 수변데크, 수변산책로, 가로공원 등의 친환경적 어메니티 공간 조성
설치	▲ 인공구조물 및 시설물은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친환경적인 요소 도입 권장 ■ 해안 이용 시 수상 사고를 고려한 안전시설을 적절한 곳에 배치 - 야간에 해안 이용 시 시인성 향상을 위해 조명시설 설치하되, 해안가 동식물 등의 생육특성을 고려한 조명색 적용 ★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산책로 및 휴게시설 설치
재료	- 해안경관과 조화되는 자연친화적인 재질 적용
색채 패턴	- 해안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위적인 색채를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색 활용
기타	- 해변의 원식생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해안변 공지를 적극 활용 - 정온한 야간조망경관을 고려하여 발광 및 점멸하는 조명사용 지양 - 특색 있거나 상징적인 특화공간의 경우, 지역의 정체성이 반영된 경관 연출 ★ 해안으로의 개방감 확보를 통한 경관 정비 및 해안 수변공간의 자전거도로, 차로의 구분과 신호체계 개선 등으로 해안도로를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해안도로 연출



[O] 해안으로의 개방감 확보



[O] 야간의 이용성을 고려한 조명설치



[O]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수변데크 설치



[X] 과도한 디자인 및 색상의 웬스와 수경시설



[X] 파손된 해안산책로 데크의 방치 및 관리부족



[X] 해안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색채의 조형물

(2) 수변공간(하천/저수지)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산책 및 휴게목적으로 사용되는 하천 둔치 부분을 말함
기본방향	- 하천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구조 및 소재 지향하여 생태하천의 자연스러움 보전 - 수변을 조망하거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활용
관련법	- 수변공간은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하천), 제118조(유수지), 제121조(저수지)에서 제시하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유수지, 저수지 등을 의미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편의성	접근성 및 조망성 향상을 고려하여 일부공간에 데크 설치, 호안정비 시행
	조화성	자연경관의 보전 및 기존 지형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공간 연출
	지속성	시가지의 하천의 경우, 호안정비 및 생태적 계획으로 양호한 친수공간 형성
	안전성	수변공간의 야간이용을 고려한 시설물 및 휴게시설 부족

③ 가이드라인

●범죄예방 ■유니버설

구조 배치	- 자연적으로 우수한 경관자원을 최대한 보전하고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지형과 동선을 최대한 살린 계획 수립 - 침수기능을 확보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천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계획 수립 - 인공구조물이 노출되는 지역은 식생옹벽 등을 통해 자연친화적으로 조성
설치	- 하천과의 조화를 위해 구조물 및 시설물은 통합적인 디자인 권장 - 하천 주변에는 수상사고를 고려한 안전시설물을 적절한 곳에 배치 ● 빈번하게 침수되는 구역은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접근로 설치시 적절한 조도를 유지하여 우범화가 되지 않도록 조성 - 하천으로의 조망을 차단하는 시설물 및 구조물의 설치 지양
재료	- 하천과 잘 조화되는 목재, 호박돌, 마사토, 자연석 등의 자연재료 사용 권장 - 침수가 잦은 하천은 유실 피해에 잘 견디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
색채 패턴	- 하천 산책로 바닥 색채는 주변 환경에 조화되도록 인위적인 색채를 지양하고 재료자체색의 활용 권장 - 정형화된 패턴을 지양하고 자연적인 패턴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 지향 ■ 데크설치 지역은 색상패턴을 적용하고, 바닥등을 설치하여 안전성과 경관성을 확보
기타	■ 하천변의 쉼터공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 기존의 자연 식생을 최대한 유지하고 추가 식재시 기존 식생과의 조화 고려 - 제방 침식을 막기 위하여 오리나무와 같이 뿌리가 침구에 강하고 깊게 내려 토양층을 지지 할 수 있는 수종을 식재



[O] 수변접근을 고려한 친수공간 조성



[O] 빛공해 및 생육환경을 고려한 조명



[O] 조망 및 휴게를 위한 휴게시설



[O] 하천으로의 열린 조망권 확보



[X] 인위적 공간 조성 지양



[X] 과도한 하천 정비

(3) 도시 내 수경공간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도시 내 바닥분수, 분수대, 벽천, 도설지,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이 설치된 공간
기본방향	- 환경친화적요소를 도입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수경공간 조성 - 주변공간 및 보행동선과의 자연스런 연결로 수경공간으로의 접근성과 개방성 향상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편의성	관광객 및 주민의 체험적 활동을 유도하는 수경공간 부족
	조화성	지역의 상징적 수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자원으로써의 활용성 미흡
	지속성	공원 내 주변환경과 조화 및 경관미를 제공하는 분수시설 설치
	안전성	주야간의 안전을 고려한 시설 설치 부족

③ 가이드라인

★건강도시 ■유니버설 ▲친환경

구조 · 배치	★ 주변 공간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친수시설의 이용성 향상 - 바닥분수와 같은 동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수경공간의 경우 평탄한 지형에 계획 - 동절기 같이 이용하지 않는 시기에도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 연출 ■ 수경공간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하고 보호자의 시야 확보 필요 - 휴게공간에 수경시설 설치할 경우 소음을 고려하여 일정거리를 두고 배치
설치	■ 바닥분수 설치 시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한 배수크기, 조형물 형태, 규모로 계획 - 바닥 점유율의 확보가 안되거나, 불가피하게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벽천 등의 수경시설 설치 권장 - 주변의 야간경관과 조화되고 물의 움직임이 잘 드러나도록 조명설치 권장 ▲ 수경시설 내 조형물 설치 시 주변경관과 조화를 고려한 규모 및 형태 도입
재료	- 수경공간은 내수성이 높은 마감재 및 도장재 사용 권장 ■ 수경공간 주변부에는 물기에 의한 미끄럼 방지를 위한 논슬립(nonslip)재료와 마감 사용 권장 -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 및 보수를 위하여 수급이 용이한 재료 도입 - 벽천을 조성할 경우, 물 닿는 면의 재질 및 형태 다양화로 리듬감 있는 경관 연출 권장
색채 · 패턴	▲ 수경공간과 조화가 잘되는 자연재료를 사용하고 지나치게 복잡하고 다양한 패턴 지양 - 인위적인 색채를 지양하고 재료 자체색의 활용을 권장
기타	- 수경공간에 식재시 친수성 초화류나 관목식재를 권장하고 물에 수목이 직접 닿지 않도록 식재계획 낙엽이 많은 수종의 경우 배수로로 막을 수 있으므로 수종 선택과 위치 선정에 유의



[O] 접근성 및 이용성이 높은 수경공간



[O]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수경공간



[O] 야간의 경관성을 고려한 조명설치



[X] 수경시설에 비해 과도한 크기의 조형물



[X] 단차 있는 바닥분수설치로 안전사고 위험



[X] 논슬립(nonslip)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 바닥 포장재

4) 공원

(1) 근린공원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지역 주민의 보건·휴양·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기본방향	- 보행로와 연계성을 고려하고 공공성 및 개방성을 가진 휴식공간이 되도록 계획 - 지역주민의 보건·휴양·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 다양한 문화 활동의 기능 충족 도모
관련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도시자연공원 구역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편의성	공원의 주출입부가 인접가로, 보행동선과 연계되어 접근성 양호
	조화성	공원 내 다양한 형태 및 디자인의 휴게, 편의 시설로 지역 아이덴티티 결여
	지속성	홍성군 군민들이 여가 및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의 부족
	안전성	야간이용의 안전 및 범죄 예방을 고려한 CCTV 설치

③ 가이드라인

★건강도시 ●범죄예방 ■유니버설 ▲친환경

구조 배치	★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단순한 공원의 휴게 공간을 넘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공원 내 동선이 혼잡하지 않고 합리적인 순환체계를 갖추도록 동선 계획 수립 ■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 조성 및 평등한 이용을 위해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설치	★● 안전을 위해 방법시설을 설치하고, 상상력과 상징성 있는 시설물을 도입하거나 생활체육시설의 도입 등 주민활용도가 높은 공간 계획 - 공원의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구조로 계획된 경우 위치확인이 가능한 표지판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쉽게 인식 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 CPTED기법을 도입하여 담장 및 험스를 지양하고 시각적인 차폐로 우범화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 공원의 개방성과 공공성, 안전성 향상 도모
재료	▲ 폐쇄성이 낮고 환경 친화적인 소재 활용 권장으로 주변녹지와 조화로운 공원 계획 - 자연 친화적인 재질(투수성 포장재, 자연재료 등) 적용하되, 내구성이 강한 재질 선택
색채 패턴	- 시각적으로 복잡하고 자극적인 색채 및 과장된 패턴 지양
기타	- 보행, 운동, 휴게, 놀이 등의 공원 내 다양한 이용성을 고려한 영역구분을 위하여 주변과의 시선 연결을 방해하지 않는 수종으로 선정하여 식재



[O]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한 공간 연출



[O] 안전한 야간이용을 위한 조명 설치



[O] 생태적 · 이용적으로 우수한 공간 연출



[X] 공원 내 부족한 휴게시설 및 쉼터



[X] 내구성이 약한 공원시설물 지양



[X] 범죄발생 및 우범화 우려 공간 지양

(2) 어린이공원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어린이를 주이용 대상으로 하되 위치에 따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말함
기본방향	- 이용 대상자인 어린이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테마를 부여하여 계획 - 문화적 형태를 부여하여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편의성	유모차 이용자 및 장애인 등의 보행약자를 배려하지 않은 단차 있는 진입부
	조화성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하는 테마적 요소의 어린이 공원 부족
	지속성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어린이공원 진입부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통 및 재활용품 시설
	안전성	야간이용의 안전 및 범죄예방을 고려한 CCTV 설치

③ 가이드라인

★건강도시 ●범죄예방 ■유니버설 ▲친환경

구조 배치	-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안전을 위한 방법시설을 설치하고, 자동차 주차 및 노점 행위를 지양 ● 놀이공간 및 휴게공간은 주변에서 감시가 잘되는 곳에 배치하고 보행공간과 연계되는 지점에 배치
설치	★ 놀이시설과 더불어 다양한 학습체험시설 설치 권장 ● 안전을 위해 방법시설을 설치하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높여주는 놀이공간으로 구성 - 놀이터와 휴게공간 이용 및 감시를 위한 조명은 사각지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설치 ● CCTV는 놀이터와 휴게공간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24시간 감시되고 있음을 공지하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
재료	▲ 주변환경과 조화되며 환경 친화적인 소재의 활용을 권장 ■ 안전을 고려한 탄성 재료의 사용을 권장하며 자연 소재를 통한 교육적 효과 창출 권장
색채 패턴	- 자극적인 색채는 지양하나 지역성, 상징성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허용 - 과장된 패턴은 지양하나, 친근한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놀이시설에 적용은 허용
기타	- 공원명, 지명유래와 공원 내 금지행위, 시설물 이용안내 등에 관한 문구와 그림문자(픽토그램)적용 권장 ● 수목가림을 방지하고 생울타리 등의 가시율이 낮은 식재를 도입하여 쾌적성 및 안전성을 증진 - 어린이놀이 주변 조경은 시선연결을 저해하지 않는 수종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조명시설의 조도를 감소시키지 않는 위치에 식재



[O]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한 공간연출



[O] 주변과 조화로운 친환경소재 사용



[O] 안전을 고려하고 그래픽 요소를 적용한
탄성포장재



[X] 내구성이 약한 어린이놀이 시설물 지양



[X] 불량한 배수시설 및 노후화된 어린이 놀이
시설물



[X] 노후화 및 파손된 바닥포장 방치

(3) 소공원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포켓파크(pocket park)로서 도심지 자투리 공간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쉼터를 의미
기본방향	– 보행가로와 연계성 있는 시설물 및 포장을 선택하여 조화로운 경관을 조성 – 담장이나 헨스를 지양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개방성 있는 공원으로 계획 – 계획 시 다른 인접 공공공간 및 옥외 공간과의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편의성	인접가로 및 보행동선과 연계되어 접근성 양호
	조화성	주변 주거지에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하며, 휴게와 산책 등을 위한 공간 제공
	지속성	공원의 지속가능성 향상 및 시가지내 푸르름 제공을 위한 녹지대 조성
	안전성	야간이용의 안전 및 범죄예방을 고려한 CCTV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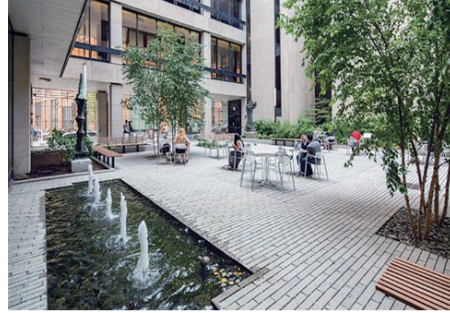
③ 가이드라인

★건강도시 ②범죄예방 ■유니버설

구조 배치	② 보행가로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시각적 차폐로 우범화되는 부분이 없도록 개방적인 구조로 조성 ② 시각적 차폐나 은폐공간이 형성되지 않도록 CPTED 디자인을 고려한 공간 연출 – 주변 여건에 따라 공간의 성격과 내용을 다양화할 것을 권장
설치	★ 적절한 조명시설의 설치와 보행로를 연계하여 공원의 활용성을 높임 ■ 공원 안내 표지나 공원 시설 안내도 등 공공시각매체는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시야를 가로 막지 않는 크기로 설치 ② CPTED기법을 도입하여 담장 및 헨스를 지양하고 CCTV설치를 권장 ② 시각적인 차폐로 우범화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 공원의 개방성과 공공성, 안전성 향상 도모
재료	– 투수율이 높은 포장재나 자연재료를 권장 –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휴게시설물의 소재를 고려하여 설치 – 내구성 있는 재료 사용으로 유지관리의 효율성 향상 도모
색채 패턴	–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휴게시설물의 색채를 고려하여 설치 – 자극적인 패턴을 지양하며 주변공간과 조화되는 공간 연출 권장
식재	– 계절감 있는 식재를 통해 주변자연과의 연속성을 나타내도록 권장 – 여름에는 적절한 그늘을, 겨울에는 적절한 일조를 확보를 위하여 일조 여건에 맞는 식재 계획을 수립
기타	– 공원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유지 및 관리방안 수립



[O] 수목 및 녹지 등으로 친환경 공원조성



[O] 건물 자투리 공간을 이용한 쌈지공원



[O] 유니버설을 고려한 단차 없고 개방된 공간



[X] 높은 담장 설치로 시각적 차폐 및 공원의 개방성 부족



[X] 시각적 차폐로 인한 우범화



[X] 쓰레기가 방치되어 이용의 불편 초래

5) 기타 공공공간

(1) 옥외주차장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차량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대지 안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기본방향	- 담장이나 헐스를 지양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개방성 있는 옥외주차장 계획 - 계획 시 기능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주행을 최소화하며, 효율적인 주차가 가능한 형태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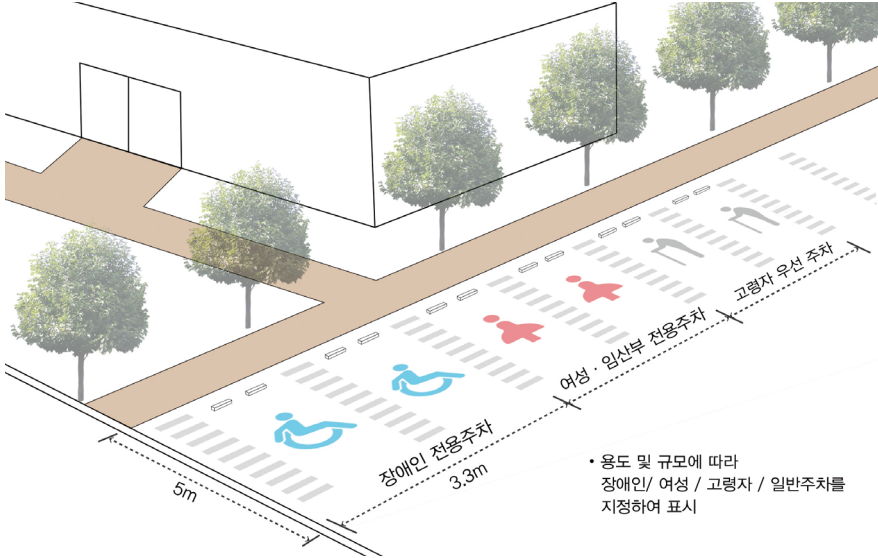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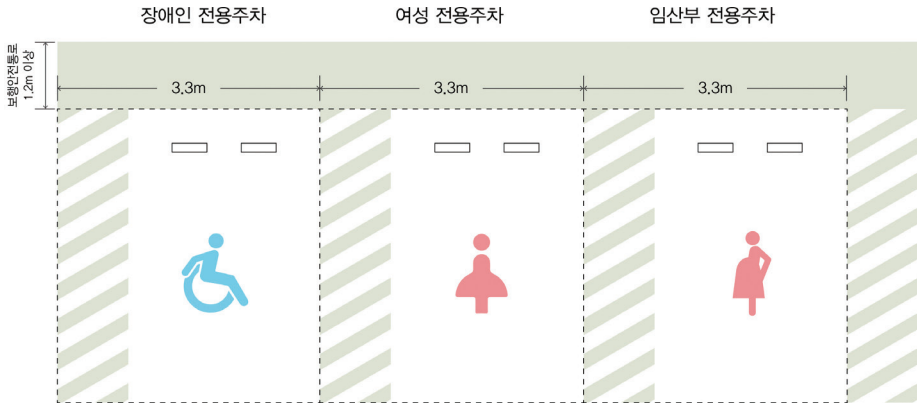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편의성	일부 주차시설 차선유도봉 설치로 주차시설 이용불가
	조화성	상가 전면에 설치된 주차장에 차폐 및 녹음 제공을 위한 수목 부족
	지속성	도로변에 주차 면 노출 및 불법주정차로 불량한 경관 형성
	안전성	주차구역과 보행구역의 구분이 미흡하여 안전의 위험성에 노출

③ 가이드라인

Ⓢ범죄예방 Ⓢ여성친화 ■유니버설

구조 · 배치	- 노상주차장(거주자 우선주차, 공영주차장 등)은 주변과의 시선연결을 고려해서 배치 - 주차장의 주출입구가 주요 간선도로에 위치하지 않도록 계획 - 불필요한 차량의 주행을 최소화하며, 효율적인 주차가 가능한 형태로 조성 - 차량 이동통로, 주차공간, 보행영역을 명확히 구분 ■ 교통약자를 배려하여 차량 접근로와 주 보행통로는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 ■ 주차차량이 보행통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보행통로와 주차공간에 경계석 또는 단차를 둘 것을 권장 하되, 교통약자들의 보행통로 이용을 고려한 일부 턱낮춤하여 설치 - 보행약자를 위한 주차공간은 출입구 및 목적지에서 가까운 곳에 배치 ◆ 여성우선주차공간은 주변에서 사람의 통제가 빈번하고, 가장 감시가 용이한 공간을 중심으로 계획 ◆ 임산부용 주차공간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한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계획 권장 -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의 경우 주택에 인접해서 지정하기 보다는 대지 내 공지 및 공용시설이 있는 공간 주변에 집중해서 지정하는 것을 권장 ■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통로 조성(1.2m 이상) 권장
---------------	---

	 •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장애인/ 여성 / 고령자 / 일반주차를 지정하여 표시 〈 장애인 및 여성임산부 전용 주차공간〉
설치	- 운전자 시야 방해가 예상되는 지점에는 수목이나 시설물 설치 금지 - 요금정산 시설, 관리소 등의 시설물들은 주변의 공공 시설물과 통합적으로 배치 권장 ● 야간의 안전한 이용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과 주차구역 및 출입구를 중심으로 CCTV 설치 - 안내표지판은 주차장 출입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
재료	- 복사열 저감 및 친환경적인 수순환체계 구축 등을 위해 잔디블럭과 같은 투수성 있는 재료의 사용 권장 - 복사열 저감 및 친환경적인 수순환체계 구축 등을 위해 투수성 포장 적용 - 우천시 등 물에 젖어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고 물고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탄하게 마감
색채 · 패턴	- 패턴디자인을 통해 차량 이동통로, 주차 공간, 보행영역을 구분하여 인지성 확보 권장 - 자동차 구역과 보행구역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재질 및 색채의 차별화 ■ 일반주차, 경차주차, 여성주차, 고령자주차, 장애인 전용주차 등 전용주차 구획시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채로 노면에 명확히 표시 

식재	- 주차장 내부에 식재되는 수목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고 차양효과를 줄 수 있는 수목(지하고가 높은 교목, 키가 작은 관목) 선정 - 불투수성 주차장을 잔디 등을 투수성 재료로 개선함으로써 녹지공간 확충 및 도시환경개선 - 투수면적 확보 및 일부 녹화를 통하여 시각적 차폐도와 쾌적성 향상 도모
권장 & 비권장 사례	 [O] 외부마감으로 삭막한 이미지 탈피  [O] 여성전용주차공간 확보  [O]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는 식재  [O] 친환경적이고 투수성이 높은 잔디블럭  [X] 하이힐의 끼임 발생 및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포장  [X] 보행자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입구

(2) 공개공지/공공공지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공개공지는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지를 말하며, 공공공지는 공개공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해 설치되는 시설을 말함
기본방향	- 보행자가 쉽게 접근하여 모이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이용층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공간으로 조성 - 광장으로의 접근 동선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계획하고 보행자의 편안한 보행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성 있는 소재 선정
관련법	- '도시, 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공공공지)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편의성	가로와 연결한 공개공지/공공공지의 단차로 교통약자 이용의 불편 초래
	조화성	불필요한 화단조성 및 시설물 배치로 보도의 연속성 저하
	안전성	다양한 활동 및 교류가 이뤄져야하는 도시 속의 열린 공간이나, 관리부족 및 일부 주차공간으로의 이용으로 공공공간의 기능 상실

③ 가이드라인

★건강도시 ■유니버설 ▲친환경

구조 · 배치	- 가로에서 접근성을 최우선 하고 건물의 특성에 어울리는 공지 조성 ▲ 가로의 연속성 및 개방성 확보를 위해 이격거리를 충분히 두도록 하고 인접공간의 녹지·공지와 연계성, 일조확보를 고려하여 연출 - 건물 출입 및 피난·방재 등의 동선과 겹치지 않는 위치에 공간 배치 -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은 특성에 맞는 이벤트 광장·마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설치	■ 장애인, 노약자 등의 교통약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보도와의 단차를 없애고 개방성 있는 공간을 구성 -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폐쇄적인 공개공지 및 공공공지는 지양 ★ 파고라, 벤치 등 쉼터 공간을 부분적으로 배치하여 휴식 및 커뮤니티 공간 제공
재료	- 보도의 포장재와 조화를 이루며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의 포장재를 권장
색채 · 패턴	- 주변과 부조화를 이루는 고명도, 고채도의 색상을 지양 - 과장된 패턴을 지양하며 보도와 조화를 이루어 연속성, 개방성을 확보
식재	- 공개공지의 녹지대는 겨울철 미관을 고려하여 상록수와 활엽수를 적절한 비율로 선정하여 식재 하고 경관과 조화되는 조형물 등과 조화되도록 고려

권장
&
비권장
사례



[O] 건물사이 통로 공간 이용한 휴게공간



[O] 야간의 이용을 고려한 야간조명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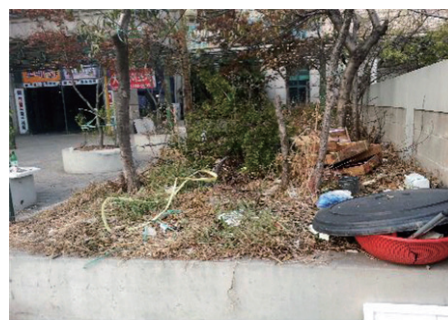
[O] 자연소재 및 식재계획을 통한 친환경적인 휴게공간



[X] 과도한 수목식재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제공하는 폐쇄공간 형성



[X] 지역주민이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공간 부재



[X] 관리가 미흡한 공개공지로 인한 경관저해

2.2.2 체크리스트

1) 체크리스트 작성

- 항목별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적용유무를 확인하고 피드백 할 수 있도록 권장
- 항목별 세부내용과 적용대상 구분은 세부가이드라인 내용 참조
- 체크리스트 작성시 부분적용, 미적용 항목에 대해서는 사유 기재

평 가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사항 없음

2) 체크리스트

① 가로공간

소분류	세부항목	평가	권장	지양
자동차 도로	- 자동차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는 개방적인 가로 공간을 형성하였는가?		○	
	- 도로 설계 시 과도한 절개지 노출 등으로 자연경관이 훼손 방지 및 복원 계획을 마련하였는가?		○	
	- 고령자 및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속도저감시설 및 인지시설, 안전 편의 시설을 설치하였는가?		○	
	- 포장재 선택 시 관련법규를 고려하고,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하였는가?		○	
	- 보행능력이 낮은 고령자 및 교통약자의 시각적 인지성 향상과 교통사고 저감을 고려하여 포장면에 속도제한 및 서행 등의 노면 표지를 명확히 표기하였는가?		○	
	- 운전자의 시각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녹시율을 높이기 위하여 차도변이나 중앙분리대에 식재를 도입하였는가?		○	
	-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하여 도로의 폭원과 구조, 위계에 따라 조명의 간격, 광원을 선택하여 야간조명을 설치하였는가?		○	
횡단보도	-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시야확보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	
	-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이용자 및 장애인, 고령자 등의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자유롭게 이동,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와 보도의 단차가 없도록 설계하였는가?		○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의 보호구역 및 보행 우선구역의 횡단보도에는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를 권장하고, 녹색신호 시간은 교통약자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계획하였는가?		○	
	- 차도와 횡단보도 노면에는 지정된 도색칼라를 적용하여 운전자가 횡단 보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는가?		○	

소분류	세부항목	평가	권장	지양
횡단보도	- 사고위험성이 높은 교차횡단보도나 교통광장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명을 추가 설치하고 야간에 표식판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명을 설치하였는가?		○	
	- 횡단보도 대기자에 대한 인지성 향상을 위해 적정구간은 가로수를 제외하여 식재하였는가?		○	
보도	- 휠체어 등의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용을 고려하여 최소 2.0m 이상의 유효폭 확보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 1.2m 이상으로 확보하였는가?		○	
	-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전면경사로 또는 부분경사로 설치하였는가?		○	
	- 보행로의 선형은 보행자가 걷기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는가?		○	
	- 횡단보도 진입부와 차도의 경계부를 부분적 턱 낮춤 구간으로 조성하여 보행자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였는가?		○	
	- 보도는 연석이나 웬스 등의 가로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명확한 분리가 이루어졌는가?		○	
	- 여성보행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평탄성을 유지하며 보도블록 간 틈새가 치밀하도록 시공되었는가?		○	
	- 보도포장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내구성, 미끄럼 저항성, 평탄성, 투·배수성 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였는가?		○	
	- 동일한 구간 내 무분별한 패턴의 혼재를 지양하며 장식보다는 기능을 우선시하는 디자인을 계획하였는가?		○	
	- 에너지를 절감하고 가로수와 식재, 투수포장, 레인가든 등을 통해 강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설계를 하였는가?		○	
자전거 도로	-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15)]에 제시된 설계속도와 도로선형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였는가?		○	
	- 자전거도로 상부 및 양측면에는 안전성 및 주행성 등을 고려하여 가로시설물 및 장애물을 설치를 지양하였는가?		○	
	- 자전거도로의 포장면은 평탄성이 유지되고, 투수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이용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였는가?		○	
	- 도로 포장면에 자전거 도로 노면 표지를 진입방향과 수평을 맞춰 명확히 표기하였는가?		○	
	- 일정 거리마다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 및 교류를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였는가?		○	

② 광장

소분류	세부항목	평가	권장	지양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 광장 중앙부, 대중교통 주·진출입부, 보행동선의 주요 교차점 등에는 충분한 공간 확보하였는가?		○	
	- 다양한 건강을 위한 활동과 휴식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구성하였는가?		○	
	- 건강도시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공간을 조성하였는가?		○	
	- 인접보도를 포함한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장애인, 어린이, 고령자 등의 교통약자의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조성하였는가?		○	
	- 지나치게 화려하고 장식적인 상징조형물 및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과도한 규모 및 디자인의 설치 지양하였는가?			○
	- 정보매체를 도입하여 보행자에게 안내정보를 제공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였는가?		○	
	- 지역의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절제된 패턴 및 색채를 적용하고 마감 재질과 패턴의 변화로 정/동적 공간 적절히 배분하였는가?		○	

③ 친수공간

소분류	세부항목	평가	권장	지양
수변공간 (해안)	- 우수한 해안경관 조망 및 다양한 수변경관의 창출을 위해 친수호안, 수변 데크, 수변산책로, 가로공원 등의 친환경적 어메니티 공간을 조성하였는가?		○	
	- 해안 이용시 수상 사고를 고려한 안전시설을 적절한 곳에 배치하였는가?		○	
	- 야간에 해안 이용 시 시인성 향상을 위해 조명시설 설치하되, 해안가 동 식물 등의 생육특성을 고려한 조명색을 적용하였는가?		○	
	- 해안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공구조물 및 시설물은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인위적인 색채 사용을 지양하였는가?			○
	- 해변의 원식생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해안변 공지를 적극 활용하였는가?		○	
수변공간 (하천/ 저수지)	- 자연적으로 우수한 경관자원을 최대한 보전하고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지형과 동선을 최대한 살린 계획 수립하였는가?		○	
	- 빈번하게 침수되는 구역은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하천 주변에는 수상사고를 고려한 안전시설물을 적절한 곳에 배치하였는가?		○	
	- 침수가 잦은 하천의 경우, 유실 피해에 잘 견디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접근로 설치 시 적절한 조도를 유지하여 우범화가 되지 않도록 조성하였는가?		○	

소분류	세부항목	평가	권장	지양
도시내 수경공간	- 주변 공간 및 보행동선과의 자연스런 연결로 수경공간으로의 접근성과 개방성 향상을 고려한 설계가 되었는가?		○	
	- 환경친화적 요소를 도입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수경공간 조성하였는가?		○	
	- 동절기 같이 이용하지 않는 시기에도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연출하였는가?		○	
	- 수경공간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하고 보호자의 시야를 확보한 공간 연출을 하였는가?		○	
	- 수경시설 내 조형물 설치 시 주변경관과 조화를 고려한 규모 및 형태의 시설물을 도입하였는가?		○	
	- 낙엽이 많은 수종이 수경시설 주변에 식재했을 경우 배수로를 막을 수 있으므로 수종 선택과 위치 선정에 유의하여 계획하였는가?		○	

④ 공원

소분류	세부항목	평가	권장	지양
근린공원	-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단순한 공원의 휴게 공간을 넘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는가?		○	
	-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 조성 및 평등한 이용을 위해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였는가?		○	
	- 건강도시 상징성을 나타내는 시설물을 도입하거나 생활체육시설의 도입 등 주민활용도가 높은 공간을 계획하였는가?		○	
	- CPTED기법을 도입하여 담장 및 휀스를 지양하고 시각적인 차폐로 우범화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 공원의 개방성과 공공성,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였는가?		○	
	- 폐쇄성이 낮고 환경 친화적인 소재 활용 권장으로 주변녹지와 조화로운 공원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색채 및 과장된 패턴을 지양하였는가?			○
어린이 공원	- 놀이공간 및 휴게공간은 주변에서 감시가 잘되는 곳에 배치하고 보행공간과 연계되는 지점에 배치하였는가?		○	
	- 설치 대상자인 어린이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테마를 부여하여 계획하였는가?		○	
	-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CCTV는 놀이터와 휴게공간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24시간 감시되고 있음을 공지하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는가?		○	
	- 재질을 통한 교육적 효과 창출을 위한 자연 재료를 사용하도록 계획하였는가?		○	
	- 안전을 고려한 탄성 재질을 사용하였는가?		○	

소공원	- 보행가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시각적 차폐로 우범화되는 부분이 없도록 개방적인 구조로 조성하였는가?		○	
	- 투수율이 높은 포장재나 자연재료 및 내구성 있는 재료 사용으로 유지 관리의 효율성 향상 도모하였는가?		○	
	- 계절감 있는 식재를 통해 주변자연과의 연속성을 나타내도록 계획하였는가?		○	

⑤ 기타 공공공간

소분류	세부항목	평가	권장	지양
옥외 주차장	- 노상주차장(거주자 우선주차, 공영주차장 등)은 주변과의 시선 연결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배치하였는가?		○	
	- 주차장 주출입구가 주요 간선도로에 위치하지 않도록 계획하였는가?		○	
	- 계획 시 기능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주행을 최소화하며, 효율적인 주차가 가능한 형태로 조성하였는가?		○	
	- 주차차량이 보행통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보행통로와 주차공간에 경계석 또는 단차를 둘 것을 권장하되, 교통약자들의 보행통로 이용을 고려하여 일부 턱낮춤하여 설치하였는가?		○	
	- 고령자, 여성우선 주차공간 및 보행약자를 위한 주차공간은 출입구 및 목적지에서 가까운 곳에 배치 계획하였는가?		○	
	- 일반주차, 경차주차, 여성주차, 고령자주차, 장애인 전용주차 등 전용주차 구획시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채로 노면에 명확히 표시하였는가?		○	
공개공지/ 공공공지	- 보행자가 쉽게 접근하여 모이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이용 층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공간으로 조성하였는가?		○	
	- 광장으로의 접근 동선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계획하고 보행자의 편안한 보행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였는가?		○	
	- 파고라, 벤치 등 쉼터 공간을 부분적으로 배치하여 휴식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였는가?		○	
	- 과장된 포장 패턴을 지양하고 보도와 조화를 이루어 연속성, 개방성을 확보하였는가?		○	

3) 관련법규

(1) 자동차 도로

①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2016)

- 제15조 _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_ 차로는 횡단보도 · 교차로 및 철길건널목에는 설치할 수 없음
 - _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 도로의 양쪽에 길가장자리구역을 설치하여야 함

■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2016)

- 제10조 _ 보도, 자전거도로, 분리대, 주 · 정차대, 안전지대, 식수대 및 노상공작물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폭을 확보할 것
- _ 연석, 장애물 및 차선 등을 설치하여 차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으로 공간을 구획하는 경우에는 특정 교통수단 또는 이용주체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공간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
 - _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의 경우에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 어린이 등의 이용을 고려할 것
- 제12조 _ 녹지 · 우량농지 · 산림의 훼손과 생태계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고, 향후 시 · 군의 개발여건을 고려할 것
- _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 또는 고가로 할 것
 - _ 화장실 · 공중전화 · 우편함 · 긴의자 · 녹지 · 휴식공간 등 보행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 공간을 조성할 것
 - _ 도로의 배수시설에는 노면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게 유도하고 노면에서 유출 되는 빗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 제14조 _ 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함
- _ 주간선도로 : 15미터 이상 / 보조간선도로 : 12미터 이상 / 집산도로 : 10미터 이상 / 국지도로 : 6미터 이상
 - _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은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2016)

- 제18조 _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 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제19조 _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 또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통행 제한, 자동차 운행속도 제한,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제21조 _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대중교통정보 알람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을 설치할 수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2014)

[별표2]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구 분		내 용
속 도 저 감 시 설	고원식 (高原式) 교차로	-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는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하여야 함 - 고원식 교차로는 그 전체를 암적색 아스콘 또는 블록포장으로 설치하거나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음 - 보도와 고원식 교차로의 연결부에는 요철(凹凸)이 없어야 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 차량통행부분의 선형은 운전자의 빈번한 방향조작을 유도함으로써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게 하기 위하여 지그재그 형태로 할 수 있음 - 도로에 일정한 간격으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가 지그재그 형태의 선형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음 - 주차를 허용하는 도로의 좌우에는 교대로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수 있음
	차도 폭 좁힘	- 운전자가 주행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차도의 폭을 좁게 하거나 시각적으로 차도의 폭이 좁게 보이도록 할 수 있음
	요철포장	- 작은 요철형태로 포장하여 미세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함 -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가급적 피해야 함
	과속 방지턱	- 도로구간 및 교차로구간에는 운전자의 과속을 억제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연속적인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음 -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로 통과하더라도 승차자, 차체 및 운행 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과속방지턱의 폭은 차축의 폭이 넓은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좁게 할 수 있음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2015)

제10조 _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른 차로 폭

구분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일반도로	80km/h 이상	3.50m	3.25m	3.25m
	70km/h 이상	3.25m	3.25m	3.00m
	60km/h 이상	3.25m	3.00m	3.00m
	60km/h 미만	3.00m	3.00m	3.00m

제11조 _ 도로에는 차로를 통행의 방향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4차로 이상인 도로에는 도로기능과 교통 상황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함

_ 중앙분리대 내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중앙분리대의 폭은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는 2미터 이상으로 함

- _ 중앙분리대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는 0.5미터 이상으로 하고,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는 0.25미터 이상으로 함
- _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부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중앙분리대의 폭은 제18조에 따른 시설한계가 확보되도록 정하여야 함
- _ 차로를 왕복 방향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 각 중앙선의 중심 사이의 간격은 0.5미터 이상으로 함

제25조 _ 종단경사

설계속도 (km/h)	고속도로		간선도로		집산도로, 연결로		국지도로	
	평지	산지	평지	산지	평지	산지	평지	산지
120	3	4						
110	3	5						
100	3	5	3	6				
90	4	6	4	6				
80	4	6	4	7	6	9		
70			5	7	7	10		
60			5	8	7	10	7	13
50			5	8	7	10	7	14
40			6	9	7	11	7	15
30					7	12	8	16
20							8	16

제28조 _ 횡단경사

노면의 종류	아스팔트 및 시멘트 포장도로	간이포장도로	비포장도로
횡단경사(%)	1.5 이상 2.0 이하	2.0 이상 4.0 이하	3.0 이상 6.0 이하

제29조 _ 차도, 측대, 길어깨,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은 안정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두께 및 재질 등의 구조로 포장하여야 함

- _ 차도 및 측대는 교통량, 노상의 상태, 기후조건,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공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 _ 내리막 경사의 평면곡선부 등 도로의 선형(線形) 또는 시거로 인하여 짧은 제동거리가 요구되는 구간의 차도는 미끄럼에 대한 저항이 양호한 형태로 포장하거나 미끄럼방지를 위한 포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제30조 _ 도로시설의 보전(保全), 교통안전,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도로에는 측구(側溝), 집수정 및 도수로(導水路) 등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배수시설에 공급되는 전기시설은 침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 _ 배수시설의 규격은 강우(降雨)의 지속 시간 및 강도와 지형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함
- _ 길어깨는 노면 배수로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길어깨에 붙여서 측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윗면이 열린 측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제31조 _ 도로의 교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갈래 이하로 하여야 함

■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2015)

제4조 _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 이상으로 함.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와 리도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음

구분	면도		리도	농도
	평지	산지		
설계속도(km/h)	50	40	40	20

제5조 _ 도로의 차선수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차선수 이상으로 함. 다만, 교차부에서 회전교통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면도는 3차선 이상, 리도 및 농도는 2차선 이상으로 할 수 있음

_ 2차선 이상인 도로의 차선폭은 노면표시의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로 하며, 그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함

_ 리도 및 농도를 1차선으로 설계할 경우의 차선폭은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함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리도의 차선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음

_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전차선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음

구분	면도	리도	농도
차선수	2	1	1
차선폭(m)	3.0m 이상	5.0m 이상	3.0m 이상

제18조 _ 종단경사

설계속도(km/h)		70	60	50	40	30	20
종단경사(%)	표준	4	5	6	7	8	10
	부득이한 경우	7	8	9	11	13	14

제21조 _ 횡단경사

노면의 종류	아스팔트 및 시멘트 포장도로	간이포장도로	비포장도로
횡단경사(%)	1.5 이상 2.0 이하	2.0 이상 4.0 이하	3.0 이상 6.0 이하

제22조 _ 차도·자전거도·측대·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보도 등은 포장하여야 하나,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포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_ 포장은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포장으로 하고, 계획교통량·자동차의 종량·노상의 지지력·기상상황·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포장구조를 결정하여야 함다만,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포장외의 다른 포장 구조로 할 수 있음

제23조 _ 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측구 또는 기타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제24조 _ 도로가 동일장소에서 동일평면으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4갈래 이하를 원칙으로 함

_ 도로가 동일평면에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회전차선·변속차선 또는 교통섬을 설치하고, 가각부를 곡선으로 정리하여 적당한 정지시기와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_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적절한 속도 변이구간을 설치하여야 함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경찰청, 2016)

제7조 _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과속방지시설 등의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음

_ 보호구역 도로표지는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에 설치

제8조 _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 불가

제9조 _ 보호구역에는 구간별·시간대별로 ①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②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③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④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등을 할 수 있음

(2) 횡단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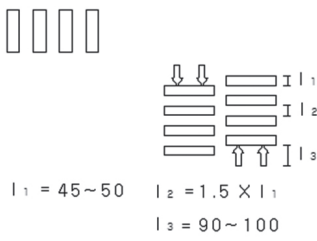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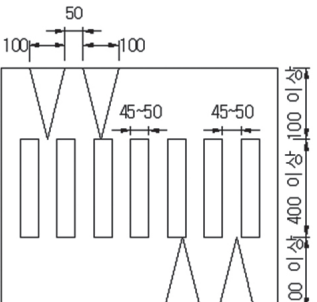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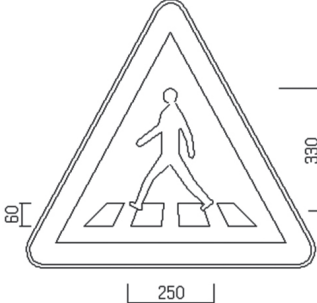
①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2016)

제11조 _ 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할 것
-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횡단보도표시〉	〈고원식횡단보도표시〉	〈횡단보도표지판〉
-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 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포장도로에 설치함 - 4m 미만의 도로에는 좌우 통행방향을 구분하지 않고 설치 가능함 - 교차로에서는 대각선으로 설치 가능함 - 중간에 보행섬을 두고 설치 가능함  $l_1 = 45 \sim 50$ $l_2 = 1.5 \times l_1$ $l_3 = 90 \sim 100$	-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함 - 횡단보도의 형태 및 높이는 '볼록 사다리꼴 과속방지턱'형태로 하며 높이는 10cm로 함 	-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로서 다음의 경우에 설치 - 포장도로의 교차로에 신호기가 없을 때 - 포장도로의 단일로에 신호기가 없을 때 - 비포장도로의 교차로 또는 단일로 (신호기 유무에 관계없이 설치한다) - 횡단보도 전 50미터 내지 12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2014)

[별표2]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구 분		내 용
횡 단 보 도	고원식 횡단보도	- 차도노면에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을 갖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보도의 양측에서 수평으로 횡단할 수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음 - 사다리꼴구조물의 경사(턱)부분과 횡단보도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재질로 하고 경사가 완만하게 하여야 함 - 사다리꼴구조물의 높이는 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고, 사다리꼴구조물의 윗면 평탄부는 차축의 길이를 고려하여 2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고원식 횡단보도에는 배수파이프 등 배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 고원식 횡단보도의 주변에는 야간의 사고 방지를 위한 표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함
	보행섬식 횡단보도	- 보행우선구역에서 도로의 용지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에 횡단을 위한 일시적인 대기 장소인 보행섬을 두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야 함 - 보행섬은 도로의 규모에 따라 직선형태 또는 굴절형태의 횡단보도 중앙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 - 보행섬의 최소 폭은 1.5미터로 하여야 함 - 보행섬의 전후에는 안전지대 노면표시 및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여 자동차와 보행자의 충돌사고를 방지하여야 함
그 밖의 시설		- 차도가 편도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횡단보도 중간에 일시대기를 위한 안전지대를 설치할 수 있음 - 횡단보도 주변의 가로등은 조명색을 일반가로등과 달리하거나 조도를 500럭스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노면표시는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2016)

제15조

- 〈횡단보도〉 _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지점으로 통행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보행자의 우회거리 및 횡단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할 것
- _ 보행자의 안전, 운전자의 가시성(可視性) 및 교차로의 교통 흐름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 _ 도로 곡선부, 급경사 구간 및 터널 입구에서 100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등 교통안전과 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 _ 구조는 평면횡단보도로 할 것. 다만, 도로의 효율성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주변여건상 평면횡단보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 주간선도로 및 철도건널목 등에 입체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음
- 〈평면횡단보도〉 _ 횡단보도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고, 횡단보도표지를 설치할 것
- 도로의 폭에 따라 교통섬·안전지대 등을 설치할 것
- 점자표시 및 야광표시 등을 설치하고,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횡단보도 조명을 설치할 것
- 보도와의 경계에 턱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적합한 턱 낮추기 시설을 설치할 것
- 교통약자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 보행자우선도로와 교차하는 지점, 자동차 출입시설이나 주거단지의 진입로 등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노면을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연결하는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3) 보도

① 관련 법규

■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경찰청, 2016)

- 제7조 _ 시장 등은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 보호구역 도로표지는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에 설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2016)

- 제3조 _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2014)

[별표2]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구 분		내 용
보 도	보도의 유효폭	-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축 · 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음) - 보도 등의 유효폭이 1.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하여야 함 - 유효폭이 1.5미터 미만인 경사진 보도 등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함
	포장	- 보도 등의 바닥표면은 교통약자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함 - 보도블록 등으로 보도 등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바닥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함 - 교통약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덮개의 표면은 보도등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함
	기울기	- 보도 등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함(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음) - 보도 등의 좌우 기울기는 25분의 1 이하로 함
	차도의 분리 및 보행 안전지대	-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1미터 이하에는 장애물이 없는 보행안전지대를 설치하여야 함 - 차도와 보도 등의 분리를 위한 연석의 높이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고, 연석의 색상은 보도 등의 색상과 다르게 할 수 있음 - 보도 등에 가로등 · 전주 · 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보행안전지대 밖에 설치하여야 함 - 보행안전지대 안으로 가지가 뻗은 가로수는 바닥면에서 2.5미터 높이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함
	차량 진출입부	- 자동차가 보도 등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 진출입부의 경우에는 보도 등의 높이를 유지하고 차도의 경계부분은 턱 낮추기를 하여야 함 - 보도 등과 차도가 교행하는 구간의 바닥 마감재는 색상 및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보 도	턱 낮추기	-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 또는 부분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다만, 주택가·학교 주변의 편도2차로 이하인 도로의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를 같게 할 수 있음) -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되되, 연석만을 낮추어 시공해서는 아니 됨 -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며,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 이하로 함
	점자블록	-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 등의 폭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함 - 횡단 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중 안전지대 쪽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前面)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보건복지부, 2014)

제13조 _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2015)

제16조 _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도는 연석(緣石)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_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_ 횡단보도에 접한 구간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에 접한 구간 자전거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_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다만, 지방 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음)

_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제28조 _ 보도 또는 자전거도로의 횡단경사는 2퍼센트 이하로 하나, 지형 상황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퍼센트까지 할 수 있음

제29조 _ 차도, 측대, 길어깨,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은 안정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두께 및 재질 등의 구조로 포장하여야 함

_ 차도 및 측대는 교통량, 노상의 상태, 기후조건,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공법으로 포장하여야 함

_ 내리막 경사의 평면곡선부 등 도로의 선형(線形) 또는 시거로 인하여 짧은 제동거리가 요구되는 구간의 차도는 미끄럼에 대한 저항이 양호한 형태로 포장하거나 미끄럼방지를 위한 포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2015)

제10조 _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와 리도에 보도를 설치할 수 있으며 보도의 폭은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함

_ 보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보도의 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의 폭에 당해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에는 0.75미터를, 기타의 시설인 경우에는 0.25미터를 가산한 폭으로 함. 다만,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함

구분		면도	리도
보도의 최소폭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1.0m	0.75m
	한쪽만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1.5m	1.0m

제21조 _ 보도 또는 자전거도등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퍼센트의 횡단경사를 두어야 함

제22조 _ 차도·자전거도등·측대·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보도 등은 포장하여야 하나,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포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_ 포장은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포장으로 하고, 계획교통량·자동차의 중량·노상의 지지력·기상상황·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포장구조를 결정하여야 함. 다만,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포장외의 다른 포장 구조로 할 수 있음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2016)

제9조 _ 〈보행자전용도로〉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제12조 _ 보행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할 것

제14조 _ 도로에는 도로 폭, 보행자의 통행량, 주변 토지이용계획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도와 분리된 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 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보도 신설, 길가장자리구역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여야 함
- 차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차량의 무단침입을 방지할 것
- 보도의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유효 폭을 확보할 것
-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할 경우 유효 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폭과 보도와 시설물 사이에 완충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것
-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 그 식재면(植栽面)의 높이를 보도의 바닥 높이와 같거나 낮게 하여 빗물이 식재면을 거쳐 배수구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다만, 경관, 보행자 안전 및 나무나 화초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노상시설물은 보행자의 안전, 지속가능성, 내구성, 유지·보수, 지역별 특성 및 심미성 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별 디자인계획에 따라 형태, 색상 및 재질을 선택하여 일관성이 있도록 설치할 것
-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도록 설치할 것
- 바닥은 보행에 적합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탄성, 지지력, 미끄럼저항성, 내구성, 투수성(透水性) 및 배수성(排水性)을 갖춘 구조로 설치
-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4) 자전거도로

①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경찰청, 2016)

제13조 _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함

-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함
-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으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야 함
-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보도를 통행할 수 있음(이 경우,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 하여야 함)

제15조 _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음

[별표6] 자전거도로관련 안전표지 종류 및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자전거 전용도로표지〉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표지〉	〈자전거 및 보행자〉통행구분도로표지
_ 자전거 전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함 _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함 _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우측에 설치함	_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함 _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 부착·설치함 _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 도로우측에 설치함	_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노면에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로가 안전표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으로 구분된 도로에 설치함 _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구분방법에 따라 자전거 및 보행자 도안의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2016)

제9조_자전거전용도로는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제20조_통근·통학·산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로 설치하거나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할 것

_자전거전용도로는 단절되지 아니하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과 서로 연계되도록 설치할 것

_학교·공공청사·도서관·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제21조〈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_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생면의 높이를 자전거전용도로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_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①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와의 분리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② 자전거전용차로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도와의 경계를 명확히 할 것

_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① 자전거전용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지점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것

② 자전거전용도로가 일반도로와 교차할 경우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전용도로 우선구조로 설치할 것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전행정부, 2016)

제3조

〈자전거전용도로〉_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_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전용차로〉_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자전거우선도로〉_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차기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제11조_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함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안전행정부, 2010)

제4조〈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_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속도에서 10킬로미터를 뺀 속도 이상을 설계속도로 할 수 있음

① 자전거전용도로 : 시속 30킬로미터

②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시속 20킬로미터

③ 자전거전용차로 : 시속 20킬로미터

제5조_자전거도로의 폭 : 자전거도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미터 이상으로 함(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음)

제7조 <곡선반경>

설계속도	곡선반경
시속 30킬로미터 이상	27미터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미만	12미터
시속 10킬로미터 이상 20킬로미터 미만	5미터

제8조 <곡선부의 편경사>

- 자전거도로의 곡선부에는 설계속도나 눈이 쌓이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경사를 두어야 함. 다만, 곡선반경의 길이 또는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제7조 <종단경사>

- 자전거도로의 종단경사에 따른 제한길이는 다음 표와 같음
-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길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종단경사	제한길이
7퍼센트 이상	120미터 이하
6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170미터 이하
5퍼센트 이상 6퍼센트 미만	220미터 이하
4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	350미터 이하
3퍼센트 이상 4퍼센트 미만	470미터 이하

제10조 <시설한계>

-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는 자전거의 원활한 주행을 위하여 폭은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2.5미터 이상으로 함.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한계 높이를 축소할 수 있음

제13조 <도로와의 평면교차>

-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와 평면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각을 90도로 하고, 교차점으로부터 자전거도로 각 양측의 25미터 이상 구간은 시야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함
- 교차점으로부터 25미터 이상 구간의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전거도로의 종단경사가 3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교차가 시작되기 전 3미터 이상의 지점에 자전거 과속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 구간에는 흰색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함

제15조 <포장 및 배수>

- 자전거도로의 색상은 별도의 색상 포장 없이 포장재 고유의 색상을 유지함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일반도로와의 접속구간, 교차로 등 자전거 도로와 만나는 지점은 짙은 붉은색으로 포장하여 눈에 띄게 하여야 함
- 자전거도로의 차선은 중앙분리선은 노란색, 양 측면은 흰색으로 표시함
- 자전거도로의 포장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의 횡단경사를 설치하여야 함(다만, 투수성(透水性)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의 포장구조는 자동차의 중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제16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통행인에게 장애가 없도록 할 것
-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자전거 도난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편리할 것
- 야간 이용에 대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제17조 <안전시설 등>

- _ 급커브, 낭떠러지 등에는 자전거의 이탈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_ 돌출시설물 등 자전거 통행에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자전거도로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석·붕괴·파도 등으로 인하여 자전거도로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방호옹벽·울타리·난간 등 적당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_ 자전거전용차로에는 분리공간을 두어야 하며, 자동차등의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에는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자동차의 최고속도	분리공간 폭
시속 50킬로미터 초과 60킬로미터 이하	0.5미터
시속 50킬로미터 이하	0.2미터

- _ 자전거전용도로를 일반도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함

일반도로의 자동차 등의 최고속도	분리대 폭
시속 50킬로미터 초과	1.0미터
시속 50킬로미터 이하	0.5미터

제18조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시설>

- _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_ 휴게시설에는 자전거 주차시설, 벤치, 화장실, 편의점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주변과의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2015)

제15조 _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전거,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_ 자전거도로의 구조와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제28조 _ 보도 또는 자전거도로의 횡단경사는 2퍼센트 이하로 하나, 지형 상황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퍼센트까지 할 수 있음

제29조 _ 차도, 측대, 길어깨,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은 안정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두께 및 재질 등의 구조로 포장하여야 함

- _ 차도 및 측대는 교통량, 노상의 상태, 기후조건,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공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 _ 내리막 경사의 평면곡선부 등 도로의 선형(線形) 또는 시거로 인하여 짧은 제동거리가 요구되는 구간의 차도는 미끄럼에 대한 저항이 양호한 형태로 포장하거나 미끄럼방지를 위한 포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2015)

제21조 _ 보도 또는 자전거도등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퍼센트의 횡단경사를 두어야 함

제22조 _ 차도·자전거도등·측대·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보도 등은 포장하여야 하나,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포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_ 포장은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포장으로 하고, 계획교통량·자동차의 중량·노상의 지지력·기상상황·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포장구조를 결정하여야 함

다만,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의 다른 포장 구조로 할 수 있음

(5) 옥외주차장

① 관련 법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6)

제17조 _ 시설주 등은 주차장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함
-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경찰청, 2016)

제8조 _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 주차장을 설치 불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2014)

[별표2]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구 분	내 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노상주차장에는 주차장법령에서 정하는 설치대수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의 규정을 준용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 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 대수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②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차·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음 ③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함 ④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장애인의 접근가능을 나타내는 그림 표지를 표시하여야 함 ⑤ 주차장의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함

■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2016)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 비	길 이
경형	1.7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일반형	2.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보차 구분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 비	길 이
경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장형	2.5미터 이상	5.1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_ 주간선도로에 설치 불가. 다만,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가능
- _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 불가.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 _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 불가
다만,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능
- _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 불가
- _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_ 노외주차장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
- _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는 아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 불가
 - ①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③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④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⑤ 건널목의 가장자리
 - ⑥ 터널 안 및 다리 위
 - ⑦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 ⑧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水管)을 넣는 구멍,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등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⑨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 ⑩ 너비 4미터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와 종단 기울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 ⑪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
- _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 가능
- _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_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주차 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2.25미터	3.5미터
직각주차	4.0미터	4.0미터
45도 대향(對向)주차	2.3미터	3.5미터

2. 그 외의 노외주차장

주차 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3.3미터	5.0미터
직각주차	6.0미터	6.0미터
60도 대향(對向)주차	4.5미터	5.5미터
45도 대향(對向)주차	3.5미터	5.0미터
교차주차	3.5미터	5.0미터

- _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 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함
- _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
 - ②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 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함
 - ③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을 설치(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
 - ④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 불가
 - ⑤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함
 - ⑥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 분리
- _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 설치
- _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으로 함
- _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
- _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 확보
 - ① 주차구획 및 차로 :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 ② 주차장 출구 및 입구 :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 ③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 _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

- _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법설비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관리하여야 함
 - ① 방법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아야 함
 - ③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 ④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
- _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
- _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가능
- _ 노외주차장에는 확장형 주차단위구획(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5.1미터 이상)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 구획 수는 제외)의 30퍼센트 이상 설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201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_ 주차 대수가 1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에는 주차장법령에 따른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구분·설치
- _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여객시설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 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함
- _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 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 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 _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차·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음
- _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 _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장애인의 접근가능을 나타내는 그림표지 표시
- _ 주차장의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 2016)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 _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 불가
- _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2016)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_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_ 설치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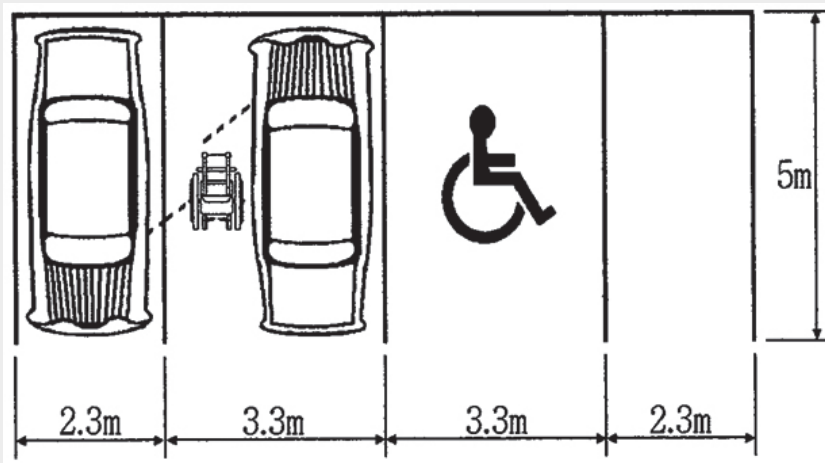
- ①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 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설치

_ 주차공간

-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 ②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설치
- ③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_ 유도 및 표시

-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



-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함

[별표2]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

- _ 안내표지의 색상은 청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 _ 안내표지의 크기는 단면을 0.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_ 시각장애인용 안내표지와 청각장애인용 안내표지는 기본형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 _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에는 점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 _ 설치방법은 장애인의 이동에 안전하고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사용장애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2.3 공공시설물

1) 개요 및 기본방향

(1) 정의

○ 공공시설물이란?

[사 전] 공공시설물이란, 국가나 공공 단체가 일반 대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공공의 목적에 쓰기 위하여 만든 시설물과 구조물을 의미

[관련계획]

- 홍성군 경관계획,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 공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물 및 구조물
 - 공공시설물이란 공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홍성군 안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물과 일부 구조물

○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이란?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이란, 홍성군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기본 원칙으로 공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되고 관리하는 시설물과 일부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설계 및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2) 목적

- 홍성군 공공시설물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방향 제시로 일관되고 통일된 디자인 원칙과 기준 마련
- 도시공간 영역에 부조화되게 설계·설치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가로공간의 활성화 도모

3) 적용방안 및 적용대상

(1) 적용방안

- 홍성군 고유의 이미지 확립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방향성 제시를 위해 권역별, 유형별 가이드라인 설정
- 관련계획인, 홍성군 경관계획에서 지정한 권역을 준수하여 세분화하고, 시설물 유형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설계, 심의시 기준 마련

구 분	내용
권역별 가이드라인	- 각 권역의 경관특성, 권역별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한 기본방향 설정을 통해 난개발 방지 및 일관성 유지
유형별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의 기능을 고려의 형태,구조,배치, 재질, 외부 공간 등 구체적 세부 계획 제시

(2) 적용대상

- 권역별 가이드라인
 - 홍성군 전역에 대하여 권역별로 특성을 파악하여 역사문화권역(원도심), 비지니스·행정권역, 친환경 농촌·테마권역, 특화산업권역, 해안권역 등으로 분류하여 적용
 - 권역별 관리 구역의 효율적 활용 및 체계적 공공디자인 관리를 위한 공간적인 구성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



구 분	내용
역사문화권역(원도심)	홍주문, 조양문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정체성 구축
비지니스·행정권역	내포신도시와 조화되는 도심경관 형성
친환경 농촌·테마권역	농촌마을의 잠재력 향상으로 특색 있는 친환경 이미지
특화산업권역	갈산면, 광천읍으로 이어지는 산업 및 특화 이미지 강화
해안권역	서해연안의 해양적인 특성부여

- 공공디자인 권역을 바탕으로 홍성군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공통지역으로 통일하여 적용
- 권역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별화 요소를 적용하여 전체적으로는 홍성군의 통합 이미지를 형성

권역	표준형디자인	소재, 색채
	공통	부분 차별화
역사문화권역	○	○
비즈니스 · 행정권역		○
친환경 농촌 · 테마권역		○
특화산업권역		○
해안권역		○

○ 유형별 가이드라인

- 홍성군 전역에 대하여 경관권역별로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기본방향과 계획방향을 설정하여 방안 제시
- 홍성군의 공공시설물은 관련계획인 홍성군 경관계획에서 제시하는 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권역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유형별은 크게 도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로 나누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각각의 대상에 대한 방향 제시

도로기반 시설물		가로 시설물			
도로구조물	도로시설물	교통시설물	편의시설물	녹지시설물	도로점용시설물
교량	가로등	버스(택시) 정류장	파고라	가로수	보도포장
터널	통합폴			보호덮개	맨홀덮개
옹벽	안전휀스	자전거보관대	벤치	가로화분대	트렌치-빗물 배수구
방음벽	블라드	제어 · 분전함	휴지통	가로녹지대	생활정보지함
					가설울타리 · 가림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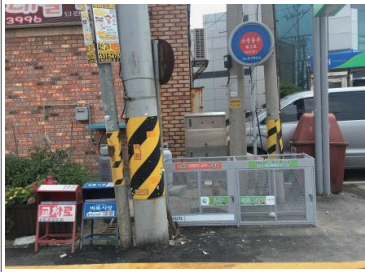
공공시설물의 분류체계에 따라서
홍성군 공간권역의 지역이미지에 부합되도록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4) 구성체계

- 공공시설물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 후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형태·구조, 설치·배치, 재료, 색채·패턴의 항목으로 나뉘어 적용(단, 제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합리적 적용)
- 권장 및 비권장 사례 이미지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구 분	내용
형태·구조	공공시설물의 시각적 속성과 전체를 이루는 요소의 규정
배치·설치	공공시설물 간의 배치 및 설치 등의 상호관계 규정
재료	공공시설물을 구성하는 재료의 속성 규정
색채·패턴	공공시설물을 구성하는 색채와 패턴의 속성 규정

(5) 공공시설물의 현황

설치 시기에 따라 다른 형태, 재질의 시설물	설치기준에 맞지 않은 불량도로 시각장애인의 이용 불편	통일되지 않은 형태의 가로시설물
		
통일되지 않은 형태의 가로등	연결부가 노출되어 안전사고의 위험	고광택소재의 가로시설물
		
각기 다른 형태의 수목보호휀들개	다양한 형태와 색상으로 통일성이 결여된 버스정류장	주변환경과 부조화를 나타내는 가로화분대
		

(6)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 홍성군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은 안전성과 편리성이라는 본래 기능을 충실해야 하며, 도시공간의 밀도는 낮추고 효용성을 높이도록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준수함



(7)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 01** 형태적 차별화로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야 한다.
- 02** 무장애의 편의시설로 누구나 안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03** 시설물의 기능성 통합으로 공간활용이 용이하고 심미성을 향상하도록 한다.
- 04** 홍성군의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도시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 05**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자연과 조화되는 디자인을 권장한다.

2.3.1 공공시설물 권역별 가이드라인

1) 공통 가이드라인

① 권역분류

	역사문화권역	홍주성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정체성 구축
	비즈니스행정권역	내포신도시와 조화되는 도심경관 형성
	친환경 농촌테마권역	농촌 및 귀농마을의 잠재력 향상으로 특색 있는 경관농촌 형성
	특화산업권역	갈산면, 결성면, 광천읍으로 이어지는 산업 이미지 강화
	해안권역	서해연안의 활기찬 해안경관 관리

② 기본방향

기본방향	- 관련계획인 홍성군 경관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홍성군 경관계획에서 분류한 권역체계를 따라 권역별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수립 - 생활권, 지형, 문화 등 다양한 요소의 유사한 경관자원을 기준으로 역사·문화권역, 비즈니스·행정권역, 친환경 농촌·테마권역, 특화산업권역, 해안권역의 5개 권역으로 설정 - 동일 권역 내에 정체성을 반영한 공통적인 디자인 요소를 공유하여 시설물 간의 통합 디자인에 의한 일관성 유지
------	---

③ 공통 가이드라인

형태·구조	- 다양한 공공시설물의 설치시 보행환경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화된 규모의 시설통합형 디자인으로 권장 - 복잡한 형태 및 과도한 장식요소를 최소화한 간결한 디자인 연출 권장 - 주변과 조화되며 간결하면서 세련된 형태의 디자인 권장 - 불필요하게 큰 규모 또는 연속된 규모로 설치 지양 - 가로구간에 따라 통일성 및 조화성을 고려하여 규격화된 디자인의 공공시설물 연출 - 인접한 시설물간의 규모를 통일하여 일체감 있는 디자인 연출
배치·설치	- 무분별한 시설물 배치를 지양하고 통합 가능한 시설은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공간의 점유면적 최소화 권장 - 불필요하거나 공간의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물 설치를 금하여 정돈된 경관 연출 - 공간특성 및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
재료	-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미끄러지지 않는 친환경 재질의 포장재 권장 -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오염 및 부식을 방지하는 재료 사용 권장 - 연접한 공공시설과 유사한 재료의 사용으로 공간의 통일성 연출
색채·패턴	- 주변과 부조화를 이루는高明도, 고채도의 색상을 지양 - 과장된 패턴을 지양하며 보도와 조화를 이루어 연속성, 개방성을 확보
기타	-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과도한 장식요소(지자체 CI, 특산물 등)를 최소화하고, 형태, 재료, 색채 등의 디자인 연계를 통해 시설물의 조화로운 경관 연출 - 홍성군 주민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약자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및 배리어 프리개념을 적용한 보행자 친화적 디자인 도입

2) 권역별 가이드라인

(1) 역사문화권역

① 권역특성



대상지역

- 홍성읍 일원, 홍주문화 기반의 원도심으로 자연경관과 역사경관이 어우러진 지역

권역특징

- 홍주성 부근으로 여하정, 조양문 등 역사문화자원이 다수 산재하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중심지로서의 상징성 부족
- 주변난개발로 천년고도 정체성이 잘 나타나지 않음
- 옥외광고물, 건물 파사드 개선, 전선지중화, 시설물의 디자인 형태 통일성 필요

② 기본방향

‘홍주성 조양문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정체성 구축’	
기본방향	- 홍주성 중심의 역사경관 정비 및 역사문화재 주변의 공공시설물 디자인계획 - 홍주성의 역사문화자원과 역사적 인물을 부각하여 홍성만의 특화된 경관연출 필요 - 다양한 공공시설물의 난립을 정비하고,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지역성을 반영한 통합적 디자인의 공공시설물 도입

③ 가이드라인

일반 가이드라인	- 역사경관자원의 이미지에 부합한 테마를 활용한 시설물 디자인을 권장하되, 간결한 형태와 최소한의 디자인으로 경관을 해치지 않는 계획 - 역사경관자원과 유사하거나 조화되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경관의 통일성 확보 - 연계 가능한 시설물의 통합과 최소한의 시설물 설치를 권장 -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인공재료를 사용하며 목재 및 석재 등의 자연 소재를 적극 활용하여 자연에 순응하는 시설물 설치를 권장 - 형태의 구조미와 주변공간과 자연현황을 고려하여 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적용 - 기능을 우선으로 간결하게 디자인하며 특성화가 필요한 공간일 경우 특화하여 조성
특화 가이드라인	- 홍주성 주변의 가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를 통한 지역 상징 및 통합된 디자인 경관 유도 - 홍주성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통합시설물 설치로 인지도 확보 - 인접한 역사문화 경관자원인 조양문과 어울리는 통합디자인으로 적용하고 조양문과 조화를 이루는 재질과 색상을 적용 - 간결한 형태와 역사문화성을 함축한 디자인으로 통일성을 나타내도록 계획 - 기능이 유사한 시설물의 통합과 최소한의 시설물 설치를 권장

(2) 비즈니스 행정구역

① 권역특성



대상지역

- 도청소재지 경관계획권역 일부제외한 홍북면 일대의 구도심과 신도심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

권역특징

- 홍성군과 내포신도시가 연계되는 지역으로 경관격차 해소 및 홍성만의 정체성 정립 필요
- 일부 가로 및 가로시설물이 정비 되어 있으나, 통일성 및 지역 정체성 부족
- 지역간의 연계성 향상을 위하여 상징성 있는 시설물 설치 필요

② 기본방향

‘ 내포신도시와 조화되는 도심경관 형성 ’	
기본방향	- 기존 홍성을 원도심지역과 내포신도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공공시설물 관리 - 홍성의 이미지와 부합하는 중심거점도시의 공공시설물 계획 - 친환경 도시계획 및 개발을 고려하여 자연환경 및 주변지역과의 이질감 최소화 -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통한 신도시 계획으로 통합적디자인 도입

③ 가이드라인

일반 가이드 라인	- 신도심권역의 특성을 부여하는 형태로 디자인하는 것을 권장하되 과도하지 않은 간결한 형태 권장 -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친환경 재료 및 색상 도입 - 보행공간에 시설물 설치시 보행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설치 - 기능의 연계가 가능한 시설물을 통합하여 시설물 설치수량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환경 도모
특화 가이드 라인	- 홍성읍에서 내포신도시로 통하는 유일한 가로이자 주요 관문으로서 홍성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상징적인 가로시설물 디자인 계획필요 - 내포 신도시 내 보행환경과의 연속성 고려한 가로시설물 및 보도계획 필요 - 가로변 가로등 시설 부재로 인한 야간이용의 안전성 확보 필요 - 가로등 시설 부재로 인한 야간이용의 안전성 향상 필요 -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통합디자인의 가로시설물을 권장

(3) 친환경 농촌테마권역

① 권역특성



대상지역

- 구항면, 홍동면, 창곡면, 금마면, 홍북면 일대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농촌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권역특징

- 귀농귀촌 중심지 및 친환경농업지역의 제공을 위한 가로환경개선 필요
- 면소재지에 밀집되어 있는 노후화된 공공시설물 및 경관자원에 대한 정비 필요

② 기본방향

기본방향	
‘농촌 및 귀농마을의 잠재력 향상으로 특색있는 농촌경관 형성’	
기본방향	- 테마가 있는 체험형 귀촌마을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공공시설물 계획 - 농촌시가지 개발 및 농촌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 도입

③ 가이드라인

일반 가이드라인	- 마을종합 안내판의 설치시 마을 진입부, 마을회관이 위치하여 인지성을 높이도록 설치 -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친환경 재료 및 색상으로 계획 - 농촌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약자를 고려하여 시설이용이 용이하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디자인 적극 활용 - 면소재지의 노후화된 공공시설물의 정비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 및 정주환경 향상 도모
특화 가이드라인	- 주변지역 관광안내판 설치시 주변 경관을 가리지 않도록 설치 -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친환경 재료 및 중·저채도의 색상으로 계획 - 농촌지역의 고령자를 배려한 시설물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4) 특화산업권역

① 권역특성



대상지역

- 갈산면, 은하면, 광천읍 중심의 산업단지와 지역특산물 및 원도심 지역문화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권역특징

- 인공시설물 및 구조물 등의 노후화 및 체계적 디자인계획 부재로 경관관리 필요
- 노후경관 정비 및 산업시설에 대한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한 계획 필요
- 다른 공공시설물의 설치로 인한 통일성 및 조화성 저하

② 기본방향

‘ 갈산면, 결성면, 광천읍으로 이어지는 산업 이미지 강화 ’	
기본방향	- 홍성군 내 교통인프라 계획을 통한 산업발전권역 활성화를 고려한 공공시설물 디자인화 - 산업발전 인접지역, 농공단지 인접지역, 기존시가지 등과의 연계를 고려한 공공시설물 계획 - 주변 경관요소와의 보조화 및 이질감 완화를 위한 표준가이드라인 필요

③ 가이드라인

일반 가이드라인	- 장식적인 요소를 배제한 간결한 형태 권장 -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친환경 재료 및 색상으로 계획 -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도로 안전 시설물 적극 활용 - 기능의 연계가 가능한 시설물을 통합하여 시설물 설치 수량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환경 도모 - 산업단지 안내사인 설치시 진출입부 및 주요 교차점에 설치하고 인지성을 높이도록 배치
특화 가이드라인	- 지역특산물의 장식적인 요소를 배제한 간결한 형태 권장 - 산업단지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친환경 재료 및 중·저채도 색상으로 계획 - 다양한 형태의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통일성 결여되어 공간권역에 따른 통일성 있는 디자인 형태 필요

(5) 해안권역

① 권역특성



대상지역

- 서부면 일대로 자연환경과 인문사회가 어우러진 해안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권역특징

- 남당항, 어사항, 어량항 등 해안경관과 연계한 주변의 상업경관 정비 필요
- 지역의 특성화된 테마를 부여한 연속된 시설물 정비 필요
- 해안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과 연계한 공간 연출과 조화되는 통합적 시설물 설치필요

② 기본방향

‘ 서해연안의 활기찬 해안경관관리 ’	
기본방향	- 어촌 생활경관 및 상업경관 특성화를 위한 공공시설물 디자인계획 - 서부임해 지역의 인지성 및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특색 있는 공공시설물 계획

③ 가이드라인

일반 가이드라인	- 해안권역의 특성이 반영된 개성있는 디자인을 부여하되 불필요한 장식적 요소는 가급적 배제 - 개방감 있는 해안경관 및 쾌적한 환경을 고려하여 인공구조물 및 시설물의 설치 최소화 - 기능의 연계가 가능한 시설물을 통합하여 쾌적한 환경 도모 - 시설물의 재질은 염해에 의한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스테인리스계열의 금속이나 석재의 사용 권장 -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친환경 재료 및 색상으로 계획 - 해안경관권역의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테마체험자원과 연계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연출계획
특화 가이드라인	- 해안의 특성이 반영된 디자인을 적용하되 복잡한 형태적 요소는 배제 - 광택성의 소재를 배제하고, 친환경 재료 및 해안의 개성을 고려한 색상으로 계획 - 가로시설물의 마감상태를 점검하고, 해안가에 안전성이 우려되는 휜스 형태는 세로형으로 개선 검토 필요 - 시설물의 재질은 염해에 의한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소재 사용권장 - 가로시설물의 과도한 형태 및 단순한 이미지 탈피 필요

2.3.2 공공시설물 요소별 가이드라인

1) 도로기반시설물

(1) 도로구조물

○ 교량

① 정의 및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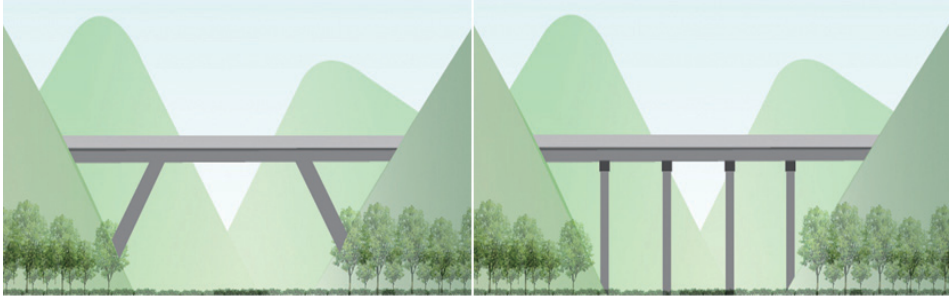
정의	- 하천이나 도로를 사람이나 차량이 건널 수 있도록 만든 구조물
기본방향	- 경관을 저해하는 교량 상부구조물의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지역성 및 장소성을 고려한 디자인 권장 - 교량의 상부 구조체와 교각 디자인의 일관성 및 통일성과 균형감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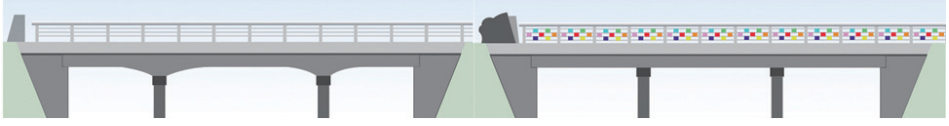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기능성	관리가 부족하고 노후화된 교량으로 인한 낙후된 도시이미지 조성
	정체성	홍성의 랜드마크 및 지역성을 반영하는 디자인 결여
	조화성	설치시기에 따라 다른 형태와 디자인의 시설물로 경관성 및 통일성 저하

③ 가이드라인

■ 유니버설 ▲ 친환경

형태 · 구조	- 기능을 우선하되 교량 자체가 조형미를 가지도록 불필요한 장식 지양 - 교량의 상부와 하부구조는 일관성 있는 형태로 디자인 ▲ 설치 환경의 지형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구조체로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고 경량감을 느낄 수 있는 구조 형식을 선정 산악경관을 고려한 교량 가이드라인 [권장] 지형 훼손 최소화를 통한 개방감 확보 [지양] 위압감 및 지형 훼손 증대  - 설치 현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상부 구조물이 발생할 경우 배후 산악 스카이라인과 부드럽게 조화 되고 산정에 대한 조망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
배치 · 설치	- 교량 내 설치되는 시설물의 통일성 있는 디자인 권장 ■ 보행자 및 주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위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휨스 및 보호시설물 설치 ■ 야간통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능과 무관한 과도한 조명 사용 금지 - 하천의 폭이 좁은 경우 상부구조물의 설치는 지양
재료	- 지속적인 유지 관리의 편리성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의 사용을 권장

색채 · 패턴	- 색채를 사용해야 할 경우 무채색계열의 사용을 권장하고 가급적 구조물이 가진 소재의 자체색상을 사용하여 이질감 최소화 - 강조 색채를 사용 할 경우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 및 교량의 이미지와 조화롭도록 계획 - 인위적 패턴을 지양하며 재료자체의 질감을 살릴 수 있는 패턴 권장 교량 패턴 및 색상 가이드라인 예시 [권장] 저채도 또는 무채색 계열, 심플한 디자인 [지양] 과도한 색상 및 인위적 패턴의 디자인 
기타	- 교량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릿목광장이나, 하부공간을 이용한 휴게공간 조성 권장
권장 & 비권장 사례	 [O]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간결한 형태의 교량  [O] 주변 환경을 고려한 자연재질 사용으로 시각적 안정감을 주는 디자인  [O] 교량하부 및 측면부를 활용한 다목적공간 조성  [X] 주변의 경관과 조화되지 못하는 형태디자인  [X] 지나친 형태, 원색 사용으로 주변경관과 부조화  [X] 시각적 혼잡성을 야기시키는 화려한 색의 야간 조명

○ 터널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산, 바다, 강 등의 밑을 뚫어 만든 철도나 도로와 같은 통로
기본방향	- 터널의 경우 기존 지형에 큰 영향을 주는 구조물이므로 터널 계획시 통과의 기능적 측면 및 설치시 주변에 미치는 경관적, 생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 - 터널 진입부는 절개를 최소화하고 절개면이 발생할 경우, 녹화를 통한 경관성 향상 도모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기능성	터널 진입부 기준 없이 설치된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로 시각적 혼란 초래
	정체성	터널의 인지성 및 정체성 부족
	조화성	터널로 인해 발생하는 노출면의 식재관리 미흡

③ 가이드라인

■ 유니버설

형태 · 구조	- 균형감 있는 갱구부 간격을 연출하여 안정감 있는 터널공간 연출 - 내부와 주변부의 디자인 연계를 통한 일체감 있는 갱구부 연출 - 터널 내부는 안정적인 주행감을 위하여 타일 높이와 같은 시설물의 위치 및 비례감을 조절하여 쾌적한 내부경관을 연출 - 입(출)구나 내부의 입면에는 동식물이나 전통문양 등과 같은 특정이미지를 형성화한 거꾸집, 슈퍼 그래픽, 공공미술 등의 적용을 지양 - 가능한 내부 시설물을 통합하여 주행자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는 디자인 연출 - 터널 주변의 지형 및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갱구디자인 연출 - 시·종점이 다른 상하행 갱구부 간의 각지고 날카로운 접합부를 부드러운 이미지로 둥글게 연출하여 급격한 경관변화를 완화하고 주행성 향상 도모
색채 · 패턴	-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한 부분의 표면에 도료를 사용한 도색보다는 콘크리트 자체의 재료이미지를 강조할 것을 권장 ■ 터널 진입부 주변의 안전시설물 색채를 통일하여 시각적 혼란을 줄이고 기존 안전시설물의 색채를 재정비하여 일관된 색채연출 계획
기타	- 주행시 눈부심을 야기시키는 과도한 경관조명연출 금지 - 도로변 절개사면을 최소화하고 진·출입부의 절토면에는 녹화를 통하여 인공적인 이미지를 완화시키고 자연이미지가 풍부한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O] 돌출부의 조형적 처리로 미관개선



[O]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갱구디자인 연출



[X] 지역성을 반영한 디자인 연출



[X] 고채도 및 복잡한 그래픽연출



[X] 터널 진입부 기준 없이 설치된 입간판



[X] 입간판 설치로 시각적 혼란 초래

○ 옹벽

① 정의 및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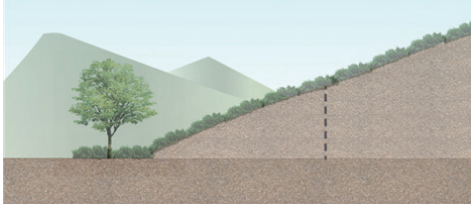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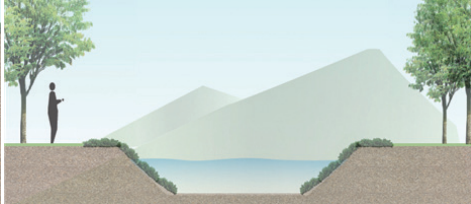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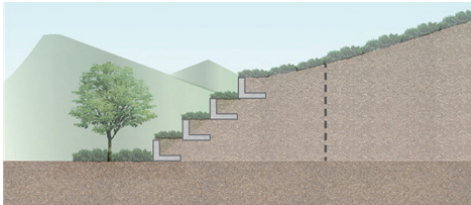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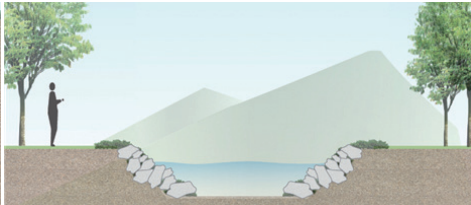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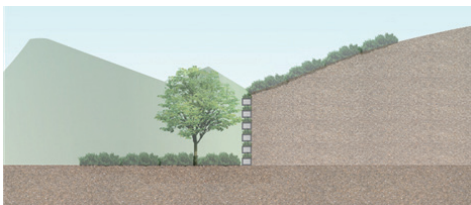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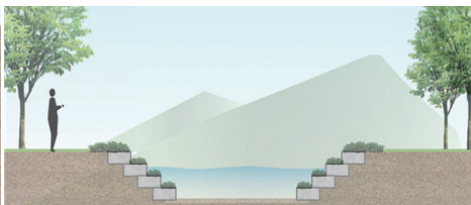
정의	- 절토 또는 성토를 한 비탈면이 흙의 압력으로 붕괴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 벽체 구조물
기본방향	- 과도한 규모의 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수직적, 수평적 분절을 통한 위압감 완화와 녹지공간 도입 - 주변 환경을 고려한 형식 선정 및 과도한 규모를 지양하고 도로의 미관을 고려한 녹지공간 도입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정체성	지역성을 느낄 수 없는 그래픽 사용으로 도로미관 저하
	안전성	과도한 규모의 옹벽디자인으로 위압적 경관 형성

③ 가이드라인

▲ 친환경

형태 · 구조	- 옹벽 형식은 주변 경관과의 관계성 및 설치 여건,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기존 지형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선형 또는 다단형 단면 적용을 권장하고 녹화를 통해 인공성을 완화	
	주변자연환경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예시	
	[산악] 사선형 단면+사면 녹화 적용 	[하천] 사선형 단면+사면 녹화 적용 
	[산악] 다단형 단면+식재 적용 	[하천] 자연석 쌓기 + 식재 적용 
배치 · 설치	[산악] 직선형 단면+식생블록/벽면 녹화 적용 	[하천] 식생 블록 적용 
	▲ 가급적 사면녹화 및 녹지 공간 확보를 통한 주변 환경과 조화 - 콘크리트 옹벽, 보강토 옹벽 등 인공적인 옹벽을 설치 할 경우, 녹지 공간을 확보하여 주변 경관과의 조화 도모 - 과도한 규모의 옹벽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절	

재료	- 노출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급적 재료 자체의 질감을 부각 - 동일한 구간 내에 다른 재질을 사용하거나 외장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3가지를 초과하는 재료 사용 지양 - 옹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재료가 가진 질감을 최대한 이용 - 고풍택 소재의 금속 및 이질적인 소재의 외장재 및 장식 요소 덧붙임을 지양(옹벽 설치 공간의 특성에 따라 일부 예술성 / 상징성 부여를 위한 디자인 도입 시 최소한으로 적용) ▲ 목재, 석재 등 자연 소재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주변 자연경관과의 이질감을 완화 - 음 · 양각 패턴 적용을 통해 입체감을 부여하여 단조로움을 탈피
색채 · 패턴	- 옹벽이 위치한 지역여건에 따라 재료 선정하고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 색채 사용 권장 - 색채 사용 시 가급적 무채색의 간결한 색채를 사용하되 옹벽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유채색을 사용할 경우 3가지를 초과 혼합사용 금지 ▲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도색(벽화 및 슈퍼그래픽) 지양
	입면 가이드라인 예시
기타	- 옹벽에 의한 위압감 및 단조로움을 고려하여 요철을 이용한 입체적 디자인 사용 권장 - 주변 수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 식재를 적용하여 연속적인 자연 경관을 조성 - 지역 향토수종 및 초화류 식재를 통해 계절감을 부여하고 특색 있는 경관 창출

기타	지역 향토수종 및 주변과 동일한 수종 식재 개념도
권장 & 비권장 사례	[O] 옹벽 면을 활용한 녹지대 [O]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내의 최소한 규모 [O] 인공성 완화를 위한 식생블록 도입 [X] 과도한 규모의 위압적형태의 옹벽디자인 [X] 과도한 규모와 장식성 [X] 과도한 규모의 옹벽디자인

○ 방음벽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한쪽의 소리가 다른 쪽으로 새어 나가거나 새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벽			
기본방향	- 과도한 규모의 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위압감이 나타날 경우 수직적, 수평적 분절을 통한 위압감 완화			
	- 원경, 중경, 근경을 고려한 디자인			
	구분	원 경	중 경	근 경
	디자인 기본원칙	과도한 규모 지양	개방감을 고려한 디자인 사용	재료가 가진 질감을 이용한 심플한 디자인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기능성	서해안고속도로의 방음벽의 경우, 필요에 따라 기능만을 고려한 폐쇄적인 디자인의 방음벽 설치
	조화성	지역 내 방음벽 설치가 많이 되어 있지 않으나, 조성되어 있는 곳은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자연재질 및 투명소재 사용하여 개방감 확보

③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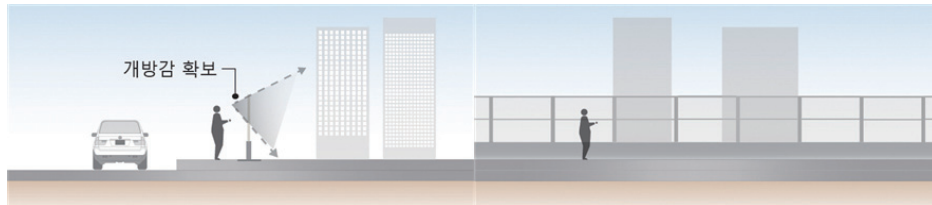
■ 유니버설 ▲ 친환경

형태 · 구조	- 방음벽의 기능성 및 자체의 조형성만을 강조하여 주변 환경과 이질적 형태가 되지 않도록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 권장 - 기능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장식을 지양하고 간결한 형태와 구조 권장 - 방음벽의 길이가 20m를 넘는 경우 분절 또는 패턴의 변화 허용 - 방음벽의 높이를 줄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질 및 색채를 이용한 수직 · 수평적 분절 - 교체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부분교체가 가능한 형태 권장 - 방음벽 형식은 주변 토지이용계획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주거지 밀도가 비교적 낮고 높이 6m 이하로 조성될 경우 직립형방음벽 적용 권장 - 높이 6m 이상으로 조성될 경우에 절곡형방음벽 적용 권장	
	주변여건을 고려한 방음벽 형태 예시 직립형 방음벽 절곡형 방음벽	
배치 · 설치	- 법적 규제 사항 안에서 위압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높이 설치 및 분절	
재료	- 시야를 차단하는 폐쇄적인 이미지의 방음벽 설치를 지양하고 조망, 일광, 채광 등을 고려하여 투시형 재질 사용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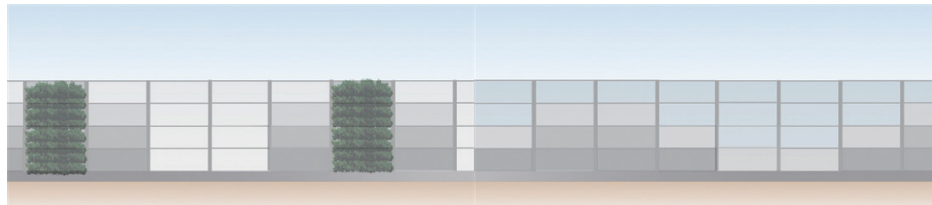
- 다른 색채 및 재질을 혼합사용 할 경우 3가지를 초과하는 다른 색채/재질 사용 금지
- 가급적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상 사용을 권장
- 기능을 우선시하는 단순하고 간결한 패턴 사용
- 투명방음벽에는 조류가 통로로 인식하여 충돌하지 않도록 투명판에 흑색선 등의 무늬 처리 권장
- ▲ 방음벽의 높이가 1~3m일 경우 개방감 확보 및 주변 경관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투명형 소재를 적용하는 것을 권장
- 방음벽의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소음저감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투명형 소재와 흡음형 소재를 적용하여 면 분할을 통해 시각적 위압감을 완화할 것을 권장

방음벽 소재 및 형태 가이드라인 예시

[높이 3.0m 이하] - 투명형 소재 적용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 및 주변경관과의 연속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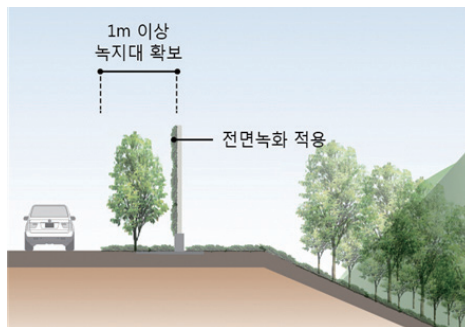
[높이 3.0m 이상] - 부분 녹화를 통한 인공성 저감 / 수평적 면 분할을 통한 위압감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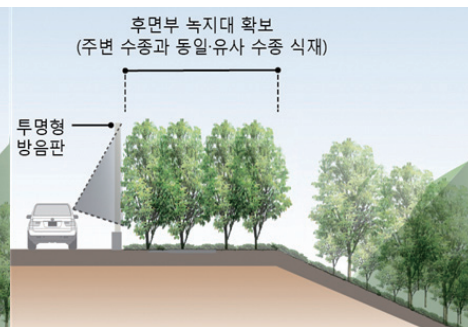
- 가급적 방음벽 전·후면에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식재를 적극 도입하여 녹지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을 권장

자연경관을 고려한 인공성 완화 가이드라인 예시

녹지대, 벽면 녹화 조성 시 단면 예시



녹지대, 벽면 녹화 조성 불가 시 단면 예시



색채
·
패턴

▲ 녹지공간 확보 양에 따라 벽면녹화, 초화류 또는 관목, 교목 식재 등 다양한 식재 방법을 도입하여
주행자의 위압감 완화

▲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쾌적한 도로경관 조성하고 방음벽에 녹화를 실시할 때는 식물의 성장 및 사계절
변화를 고려하여 적용 면적이나 위치 결정 권장

- 전 · 후면 기단부에 녹지대, 식재 등을 적용하여 인공성 및 위압감을 저감할 것을 권장

인공성 완화를 위한 녹지대, 녹화 가이드라인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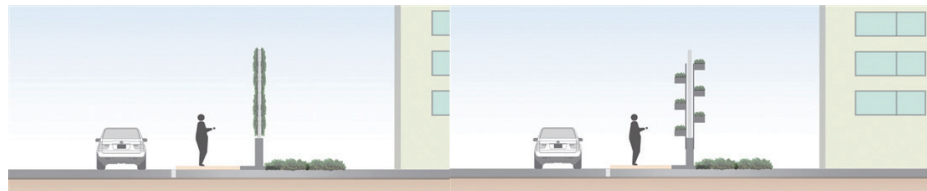
전 · 후면 기단부 녹지대 조성 (단면 예시)

방음벽 이격을 통한 녹지대 조성 (평면 예시)



전면 녹화 적용 예시

식재 시설 적용 예시



- 기단부 전면에 1m 이상의 녹지대를 확보하고 전면 녹화를 적용하여 주변 자연환경과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을 권장

기타

권장
&
비권장
사례



[O] 개방감이 높은 심플한 디자인



[O] 자연재질을 이용한 디자인



[O] 조류충돌방지를 고려한 무늬처리



[O] 자연재질 및 투명소재를 사용하여
개방감 있는 방음벽



[X] 기능만을 고려한 폐쇄적인 디자인



[X] 지나친 장식과 원색 사용

(2) 도로시설물

○ 가로등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도로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를 조명하는 안전시설물
기본방향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통일성 있는 디자인으로 시각적 혼란을 방지 -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교통시설물의 설치를 권장 -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이미지가 서로 상호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통합적 디자인 계획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기능성	조형적 형태와 고풍택 재료 사용 등으로 시각적 자극 제공
	정체성	홍성군의 지역정체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가로등으로 공간의 통일성 저하
	안전성	하천변 보행을 위한 가로등 부재 보행자의 스케일을 고려하지 않은 가로등의 부속 설치시설물로 보행의 안전에 위험 제공

③ 가이드라인

■ 유니버설

형태 · 구조	- 브라켓의 과도한 변형이나 과잉장식의 요소 추가 금지 - 가로등 등주 부분에 불법광고물의 부착 방지를 위한 요소를 첨가하여 설계 - 휴지통 및 교통표지판, 안전휀스 등 가로시설물들과 통합설치로 유효 보행공간을 확대 - 가로수 또는 주거지에 빛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컷오프(cut-off) 방식 사용 권장
배치 · 설치	- 가로등 배열방식인 한쪽배열, 지그재그배열, 마주보기배열, 중앙배열 중에서 도로의 특성과 위계에 맞게 구간별 적당한 배열 방식을 채택하여 배치 - 가로수와 인접 · 중복될 경우 설치하지 않거나 위치를 조정하여 설치 - 경사면에 설치시 가로등의 기둥은 반드시 수직을 이루도록 설치 - 가로등 지주와 접하는 바닥마감재 (보도블록)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 ■ 가로등 기단을 지하 매설하여 시멘트 기초, 지지대, 앵커볼트가 보도 위로 드러나지 않도록하고 결합부가 미려하도록 설치
재료	- 가로등 등주는 내구성이 강한 금속재료를 사용하며 금속재 자체의 색과 질감을 사용할 경우 무광택으로 표면 처리 권장 - 홍성군마크나 디자인 심볼이 남용되지 않도록 간결한 형태를 권장하고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내구성이 강한 재료 사용 권장
색채 · 패턴	- 자극적인 원색의 색채 사용을 지양하며, 색채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색 사용 적용
기타	- 광고물 부착방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로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색채 사용

권장
&
비권장
사례



[O]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의 가로등



[O] 벤치와 가로등의 통합설치로 유효 보행공간 확대



[X] 복잡한 형태 디자인



[X] 보도와의 연결 결합부 노출

○ 통합폴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도로변에 설치된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신호등을 하나의 지주로 통합한 가로시설물
기본방향	－ 주민의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도시 이미지 구축 － 표지판의 수량을 되도록 최소화하고, 기존 철주에 통합폴을 적용해 설치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조화성	가로등, 신호등, 교통표지판, 신호제어기 및 도시안내사인 등이 개별 지주로 설치되어 있어 가로의 혼란 및 복잡한 가로 경관 형성
	안전성	가로시설물의 낮은 설치위치 및 마감불량으로 보행자의 안전상 문제 야기

③ 가이드라인

■ 유니버설 ▲ 친환경

형태 · 구조	- 간결한 형태의 통합가로시설물의 디자인 개발 및 적용 권장 - 통합폴은 공간의 특성에 따라 가로등, 신호등, 교통표지판, 신호제어기 및 도시안내사인 등을 통합한 형태 도입 - 폴 형태의 통합된 단순한 외관형태를 지향하고 홍성군의 정체성과 특성을 살리도록 고려 - 통합지주 반경 5m 이내에는 독립지주 및 가로수 설치를 금지하여 시각적 혼란 방지 - 유형별로 거리에 따른 시인성을 고려하여 높이 규정 ▲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은은한 조명사용을 권장하며, 연결 부위 및 마감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하여 시각적 공해를 최소화하는 것 권장
배치 · 설치	- 주요 랜드마크 지역에 설치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교차로 및 도로분기점에 설치하여 보행자와 운전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 위치 결정
재료	- 통합폴 지주는 내구성이 강한 금속재료를 사용 권장 - 금속재 자체의 색과 질감을 사용할 경우 무광택으로 표면 처리 권장
색채 · 패턴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을 권장 - 지역적 특성을 적용한 공공시설물 전용색 사용 ■ 지나치게 많은 정보의 혼란스런 표기 지양하고, 교통약자나 고령자 등 누구나 정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인성과 가독성을 최대한 확보
기타	- 필요한 정보를 유형별로 통합하여 불필요한 심벌은 삭제하고 심벌 체계의 디자인 규격화 권장
권장 · 비권장 사례	 [O]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폴 형태 디자인  [O] 통합폴 설치에 의한 공간의 쾌적성  [X] 각각의 개별적인 시설물로 가로공간 복잡  [X] 도로를 혼잡하게 하는 다양한 개별 시설물

○ 안전웬스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차도변이나 교량 등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
기본방향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장식적 패턴을 지양하고 자연소재를 사용 - 기능위주의 단순하고 간결한 디자인 계획 - 장소와 지역성이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거리환경개선과 보행자의 안전을 돕도록 할 것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기능성	기능보다는 지나친 시각적 장식 패턴의 사용으로 인해 미관 저하
	정체성	복잡하고 장식적인 패턴을 사용한 디자인의 웬스
	조화성	고광택 재료의 직접적인 노출로 주변과 조화롭지 못한 웬스 형태
	안전성	관리 및 보수의 미흡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

③ 가이드라인

■ 유니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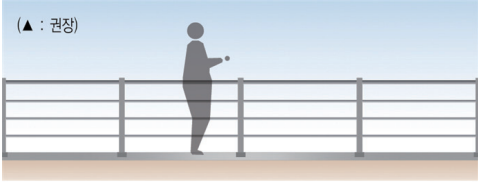
형태
구조

■ 형태적 예술성보다는 기능 위주로 최대한 단순하고 간결하며 보행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

- 복잡하고 장식적임 프레임보다는 간결하게 상징성을 부여 할 수 있는 디자인
- 판상형태의 구조를 지양하며, 개방성 확보를 위한 선적 형태의 디자인을 권장
- 보도 폭원이 2m 이하일 경우 보행 편의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수직형 형상을 도입할 것을 권장 하고, 2m 이상일 경우 수직형 및 곡선형 형상 적용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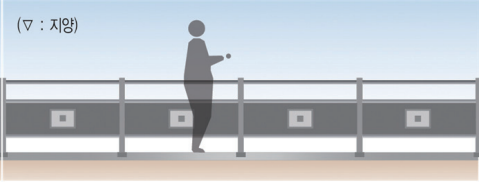
펜스 형태 가이드라인 예시

[권장] 개방감확보



(▲ : 권장)

[지양] 판상형태구조로 폐쇄감 형성



(▽ : 지양)

[수직형] 보도폭원 2m 이하 권장



보도폭이 좁은 경우 수직형 권장

[곡선형] 보도폭원 2m 이상/자전거 전용차로 권장



보도폭이 넓은 경우 곡선형 권장 (수직형 적용 가능)

배치 · 설치	■ 차량통행이 많거나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잦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 - 도로폭이 충분할 경우 휨스는 되도록 설치하지 않고 식수대를 통해 자연울타리로 계획할 것을 권장 ■ 장소에 적합한 디자인을 선택하고 보행로와 차로의 연속된 구분이 필요한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자전거의 차도 침입이 예상되는 구간, 학교주변 어린이 통학로 구간 등에 설치 권장 ■ 휨스의 기초부, 연결 앵커볼트 등의 결합부가 보도 위로 드러나지 않도록 미려한 마감처리 - 동일한 성격의 도로 구간에는 동일한 형태의 휨스 설치
재료	-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친환경소재 및 무광택 재질 사용 권장 - 차량충돌에 대비하여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
색채 · 패턴	- 원색으로 인한 시각적 혼란을 피하고 저채도의 색상 사용 권장 - 재료 자체 색의 사용을 권장하며 지나친 색채나 장식의 남용을 지양 - 레벨 차가 크거나, 높은 곳에 설치할 경우 안전을 고려하여 수직적 패턴(수직바 사용)을 권장하며 기능에 충실한 심플한 디자인 권장
기타	- 로고 및 장식적 도안, 상징물의 1차원적인 형상화는 지양
권장 · & 비권장 · 사례	 [O] 저채도의 간결한 디자인  [O] 자전거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기능 접목  [O] 가로화분대와 휨스의 통합디자인  [X] 과도한 패턴 및 색채의 사용  [X] 파손 및 훼손된 휨스 방치

○ 블라드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도와 인도 경계면에 세워 둔 시설물
기본방향	- 주변시설물과 통일성 있는 디자인과 색채사용을 권장 -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보행성을 고려하여 되도록 탄성을 가진 재료사용 권장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기능성	적합한 위치에 설치되지 않아 블라드 본래의 기능 상실
	정체성	동일한 공간 내에 통일성이 결여된 색채와 형태 사용
	조화성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목적성 및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블라드
	안전성	점자유도블록 위에 설치되거나 유지관리 불량으로 보행약자의 통행 방해

③ 가이드라인

● 고령친화 ◆여성친화 ■유니버설

형태 구조	- 보행을 고려하여 원형단면으로 하고 단순하고 간결한 디자인 권장 ■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모서리는 날카롭지 않도록 처리 -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에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는 높이로 설계 - 매립이동식, 상하이동식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듈식 구조로 설계
배치 설치	- 설치대상은 보행공간, 놀이공간, 휴게공간, 운동공간 등의 옥외공간과 도로나 주차장이 만나는 경계부위의 포장면에 배치 할 것 ■ 블라드의 간격은 휠체어, 자전거 등이 통과할 수 있도록 1.5m~2m를 유지 할 것 ■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에 충돌 우려 시설물이 있음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점자형 블록 30cm 뒤에 블라드 설치(점자블럭 위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
재료	■ 부분적으로 탄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할 것 ■ 고광택 반사체 소재 사용을 지양하고, 야간의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부분 반사체 적용을 허용 ■ 보행약자의 충돌을 고려하여 상부면으로부터 2/3 이상을 충격 흡수가 가능한 탄성소재로 마감하며, 저속차량이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와 재료 선택
색채·패턴	-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고명도, 고채도의 원색적 사용 지양
기타	-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해 블라드 상부 일부에 반사도료나, 반사체를 부착하거나, 필요시 조명의 기능 추가 설치

권장 & 비권장 사례		
	[O] 안전성 및 시인성 확보를 고려한 심플한 디자인	[x] 과도한 형태 및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배치
		
	[x] 무분별한 설치로 보행 불편 초래	[x] 지나친 원색 사용으로 인한 미관저하

2) 가로시설물

(1) 교통시설물

○ 버스(택시)정류장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버스(택시)를 타고 내리거나 대기하는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물
기본방향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통일성 있는 디자인으로 시각적 혼란을 방지 -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교통시설물의 설치를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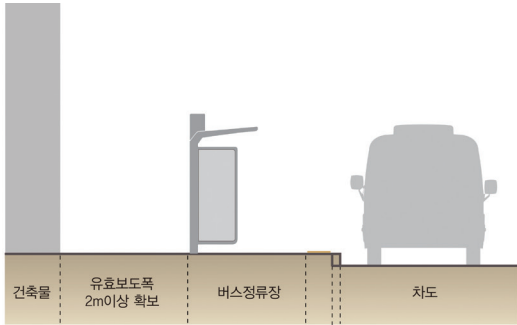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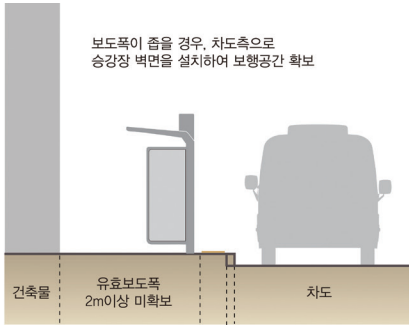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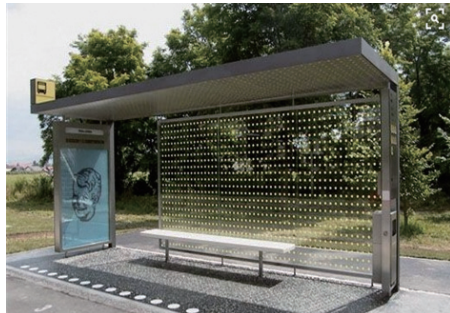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기능성	설치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도로면에 수직으로 설치한 버스정류장
	정체성	정류장시설물 없이 사용되고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인한 이용 불편 및 시각적 혼란 초래
	조화성	주변 환경과 부조화를 이루는 통일되지 못한 재질 및 형태의 시설물
	안전성	차도에 노출되어 설치된 시설물 및 임의로 사용되는 시설물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 위협

③ 가이드라인

●범죄예방 ●고령친화 ■유니버설

형태 · 구조	- 이용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규모를 차별화하여 설치 - 구조 자체의 조형성을 살리고 불필요한 장식적 형태 지양 - 파손이나 훼손, 노선 변경 시 부분적인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며 간결하고 통합된 디자인 적용 ■ 휠체어이용자나 노약자와 같은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구조나 시설물 디자인 ●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버스정류장은 노약자를 고려하여 밀폐형태 구조 디자인 설치 권장
배치 · 설치	- 안내표지는 버스(택시)정류장 내부에 통합설치를 권장 - 접근·대기·승하차 등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변 시설물 설치에 유의 - 보도폭을 고려하여 폭이 좁은 경우(2m 이하) 차도 쪽으로 설치하여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계획 - 버스승차대 주변에는 시야 차폐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에 주의해야 함 - 우천시 등을 고려하여 지붕이 있는 형태로 디자인 ● ■ 고령자 및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승차대기공간의 상부 높이는 2.5m 이상 확보하고 벤치의 높이는 40~45cm 정도로 설치 ■ 고령자 이동 편의를 위하여 버스승차대는 반드시 벤치, 쉼터 등과 같이 앉아서 쉴 수 있는 형태의 휴게시설을 포함하여 설치 ■ 유모차, 고령자, 휠체어의 진출입·회전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버스승차대의 설치안내판은 어린이나 휠체어사용자가 읽을 수 있는 높이가 되도록 설치 ● ■ 고령자, 지체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위해 수평 손잡이를 설치

버스(택시)정류장 설치 기준		
[유효보도폭 2m 이상 확보 시 설치기준]	[유효보도폭 2m 이상 미확보 시 설치기준]	
		
- 보도가 좁은 경우 버스승강장의 벽면을 차도측으로 설치하여 차량으로부터 분리된 대기공간을 조성하고 보행로 점유를 최소화하도록 설치 - 차량도착 정보안내시스템은 휠체어나 장애인의 대기공간 주변에 우선적으로 설치		
재료	- 정류장 벽면의 소재는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투명 소재를 사용 권장	
색채 · 패턴	- 주변 환경을 고려한 색채 및 소재 권장 - 장식적 패턴의 사용을 지양하고 재료자체가 가진 특성을 이용	
기타	- 버스정보시스템, 노선안내도 등 정보시설물이 부착되는 공간을 고려한 디자인 계획 ○ 농촌지역일 경우, 범죄예방을 고려하여 야간조명 설치 및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계	
권장 & 비권장 사례		
	[O] 정보 및 휴게시설물과 통합 디자인	[O] 투명소재 사용으로 개방감 확보
		
	[X] 과도한 형태와 디자인	[X] 협소한 규모로 고령자 이용불편

○ 자전거보관대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자전거를 거치 및 보관할 수 있는 시설물
기본방향	- 설치 시 필요한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며, 설치 시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계획 - 불필요한 디자인 요소를 제거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기능성	이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위치에 자전거보관대 설치
	정체성	다양한 형태와 재질, 색상의 통일되지 못한 디자인
	조화성	설치 주변 경관과 부조화를 이루는 자전거보관대
	안전성	자전거 보관대 설치 부족으로 가로수, 경계시설 이용으로 보행불편 초래

③ 가이드라인

★건강도시 ■유니버설

형태 · 구조	- 기능면에서 불필요한 형태는 지양하며 심플한 디자인을 권장 - 설치되는 장소의 이용성 및 보관가능한 수를 파악하고 보관되는 자전거끼리의 부딪힘이 없도록 거치간격을 확보하여 디자인
배치 · 설치	- 차양시설, 캐노피 등의 비가림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자연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 - 불가피하게 설치해야 할 경우 규모를 최소화하여 주변경관에 순응하도록 디자인 ■ 대중교통 환승 지점, 공공건물 출입구, 상가입구 등 이용 빈도가 높은 곳에 설치 ★ 보행에 방해되지 않고, 보행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 - 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조명과 함께 설치하거나 주변 조명시설과 인접한 곳에 설치
재료	- 자전거 보관 및 회수 시 쉽게 손상 되지 않도록 내구성 있는 재질 사용 권장
색채 · 패턴	- 가급적 페인트 도색을 지양하며 필요할 경우 자전거와 접촉하는 부분은 제외하여 도색 할 것 - 폴리카보네이트 사용을 지양하며, 불가피하게 사용시에는 원색의 고명도, 고채도의 사용을 지양하 며 무색 사용을 권장 - 시각적 혼란을 야기 시키는 장식적 도안은 지양하고 보관대가 놓이는 장소의 특성에 적합한 디자 인과 색채 적용
기타	★ 이용자가 많은 공간에 설치되는 자전거 보관대는 공기주입기 등 간단한 자전거 정비 가능한 시설 물과 연계하여 설치 권장

권장
&
비권장
사례



[O] 기능과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



[O] 보행을 고려한 위치에 설치



[X] 시설물 방치로 경관성 저해



[X] 자전거보관대 시설 부족으로 가로수, 경계시설 이용

○ 제어 · 분전함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분전함 · 배전함은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박스형태의 전력관리시설물 - 제어함, 점멸기는 상수도, 신호등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제어기기를 보관하는 시설물
기본방향	-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박스형태의 구조물은 크기를 최소화하고 간결한 형태의 구조로 디자인 - 시설물이 보행공간을 점유하거나 보행자의 통행 및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치 위치 및 미관성, 안전성 고려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기능성	과도한 스케일의 크기로 가로공간을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
	조화성	원색적인 색채사용, 고광택소재의 재료 사용으로 주변과 부조화 초래 녹지대에 설치하였으나, 박스가 그대로 노출되어 불량경관 형성
	안전성	가로시설물과의 혼재로 시각적 혼란 야기 및 불량한 보행환경 형성

③ 가이드라인

■ 유니버설

형태 · 구조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규모와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 권장 - 불법광고물의 부착을 방지하고 먼지제거가 용이한 표면 처리로 미관 개선 ■ 시설물의 모서리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곡선으로 마감을 처리 - 지붕을 씌우지 않은 간결한 구조로 타 가로 시설물과의 통합디자인을 권장
배치 · 설치	■ 설치되는 위치가 부적절하여 보행에 불편을 주는 지의 여부를 우선으로 고려 - 경사면 설치시 시설물의 기둥은 반드시 수직을 이루도록 설치하고 기초 시공시 지지대와 앵커볼트는 지면위로 노출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금지 -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녹지대에 설치하거나, 지하매립이 가능한 시설물은 매립하여 설치
재료	- 외부 충격 및 부식 방지를 고려하여 내구성, 내부식성이 강한 재료의 사용을 권장
색채 · 패턴	- 원색의 자극적인 색채 및 고광택의 반사성 재료 사용 지양 - 저채도를 사용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하며 무광택 표면처리 권장 - 기능과 무관한 고채도의 과도한 그래픽 사용 지양
기타	- 관리번호 등의 필수 표기요소는 최소화하여 표기 - 허가된 광고물 이외의 홍보물 부착을 금지

권장
&
비권장
사례



[O] 기능과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



[X] 보행로에 과도한 노출로 보행환경 불편 초래



[X] 과도한 홍보물 부착으로 경관성 저해

(2) 편의시설물

○ 파고라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휴게의 목적으로 공공공간에 설치되는 사방이 트여있고 골조와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는 휴게시설물
기본방향	- 개방적인 구조 및 통합디자인으로 공간의 활용도를 높임 -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동인구 및 사용자의 행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와 디자인 선정 - 휠체어 이용자, 노약자, 어린이 등 모든 사용자의 이용의 편의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 형태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기능성	일부 파고라의 경우, 이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배치로 이용의 불편 초래
	정체성	동일한 소재지 내에도 다양한 형태 및 디자인의 파고라
	조화성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
	안전성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은 형태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

③ 가이드라인

■유니버설 ▲친환경

형태·구조	- 최대한 간결한 구조로 디자인 하여 심미성과 개방성을 확보 - 휠체어 진입과 회전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설치 장소에 따라 다양한 조합 및 확장이 가능한 구조
배치 · 설치	■ 이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각지대 및 구석진 공간 내 파고라 설치 금지 - 기초 시공시 지지대와 앵커 볼트는 지면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돌출되는 면이 없도록 바닥과의 결합부위를 정교하고 미려하게 마감 처리 ■ 가로등, 보행등 등의 조명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고,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용의 안전을 고려하여 내·외부 조명을 별도 설치 할 것을 권장
재료	- 주변과의 조화 및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철강형재, 목재, 석재 또는 이들을 조합하여 사용 권장 - 부식에 강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 사용 권장
색채·패턴	- 자연소재는 표면 도장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색상을 그대로 사용할 것을 권장 - 원색 및 고채도, 고명도의 사용을 지양
기타	▲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식생을 활용한 녹화를 통한 친환경디자인이 가능한 디자인 권장 - 주변의 단차, 경계석 등을 제거하여 휠체어, 유모차, 노약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계획

권장
&
비권장
사례



[O] 야간이용을 위한 조명설치



[O] 조명시설 및 휴게시설의 통합화



[X] 활용성이 떨어지는 형태 및 주변과 부조화를 이루는 과도한 색채



[X] 고령자, 장애인등의 교통약자를 배려하지 않은 설치

○ 벤치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불특정 다수가 앉을 수 있도록 만든 다양한 형태의 의자
기본방향	- 적절한 공간에 배치하여 휴게시설로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고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 - 주변시설물과의 연계성 있는 디자인을 통해 통합디자인 구축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기능성	일부 벤치의 경우 녹음이 제공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어 이용성 저하
및	정체성	다양한 디자인과 형태의 벤치
문제점	조화성	노후화되고 방치된 벤치로 인해 공간 및 도시미관 저해

③ 가이드라인

■ 유니버설 ▲ 친환경

형태 · 구조	- 과도한 조형성을 살린 산만한 디자인 보다는 심플한 디자인을 통해 쾌적한 가로 형성 - 공원이나 특화된 가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간의 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디자인 권장 - 조명기기와 플랜터 등 타 시설물들과 통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효율성 향상 도모 - 등받이 및 팔걸이는 공간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적용 유무를 결정하고 선택 - 지나치게 화려한 디자인, 불필요한 장식 요소 최소화하여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 권장
배치 · 설치	■ 이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각지대 및 구석진 공간 내 벤치 설치 금지 - 위생에 문제가 있거나 공해가 심한 곳, 좁은 가로나 공간에 설치 금지 ■ 보행로의 결절점, 건물의 입구부, 광장, 오픈스페이스, 보행전용가로 등 보행자의 이용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 ■ 기초 시공시 지지대와 앵커 볼트는 지면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돌출되는 면이 없도록 바닥과의 결합부위를 정교하고 미려하게 마감 처리
재료	- 앉음판 부분에는 나무, 우레탄 등의 부드러운 소재 사용을 권장 - 목재 적용시 친환경 합성 테크의 사용을 권장 - 스테인레스 스틸 사용시 페인트 도장은 지양하고 광택을 줄이는 표면가공 권장
색채 · 패턴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가급적 소재 자체색 사용을 권장하여 시각적 혼란 초래 방지 - 지역의 정체성을 담기 위한 심볼은 심플한 형태로 계획
기타	▲ 공간의 녹시율 및 친환경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도심속 광장과 같은 휴게 공간에 설치 시 식생을 활용한 녹화가 가능한 형태로 통합 설계 권장

권장
&
비권장
사례



[O] 적절한 위치와 간격으로 설치



[O] 통합시설물로 공간 활용도를 향상



[X] 통행에 지장을 주는 위치 지양



[X] 노후화되고 유지관리 미흡으로 이용 불편 초래

○ 휴지통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외부공간에 설치되어 못 쓰게 된 종이나 쓰레기 따위를 버리는 통
기본방향	- 고광택소재는 지양하며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자극적 색채는 지양 - 재활용 분리수거 휴지통을 권장하며 금연구역의 재떨이 설치 지양 - 수거, 청소 등 관리가 용이하며 휴지통 내 수분의 배출이 원활하도록 계획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기능성	시설물의 유지·보수가 잘 되어있지 않으며, 수거 및 청소가 용이하지 않은 디자인
	정체성	고광택, 고채도, 고명도의 일반적인 형태의 통일되지 못한 디자인
	조화성	주변시설물과 부조화를 이루고 내부 오염으로 인한 불량한 경관 형성

③ 가이드라인

■ 유니버설

형태 · 구조	- 쓰레기 투입이 편리하나 적치행위방지를 위하여 윗면은 곡면처리 권장 - 우천시 오염방지를 위해 윗면으로 개방되는 투입구 구조를 지양 - 동일한 공간내의 타 가로시설물과의 연계 및 조화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 경관특화지역의 경우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디자인 차별화 권장 - 심미성을 고려하여 부속물들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권장
배치 · 설치	■ 휴게시설물에 인접하여 설치를 할 경우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적정 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하도록 계획 - 휴지통 설치 시 쓰레기 발생 예상지역 검토 후 설치하도록 할 것 - 경사면 설치 시 시설물의 기둥은 반드시 수직을 이루도록 설치 - 기초 시공시 지지대와 앵커 볼트는 지면 위로 노출되게 매립 처리하는 것을 금지
재료	- 고광택 재료 사용을 지양하고 표면 도장시 친환경도로 사용을 권장 - 오염이 적고 불법 부착물이 붙지 않도록 표면 처리 권장 - 파손 및 부식을 방지하고 화재와 외부충격을 위해 내구성이 높은 재료 사용
색채·패턴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상을 사용을 권장하고 고채도 및 원색의 사용을 지양 - 시설물 형태와 어울리는 단순한 패턴 사용을 권장
기타	- 허가된 광고물 이외의 홍보물 부착을 금지

권장
&
비권장
사례



[O] 휴게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한 배치



[O] 심플한 재질 및 형태 디자인



[X] 과도한 색채사용 지양



[X] 구조적인 형태로 낮은 기능성

(3) 녹지시설물

○ 가로수 보호덮개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보행가로 및 광장에 식재시 가로수를 지지해 주는 시설 및 보호 및 관리를 목적으로 수목하단에 설치되는 덮개 형태의 시설물
기본방향	- 기본적 기능에 충실한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를 바탕으로 설계하되, 가로수 보호덮개와 맞닿는 보도블럭과의 조화를 고려한 형태로 설계 - 보행보조기구나 여성의 구두굽이 덮개부 틈에 끼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 - 동일한 구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일관된 디자인을 권장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기능성	수목의 생장을 고려하지 않은 보호덮개 설치로 수목의 생장 방해
	정체성	동일한 가로선상에 다양한 형태 및 디자인의 시설물로 통일성 결여
	조화성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다양한 재질과 프레임의 디자인
	안전성	보도면과의 정교하지 못한 처리로 보행에 불량 초래

③ 가이드라인

형태 · 구조	- 동일한 가로선상 및 공간 내에 설치되는 가로시설물간의 조화를 고려한 디자인 계획 - 불필요한 장식요소를 최소화하고 관리 및 청소의 용이성을 고려해 단순한 구조 권장 - 급 · 배수와 수목관리, 먼지 제거 등의 유지관리를 고려한 디자인 권장 - 수목의 종류에 따라 덮개부 크기를 조절하고 수목 성장에 따라 쉽게 교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
배치 · 설치	- 도로폭이 협소하거나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설치 지양 - 보도와 보호덮개 설치 높이를 같게 하고 시설물 외곽부와 보도의 마감을 정교하게 처리 - 시설물은 보도와 평탄하게 설치하고 미려한 마감처리로 권장
재료	- 파손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내구성이 높은 재료 사용을 권장 - 외곽부, 덮개부, 지지대 간의 통일성 있는 재료를 선택
색채 · 패턴	- 직접적으로 형상화한 디자인이나, 패턴 사용 및 구 · 군 로고, 제작업체 표기 등의 지나친 남용 지양
기타	- 설계대상 공간이 생태성이 높은 경우 덮개부의 인공적 디자인 대신 잔디식재나, 가로녹지대 조성으로 유도

권장
&
비권장
사례



[O] 기능위주의 간결한 디자인



[O] 연속공간에서의 디자인 통일성 유지



[X] 유지관리가 불량한 재료 지양



[X] 수목의 생장을 고려하지 않은 보호덮개 형태

○ 가로화분대, 가로녹지대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가로에 설치되는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된 화분
기본방향	- 필요 이상의 크기로 보행환경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격화된 형태의 디자인 권장 - 설계대상공간의 포장부위에 배식을 하거나 수목의 적정 생육토심 확보, 또는 높이차 극복을 위하여 녹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배치 - 지나치게 화려한 디자인, 불필요한 장식 요소 최소화하여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 권장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기능성	공간 확보가 가능하나, 녹지대 미조성으로 가로녹지대의 연속성 부족
	조화성	인공적인 재료사용 및 지나친 디자인화로 주변과의 이질감으로 인한 불량경관 형성
	안전성	부적절한 위치 선정으로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 초래

③ 가이드라인

■ 유니버설 ▲ 친환경

형태 · 구조	■ 공간에 맞는 형태와 규모를 고려하여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 문화재나 관광특구의 경우 그 특색에 맞는 디자인을 계획 -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가로선상이나, 공간의 이미지가 연속성 및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통합디자인 권장
배치 · 설치	▲ 설치대상 공간에 공간의 폭과 비례하여 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은 가로수와 연계한 가로녹지대를 설치 하고, 공간확보가 불리한 곳은 가로화분대를 설치하도록 권장 - 설치할 경우 주변 공공시설물과 기능의 통합을 고려하여 설치 - 보도폭이 4m 이상일 경우 가로시설물 설치구역 내(1.5m)에 설치
재료	- 플라스틱과 같은 인공재료보다는 자연 재료를 사용을 권장 - 목재를 사용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방수, 방부, 방추에 대한 검토 후 활용
색채 · 패턴	- 주변 환경에 조화되는 색채 및 재질 자체의 소재색 사용을 권장 - 직접적으로 형상화한 디자인이나, 패턴 사용 및 구 · 군 로고, 제작업체 표기 등의 지나친 남용 지양 - 일차원적인 심벌이나 로고, 형태를 반영한 디자인은 지양
기타	- 급배수와 수목의 관리 등의 유지관리를 고려한 디자인 적용 - 설계대상공간의 포장부위에 배식시 수목의 적정 생육토심을 확보

권장
&
비권장
사례



[O] 휴게시설과 연계한 통합디자인



[O] 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에 설치 된 가로녹지대



[X] 과도한 수량으로 복잡한 경관형성



[X] 디자인 형태 및 소재 개선 필요

(4) 도로점용시설물

○ 보도포장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
기본방향	- 교통약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보행공간으로 조성 -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색채 및 저채도, 무채색을 사용하고, 한 구간에 여러 색채, 패턴의 무분별한 혼용 지양 - 지역적 정체성 반영한 색채,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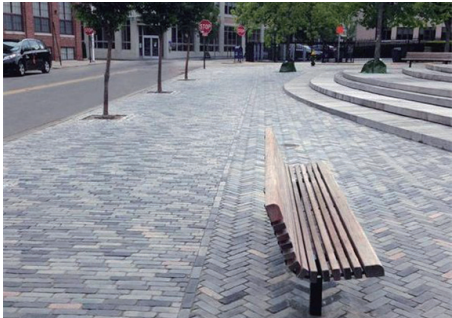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기능성	파손된 보도블럭과 맨홀뚜껑, 수목보호대로 인하여 안전상의 문제 발생 하이힐을 신은 여성 및 고령자들 등의 보행약자의 보행에 불편 초래
	조화성	인공적인 재료사용 및 지나친 디자인화로 주변과의 이질감으로 인한 불량경관 형성
	안전성	부적절한 위치 선정으로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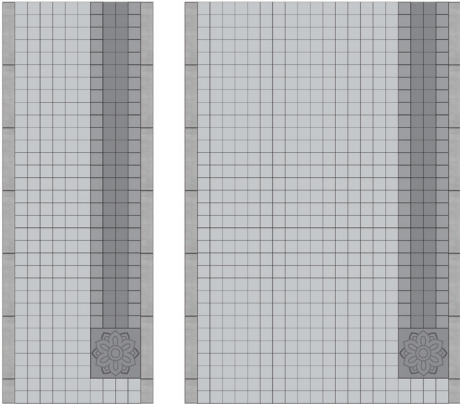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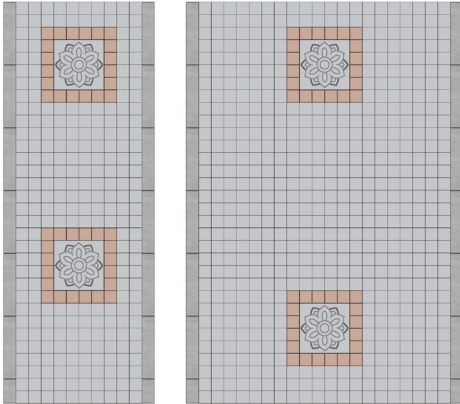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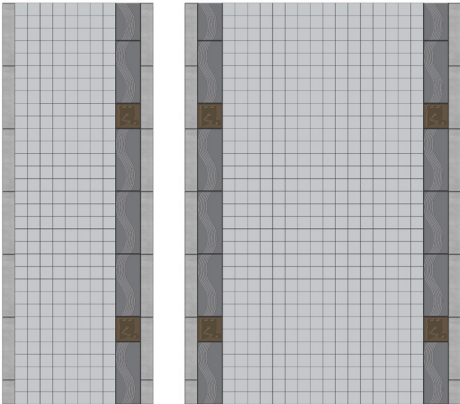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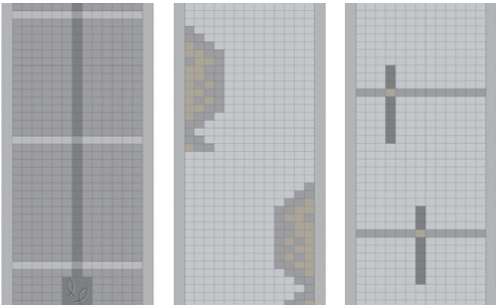
③ 가이드라인

★건강도시 ◆여성친화 ■유니버설 ▲친환경

형태 · 구조	★ 보도블록은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크기와 색상을 사용하고, 장식보다 기능 위주의 단순하고 간결한 디자인이 적용된 무채색 계열의 사각 모듈 보도블록 사용 권장 - 천연관아얇 아문길은 주변 건축물(홍성읍사무소)과 문화재(홍주아문)가 부각되어 보이도록 무채색 중심의 한국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현대적 텍스타일 적용 - 홍주성 문화마당은 보행자에게 시각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무채색의 포장을 적용하며, 격자형 패턴을 도입하거나 포장일부에 역사적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전통공간의 분위기 및 상징성 강조 ★ 내포천주교 순례자길은 보도와 같은 포장재료를 건축물의 전면공지에 사용하여 보행가로의 연속성 및 통일성 강조 ■ 휠체어 이용자,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는 쾌적한 보행공간 연출 - 규모, 색채, 소재 등 가로경관이 전체적으로 일체감을 형성하도록 조성 - 천연여행길의 패턴형태는 지역 역사성을 반영한 형태로 조성할 것을 권장
배치 · 설치	▲ 주변 건축물의 공개공지, 건축선 후퇴부, 보도연결 공원 등과의 바닥패턴 연계로 공간의 통일감 제공 - 보도블럭 설치 시 훼손 발생을 줄이고 정비가 용이하도록 엇갈림 설치를 하도록 함 ◆ 여성 보행자를 고려하여 구두굽의 끼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블럭 설치시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 - 다른 시설물과의 결합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미려한 마감처리
재료	- 투수성, 보습성, 미끄럼 저항성, 내구성 등 기본 기능이 우수한 친환경 소재 사용 - 보도블럭의 이음부 파손을 고려하여 가급적 이음부가 적어지도록 규격이 큰 블록 사용 - 보도블록 표면의 페인트 도장을 금지하고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논슬립재질 사용 권장
색채 · 패턴	- 소재색상은 갈색계역(YR, Y)과 밝은회색(N7 이하)를 사용하여 역사문화 도시이미지를 표현 - 주도심에서 진도심으로 진입부 상징성을 위해 일정구간 포장재질(화강석) 및 패턴 다양화 - 보행자의 시각적 안정감을 고려하여 무채색 또는 저채도, 저명도의 차분한 색채 사용 - 동일한 구간 내에서는 가급적 3가지 이내의 색채 및 패턴 사용 - 천연여행길 포장의 색채 및 패턴은 일반 포장패턴과 차별성을 나타내도록 디자인

권장 & 비권장 사례	기타 - 보도의 유효폭 내에는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지양	
		
	[O] 보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블록재질의 변화를 통한 공간 분리	[O] 보행에 안전 및 패턴을 고려한 디자인
		
	[O] 천년여행길의 포장형태는 지역정체성을 반영	[O] 천년여행길의 소재 및 패턴의 차별화
		
[X] 보도블록의 불량한 마감처리	[X] 과도하게 대비되는 색상의 보도블록	

- YR, Y계열(2.5Y 6/2), 명도 4 이상, 채도 6 이하
- GY계열(6.4Y 8.3/1.2) 명도 4 이상, 채도 10 이하
- N계열(N5, N7, 7.0Y 7.5/0.5)

	도시형 (2m/4.4m)	농촌형 (2m/4.4m)
안 면 재		
- 색채 :	N5	5.9Y 5.9/0.5 2.5YR 7.5/2
	천년여행길	순례자길
테 마 재		
- 색채 :	N5	5.9Y 5.9/0.5 2.5Y 6/2

○ 맨홀덮개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지하에 매설한 수도관이나, 하수관 배선 따위를 검사하거나 수리 또는 청소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된 개구부(맨홀)의 덮개
기본방향	- 맨홀은 유지, 관리 등의 기능의 효율성 제고와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디자인 - 보도와의 단차를 없애서 보행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접합부를 정교하게 시공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기능성	포장과 맨홀뚜껑의 미려하지 못한 마감처리로 미관 저해
	정체성	일부공간은 맨홀형태를 고려하여 바닥포장 설치
	조화성	대부분 보도패턴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색상 및 형태
	안전성	보도의 요철 발생 및 불량한 마감처리로 보행의 불편 초래

③ 가이드라인

■ 유니버설

형태 · 구조	- 단순하고 간결한 구조와 형태의 디자인으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도면과의 연결부를 정교하게 시공 - 맨홀뚜껑의 개폐를 위한 손잡이는 간결한 형태로 지면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계 - 표준디자인의 활용을 권장하고 시각적 이질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도면과 연속성 있는 패턴 적용 - 공간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바닥 사인물과 통합 설치
배치 · 설치	■ 맨홀과 보도와의 단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설치하여 휠체어이용자, 장애인, 어린이, 고령자 등의 교통 약자들이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 점자블록이나 유도용 지시등이 맨홀덮개에 의해 단절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 - 보도블럭과 맨홀덮개가 맞닿는 부분에 시멘트 마감처리를 지양
재료	-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색채 활용 및 보도패턴과 동일한 마감재 권장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내구성 있는 재료사용을 권장 ■ 보행자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표면처리에 유의하여 설치
색채 · 패턴	- 맨홀덮개 표면마감으로 페인트 도장 처리 및 장식적 그래픽을 지양
기타	- 도시 전체의 일관성을 고려하지 않는 디자인 및 특산물, 과도한 이미지, 실사이미지 등의 사용을 지양하고 지역정체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디자인 권장

권장
&
비권장
사례



[O] 지역성을 담은 특색 있는 디자인



[O] 보도블럭 패턴 및 재질과 일체화



[X] 보도 위 노출로 보행자안전의 위험 초래



[X] 심한 요철의 디자인으로 통행의 불편 초래

○ 트렌치-빗물 배수구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빗물 배수구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배수구의 뚜껑 등에 쓰이는 격자 모양의 시설물
기본방향	- 기능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되, 보행의 안전 및 미관적인 측면을 고려한 디자인 도입 - 설치환경에 맞춰 기능에 적합한 제품 설치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기능성	그레이팅의 넓은 간격으로 보행의 안전문제 야기
	조화성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형태의 넓은 규격 트렌치
	안전성	트렌치의 연결부가 보도에 그대로 노출되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③ 가이드라인

◆ 여성친화 ■ 유니버설

형태 · 구조	- 과도한 C나 캐릭터 적용을 지양하며 기능에 충실한 간결한 형태를 권장 - 트렌치의 형태나 구조 및 위치가 주변경관 및 환경, 장소에 적합해야 하며 차량 이동이나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설계 - 그레이팅의 간격이 넓어 담배꽂이나 낙엽 같은 이물질의 유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격 및 구멍의 크기 조정 ◆ ■ 여성보행자나 휠체어나 지팡이 등의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하는 고령자, 유모차, 자전거 등의 통행에 불편 및 사고발생을 고려하여 간격이 넓고 큰 틈새의 형태 지양
배치 · 설치	- 트렌치의 덮개가 급작스런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의 콘크리트 결침턱에 덮개가 걸치는 구조로 설치 - 내구성과 내식성을 고려하여 외부환경 변화에 강한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강, 석재 권장
재료	- 파손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내구성이 높은 재료 사용 권장
색채 · 패턴	- 주변 보도 · 도로와 연결되는 색상이나 사용공간의 용도에 맞는 색채 적용 - 주변과 조화롭지 못한 색상이나 원색 및 고채도 색채 지양
기타	■ 휠체어나 지팡이 등의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시설물을 이용할 시에 끼임 및 사고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격 및 구멍의 크기 조정

권장
&
비권장
사례



[O] 여성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보행을 고려한 좁은 간격과 미려한 마감



[X] 이물질 유입이 발생하는 넓은 간격의 트렌치



[X] 주변과 조화롭지 못한 색상의 시설물

○ 생활정보지함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생활 분야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형태의 무가지를 배포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시설물
기본방향	- 도시미관 저해와 보행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능위주의 단순화하고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 - 보행자들이 쉽게 인지 할 수 있는 곳에 내구성과 내부식성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기능성	도로, 가로수, 가로등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조화성	가로환경과 이질감이 강한 색채, 재료 사용으로 불량한 도시 경관 형성
	안전성	가로시설물과 혼재하여 불량한 보행환경 형성

③ 가이드라인

■ 유니버설

형태 · 구조	- 도시미관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간결한 형태를 권장함 - 불필요한 장식 요소를 배제하고 가로시설물과의 통합 디자인 권장 -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설치 목적에 따라 형태의 변형이 용이한 박스형 권장 - 지역 구분 없이 통합된 형태 설치 권장 ■ 기능위주로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의 통합 배포대 디자인 권장
배치 · 설치	- 유동 인구가 많은 구간 및 사람들의 집결지가 되는 공간에 설치 권장 ■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보행자들이 쉽게 인지 할 수 있는 곳에 설치 -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 지양
재료	- 외부 충격 및 부식 방지를 고려하여 부식에 강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 사용 권장 - 주변시설물과 조화되도록 광택 재질의 사용을 지양하고 무광택 표면처리 권장
색채·패턴	- 시설물을 알리는 문구와 픽토그램 이외의 장식적 디자인 지양
기타	- 무분별한 광고물의 외부 부착 및 설치 지양 - 파손 및 훼손 시 신속한 교체와 정비를 고려하여 관리번호 표기 권장

권장
&
비권장
사례



[O] 구조적인 기능성과 편리성이 높음



[O] 간결한 형태의 통합형 디자인



[X] 노후화되고 관리부족으로 불량한 경관 형성



[X] 가로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거리미관 저해

○ 가설울타리, 가림막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공사장과 외부와의 칸막이, 교통 차단, 내외의 안전, 도난 방지 등을 위해 공사 기간 중 공사장 주변에 설치하는 시설물
기본방향	- 불규칙한 디자인과 불법광고물로 채워지기 쉬운 공사현장 가설울타리, 가림막에 도시이미지와 조화되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미관개선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 도모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기능성	가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림막의 유지관리 미비
	정체성	역사·문화적 요소를 적용한 디자인을 도입하였으나,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및 규격 사용으로 통일성 및 경관성 저해
	조화성	과도한 슈퍼그래픽 및 조화되지 않은 색채 사용으로 인한 경관 저해

③ 가이드라인

■ 유니버설

형태·구조	- 가설울타리의 길이와 높이, 규격, 재질 및 디자인 등은 현장 규모와 특성에 맞도록 제작 ■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은 공사장의 안전확보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형태 권장 - 가설울타리에는 소음방지 및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시설 외에 처마장식 등과 같이 장식적이고 복잡한 형태 지양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경우, 미관을 고려하여 전체면적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디자인 권장
배치·설치	- 시각적으로 정돈된 도시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동일한 규격, 일정한 높이로 설치 권장 -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에 게이트 설치시 공사용 차량과 장비 등의 진입이 용이하고 자재 야적이 유리한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 ■ 전주, 가로등, 가로수 등에 지장을 주지 않고, 차량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공사 가설게이트 설치
재료	오염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재료의 변색, 변형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료 사용 권장-
색채·패턴	■ 보행자 및 운전자들의 동적 시선을 고려하여 디자인의 연속성 및 통일감 있고 패턴화된 형태로 그래픽을 표현 - 실사출력, 시트지 부착, 페인팅(채색)등 다양한 방법 적용가능하나, 가시성, 명시성 확보를 고려한 디자인 적용 - 지역이야기, 역사, 문화재 등의 지역정체성 및 경관성 향상을 고려한 디자인 도출 권장 - 색상 및 디자인 작성하여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자체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반드시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 후 시공
기타	- 공사장 출입구에는 공사명(게이트상부), 공사개요(조감도), 공사안내문 등을 게시 - 불법광고물 부착 및 규격화되지 않은 이미지의 산발적 설치 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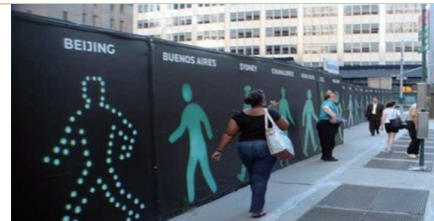
권장
&
비권장
사례



[O] 공사현장의 용도를 고려한 디자인 및 색채 도입



[X] 역사·문화적 인물요소의 적용방식 개선 필요



[O] 예술적 디자인으로 가로의 경관성 향상



[X] 주변과 조화되지 않은 과도한 색채의 슈퍼그래픽

2.3.3 체크리스트

1) 체크리스트 작성

- 항목별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적용유무를 확인하고 피드백 할 수 있도록 권장
- 항목별 세부내용과 적용대상 구분은 세부가이드라인 내용 참조
- 체크리스트 작성시 부분적용, 미적용 항목에 대해서는 사유 기재

평 가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사항없음

2) 체크리스트

○ 도로기반시설물

① 도로구조물

소분류	세부항목	평가	권장	지양
교량	- 보행자 및 주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위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휨스 및 보호시설물을 설치하였는가?		○	
	- 기능성을 고려하고 교량 자체가 조형미를 가지도록 디자인하되, 불필요한 장식을 지양하였는가?			○
	- 야간통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능과 무관한 과도한 조명 사용을 지양하였는가?			○
	- 지속적인 유지 관리의 편리성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터널	- 터널 계획시 통과 기능적 측면 및 설치시 주변에 미치는 경관적, 생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였는가?		○	
	- 균형감 있는 갱구부 간격을 연출하여 안정감 있는 터널공간 및 내부와 주변부의 디자인 연계를 통한 일체감 있는 갱구부를 연출하였는가?		○	
	- 가능한 내부 시설물을 통합하여 주행자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는 디자인으로 연출하였는가?		○	
	- 도로변 절개사면을 최소화하고 진·출입부의 절토면에는 녹화를 통하여 인공적인 이미지를 완화시키고 자연이미지가 풍부한 공간으로 조성하였는가?		○	
	- 주행시 눈부심을 야기시키는 과도한 경관조명 연출을 지양하였는가?			○
옹벽	- 과도한 규모의 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과도한 규모의 옹벽 설치시 수직적, 수평적 분절 및 음각과 양각을 이용한 질감변화 등으로 위압감 완화를 도모하였는가?		○	
	- 동일한 구간 내에 다른 재질을 사용하거나 외장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3가지를 초과하는 재료 사용을 지양하였는가?			○

옹벽	-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도색(벽화 및 슈퍼그래픽) 지양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고려한 입체적 디자인을 연출하였는가?		○	
	- 가급적 사면녹화 및 녹지 공간 확보를 통한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였는가?		○	
	- 옹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재료가 가진 질감을 최대한 이용하였는가?		○	
방음벽	- 방음벽의 기능성 및 자체의 조형성만을 강조하여 주변 환경과 이질적 형태가 되지 않도록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을 연출하였는가?		○	
	- 과도한 규모의 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위압감이 나타날 경우 수직적, 수평적 분절을 통한 위압감을 완화하였는가?		○	
	- 시야를 차단하는 폐쇄적인 이미지의 방음벽 설치를 지양하고 조망, 일광, 채광 등을 고려한 방음벽을 설치하였는가?		○	
	- 기능을 우선시하는 단순하고 간결한 패턴 및 가급적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상을 사용하였는가?		○	

② 도로시설물

소분류	세부항목	평가	권장	지양
가로등	-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이미지가 서로 상호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통합적인 디자인을 계획하였는가?		○	
	- 가로등 배열방식인 한쪽배열, 지그재그배열, 마주보기배열, 중앙배열 중에서 도로의 특성과 위계에 맞게 구간별 적당한 배열 방식을 채택하여 배치하였는가?		○	
	- 경사면에 설치시 가로등의 기둥은 반드시 수직을 이루도록 설치하였는가?		○	
	- 가로등 기단을 지하 매설하여 시멘트 기초, 지지대, 앵커볼트가 보도 위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결합부가 미려하도록 설치하였는가?		○	
	- 홍성군 마크나 디자인 심볼이 남용되지 않도록 간결한 형태를 권장하고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통합폴	- 교차로 및 도로분기점에 설치하여 보행자와 운전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 위치를 결정하였는가?		○	
	- 폴 형태의 통합된 단순한 외관형태를 지향하고 홍성군의 정체성과 특성을 살리도록 고려하였는가?		○	
	- 통합지주 반경 5m 이내에는 독립지주 및 가로수 설치를 금지하여 시각적 혼란 방지를 고려하였는가?			○
	- 연결 부위 및 마감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하여 시각적 공해를 최소화하였는가?		○	
	- 지나치게 많은 정보의 혼란스런 표기 지양하고, 교통약자나 고령자 등 누구나 정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인성과 가독성을 최대한 확보하였는가?		○	

안전웬스	- 형태적 예술성보다는 기능 위주로 최대한 단순하고 간결하며 보행자를 인지하기 쉽도록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을 연출하였는가?		○	
	- 동일한 성격의 도로 구간에는 동일한 형태의 웬스를 설치하였는가?		○	
	- 웬스의 기초부, 연결 앵커볼트 등의 결합부가 보도 위로 드러나지 않도록 미려한 마감처리를 하였는가?		○	
	- 레벨 차가 크거나, 높은 지대에 설치할 경우 안전을 고려하여 수직적 패턴 (수직바 사용)을 권장하며 기능에 충실한 심플한 디자인을 적용하였는가?		○	
블라드	-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에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는 높이로 설계하였는가?		○	
	-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모서리는 날카롭지 않도록 처리하였는가?		○	
	- 블라드의 간격은 휠체어, 자전거 등이 통과할 수 있도록 1.5m~2m를 유지 하였는가?		○	
	-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에 충돌 우려 시설물이 있음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점자형 블록 30cm 뒤에 블라드 설치하였는가?		○	
	- 점자블럭 위에 블라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였는가?			○
	- 부분적으로 탄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였는가?		○	
	-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고명도, 고채도의 원색적 사용을 지양하였는가?			○

○ 가로시설물

③ 교통시설물

소분류	세부항목	평가	권장	지양
버스 (택시) 정류장	- 파손이나 훼손, 노선 변경 시 부분적인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며 간결하고 통합된 디자인을 적용하였는가?		○	
	- 휠체어이용자나 노약자와 같은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구조나 시설물 디자인을 계획하였는가?		○	
	- 접근·대기·승하차 등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변 시설물에 유의하여 설치하였는가?		○	
	- 농촌지역일 경우, 범죄예방을 고려하여 야간조명 설치 및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계하였는가?		○	
자전거 보관대	- 기능면에서 불필요한 형태는 지양하며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심플한 디자인을 연출하였는가?		○	
	- 설치되는 장소의 이용성 및 보관가능한 수를 파악하고 보관되는 자전거 끼리의 부딪힘이 없도록 거치간격을 확보하여 디자인하였는가?		○	
자전거 보관대	- 보행에 방해되지 않고, 보행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였는가?		○	
	- 자전거 보관 및 회수 시 쉽게 손상 되지 않도록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였는가?		○	
	- 시각적 혼란을 야기 시키는 장식적 도안은 지양하고 보관대가 놓이는 장소의 특성에 적합한 디자인과 색채 적용하였는가?		○	
	- 이용자가 많은 공간에 설치되는 자전거 보관대는 공기주입기 등 간단한 자전거 정비 가능한 시설물과 연계하여 설치하였는가?		○	
제어· 분전함	-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박스형태의 구조물은 크기를 최소화 하고 간결한 형태의 구조로 디자인하였는가?		○	
	- 외부 충격 및 부식 방지를 고려하여 내구성, 내부식성이 강한 재료의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	
	- 원색의 자극적인 색채 및 고광택의 반사성 재료 사용 지양하였는가?			○
	- 기능과 무관한 고채도의 과도한 그래픽 사용 지양하였는가?			○
	- 관리번호 등의 필수 표기요소는 최소화하여 표기하고 허가된 광고물 이외의 홍보물 부착을 금지하였는가?		○	

④ 편의시설물

소분류	세부항목	평가	권장	지양
파고라	-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동인구 및 사용자의 행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와 디자인을 연출하였는가?		○	
	- 휠체어 진입과 회전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설치 장소에 따라 다양한 조합 및 확장이 가능한 구조로 디자인하였는가?		○	
	- 기초시공시 지지대와 앵커 볼트는 지면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돌출되는 면이 없도록 바닥과의 결합부위를 정교하고 미려하게 마감을 처리하였는가?		○	
	- 이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각지대 및 구석진 공간 내 파고라 설치를 금지하였는가?		○	
벤치	- 과도한 조형성을 살린 산만한 디자인 보다는 심플한 디자인을 통해 쾌적한 가로를 형성하였는가?		○	
	- 보행로의 결절점, 건물의 입구부, 광장, 오픈스페이스, 보행전용가로 등 보행자의 이용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	
	- 위생에 문제가 있거나 공해가 심한 곳, 좁은 가로나 공간에 설치를 금지하였는가?			○
휴지통 (재활용 분리 수거함)	- 쓰레기 투입이 편리하나 적치행위방지를 위하여 윗면은 곡면처리하여 디자인 하였는가?		○	
	- 휴게시설물에 인접하여 설치를 할 경우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적정 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하도록 계획하였는가?		○	
	- 심미성을 고려하여 부속물들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하였는가?		○	
	- 파손 및 부식을 방지하고 화재와 외부충격을 위해 내구성이 높은 재료 사용하였는가?		○	
	- 수거, 청소 등 관리가 용이하며 휴지통 내 수분의 배출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였는가?		○	

⑤ 녹지시설물

소분류	세부항목	평가	권장	지양
가로수 보호덮개	- 기본적 기능에 충실한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를 바탕으로 설계하되, 가로수 보호덮개와 맞닿는 보도블럭과의 조화를 고려한 형태로 설계하였는가?		○	
	- 급 · 배수와 수목관리, 먼지 제거 등의 유지관리를 고려한 디자인을 권장하였는가?		○	
	- 수목의 종류에 따라 덮개부 크기를 조절하고 수목 성장에 따라 쉽게 교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는가?		○	
	- 보도와 보호덮개 설치 높이를 같게 하고 시설물 외곽부와 보도의 마감을 정교하게 처리하였는가?		○	
	- 직접적으로 형상화한 디자인이나, 패턴 사용 및 구 · 군 로고, 제작 업체 표기 등의 지나친 남용을 하지 않았는가?			○
가로 화분대/ 가로 녹지대	- 필요 이상의 크기로 보행환경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격화된 형태의 디자인을 계획하였는가?		○	
	-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가로선상이나, 공간의 이미지가 연속성 및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통합디자인으로 연출하였는가?		○	
	- 플라스틱과 같은 인공재료보다는 자연 재료를 사용을 권장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재료의 혼합은 지양하였는가?			○
	- 일차원적인 심벌이나 로고, 형태를 반영한 디자인은 지양하였는가?			○
	- 설치대상 공간에 공간의 폭과 비례하여 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은 가로수와 연계한 가로녹지대를 설치하였는가?			
	- 가로녹지대의 공간확보가 불리한 곳은 가로화분대를 설치하도록 하였는가?			
	- 설치할 경우 주변 공공시설물과 기능의 통합을 고려하여 설치하였는가?			

⑥ 도로점용시설물

소분류	세부항목	평가	권장	지양
보도포장	- 휠체어 이용자,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편하고 안전하게通行 할 수 있는 쾌적한 보행공간을 연출하였는가?		○	
	-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색채 및 저채도, 무채색을 사용하고, 한 구간에 여러 색채, 패턴의 무분별한 혼용을 지양하였는가?			○
	- 여성 보행자를 고려하여 구두굽의 끼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블럭 설치시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하였는가?		○	
	- 보도블록 표면의 페인트 도장을 금지하고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논슬립 재질을 사용하였는가?		○	
	- 천년여행길 포장패턴은 지역적 정체성을 반영하였는가?		○	
	- 천년여행길 포장패턴은 색채 및 패턴은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	

맨홀덮개	- 보도와의 단차를 없애서 보행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접합부를 정교하게 시공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였는가?		○	
	- 휠체어이용자, 장애인, 어린이, 고령자들의 교통약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였는가?		○	
	- 점자블록이나 유도용 지시등이 맨홀덮개에 의해 단절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하였는가?		○	
	- 보행자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표면처리에 유의하여 설치하였는가?		○	
트렌치-빗물배수구	- 트렌치의 형태나 구조 및 위치가 주변경관 및 환경, 장소에 적합해야 하며 차량 이동이나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설계하였는가?		○	
	-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하는 고령자, 유모차, 자전거 등의 통행에 불편 및 사고발생을 고려하여 간격이 넓고 큰 틈새의 형태를 지양하였는가?			○
	- 파손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내구성이 높은 재료 사용하였는가?		○	
	- 일차원적이거나 과도한 그래픽을 지양하고, 간격과 틈새를 고려한 그래픽의 디자인을 연출하였는가?		○	
생활정보지함	- 도시미관 저해와 보행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능위주의 단순화하고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을 연출하였는가?		○	
	-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보행자들이 쉽게 인지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를 지양하였는가?			○
	- 자극적인 색채 및 고채도 고명도의 사용 지양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	
	- 시설물을 알리는 문구와 픽토그램 이외의 장식적 도안 자제 및 무분별한 광고물의 외부 부착 및 설치를 지양하였는가?			○
가설울타리, 가림막	- 가설울타리의 길이와 높이, 규격, 재질 및 디자인 등은 현장 규모와 특성에 맞도록 제작하였는가?		○	
	- 시각적으로 정돈된 도시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동일한 규격, 일정한 높이로 설치하였는가?		○	
	- 소음방지 및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시설 외에 처마장식 등과 같이 불필요한 시설 설치 및 장식적이고 복잡한 형태를 지양하였는가?			○
	-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에 게이트 설치시 공사용 차량과 장비 등의 진입이 용이하고 자재 야적이 유리한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하였는가?		○	
	- 색상 및 디자인 작성하여 설치하기 위해서 자자체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사전협의 후 시공하였는가?		○	
	- 공사장 출입구에는 공사명(게이트상부), 공사개요(조감도), 공사안내문 등을 게시하였는가?		○	
	- 불법광고물 부착 및 규격화되지 않은 이미지의 산발적 설치 지양하였는가?			○

2.4 공공정보매체

1) 개요 및 기본방향

(1) 정의

○ 공공정보매체란?

[사전] 공공정보매체란, 이용자에게 공공정보를 알릴 목적으로 이용자가 자유롭게 통행하는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시각표지물과 기타 유사한 기능의 정보매체 의미

[관련계획] 충청남도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 공공정보매체란 공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충청남도 및 시·군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물과 일부구조물

○ 공공정보매체 가이드라인이란?

공공정보매체 가이드라인이란, 홍성군의 공공정보매체 디자인의 기본원칙으로 공중에게 명확한 공공정보 제공을 위한 시각매체를 대상으로 한 설계 및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2) 목적

- 홍성군 공공정보매체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공정보매체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방향 제시로 일관되고 통일된 디자인 원칙과 기준 마련
- 도시공간 영역에 명확한 정보제공과 인지성 향상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시각 정보의 가독성 향상 및 이용의 편의 제공을 위한 정보안내체계 구축

(3) 적용방안

- 홍성군의 공공정보매체를 크게 교통안전표지, 방향유도표지, 공공교통표지, 보행자표지, 자전거도로 표지, 공공영상매체로 나누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각각의 대상에 대한 방향 제시

교통안전표지	안내표지	공공교통표지	방향안내표지	자전거도로표지
주의표지				
규제표지	주차안내표지	버스정류장표지	관광안내표지	자전거도로
지시표지	장애인주차	택시정류장표지	안내도	안내표지
보조표지	안내표지	버스노선	방향유도표지	자전거도로
단속표지	주차금지표지	안내표지		노면표지
노면표지				

공공정보매체는 정보의 전달이라는 본래 기능에 충실해 부합되도록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4) 구성체계

- 공공정보매체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 후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형태·구성, 배치, 설치, 재질, 색채 등의 항목으로 나뉘어 적용(단, 제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합리적 적용)
- 권장 및 비권장 사례 이미지, 설계지침과 관련된 삽도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구 분	내용
형태 및 구성	공공정보매체의 시각적 속성과 전체를 이루는 요소의 규정
배치	공공정보매체의 배치 및 상호관계 규정
설치	공공정보매체의 설치 및 상호관계 규정
재질	공공정보매체를 구성하는 재료의 속성 규정
색채	공공정보매체를 구성하는 색채에 관한 규정
서체	공공정보매체를 구성하는 서체에 대한 규정

(5) 공공정보매체의 현황

안내사인이 가려져 인지성 결여 설치위치 개선	스케일을 고려하지 않은 규모의 관광안내판	안내사인물의 하단 볼트부분 마감필요 – 고무덮개사용
		
위험안내표지판의 형태개선 및 위험방지시설 설치 필요	안내판의 외부형태가 과대하고, 내용 가독성이 낮음	설치 및 형태 개선 필요하며 시인성 낮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판의 설치위치변경 및 관리개선	설치위치 부적합 – 해안경관가림	안내표지판의 낮은 설치위치 및 모서리마감 개선
		

(6) 공공정보매체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 홍성군 공공정보매체 가이드라인은 정보제공기능과 편리성이라는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하며, 도시공간의 밀도는 낮추고 효용성을 높이도록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준수함



(7) 공공정보매체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 01** 표준형디자인 형태와 재질로 공공정보매체의 기능성을 잘 살려야 한다.
- 02** 접근성이 높고, 누구나 쉽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03** 시각적, 인지적 요소를 고려한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 04** 공공정보매체의 통합화를 통한 도로점유면적의 최소화로 개방감을 확보하여야 한다.
- 05** 유지, 보수가 용이한 간결한 구조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1 가이드라인

1)交通安全표지

- 주의 표지, 규제 표지, 지시 표지, 보조표지, 단속 표지, 노면표지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도로 교통에 관한 주의 · 규제 · 지시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 판이나 노면 위에 부호 · 문자 · 선 등으로 나타내는 표지
기본방향	- 정보매체로서 안내기능에 대한 기능성과 가독성이 우선되어야 함 - 주변시설물과의 연계성 있는 디자인을 통해 통합디자인 구축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기능성	다양한 색각을 가진 사람을 배려한交通安全표지 필요
	효율성	다른 시설물 또는 가로수에 가려져 있으며, 사인판 후면 마감 처리가 미려하지 않음
	심미성	크기와 색상에서 일관성 없고, 숫자 및 문자의 크기와 형태에 기준이 없음

③ 가이드라인

●고령친화 ■유니버설 ▲친환경

형태 · 구조	- 도로표지판 후면의 지주 결합 부위 및 마감 부분을 미려하게 처리 - 단속 등을 나타내는 보조 표지에는 표준형 디자인 적용 - 규정된 교통 안전표지 이외의 사용 금지 ● 고령자를 배려하여 교통표지판의 안내글자 확대 필요		
배치 · 설치	■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가로수 및 다른 도로표지 등과 일정 간격 유지 - 중복 설치된 도로표지는 철거하고 적정 수량 설치 - 다른 지주 시설물과의 통합 설치 권장 - 바닥면과 노면 표지가 대비를 이루도록 도로면에 여유를 두고 표기		
재질	- 재료치수를 고려하여 모듈화에 의한 표준화, 규격화로 제작관리의 용이성과 경제적 효용성 제고		
색채 · 패턴	● ■ 유니버설 컬러디자인 관점에서 일반인 및 색각이상자의 시지각 특성을 고려하여 시인성이 높은 명도와 채도차이를 고려한 개선안 필요 (색채배색-예시)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가급적 소재 자체색 사용을 권장하여 시각적 혼란을 줄이도록 함 - 표지판의 픽토그램 등 그래픽 요소는 심플한 형태로 계획		
권장 & 비권장 사례	   [O] 통합지주 방식으로 설치한 사례 [O] 통합디자인으로 공간활용도를 향상 [O] 형태와 크기의 규격화		
	   [X] 금지표지판의 설치위치 개선 필요 [X] 표지판의 분산설치를 지양하고 통합지주설치 필요 [X] 설치장소 및 방법 개선		

2) 안내표지

○ 주차안내표지, 장애인 주차안내표지, 주차금지표지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주차안내표지는 주차장 이용안내 또는 장애인 주차장 안내, 주차금지 등을 알리기 위해 도로 구역 또는 일정 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
기본방향	– 적절한 공간에 배치하여 정보매체로서 기능 수행 – 주변시설물과의 연계성 있는 디자인을 통해 통합디자인 구축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기능성	설치장소가 부적당하고 보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나타남
	심미성	목적과 장소에 따른 색상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색상, 서체, 크기가 통일되지 않아 도시 경관을 훼손
	효율성	동일한 지주에 여러 개의 판을 공동 부착하는 연립사인의 필요성

③ 가이드라인

● 고령친화 ■ 유니버설

형태 · 구조	– 표지판 후면의 지주 결합 부위 및 마감부의 미려한 처리 – 안내표지에 사용하는 서체는 홍성의 개성과 특성을 부여하여 차별성 제공 ■ 표지판의 구성은 표지명칭, 방향표시 등을 간결하고 인지성이 높도록 배열
배치	– 표기할 정보와 시인성을 고려하여 크기를 최소화 ■ 주차 및 보행시에도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표시
설치	– 다른 지주 시설물과 통합 설치하고, 각종 기관 안내 표지와 통합적 설치 권장 – 지주 설치시 앵커볼트 및 부속물이 지면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 – 보행자 통행이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 및 높이에 설치 – 통행량이 많은 일정구간에 금연구역 안내 및 스티커 부착 표시
재질	– 픽토그램은 국제 표준규격(ISO)을 적용 – 문자, 화살표 등 주요 표기 요소는 간단명료하게 표현 – 색채, 재료 등 지역 고유성의 표현
색채 · 패턴	● 다양한 색각을 가진 사람들의 시지각 특성을 고려하여 문자는 배경과 구분이 잘되는 무채색을 사용 – 다른 도로 안내 표지에 사용되는 색채는 지양 – 표지면과 고정철물에 적용하는 색은 주변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저채도 사용
권장 & 비권장 사례	 [X] 간결한 형태로 인지도향상  [X] 주차금지 표지판의 설치방법 및 위치 개선  [X] 장애인 주차안내 표지 중복 설치 및 규모 과대

3) 공공교통표지

○ 버스정류장 표지, 택시 정류장 표지, 버스노선 안내표지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공공교통표지는 공공시설 또는 공용시설 관리 주체가 버스 및 택시정류장과 버스노선을 알리기 위해 도로 구역 내에 설치하는 안내표지
기본방향	- 적절한 공간에 배치하여 정보매체로서 기능성 향상 도모 - 주변시설물과의 연계성 있는 디자인을 통해 통합디자인 구축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기능성	각종 버스의 정류장 사인의 일관성이 없어 이용에 불편 초래
	가독성	노선 안내 사인의 설치 위치가 부적당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가 인지하기 어려움
	효율성	독립지주설치 등 구조물의 형태가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음
	심미성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픽토그램, 글자, 색채가 사용됨

③ 가이드라인

● 고령친화 ■ 유니버설

형태 · 구조	■ 가독성을 고려하여 문자의 서체, 크기, 간격을 결정 - 기차역, 관광지, 관공서 등 주요 정류장 표기에는 한글과 영문 병기 - 공간에 적합한 크기 및 형태로 최적화 - 독립 지주형 표지 설치의 지양하고 기존 지주나 버스정류장의 구조 활용 - 택시 정류장과 쉼터의 표지에는 국제 표준 픽토그램을 적용 ■ 운전자와 승객이 서로를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 - 최소한의 구조체로 설계하여 시야 확보
배치	- 노선안내도에서 노선도와 실제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을 일치시키고, 동일 구간 왕복표시는 금지 - 연계가능한 시설물(벤치, 관광안내도 등)과 결합을 권장 ● ■ 버스노선 안내도는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버스노선도 높이를 바닥으로부터 1.5m 내외로 설정할 것을 권장
설치	- 디지털 버스안내 사인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버스 정류장 내부에 통합 설치 권장 - 지주형 안내표지의 단독 설치 시 버스 승하차 지점에서 1m 이내에 설치할 것을 권장
재질	-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투명 재료 사용을 권장 - 강한 햇빛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소재의 사용을 권장
색채	● 고령자들의 시지각 특성을 고려하여 시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표지판의 명도와 채도를 개선 - 바탕색은 홍성군 환경색채를 준용 - 교통 신호체계에 사용되는 색채의 사용을 금지 -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고채도, 고명도 색 사용은 지양

서체	- 개성과 주목성을 높이기 위해 홍성의 정체성을 담은 서체개발을 통한 사용권장 - 장식적 서체보다 가독성이 높은 고딕체 사용을 권장 - 공공매체에 통일성을 나타내기 위해 동일한 서체의 사용을 권장		
권장 & 비권장 사례	 [O] 간결한 형태의 안내표지	 [O]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사례	 [O] 구조의 모듈화 개념을 적용한 사례
	 [X] 노후화로 인한 기능 상실	 [X] 택시승차장 표지 설치위치 부적당	 [X] 승차장 안내표지 형태 통일화 필요

4) 방향안내표지

○ 관광안내표지, 안내도, 방향유도표지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보행자 안내표지는 공공시설 또는 공용시설, 관광 등 관리 주체가 시설물의 위치와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도로 구역 내에 설치하는 안내표지
기본방향	- 적절한 공간에 배치하여 정보매체로서 기능 수행 - 주변시설물과의 연계성 있는 디자인을 통해 통합디자인 구축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기능성	크기, 색채, 형태의 통일성이 없으며, 교통안전표지와 동일한 색채 사용으로 혼동 유발
	가독성	안내도는 지도 및 정보의 가독성이 낮음
	심미성	관광안내표지는 지나치게 큰 규모와 불필요한 형태로 도시 경관을 훼손

③ 가이드라인

● 고령친화 ■ 유니버설 ▲ 친환경

형태 · 구조	● 고령자를 위한 공공시각매체의 개선 필요 - 보행자 안내 이외의 불필요한 정보 표기나 장식의 사용을 금지 - 지리안내도의 면적이 지나치게 넓지 않도록 디자인할 것을 권장 ▲ 유기농업 특구 마을별 통일된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형태 권장
배치	■ 다양한 연령층의 사용자와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높이와 크기를 결정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시설물이 가리지 않도록 일정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치
설치	- 시설안내표지는 표준화하고, 다른 지주 시설물과의 통합 설치를 권장 ● ■ 행동지점에 시각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를 위한 유도 블록 루트를 안내하는 음성촉지(觸枝) 안내도를 설치
재질	- 픽토그램은 국제 표준규격(ISO)을 적용하고 주요 표기 요소는 간단 명료하게 표현 - 색채, 재료 등 지역 고유성의 표현
색채	- 사인표지 본체와 안내 표지의 색채가 조화되도록 함 - 바탕색은 홍성군 환경색채를 준용 ● 고령자들에게 시인성이 높은 배색안(예시) 적용 권장 - 고명도 · 고채도의 Y계열과 저명도 · 고채도의 B계열 색 조합  - 저명도 고채도의 B계열과 무채색 N9의 조합  - 무채색 N0.5와 고명도 고채도의 Y계열 색 조합  - 무채색 N9와 무채색 N0.5의 색 조합 
서체	- 방향유도표지에는 개성과 주목성이 높은 고딕서체 사용을 권장 - 안내표지에는 홍성고유의 전용서체를 개발, 적용하여 통일성을 갖도록 권장 - 동일한 공공매체에 각기 다른 서체의 사용을 지양 - 주요시설과 장소표기는 국문과 영문을 함께 표기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
권장 & 비권장 사례	 [O] 간결한 형태로 정보전달 중심의 방향유도표지  [O] 주변환경과 조화성 및 픽토그램 병기  [O] 크기 및 색채의 기준없이 설치된 시설표지판 사례  [X] 안내도의 가독성 낮음  [X] 관광안내표지판의 조망가림  [X] 과도한 형태로 정보인지가 어려움

5) 자전거 도로표지

○ 자전거 도로안내 표지, 자전거 도로노면 표지

① 정의 및 기본방향

정의	– 자전거 도로표지는 공공시설 또는 공용시설 등 관리 주체가 자전거 전용도로의 위치와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도로 구역 내에 설치 또는 노면에 표시하는 안내표지
기본방향	– 적절한 공간에 배치하여 정보매체로서 기능 수행 – 주변시설물과의 연계성 있는 디자인을 통해 통합디자인 구축

②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기능성	노면표지는 세로 방향으로 표기되어 혼란을 일으킴
	가독성	지주형으로 세워져 사고 위험이 있고 동선을 방해
	심미성	고령자를 배려한 시인성이 높은 색채개선이 필요

③ 가이드라인

★건강도시 ■유니버설

형태 · 구성	– 불필요한 정보 표기나 장식의 사용을 금지 – 면적이 지나치게 넓지 않도록 디자인할 것을 권장
배치	– 다른 지주와 통합하거나 건축물 외벽에 부착 – 노면 표지는 보는 속도 및 각도에 따른 형태의 왜곡이 최소화되도록 디자인
설치	– 독립 지주형 표지의 설치는 지양 ★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는 지양 – 인도에 설치할 경우 보행로와 구분이 되는 소재를 사용
재질	★ 우레탄 등의 포장재료를 이용하여 자전거 주행에 도움을 주는 소재 활용 ★ 발광 소재를 사용하여 태양광을 축광했다가 야간에 빛을 발산하여 야간 이용에 도움
색채	■ 인지성을 높일 수 있는 색채 및 패턴을 사용 – 픽토그램은 진행방향에서 인지하기 쉽도록 표기 – 픽토그램은 국제 표준규격(ISO)을 적용 ■ 주요 표기 요소는 간단명료하게 표현 – 색채 및 패턴은 지역 고유성의 표현
권장 & 비권장 사례	   통합지주 설치로 공간활용도 향상 독립지주형 표지 설치의 지양 통행에 지장을 주는 설치물 지양

2.4.2 체크리스트

1) 체크리스트 작성

- 항목별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공공정보매체 가이드라인의 적용유무를 확인하고 권장 및 지양사항을 체크하여 피드백 할 수 있도록 권장
- 항목별 세부내용과 적용대상 구분은 세부가이드라인 내용 참조
- 체크리스트 작성시 부분적용, 미적용 항목에 대해서는 사유 기재

평 가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사항없음

2) 체크리스트

① 교통안전표지

소분류	세부항목	평가	권장	지양
주의 표지 규제 표지 지시 표지 보조표지 단속 표지 노면 표지	- 교통안전표지를 가리는 시설물의 설치를 규제하였는가?		○	
	- 주목성과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가로수 및 다른 표지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였는가?		○	
	- 타 지주시설물과 통합할 수 있는 형태와 구조로 설계하였는가?		○	
	- 고령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도로 표지판 밝기를 높이고, 표지판 글자 크기 확대하였는가?		○	
	- 규정된 교통 안전표지 이외의 사용 금지하였는가?		○	
	- 노면 표지는 보는 속도 및 각도에 따른 형태의 왜곡이 일어나지않는가?			○

② 안내표지

소분류	세부항목	평가	권장	지양
주차안내표지 장애인 주차안내 표지 주차금지표지 기타 안내표지	- 주차장 안내는 보행자 통행이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가?			○
	- 차량동선과 표지판의 동선이 동일하게 설치되었는가?		○	
	- 픽토그램 사용시 국제 표준규격(ISO)이 적용되었는가?		○	
	- 주변바닥 색채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색채를 적용하였는가?		○	
	- 규격과 거리간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었는가?		○	
	- 주차금지표지는 적절한 위치에 통합 설치되어 있는가?		○	
	-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를 부착하였는가?		○	

③ 공공교통표지

소분류	세부항목	평가	권장	지양
버스정류장표지 택시정류장표지 버스노선안내표지	- 보행자가 멀리서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지 상단에 인지성이 높은 심벌과 픽토그램을 적용하였는가?		○	
	- 시인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	
	- 버스, 택시정류장과 연계성을 갖도록 설치하였는가?		○	
	- 버스 정류장 표지에 버스의 도착 시각을 알리는 화면을 제공하였는가?		○	
	- 관공서, 주요 환승 정류장에는 한글과 영문이 병기되었는가?		○	
	- 주차장 안내는 보행자 통행이나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가?			○
	- 픽토그램 사용시 국제 표준규격(ISO)를 사용하였는가?		○	
	- 버스노선도와 실제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을 일치시켰는가?		○	

④ 방향안내표지

소분류	세부항목	평가	권장	지양
관광안내표지	- 정보 제공을 우선으로 디자인되었는가?		○	
	- 이용자의 연령층을 고려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는가?		○	
	- 장소적 특성에 맞게 색채가 고려되었는가?		○	
안내도	- 문화재 및 주변 경관을 가리지 않도록 적절하게 배치 계획되었는가?		○	
	- 외형형태가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	
방향유도표지	- 소재는 친환경적인가?		○	
	- 내부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가?		○	
	- 바람의 압력 등을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계획되었는가?		○	
	- 보행자 및 운전자의 인지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 및 크기로 계획되었는가?		○	
	- 역사문화재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색채를 선정하였는가?		○	
	- 서체, 정보표기방법 등의 구성요소들이 일관성 있게 표현되었는가?		○	

⑤ 자전거 도로표지

소분류	세부항목	평가	권장	지양
자전거도로 안내 표지	- 연계 가능한 지주에 설치할 수 있도록 모듈화하여 설치하였는가?		○	
	- 독립 지주의 과다 설치를 지양하고 설치 시 크기를 최적화하여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였는가?		○	
	- 자전거도로 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에 설치하였는가?		○	
	- 안전표지의 내용을 인지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하였는가?		○	
	- 횡단보도의 경우 진행방향과 일치하였는가?		○	
자전거도로 노면 표지	- 노면표지는 자전거 진행방향과 일치하게 표시되었는가?		○	
	- 바닥포장소재를 활용하여 노면 표지시 인지성을 높였는가?		○	
	- 자전거도로 노면표지는 100m 간격으로 표시하여 설치되었는가?		○	
	- 홍성유기농업특구로서 마을별 통일된 정체성을 표현하였는가?		○	

2.5 옥외광고물

1) 개요 및 기본방향

(1)정의

○ 옥외광고물이란?

[사 전] 옥외에 설치되는 광고물로 독립형과 부착형이 있으며, 옥상간판·야립(野立)간판·전주광고·애드벌론·광고탑·네온사인 등과 같은 광고물로 정의

[관련계획] 내포신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란, 홍성군의 옥외광고물 디자인의 기본원칙으로 공중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한 설계 및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2) 목적

- 홍성군 옥외광고물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방향 제시로 일관되고 통일된 디자인 원칙과 기준 마련
- 명확한 정보제공과 인지성 향상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시각 정보의 가독성 향상 및 이용의 편의 제공을 위한 정보안내체계 구축

(3) 적용 방안

- 홍성군의 가로형간판(건물명형, 일반형, 연립형), 돌출형간판(일반형, 연립형), 지주형간판(연립형)으로 나누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각각의 대상에 대한 방향 제시

가로형	돌출형	지주형	기타
건물명형 일반형 연립형	일반형 연립형	연립형	디지털광고 창문이용광고

옥외광고물은 정보의 전달이라는 본래 기능에 충실히 부합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4) 구성체계

-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 후 유형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형태·규격, 색채 및 소재, 표기요소, 조명의 항목으로 나뉘어 적용(단, 제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합리적 적용)
- 사례 이미지, 설계지침과 관련된 삽도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구 분	내용
형태 및 구성	옥외광고물의 시각적 속성과 전체를 이루는 요소의 규정
설치 및 배치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배치 상호관계 규정
색채 및 소재	옥외광고물의 색채 및 소재 규정
표기요소	옥외광고물의 내용표기에 관한 규정
조명	옥외광고물의 조명에 관한 규정

(5) 옥외광고물의 현황



(6)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 홍성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정보제공이라는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하며, 도시공간의 연속성과 쾌적성을 높이도록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준수



(7)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 01** 문자형디자인 형태와 재질로 옥외광고물의 기능성을 잘 살려야 한다.
- 02** 건축물 및 도시 공간과의 연속성 및 조화성을 고려해야 한다.
- 03** 시각적, 인지적 요소를 고려한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 04** 옥외광고물의 통합화를 통한 도로점유면적의 최소화로 개방감을 확보하여야 한다.
- 05** 형태 및 색채, 서체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권역별 개성을 추구한다.

2) 설치 권역 설정

- 홍성군 내 옥외광고물은 도시 이미지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 및 생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옥외광고물 권역을 설정
- 홍성군의 모든 옥외광고물 권역은 공공디자인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옥외광고물의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정돈되고 정체성 있는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함
- 공간권역별 디자인 적용범위는 홍성군 전역에 표준디자인을 적용하고, 권역별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소재 또는 색채를 권역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함

	구 분	표준형디자인	소재, 색채
		공통	부분 차별화
A	역사·문화권역	○	○
B	비즈니스·행정권역		○
C	친환경 농촌·테마권역		
D	특화산업권역		
E	해안권역		○

3)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

(1) 역사·문화권역(홍성읍, 결성면)

- 현황 및 문제점
 - 역사문화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옥외광고물 개선 필요
 - 조양문 부근 일부구간에는 정비되었으나 다른 구간과의 연계성이 떨어짐
 - 건물의 노후화와 단층건물을 뒤덮는 대형 간판 및 현수막 부착으로 미관 저해
 - 대부분 판넬형 간판을 설치하여 건물가림현상을 나타냄
 - 결성면 소재지의 옥외광고물은 읍성의 관아가 남아있는 곳으로 역사적 정체성을 담아내지 못함



- ▶ 역사·문화권역과 색채 및 형태의 조화를 이루도록 함, 전통적이고 절제된 이미지의 옥외광고물 형태 지향

(2) 비즈니스 · 행정권역(도청대로, 흥북면)

○ 현황 및 문제점

- 도청대로변의 옥외광고물의 난립으로 내포신도시와 연계성 낮음
- 낙후된 흥북면의 가로환경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선 시급



▶ 내포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상징성 부여, 세련되고 정돈된 이미지의 옥외 광고물 형태 지향

(3) 친환경 농촌 · 테마권역(홍동면, 장곡면)

○ 현황 및 문제점

- 유기농 농업특구 지역으로서 홍동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옥외광고물 개선
- 지역 특성에 맞는 색채 및 형태 개선
- 현재 상태는 지역적 특성이 적용되지 않고 옥외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음



▶ 농촌 · 테마마을 경관개선과 귀농 · 귀촌인구가 유입되는 중심지역으로서 상징성 부여
전원적 이미지의 옥외광고물 형태 지향

(4) 특화산업권역(광천읍, 갈산면)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특화문화 지역으로서 광천역을 중심으로 옥외광고물 개선 필요
- 지역 특성에 맞는 색채 및 형태 개선
- 지역적 특성이 적용되지 않고 과도한 형태 및 색채를 적용한 옥외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음



- ▶ 지역정체성을 나타낼 수있는 디자인
지역특화 이미지의 옥외광고물 형태 지향

(5) 해안권역(궁리, 어사항, 남당리)

○ 현황 및 문제점

- 서부임해 관광지역으로서 궁리, 어사항, 남당항을 중심으로 옥외광고물 개선
- 해안지역 특성에 맞는 색채 및 형태 개선필요
- 지역적 특성이 적용되지 않고 판넬형의 옥외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음



- ▶ 서부임해 상업지역으로서 상징성 부여
해안 어메니티 이미지의 옥외광고물 형태 지향

(6) 옥외광고물 권역별 특징

분류	특징	기능
역사·문화권역	- 역사문화자원이 공존하는 특색을 반영한 경관 중점관리구역 설정 - 역사문화이미지와 어울리는 디자인 적용	역사·문화 - 홍성읍, 결성면 - 장군상오거리~ 조양문 주변
비즈니스·행정권역	도시시설이 밀집된 지역	상업, 비즈니스 - 도청대로 - 홍북면
친환경 농촌·테마권역	친환경 유기농 농업지역으로서 이미지	농촌, 자연 - 홍동면, 장곡면
특화산업권역	지역 특산물을 테마로 한 경관중점관리구역 설정	광천오거리 상업가로 지역특화문화경관 - 광천읍
해안권역	서해안 관광을 테마로 한 경관중점관리구역 설정	해안상업가로 - 궁리, 어사항, 남당리

(7) 권역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공통가이드라인

- 옥외광고물 설치는 곡각지점을 제외 하고 1개업소당 1개로 제한
- 건축물 외벽의 노후 정도가 심한 경우 1층은 판류형과 입체형의 적용이 가능
- 설치면적은 부착면의 가로폭 80%로 제한하며, 업소명과 같은 문자, 업소로고는 60cm 이내로 제한
- 돌출간판은 가로형 간판의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만 설치를 권장하며, 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로 제한

② 표준디자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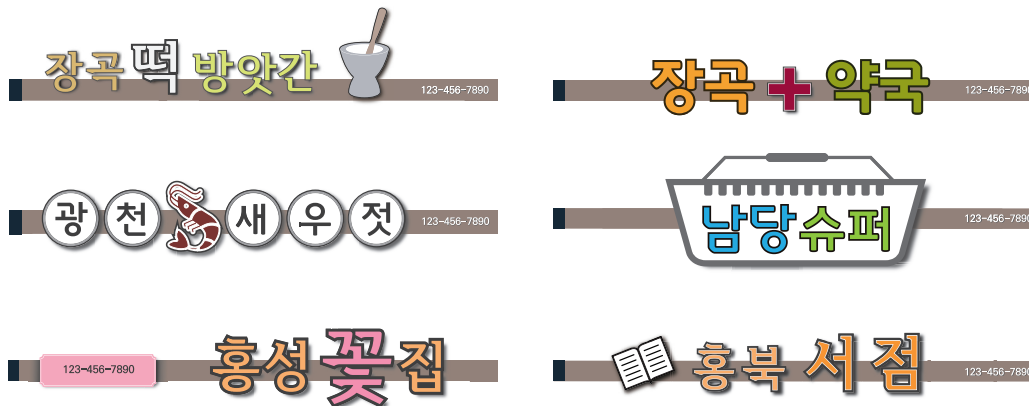
■ 기본형태



■ 기본 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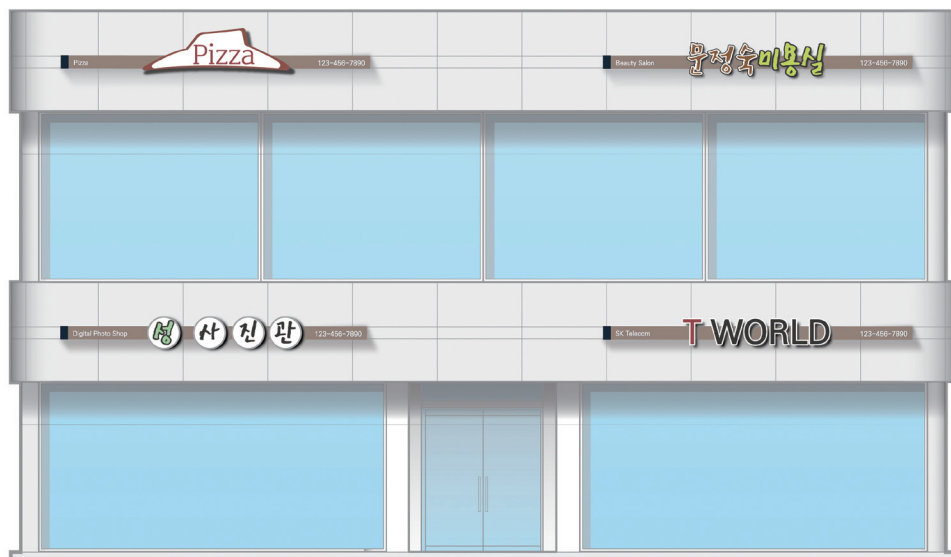
■ 응용형태



③ 권역별 디자인가이드라인

○ 역사 · 문화권역

- 디자인방향 : 주변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룸
- 형태 : 간결하고 정돈된 형태 지향
- 소재 : 친환경적인 소재 사용
- 색채 : 역사 · 문화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사용
- 권역이미지 : 전통적인
- 디자인 (권장 예시)



○ 비즈니스 · 행정권역

- 디자인방향 : 내포신도시와 조화를 이루도록 세련되고 간결한 이미지 지향
- 형태 : 기능위주의 간결하고 단순한 형태 지향
- 소재 : 건축물의 외벽 소재를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소재 사용
- 색채 :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중 · 저채도
- 권역이미지 : 세련된, 정돈된
- 디자인 (권장 예시)



○ 친환경 농촌 · 테마권역

- 디자인방향 : 주변 가로환경과 조화
- 형태 : 간결하고 과도하지 않은 형태 지향
- 소재 : 친환경적인 소재 사용
- 색채 :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중 · 저채도
- 권역이미지 : 자연적인, 차분한
- 디자인 (권장 예시)



○ 특화산업권역

- 디자인방향 : 주변 가로환경과 조화
- 형태 : 간결하고 과도하지 않은 형태 지향
- 소재 : 친환경적인 소재 사용
- 색채 :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중 · 저채도
- 권역이미지 : 개방적인
- 디자인 (권장 예시)



○ 해안권역

- 디자인방향 : 주변 가로환경과 조화
- 형태 : 간결하고 정돈된 형태 지향
- 소재 : 친환경적인 소재 사용
- 색채 :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중채도
- 권역이미지 : 해양적인, 쾌적한
- 디자인 (권장 예시)



2.5.1 유형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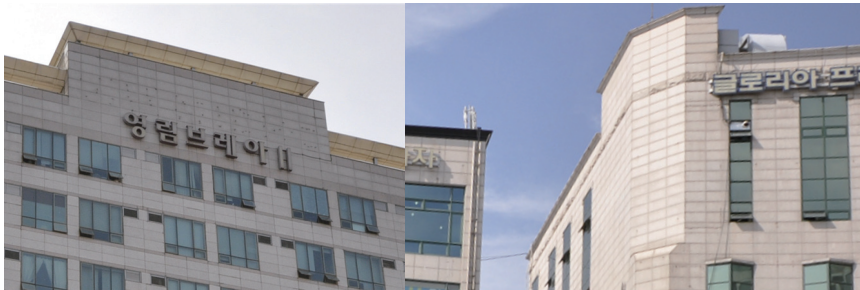
1) 가로형(건물명형, 일반형, 연립형)

○ 건물명 간판

일반사항	- 가로형 광고물은 크게 건물명 간판과 일반형 간판, 연립형 간판으로 구분 - 간판이 설치되는 건축물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 -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통일된 형태와 규격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 도로에 접한 면에 5층 이상 건물의 최상층 광고물로 건물명, 대표업소명, 기관명 등을 표시할 것을 권장 - 옥외광고물 설치 시, 설치권역에 해당하는 특성을 디자인에 반영하여 제작 설치할 것을 권장
설치 및 배치	- 건물명 간판은 설치되는 건축물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5층 이상의 건축물 최상단에 가로 또는 세로로 설치할 것을 권장 - 설치 수량은 건물당 1개소 설치를 권장하나, 곡각지점의 경우에는 2개소 설치 가능



디자인 형태 및 규격	- 간판을 설치하는 건축물과 주변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입체형 또는 가로형과 세로형 중 선택하여 설치 가능 - 건물명 간판의 크기는 건물 상단에 설치하는 건물명은 1면(상업, 산업시설지역은 2면)에 설치 가능 - 세로 0.8m 이내, 가로는 건물 폭의 1/2 이내로 하며, 건물명 로고는 가로, 세로1.0m 이내 설치 권장 - 건물명 가로길이는 건물가로 폭의 1/2 이내, 세로길이2m 이내, 단 로고와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2단 설치 가능 - 세로형의 경우 간판의 높이는 건물 높이의 1/4 이내, 최대 10m 이내로 설치할 것을 권장
-------------	--

색채 및 소재	- 간판이 설치되는 건축입면 재료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색채 및 재료를 선정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 - 간판의 재료는 환경친화적이고 내구성이 있는 재료의 사용을 권장 - 원색계열의 색상 과다사용은 지양 - 적색의 경우 전체의 50% 이상 사용은 규제할 것을 권장
표기요소	- 간판이 설치되는 건축물 및 업소의 성격 등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서체를 선택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 - 광고물의 시인성과 인지성 높이기 위해 픽토그램의 사용 가능
조명	- 간판의 조명은 직접 조명방식은 지양하고, 부드러운 간접 조명방식을 권장 - 내부 조명방식 적용 시 문자나 도형의 부분 조명방식을 권장 - 점멸 방식의 네온사인, 동영상(LED, LCD, PDP, CRT 등)형식의 광고물 표시 금지 - 조명의 광원을 직접 노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장
디자인 이미지	

○ 일반형 간판

설치 및 배치

- 가로형 광고물은 판류형은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2층 이하(상업지역 5층, 주거·산업시설지역 3층)에만 설치 가능하며 그 위치는 각층 상단 정면에 표시할 것을 권장
- 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 및 최상단에는 입체형으로 된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
- 설치 수량은 1개 업소당 1개소 설치를 권장
- 곡각지점의 업소의 경우에는 2개소의 설치 가능
-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들은 통일성 있게 배치할 것을 권장
- 동일업소의 광고판을 반복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지양



가로형 광고물 표시방법

디자인 형태 및 규격

- 가로길이 : 당해 업소 가로 폭의 80% 이내(최대 10m 이내)
- 세로길이 : 0.6m 이내(게시틀 포함)
- 돌출폭 : 0.3m 이내(게시틀 포함)
- 게시틀(조인트 바) 설치 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게시틀 크기 : 광고물 세로 크기의 1/3 미만
- 상품, 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픽토그램 등 : 가로·세로 0.7m 이내
- 판류형은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 주변 경관 및 건물의 외관, 디자인 요소의 이유로 1층의 간판을 분할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간판의 총 면적의 범위내에서 2개까지 분할하여 설치 가능

색채 및 소재

- 간판이 설치되는 건축 입면 재료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색채 및 재료를 선정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
- 간판의 재료는 환경친화적이고 내구성이 있는 재료의 사용을 권장
- 원색계열의 색상 과다사용은 지양
- 적색의 경우 전체의 50% 이상 사용은 규제할 것을 권장

표기요소	- 동일층의 가로형 광고물은 상·하 2줄로 표시 불가 (다만, 전화번호, 체인점표시, 인터넷주소, 지점명 등 가로형 광고물 높이 이내로 2줄로 표시 가능) -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하며 외국문자 사용시 한글과 병기 - 상품·업소를 상징하는 도형 등은 표기 가능 -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픽토그램 등은 동일 게시틀(조인트바)내에 가로·세로 크기는 0.7m 이내로 설치 가능
조명	- 간판의 조명은 직접 조명방식은 지양하고, 부드러운 간접 조명방식을 권장 - 내부 조명방식 적용 시 문자나 도형의 부분 조명방식을 권장 - 점멸식 조명의 사용은 지양 - 조명의 광원을 직접 노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장
디자인 이미지	

○ 연립형 간판

설치 및 배치	- 건축물의 3층 이하 벽면으로 공유공간의 벽면이 충분히 확보된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 - 연립형 간판의 설치 수량은 1개 업소당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업소당 간판 총수량에 포함 - 광고물 총면적 8㎡ 이내로 제한 - 1 업소 면적 0.5㎡(가로 1.25m, 세로 0.4m), 돌출폭 0.3m 이내 - 간판의 배열은 설치되는 건물 입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로 또는 세로로 배열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 -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들은 통일성 있게 배치할 것을 권장 - 간판의 설치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제작할 것을 권장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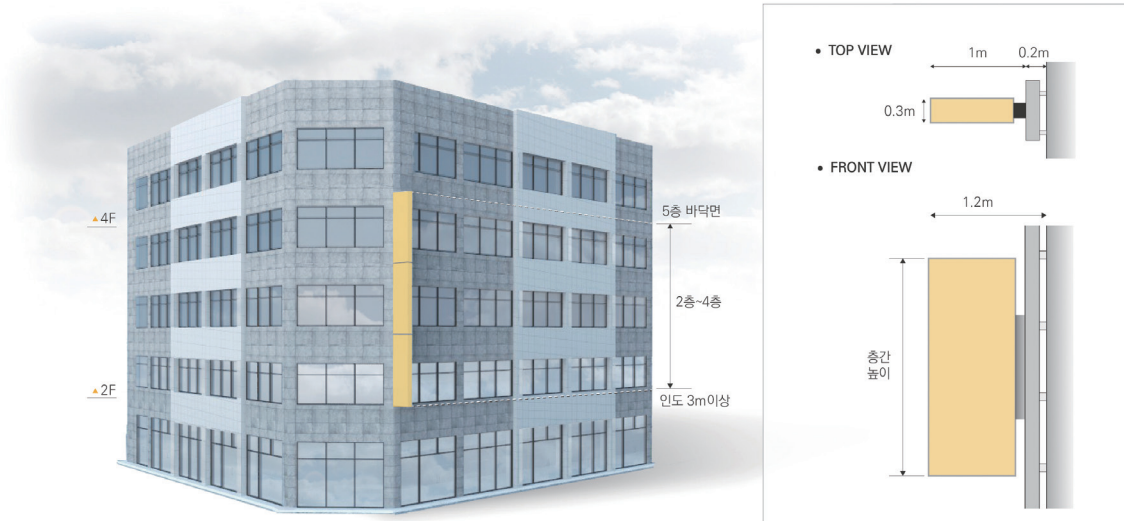
- 연립형 간판의 1개의 면적은 최대 0.5㎡ 이내, 전체 총면적 8㎡ 이내로 제한하여 설치

디자인 형태 및 규격	- 연립형 간판은 하나의 건물에 입점해 있는 여러 업소의 정보를 연립형으로 표시하므로 각 업소의 개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조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통일된 형태와 규격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 연립형 간판의 개별간판이 사용하는 면적은 최대 0.5㎡ 이내로 하며 전체 총 면적은 8㎡ 이내로 권장 - 연립형 간판의 두께는 벽면으로부터 20cm 이내로 권장 - 간판을 설치하는 건축물과 주변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입체형과 또는 판류형 중 선택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
색채 및 소재	- 간판이 설치되는 건축입면 재료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색채 및 재료를 선정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 - 간판의 재료는 환경친화적이고 내구성이 있는 재료의 사용을 권장 - 원색계열의 색상 과다사용은 지양 - 적색의 경우 전체의 50% 이상 사용은 규제할 것을 권장
표기요소	- 간판이 설치되는 건축물 및 업소의 성격 등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서체를 선택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 - 광고물의 시인성과 인지성 높이기 위해 픽토그램의 사용 가능
조명	- 간판의 조명은 직접 조명방식은 지양하고, 부드러운 간접 조명방식을 권장 - 내부 조명방식 적용 시 문자나 도형의 부분 조명방식을 권장 - 점멸식 조명의 사용은 지양 - 조명의 광원을 직접 노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장
디자인 이미지	

2) 돌출형(일반형, 연립형)

○ 일반형/연립형

일반사항	- 돌출형 광고물은 독립형 간판과 연립형 간판으로 구분 - 간판이 설치되는 건축물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 - 점포주택의 주거 부분으로 쓰이는 해당 층에는 설치 금지 - 불필요한 요소를 규제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의 과 디자인을 규제하고 통합광고 물로 조성할 것을 권장
설치 및 배치	- 가로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해 업소당 1개 설치 - 돌출간판은 상·하로 일직선 상에 위치하도록 설치 - 1개 업소당 1개소 설치를 원칙 - 연립형의 경우 건물의 2층 이상부터 설치하고, 높이가 10층을 초과하는 경우 10층 이하로 표시할 것을 권장 - 연립형의 경우 건축물 전체에 통일된 게시를 설치 권장 - 연립형의 경우 간판의 설치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제작할 것을 권장 - 문, 창문 또는 비상구의 자유로운 출입을 방해하여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을 권장 - 독립형 돌출간판의 규격은 가로80cm*세로70cm 이하



디자인 형태 및 규격	- 가로 · 세로 : 각각 1.2m 이내(게시틀 포함), 두께 : 0.3m 이내 - 세로 길이는 건물 1개 층 높이 이내로 표시 -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을 고려하여 건물 전체에 통일된 간판 게시틀을 설치 -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 돌출 폭, 두께, 가로폭 등을 동일 크기 - 동일 층수에 2개 이상의 업소가 표시할 경우 - 업소 수를 감안하여 균형 있게 배분하여 연립형으로 표시 - 모서리 커브형 및 박스형으로 설치 - 의료기관, 약국, 이 · 미용업소는 지름 0.3m 이내, 세로길이 0.7m 이내, 바깥쪽 끝부분 0.5m 미만으로 설치 - 간판의 규격은 가로 80cm(게시틀 포함 100cm) 세로 70cm 이하
색채 및 소재	- 간판이 설치되는 건축입면 재료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색채 및 재료를 선정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 - 간판의 재료는 환경친화적이고 내구성이 있는 재료의 사용을 권장 - 원색계열의 색상 과다사용은 지양 - 적색의 경우 전체의 50% 이상 사용은 규제할 것을 권장 - 크기, 색상, 서체 또는 디자인 등에 있어서 교통표지판을 흉내 내거나 모방하는 것을 지양 - ‘정지’, ‘주의’, ‘위험’ 또는 기타 단어, 문구, 기호의 사용을 지양하고 교통의 방해나 오해 및 혼동을 주는 요소의 표기를 지양
표기요소	- 간판이 설치되는 건축물 및 업소의 성격 등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서체를 선택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 - 광고물의 시인성과 인지성 높이기 위해 픽토그램의 사용 가능
조명	- 간판의 조명은 직접 광원 노출 조명방식은 지양하고, 부드러운 간접 조명방식을 권장 - 내부 조명방식 적용 시 문자나 도형의 부분 조명방식을 권장 - 점멸식 조명의 사용은 금지 - 조명의 광원을 직접 노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장
디자인 이미지	

3) 지주형

○ 연립형

일반사항	- 간판이 설치되는 건축물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 -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통일된 형태와 규격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 불필요한 요소를 규제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의 디자인을 규제하고 통합광고물로 조성할 것을 권장
설치 및 배치	- 보도 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이격하고 해당 건물 주출 입구 부근에 설치 - 간판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로 하며 1면의 면적은 3㎡ 이내로 해야 하며, 건물 및 가로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설치 - 광고물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거리 유지 - 단독 지주 이용광고물의 설치는 금지 - 연립가로형 광고물이 설치된 업소는 설치할 수 없음



지주형 광고물의 설치 및 배치

디자인 형태 및 규격	- 간판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특성과 주변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 설치 - 연립형의 경우 간판의 형태 및 스타일은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통일된 형태와 규격으로 설치 - 간판의 규격은 지면으로부터 5m 이내
-------------------	---

색채 및 소재	- 간판이 설치되는 건축 입면 재료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색채 및 재료를 선정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 - 간판의 재료는 환경친화적이고 내구성이 있는 재료의 사용을 권장 - 원색계열의 색상 과다사용은 지양 - 적색의 경우 전체의 50% 이상 사용은 규제할 것을 권장
표기요소	- 간판이 설치되는 건축물 및 업소의 성격 등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서체를 선택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 - 광고물의 시인성과 인지성 높이기 위해 픽토그램의 사용 가능 - 크기, 색상, 서체 또는 디자인 등에 있어서 교통표지판을 흉내 내거나 모방하는 것을 지양 - '정지', '주의', '위험' 또는 기타 단어, 문구, 기호의 사용을 지양하고 교통의 방해나 오해 및 혼동을 주는 요소의 표기를 지양
조명	- 간판의 조명은 직접 조명방식은 지양하고, 부드러운 간접 조명방식을 권장 - 내부 조명방식 적용 시 문자나 도형의 부분 조명방식을 권장 - 점멸식 조명의 사용은 지양 - 조명의 광원을 직접 노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장
디자인 이미지	

4) 기타(옥상광고 디지털광고, 창문이용광고)

○ 옥상광고

설치 및 배치	- 일반 옥상간판은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에 설치 가능 - 일반옥상 간판은 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 설치를 제한 - 철도역 · 공항 · 항망 · 버스터미널 · 트럭터미널, 시 · 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의 건물, 자기소유 건물의 자사광고 허용
---------------	---



디자인 형태 및 규격	- 가장 넓은 면 · 단면의 최대길이는 30m 이내, 총면적은 1,050㎡ 이내 높이는 15m 이내, 건물높이 의 1/2 이내(옥상 바닥부터) - 옥상간판간의 설치거리는 30~50m의 거리 유지 - 60미터 이상에 설치하는 경우 항공법에 따라 항공장애등을 설치 · 관리
색채 및 소재	- 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색채를 선정하고 전체적인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안정감이 있는 부드러운 색채 사용을 권장 - 재료는 환경 친화적이고 내구성이 있는 재료의 사용을 권장 - 원색계열 색상의 과다사용은 지양하며 강조색으로 국한하여 사용 - 적색 흑색의 경우 전체의 50% 이상 사용은 규제할 것을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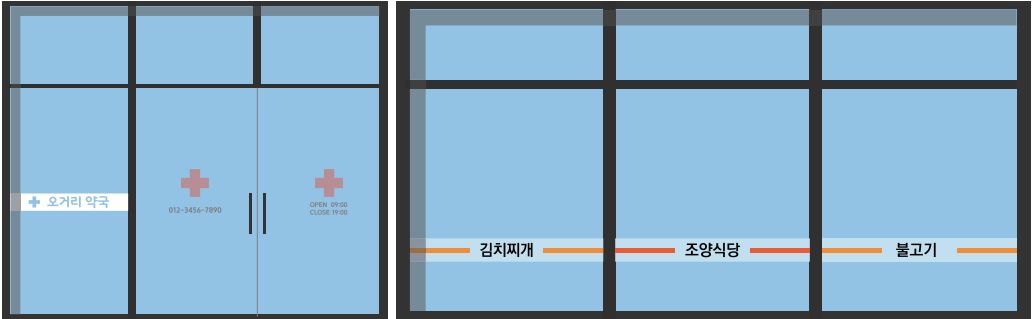
표기요소	- 간판이 설치되는 건축물 및 업소의 성격 등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서체를 선택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 - 문구는 가로쓰기를 권장
조명	- 점멸·영상의 변화가 있는 전광류 표시는 제한 -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심야에는 휘도를 낮추거나 덮개를 씌워 빛이 점멸하지 않게 하여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함 - 조명의 광원을 직접 노출시키지 않도록 할 것을 권장
디자인 이미지	

○ 디지털광고

설치 및 배치	- 주거환경의 침해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구역, 축사나 농작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은 설치 제한 -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장애를 주지 않고,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기준에 적합해야함 -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100 이상을 표출하여야 함
디자인 형태 및 규격	- 주거지역내 점멸방식의 네온사인, 동영상 형식의 광고물 표시 금지 - 전기배선, 전기기자재의 과다한 외부노출 제한
색채 및 소재	- 색상의 과다사용 및 복잡한 형태 변화 지양 -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소재 사용
표기요소	- 표기 요소의 복잡한 움직임 지양 - 불쾌감, 거부감을 주는 용어 지양 - 과다한 정보의 표기 지양
조명	-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심야에는 휘도를 낮추거나 덮개를 씌워 빛이 점멸하지 않게 하여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함

○ 창문이용광고

설치 및 배치	- 건물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시
디자인 형태 및 규격	- 유리벽 · 창문 등 부착면의 1/4 이내, 최대 1㎡ 이내 - 판이나 입체형은 2층 이하에 설치 - 도료, 천, 종이, 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한 설치는 3층 이하로 제한
조명	- 전광류 · 디지털 광고물은 1층에 설치



2.5.2 체크리스트

1) 체크리스트 작성

- 항목별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적용유무를 확인하고 피드백 할 수 있도록 권장
- 항목별 세부내용과 적용대상 구분은 세부가이드라인 내용 참조
- 체크리스트 작성시 부분적용, 미적용 항목에 대해서는 사유 기재

평가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사항없음

2) 체크리스트

○ 가로형 간판

소분류	세부항목	평가	권장	지양
공통사항	- 간판의 규격이 각 유형의 기준에 맞게 제작되었는가?		○	
	- 표기내용이 지나치게 표현되지 않았는가?			○
	- 과도한 색상으로 주위 경관을 저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
	- 설치위치 및 안전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	
	- 건축물의 표면과 조화로운가?		○	
	- 파손, 변색에 강한 재료로 계획되었는가?		○	
가로형	- 건물의 면적에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 간판 수량은 적합하게 설치되었는가?		○	
	- 보조문자가 과도하게 표기되지 않았는가?			○
	- 복잡한 표현을 지양하였는가?			○
	- 직접조명방식은 지양하고 간접조명방식으로 계획되었는가?		○	
돌출현	- 관련법에 맞는 규격으로 설치되었는가?		○	
	- 부착위치 및 크기가 통일되어 있는가?		○	
	- 시인성과 인지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는가?		○	
지주형	- 설치장소가 적절하게 위치되었는가?		○	
	- 규격이 적합하게 계획되었는가?		○	
	- 연립가로형 광고물과 중복되어 있지는 않은가?			○
기타	- 설치 형태 및 규격을 준수하여 계획되었는가?		○	
	- 과도한 조명의 사용을 자제하였는가?		○	
	- 문구는 가로쓰기로 표기되었는가?		○	

2.6 색채

1) 개요

(1) 필요성 및 목적

- 홍성군의 지역 특성과 개성을 반영한 고유한 경관요소가 포함된 경관색채의 정립필요
- 홍성군의 지역적 공간특성에 맞는 색채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한 통합된 이미지 구축

(2) 내용 및 방법

-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홍성군을 5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대표색채 및 공통적용색채 도출
- 역사·문화권역, 비즈니스·행정권역, 친환경 농촌·테마권역, 특화산업권역, 해안권역별 색채도출
- 건축물을 용도별(상업건물, 공동주택, 단독주택, 산업건축물, 기타 건축물) 분류
- 공공시설물 및 도시구조물 색채가이드라인 개발 및 활용방안 제시
- 본 가이드라인은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홍성군의 특성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함

(3) 연구범위

- 유형별 색채현황 및 분석
 - 건축물 용도별 (상업건물, 단독주택, 공동주택)색채
 - 공공시설물 색채
- 건축물 색채 세부지침
 - 공동 색채 : 주색, 보조색, 강조색
 - 권역별 건축물 : 역사·문화권역, 비즈니스·행정권역, 친환경 농촌·테마권역, 특화산업권역, 해안권역
 - 용도별 건축물 : 색채 배색방법 및 시뮬레이션
 - 용도별 공공시설물 : 색채 배색방법 및 시뮬레이션
- 건축물 소재색 가이드라인
 - 유형별 가이드라인
 - 지붕재료 및 권장색채
 - 벽체재료 및 권장색채
 - 공공시설물 재료 및 권장색채
- 색채 가이드라인 적용 방안 제시
 - 가이드라인 활용매뉴얼 및 컬러칩 제시
 - 체크리스트(공통), 주체별(관리자용, 민간인용) 2종

2) 기본방향

① 통합성(Integration)

- 상위계획 및 홍성군 색채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홍성군의 환경색채를 정립하여 통합성 유도

② 정체성(Identity)

- 홍성군의 자연환경, 인공환경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지역정체성 확립

③ 독창성(Originality)

- 홍성군의 도시/농촌, 문화, 산업에 대한 색채의 차별성 확보

④ 국제성(Globalization)

- 홍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토대로 한 환경색채이미지 제고로 국제화 시대 홍성군 위상정립

3) 색채현황조사 및 분석

(1) 권역별 색채현황 조사대상

○ 조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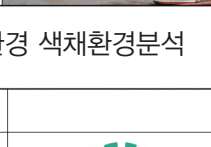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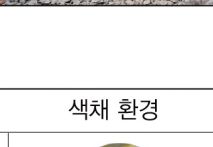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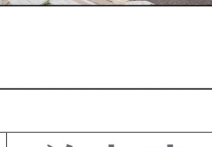
- 조사대상은 자연경관, 인문환경, 인공경관을 대상으로, 바다, 갯벌, 산, 토양, 초목, 역사문화건축물의 색채를 추출
- 자연환경은 역사문화, 자연자원, 주민의식 등 홍성군을 대표하는 상징이미지에 대한 색채도출
- 인공환경은 건축물의 지붕색, 벽체의 구조색과 보조색, 공공시설물 색채, 사인물의 색채를 도출

○ 조사방법

- 색채현황 조사방법은 샘플수집, 광경이미지조사, 컬러 메카라이브러리법, 한국표준색표집에 의한 시감측색을 사용
- 육안측색은 배경색, 대상물 색의 먼셀근사치 기록으로 색채를 추출하고 사용색을 도출
- 홍성군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주요 상징물에서 도출한 색채를 참고하여 색채범위를 포함
- 중경·원경은 컬러 메카라이브러리법으로 현장사진을 모자이크화하여 색채를 추출하여 사용색 범위를 도출
- 맑은 날 일출 3시간 후부터 일몰 전 3시간 사이에 실시

(2) 자연경관 색채현황 분석

- 역사·문화권역의 색채는 YR, Y계열의 중·저명도/중·저채도의 기초색이 추출되었으며, 산과 초목의 자연경관 색채는 GY, G계열의 고·중명도/중·저채도의 기초색이 추출
- 비즈니스·행정구역은 Y, GY, G계열의 중·저명도/저·중채도 범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나타내고 있으나 공동주택에 적용된 고채도의 입면색채로 시각적인 질서감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친환경농촌·테마권역의 산과 초목은 YR, GY, G계열의 고·중명도/채도 8 이하의 범위에 분포
- 특화산업권역은 YR, Y계열의 중명도, 중채도의 기초색이 추출되었으며, 공장에서 고채도 색채들이 나타나고 있어 주변환경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음
- 해안권역의 바다와 하늘은 B, PB계열의 고·중명도/채도 4 이하에 분포하며, 갯벌은 YR·Y의 고·중명도/채도 3 이하의 범위에 분포하여 회색빛 해안경관을 나타내고 있음

분류	색채현황			색채팔레트 추출		
역사·문화권역				5Y 2.5/1	7.5YR 3/2	10YR 4/2
				10YR 5/4	10YR 3/1	7.5YR 5.5/4
비즈니스·행정권역				8.1Y 7.4/0.6	6.8Y 6.7/0.5	5.9Y 5.9/0.5
				5GY 5/4	2.5Y 6/4	10YR 6/4
친환경농촌·테마권역				5GY 4/4	5GY 5/8	5GY 4/6
				2.5GY 6/6	10YR 5/4	10YR 6/4
특화·산업권역				2.5G 4/2	5GY 4/3	10Y 6/2
				2.5Y 5/4	10GY 5/2	2.5GY 5/6
해안권역				2.5Y 4/2	2.5Y 5/2	2.5Y 6/2
				7.5YR 5/2	10B 5/4	10B 6/4

• 인문환경 색채환경분석

분류	색채 환경			색채팔레트 추출	
인문·환경			美來路 홍성	10R 5/14	7.5G 6/10
				5PB 4/12	9.3Y 8/11

(3) 인공경관 색채현황 분석

- 건축물의 인공색채는 전반적으로 전색상 계열이 중 · 고 · 저명도, 중 · 고 · 저채도의 범위로 색상과 톤 범위가 다양하게 나타나 무질서한 경관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5개 권역별 건축물과 공공시설물은 색채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는 규제 필요
- 권역별 테마색은 옥외광고물과 시설물에 강조색으로 적용하여 권역별 차별화와 색채의 통일성과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

① 역사 · 문화권역

- 인공환경의 색채는 R~RP계열의 중·고명도/채도 10 이하의 특정한 색체계가 없는 다양한 색채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붕과 공공시설물의 경우 고채도의 다양한 색상계열에 분포되어 주변환경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음

분류	색채현황	색채팔레트 추출
일반 건축물 · 공공 건축물		2.5PB 4/4, 5G 4/4, 10B 5/6
		5R 6/8, 10B 8/4, 10B 6/6
		2.5YR 4/6, 5PB 6/1, 2.5GY 8/2
		5YR 3/1, 5R 8/1, 5YR 7/6
		5YR 4/4, 5GY 6/2, 2.5PB 8/2
가로 시설물		5YR 7/10, 10YR 9/1, 10B 5/10
		5BG 6/4, 5PB 7/2, 5YR 6/10
		5PB 6/1, 5G 7.5/4, 5YR 6/6
		2.5RP 5/2, 3.1GY 9.5/0.1, 5.7Y 4.5/0.4
사인물		2.5PB 4/10, 5PB 2/1, 2.5PB 6/8
		10R 5/10, 7.5BG 4/6, 7.1Y 9/1

② 비즈니스 · 행정권역

- 인공환경의 색채는 R, YR, Y, PB계열의 중 · 고명도/채도 14 이하의 집중적인 색채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동건축물의 경우 YR계열의 중 · 고명도/고채도의 특정한 색체계가 없이 산만한 도시이미지를 조성하고 있다.

분류	색채현황			색채팔레트 추출		
일반 건축물 · 공공 건축물				5YR 6.5/8	5Y 9/1	5YR 7/12
				5YR 8.5/2	2.5YR 5/2	2.5YR 7.5/2
				5PB 8/1	10YR 7.5/1	10YR 7/10
				5PB 7/1	7.5YR 3/5	10YR 7/5
				7.5YR 6/8	10YR 8/1	5GY 5.5/2
가로 시설물				5YR 5.5/2	10YR 7/12	2.5PB 3/8
				10R 3/10	10R 7/2	5YR 5/6
사인물				5PB 3/10	7.5R 5/14	7.5YR 2/2
				10YR 6.5/4	7.5YR 3/6	2.5Y 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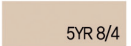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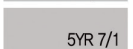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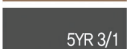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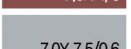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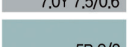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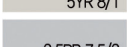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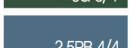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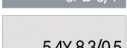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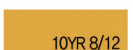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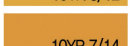
③ 친환경 농촌 · 테마권역

- 인공환경의 색채는 R,YR, Y계열의 중 · 고명도/채도 12 이하의 집중적인 색채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건축물의 지붕과 가로시설물의 경우 고채도의 색상계열에 분포되어 자연환경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분류	색채현황			색채팔레트 추출		
일반 건축물 · 공공 건축물				7.5YR 4/6	10B 6/8	10B 3/1
				2.5R 5/10	2.5R 4/2	7.5YR 5/10
				5YR 5/2	5R 6/4	10YR 7/1
				5YR 6/4	6.2Y 4.6/0.4	10YR 7.5/1
				7.5YR 6/12	10YR 8/6	10GY 5/10
가로 시설물				5BG 4/8	2.5G 9.5/4	2.5Y 7/10
				2.5Y 8.5/4	7.5GY 7/6	7.5YR 6/10
사인물				7.5YR 6/4	5P 8.5/4	10R 3/2
				10GY 3/2	5GY 7/4	2.5BG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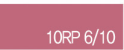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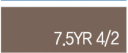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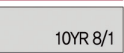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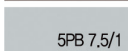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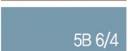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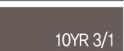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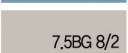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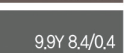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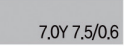
④ 특화산업권역

- 인공환경의 색채는 R,YR, Y, B, PB 계열의 중,고명도/채도 14 이하의 집중적인 색채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건축물의 지붕, 가로시설물, 사인물의 경우 고채도의 색상계열에 분포되어 주변환경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분류	색채현황			색채팔레트 추출		
일반 건축물 · 공공 건축물						
						
						
						
						
가로 시설물						
						
사인물						
						

⑤ 해안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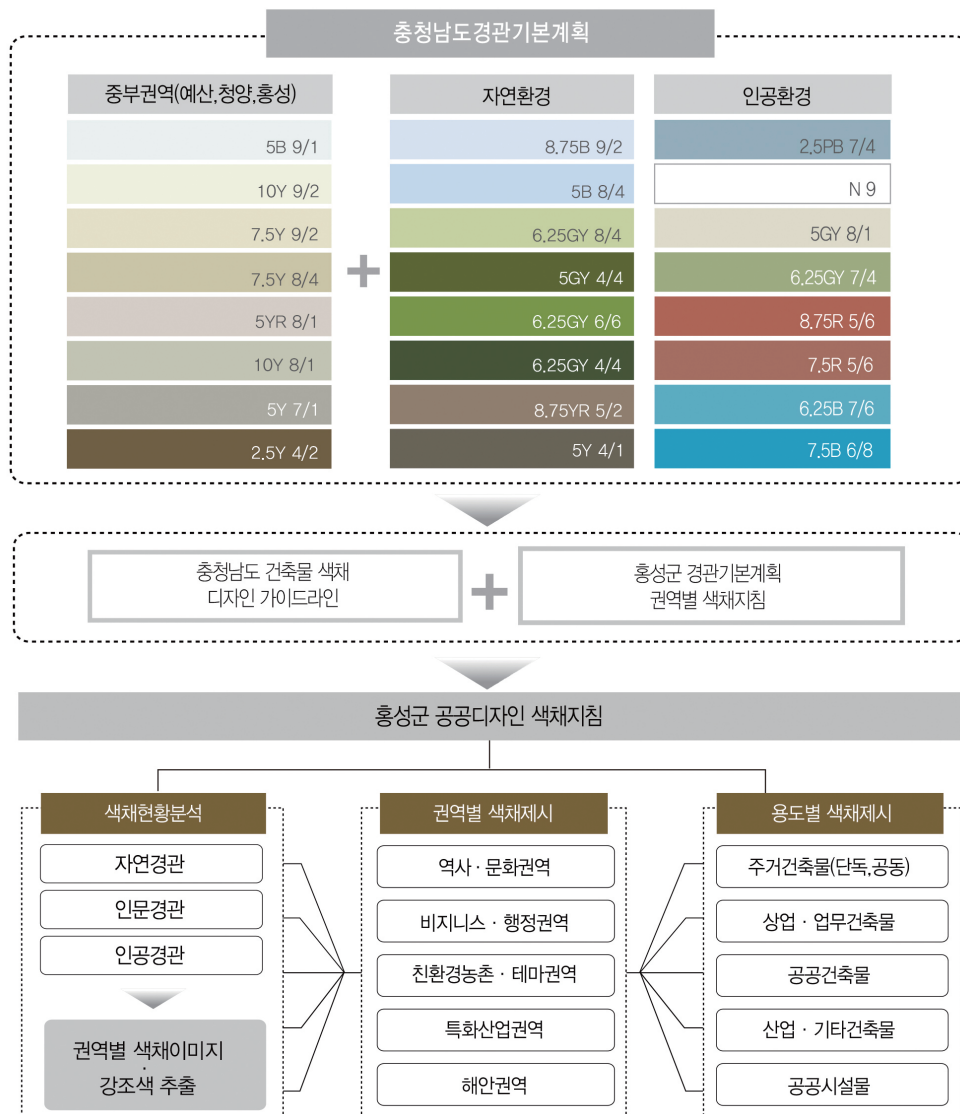
- 인공환경의 색채는 R,YR, Y, G, B, PB 계열의 중,고명도/채도 14 이하의 집중적인 색채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건축물의 지붕, 가로시설물, 사인물의 경우 고채도의 색상계열에 분포되어 서해안 해안경관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분류	색채현황			색채팔레트 추출		
일반 건축물 · 공공 건축물						
						
가로 시설물						
						
						
						
사인물						
						
						
						
						

2.6.1 색채가이드라인

1) 기본방향

- 본 가이드라인은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및 충청남도 공공디자인기본계획, 홍성군 경관계획을 토대로 권역별 특징에 맞는 지향 이미지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색채팔레트를 도출함
- 홍성군의 자연환경, 인공환경, 역사·문화환경의 색채조사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홍성군 공공디자인의 색채환경 조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
- 홍성군의 5개 권역별(역사·문화권역, 비즈니스·행정권역, 친환경 농촌·테마권역, 특화산업권역, 해안권역)의 테마색을 선정한 후 색채적용범위를 설정하고 배색방법과 색채적용 이미지를 제시
- 색채이미지를 권역별·용도별 적용할 수 있도록 색채가이드라인의 적용방안을 제시
- 색채표기는 한국표준색표집(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에 따라 먼셀기호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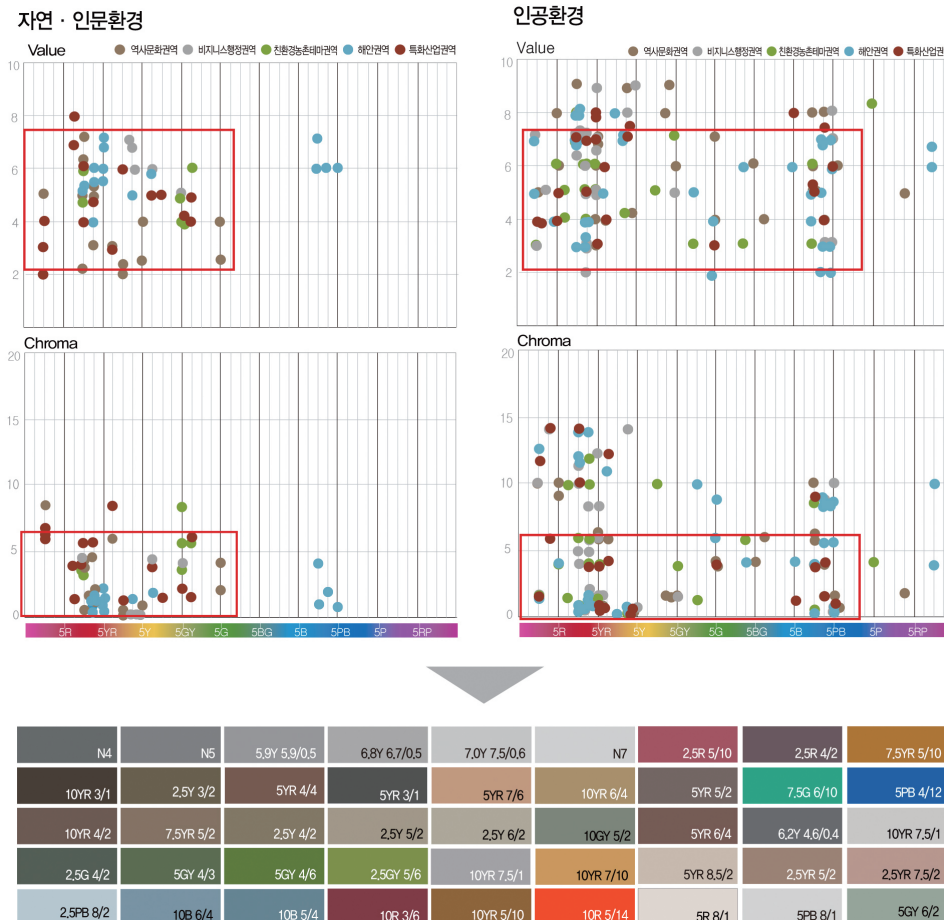
2) 기초색 범위 및 적용방향

○ 기초색 추출

- 홍성군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인공환경의 색채 조사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홍성군의 기초색을 추출
- 기초색은 홍성군 전체의 주를 이루는 색채로, 홍성군의 자연환경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의 범위로 선정
- 자연 · 인문환경의 기초색은 R, YR, Y, GY, B, PB 계열의 중·고명도/채도 5 이하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나타났다.
- 인공환경의 기초색은 중 · 고명도/채도 15 이하의 다양한 색채계열에 분포
- 추출된 기초색 범위 내에서 현황조사 및 지향이미지에 따른 색채특성을 반영하여 홍성군의 테마색을 추출하였다.
- 홍성군의 공통적용색은 자연환경 색채와 역사문화 색채를 분석하여 갯벌색을 선정
- 홍성군의 기초색은 Warm-gray 색채와 무채색을 포함

○ 기초색 적용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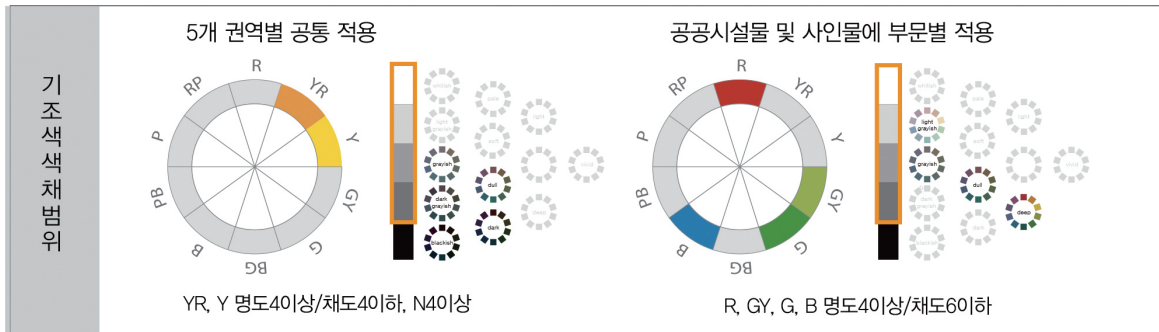
- 홍성군의 5개 권역별 이미지에 맞는 색채범위를 지정하여 기초색을 분류하고 홍성군의 전체 주거지, 상업, 업무, 산업을 중심으로 적용
- 홍성군의 기초색은 자연환경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나타내는 재료와 색채를 적용하여 권역별 지향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도록함
- 추출된 기초색 중 5개 권역별 테마색을 선정하여 가로시설물과 사인시스템에 적용하여 변화감을 추구



○ 기초색의 색채범위와 테마색

- 추출된 기초색은 권역별 건축물을 중심으로 적용하여 홍성군의 자연환경 특성과 조화하는 통합적 색채계획을 수립
- 5개 권역별 테마색을 선정하여 변화감 있는 색채이미지를 나타내고, 자연환경의 해안가 갯벌에서 추출된 색을 공통된 요소로 적용함으로써 권역별간 통일성과 연속성을 나타냄
- 권역별 경관특성에 따라 역사·문화권역은 「전통적인, 고풍스러운」 / 비즈니스·행정권역은 「현대적인, 세련된」 / 친환경농촌·테마권역은 「자연적인, 친근한」 / 해안권역은 「개방적인, 은은한」 / 특화·산업권역은 「역동적인, 경쾌한」 지향이미지를 선정하여 색채이미지 연출

대표 기 조 색	N4	N5	5.9Y 5.9/0.5	6.8Y 6.7/0.5	7.0Y 7.5/0.5	N7
	10YR 3/1	2.5Y 3/2	10R 3/6	10YR 6/2	10YR 5/4	10YR 6/4
	10YR 4/2	7.5YR 5/2	2.5Y 4/2	2.5Y 5/2	2.5Y 6/2	10GY 5/2
	2.5G 4/2	5GY 4/3	5GY 4/6	2.5GY 5/6	10B 6/4	10B 5/4



테 마 색	역사·문화권역 (전통적인, 고풍스러운) 10YR 4/2	비즈니스·행정권역 (현대적인, 세련된) 7.0Y 7.5/0.5	친환경농촌·테마권역 (자연적인, 친근한) 5GY 4/6	특화·산업권역 (역동적인, 경쾌한) 10R 3/6	해안권역 (개방적인, 은은한) 10B 6/4
-------------	---	---	---	--	---



공 통 적 용 색	2.5Y 6/2 갯벌색 N4
-----------------------	---

3) 권역별 색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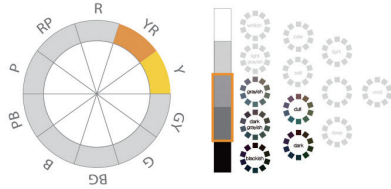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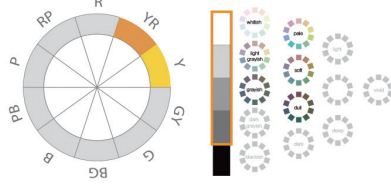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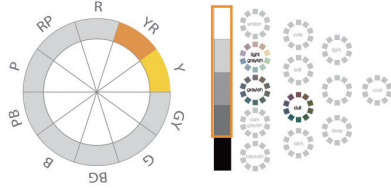
- 홍성군의 권역별 색채계획은 홍성군 경관계획의 상위개념에 준거하여 지향이미지 선정
- 홍성군의 권역별 지향이미지를 나타내는 테마색은 공공시설물의 강조색으로 적용
- 용도별 색채계획은 유효색채범위를 설정하고 색채적용 방안 제시
- 선정된 색채는 한국표준색표집(산업자원부 기술 표준원)에 따라 먼셀기호로 표준화하여 제시

권역별 분류	용도별 분류		명도범위			채도범위			색상범위	
			지붕	주조색	보조색	지붕	주조색	보조색	지붕	주조색 · 보조색
역사 · 문화권역 (전통적인, 고풍스러운) 10YR 4/2	주거건축물	단독	3~5	40상	40상	40이하	40이하	40이하	YR, Y, N계열	YR, Y, N계열
		공동	3~5	40상	40상	40이하	40이하	40이하	YR, Y, N계열	YR, Y, N계열
	상업 · 업무건축물		3~5	40상	40상	40이하	40이하	60이하	YR, Y	YR, Y, N계열
	공공건축물		3~5	40상	40상	40이하	40이하	40이하	Y, N계열	YR, Y, N계열
	산업 · 기타 건축물		3~5	40상	40상	40이하	40이하	40이하	Y, N계열	YR, Y, N계열
	공공시설물			5~4	5~4		20이하	20이하		10YR, Y, N계열
비즈니스 · 행정권역 (현대적인, 세련된) 7.0Y 7.5/0.5	주거건축물	단독	3~5	50상	50상	20이하	40이하	40이하	YR, Y, N계열	전색상계열, N계열
		공동	3~5	50상	50상	20이하	40이하	40이하	YR, Y, N계열	전색상계열, N계열
	상업 · 업무건축물		3~5	50상	50상	20이하	40이하	60이하	YR, Y	전색상계열, N계열
	공공건축물		3~5	50상	50상	20이하	40이하	40이하	Y, N계열	YR, Y, N계열
	산업 · 기타 건축물		3~5	50상	50상	20이하	40이하	40이하	YR, Y, N계열	YR, Y, N계열
	공공시설물			40상	40상		20이하	20이하		Y, N계열
친환경농촌 · 테마권역 (자연적인, 친근한) 2.5GY 6/6	주거건축물	단독	3~4	40상	40상	40이하	40이하	40이하	YR, Y	YR, Y, N계열
		공동	3~4	40상	40상	40이하	40이하	60이하	YR, Y, N계열	YR, Y, N계열
	상업 · 업무건축물		3~4	40상	40상	40이하	40이하	60이하	YR, Y	YR, Y, N계열
	공공건축물		3~4	40상	40상	20이하	40이하	40이하	Y, N계열	YR, Y, N계열
	산업 · 기타 건축물		3~4	40상	40상	40이하	40이하	40이하	Y, N계열	YR, Y, N계열
	공공시설물			4~6	4~6		100이하	100이하		YR, Y, GY, N계열
특화산업권역 (역동적인, 경쾌한) 10R 3/6	주거건축물	단독	3~5	50상	50상	20이하	40이하	40이하	YR, Y, N계열	YR, Y, N계열
		공동	3~5	50상	50상	20이하	40이하	40이하	YR, Y, N계열	YR, Y, N계열
	상업 · 업무건축물		3~5	50상	50상	20이하	40이하	40이하	YR, Y	YR, Y, GY, BG, PB, N계열
	공공건축물		3~5	50상	50상	20이하	40이하	40이하	YR, Y, N계열	YR, Y, GY, BG, PB, N계열
	산업 · 기타 건축물		3~5	50상	50상	20이하	40이하	40이하	YR, N계열	YR, Y, GY, BG, PB, N계열
	공공시설물			3~7	3~7		60이하	60이하		R, Y, GY, G, N계열
해안권역 (개방적인, 은은한) 10B 6/4	주거건축물	단독	3~5	40상	40상	40이하	40이하	40이하	YR, Y, N계열	전색상계열, N계열
		공동	3~5	40상	40상	40이하	40이하	40이하	YR, Y, N계열	전색상계열, N계열
	상업 · 업무건축물		3~5	40상	40상	40이하	40이하	60이하	Y, N계열	전색상계열, N계열
	공공건축물		3~5	40상	40상	20이하	40이하	40이하	Y, N계열	YR, Y, N계열
	산업 · 기타 건축물		3~5	40상	40상	40이하	40이하	40이하	YR, N계열	YR, Y, N계열
	공공시설물			3~6	3~6		40이하	40이하		10B, Y, N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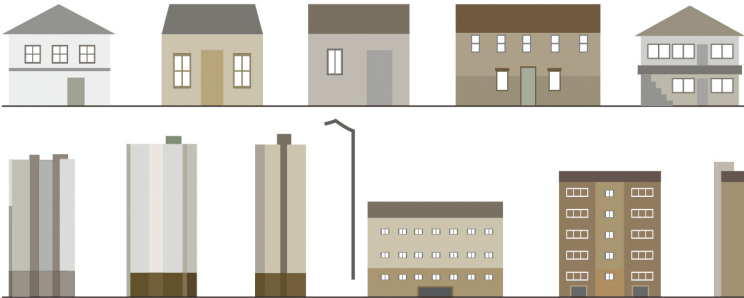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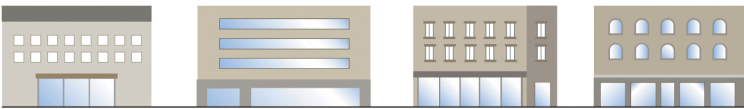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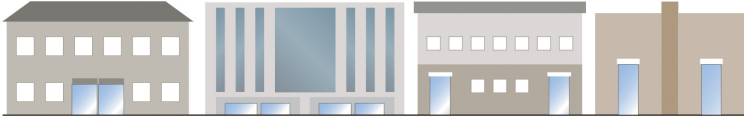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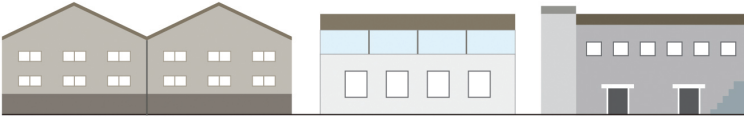
4) 권역별 적용지침

① 역사·문화권역

- 지향이미지 : 전통적인, 고풍스러운
- 지붕색은 YR, Y계열 명도 6 이하 채도 4 이하, 무채색을 권장
- 주조색은 YR, Y, 무채색 계열내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벽체색은 채도 4 이하 권장
- 보조색은 YR, Y, 무채색 계열내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좁은 외벽면에는 채도 6 이하 권장
- 공공시설물색은 지역 특색 및 권역별 지향이미지에 따라 개성있게 적용
- 재료는 친환경 석재와 목재를 권장하며, 지붕의 경우 자연소재의 경사지붕 권장

	색채범위	권장색 예시															
지붕색	YR, Y계열 명도3~5/채도40이하, N40이하 	<table> <tr> <td>5Y 5/1</td><td>5Y 4/1</td><td>5Y 3/1</td></tr> <tr> <td>2.5Y 5/2</td><td>2.5Y 4/2</td><td>2.5Y 3/2</td></tr> <tr> <td>10YR 4/2</td><td>10YR 4/4</td><td>10YR 3/2</td></tr> </table>	5Y 5/1	5Y 4/1	5Y 3/1	2.5Y 5/2	2.5Y 4/2	2.5Y 3/2	10YR 4/2	10YR 4/4	10YR 3/2						
5Y 5/1	5Y 4/1	5Y 3/1															
2.5Y 5/2	2.5Y 4/2	2.5Y 3/2															
10YR 4/2	10YR 4/4	10YR 3/2															
벽체색	주조색 : YR, Y계열 명도40이상/채도40이하, N계열 보조색 : YR, Y계열 명도40이상/채도60이하 	<table> <tr> <td>3.5Y 9.3/0.6</td><td>3.2Y 9.3/1.5</td><td>1.8Y 8.7/1.5</td></tr> <tr> <td>9.8YR 8.6/1.0</td><td>9.8YR 8.0/1.1</td><td>9.6YR 7.6/1.5</td></tr> <tr> <td>1.8Y 8.1/3.2</td><td>3.2Y 7.8/1.4</td><td>8.1Y 7.4/0.6</td></tr> <tr> <td>2.6Y 7.0/1.3</td><td>1.6Y 5.6/1.1</td><td>1.2Y 4.0/0.8</td></tr> <tr> <td>1.2Y 7.4/3.8</td><td>0.5Y 6.0/3.5</td><td>9.6YR 5.3/2.6</td></tr> </table>	3.5Y 9.3/0.6	3.2Y 9.3/1.5	1.8Y 8.7/1.5	9.8YR 8.6/1.0	9.8YR 8.0/1.1	9.6YR 7.6/1.5	1.8Y 8.1/3.2	3.2Y 7.8/1.4	8.1Y 7.4/0.6	2.6Y 7.0/1.3	1.6Y 5.6/1.1	1.2Y 4.0/0.8	1.2Y 7.4/3.8	0.5Y 6.0/3.5	9.6YR 5.3/2.6
3.5Y 9.3/0.6	3.2Y 9.3/1.5	1.8Y 8.7/1.5															
9.8YR 8.6/1.0	9.8YR 8.0/1.1	9.6YR 7.6/1.5															
1.8Y 8.1/3.2	3.2Y 7.8/1.4	8.1Y 7.4/0.6															
2.6Y 7.0/1.3	1.6Y 5.6/1.1	1.2Y 4.0/0.8															
1.2Y 7.4/3.8	0.5Y 6.0/3.5	9.6YR 5.3/2.6															
공공시설물색	· 공통 : N계열, Y 명도4~6 / 채도20이하, 목재, 석재 등 자연재질 · YR, Y 명도 4~6/ 채도20이하, N계열 	<table> <tr> <td>N4</td><td>6.8Y 6.7/0.5</td><td>5.9Y 5.9/0.5</td></tr> <tr> <td>2.5Y 6/2</td><td>2.5Y 5/2</td><td>2.5Y 4/2</td></tr> <tr> <td>10YR 6/2</td><td>10YR 5/2</td><td>10YR 4/2</td></tr> </table>	N4	6.8Y 6.7/0.5	5.9Y 5.9/0.5	2.5Y 6/2	2.5Y 5/2	2.5Y 4/2	10YR 6/2	10YR 5/2	10YR 4/2						
N4	6.8Y 6.7/0.5	5.9Y 5.9/0.5															
2.5Y 6/2	2.5Y 5/2	2.5Y 4/2															
10YR 6/2	10YR 5/2	10YR 4/2															
배색예시	· 건축물  ·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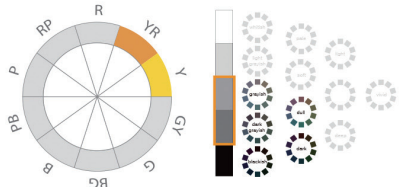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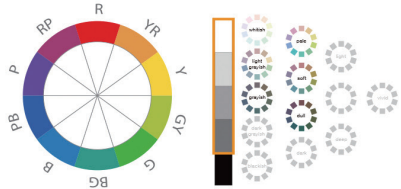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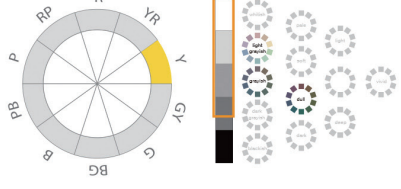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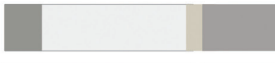
○ 용도별 적용지침

주거건축물	색채 범위	단독 주택	· 지붕색 : 재료색 권장, N4 이하, YR · Y 명도3~5 / 채도40이하 · 벽체색 : 재료색 권장, YR · Y 명도40이상 / 채도40이하, N계열
		공동 주택	· 지붕색 : 재료색 권장, N4 이하, YR · Y 명도3~5 / 채도40이하 · 벽체색 : 재료색 권장, YR · Y 명도40이상 / 채도40이하, N계열
	배색 예시		
상업·업무 건축물	색채 범위	· 지붕색 : YR, Y 명도3~5 / 채도40이하 · 벽체색 : YR, Y 명도40이상 / 채도60이하, N계열	
	배색 예시		
공공건축물	색채 범위	· 지붕색 : N4이하, Y 명도 3~5 / 채도20이하 · 벽체색 : YR, Y 명도40이상 / 채도40이하, N계열	
	배색 예시		
산업·기타 건축물	색채 범위	· 지붕색 : N50이하, Y 명도3~5 / 채도40이하 · 벽체색 : YR, Y 명도40이상 / 채도40이하, 무채색	
	배색 예시		
공공시설물	색채 범위	· 석재, 목재 등 자연재질 권장 · N계열, 10YR 명도5~4 / 채도20이하	
	배색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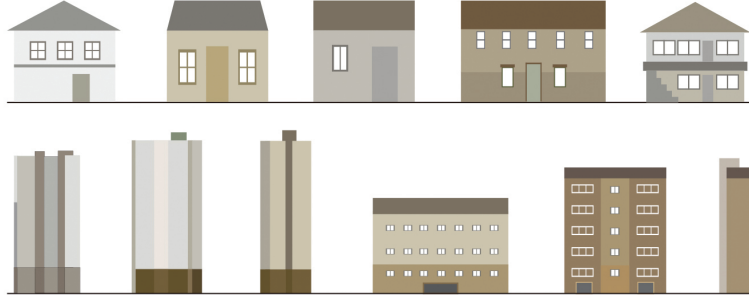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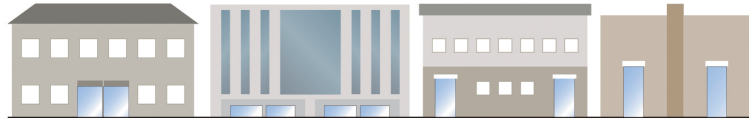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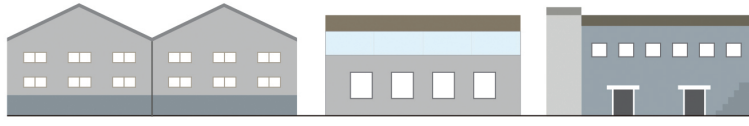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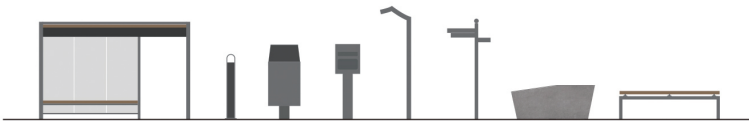
② 비즈니스 · 행정권역

• 지향이미지 : 현대적인, 세련된

- 지붕색은 YR, Y계열 명도 6 이하 채도 4 이하, 무채색 권장
- 주조색은 전색상계열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벽체색은 채도 4 이하 권장
- 보조색은 전색상계열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좁은 외벽면에는 채도 6 이하 권장
- 공공시설물색은 지역 특색 및 권역별 지향이미지에 따라 개성있게 적용
- 재료색은 착색하여 제시하고 있는 적용 색채 규정을 준수

색채범위		권장색 예시		
지붕색	YR, Y계열 3~5/채도2이하, N4이하 	5Y 5/1	5Y 4/1	5Y 3/1
		2.5Y 5/2	2.5Y 4/2	2.5Y 3/2
		10YR 5/1	10YR 4/1	N4
벽체색	주조색 : 전색상계열 명도5이상/채도4이하, N계열 보조색 : 전색상계열 명도5이상/채도6이하 	5.9Y 8.9/0.5	8.7Y 8.9/0.1	7.9Y 7.8/0.5
		3.0Y 8.7/1.4	4.0Y 7.9/1.1	2.6Y 7.0/1.3
		6.6B 7.8/0.4	8.2B 7.3/0.6	6.0G 7.4/0.4
		7.3Y 6.7/0.5	8.6B 6.6/0.5	2.4PB 6.7/2.1
		9.7YR 6.9/2.3	4.8RP 7.0/1.0	3.7RP 6.1/1.0
공공시설물색	· 공통 : N계열, Y 명도4~6 / 채도2이하, 석재, 투명재질 · Y 명도 5이상/ 채도1이하 	N4	6.8Y 6.7/0.5	5.9Y 5.9/0.5
		2.5Y 6/2	2.5Y 5/2	2.5Y 4/2
		6.2Y 7.8/0.5	7.0Y 7.5/0.6	5.3Y 2.5/0.5
배색예시	· 건축물			
	·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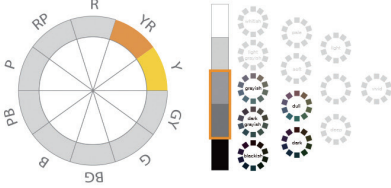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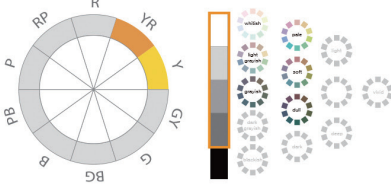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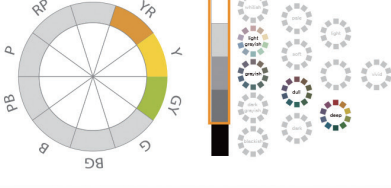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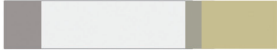
○ 용도별 적용지침

주거건축물	색채 범위	단독 주택 · 지붕색 : 재료색 권장, N4 이하, YR · Y 명도3~5 / 채도40이하 · 벽체색 : 재료색 권장, YR · Y 명도40이상 / 채도40이하, N계열 공동 주택 · 지붕색 : 재료색 권장, N4 이하, YR · Y 명도3~5 / 채도40이하 · 벽체색 : 재료색 권장, YR · Y 명도40이상 / 채도40이하, N계열
	배색 예시	
상업·업무건축물	색채 범위	· 지붕색 : YR, Y 명도3~5 / 채도40이하 · 벽체색 : YR, Y 명도40이상 / 채도60이하, N계열
	배색 예시	
공공건축물	색채 범위	· 지붕색 : N4이하, Y 명도 3~5 / 채도20이하 · 벽체색 : YR, Y 명도40이상 / 채도40이하, N계열
	배색 예시	
산업·기타건축물	색채 범위	· 지붕색 : N5이하, Y 명도3~5 / 채도40이하 · 벽체색 : YR, Y 명도40이상 / 채도40이하, 무채색
	배색 예시	
공공시설물	색채 범위	· 석재, 목재 등 자연재질 권장 · N계열, 10YR 명도5~4 / 채도20이하
	배색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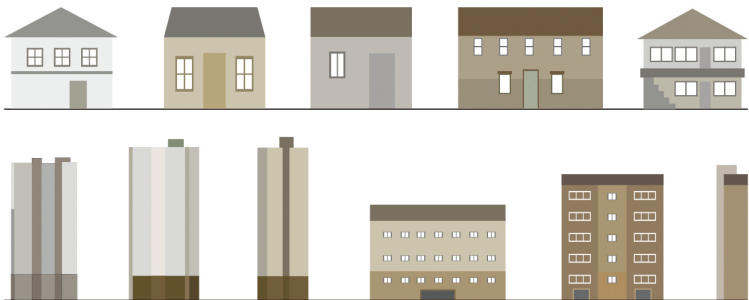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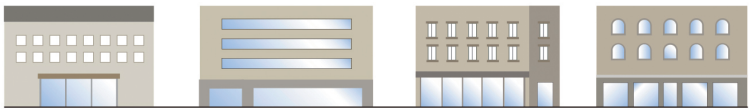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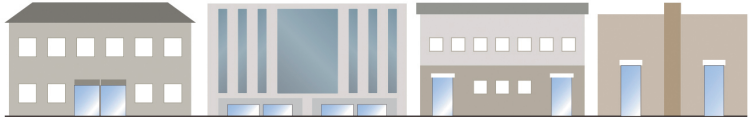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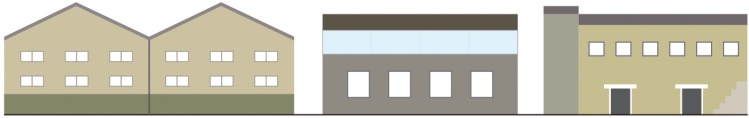
③ 친환경 농촌 · 테마권역

• 지향이미지 : 자연적인, 친근한

- 지붕색은 YR, Y계열 명도 6 이하 채도 4 이하, 무채색 권장
- 주조색은 YR, Y, 무채색 계열내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벽체색은 채도 4 이하 권장
- 보조색은 YR, Y, 무채색 계열내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좁은 외벽면에는 채도 6 이하 권장
- 공공시설물색은 지역 특색 및 권역별 지향이미지에 따라 개성있게 적용
- 재료는 친환경 석재와 목재를 권장하며, 지붕의 경우 자연소재의 경사지붕 권장

색채범위		권장색 예시		
지붕색	YR, Y계열 명도3~4/채도5이하 	10YR 4/1	10YR 4/2	10YR 4/4
		10YR 3/1	10YR 3/2	10YR 3/4
		2.5Y 4/2	2.5Y 4/4	2.5Y 4/5
벽체색	주조색 : YR, Y계열 명도4이상/채도4이하, N계열 보조색 : YR, Y계열 명도4이상/채도6이하 	4.9Y 9.5/0.2	2.9Y 8.5/1.6	2.2Y 8.6/2.4
		1.0Y 8.6/1.0	3.1Y 8.4/1.4	6.4Y 8.3/1.2
		7.0YR 7.4/2.3	1.5GY 7.9/1.1	10Y 6.9/1.6
		2.6Y 7.0/1.3	1.6Y 5.6/1.1	1.2Y 4.0/0.8
		6.8Y 6.2/1.7	3.7Y 6.7/1.9	1.2Y 7.4/3.8
공공시설물색	· 공통 : N계열, Y 명도4~6 / 채도2이하, 목재, 석재 등 자연재질 · YR, GY 명도 4~5/ 채도 10이하 	N4	6.8Y 6.7/0.5	5.9Y 5.9/0.5
		2.5Y 6/2	2.5Y 5/2	2.5Y 4/2
		2.5GY 5/6	5GY 4/6	10YR 5/10
배색예시	· 건축물 ·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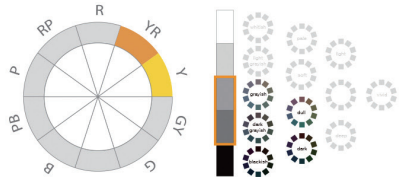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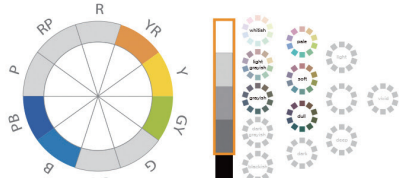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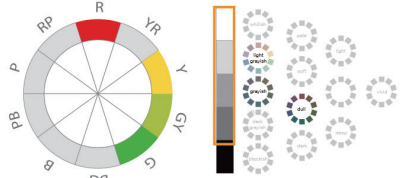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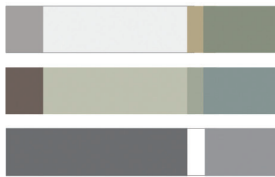
○ 용도별 적용지침

주거건축물	색채 범위	단독 주택	· 지붕색 : 재료색 권장, N4 이하, YR · Y 명도3~5 / 채도40이하 · 벽체색 : 재료색 권장, YR · Y 명도40이상 / 채도40이하, N계열
		공동 주택	· 지붕색 : 재료색 권장, N4 이하, YR · Y 명도3~5 / 채도40이하 · 벽체색 : 재료색 권장, YR · Y 명도40이상 / 채도40이하, N계열
	배색 예시		
상업·업무 건축물	색채 범위	· 지붕색 : YR, Y 명도3~5 / 채도40이하 · 벽체색 : YR, Y 명도40이상 / 채도60이하, N계열	
	배색 예시		
공공건축물	색채 범위	· 지붕색 : N4이하, Y 명도 3~5 / 채도20이하 · 벽체색 : YR, Y 명도40이상 / 채도40이하, N계열	
	배색 예시		
산업·기타 건축물	색채 범위	· 지붕색 : N50이하, Y 명도3~5 / 채도40이하 · 벽체색 : YR, Y 명도40이상 / 채도40이하, 무채색	
	배색 예시		
공공시설물	색채 범위	· 석재, 목재 등 자연재질 권장 · N계열, 10YR 명도5~4 / 채도20이하	
	배색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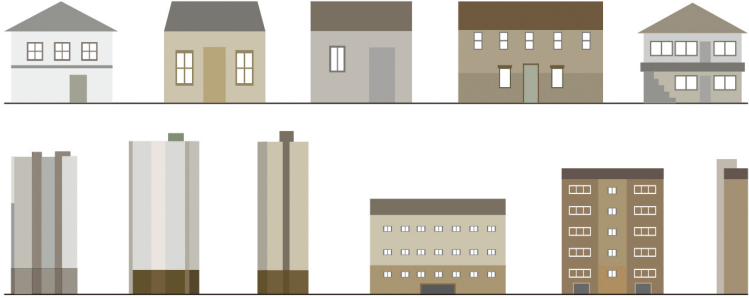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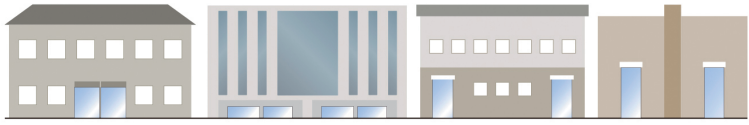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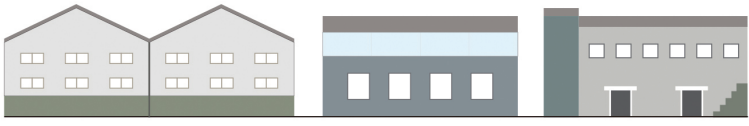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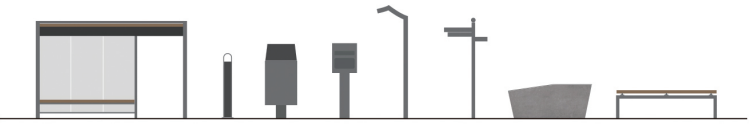
④ 특화 · 산업권역

• 지향이미지 : 역동적인, 경쾌한

- 지붕색은 YR, Y 계열 명도 5 이하 채도 4 이하, 무채색 권장
- 특화권역은 YR, Y, GY 계열 범위, 산업권역은 GY, B, PB 계열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
- 주조색은 명도 5 이상 채도 2 이하, 보조색은 명도 5 이상, 채도 4 이하 권장
- 공공시설물색은 지역 특색 및 권역별 지향이미지에 따라 개성있게 적용
- 재료는 친환경 석재와 목재를 권장하며, 지붕의 경우 자연소재의 경사지붕 권장

색채범위		권장색 예시		
지붕색	· YR, Y 계열 명도3~5 / 채도2이하, N4이하 	10YR 5/1	10YR 5/2	2.5Y 5/2
		10YR 4/1	10YR 4/2	2.5Y 4/2
		10YR 3/1	10YR 3/2	2.5Y 3/2
벽체색	· 주조색 : YR, Y, GY, BG, PB 명도5이상 / 채도2이하 N계열 · 보조색 : YR, Y, GY, BG, PB 명도5이상 / 채도4이하 	7.4Y 8.4/0.6	3.5Y 7.9/1.1	2.5Y 7.0/1.3
		1.5GY 7.9/1.1	7.0Y 7.8/2.0	2.9Y 8.5/1.6
		9.7YR 8.4/1.5	1.5GY 7.9/1.1	9.6YR 7.6/1.5
		1.1GY 6.2/1.0	0.8G 6.2/0.7	1.8Y 6.2/1.2
		3.5BG 6.2/0.8	3.6PB 6.0/1.3	9.0GY 6.1/1.4
공공시설물색	· 공통 : N계열, Y 명도4~6 / 채도2이하 · 특화 : R 명도 3이하 / 채도6이하 · 산업 : GY, G 명도4~5 / 채도2이하 	N4	6.8Y 6.7/0.5	5.9Y 5.9/0.5
		2.5Y 6/2	2.5Y 5/2	2.5Y 4/2
		10R 3/6	10GY 5/2	2.5G 4/2
배색예시	·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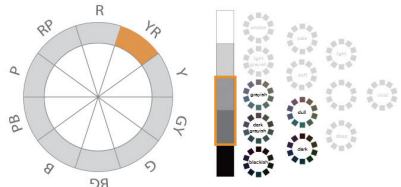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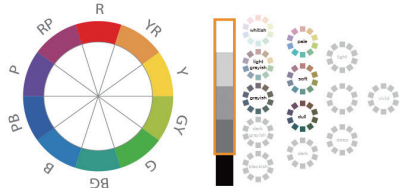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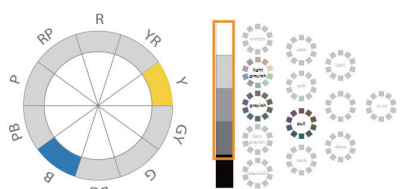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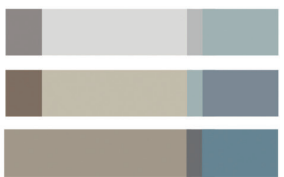
○ 용도별 적용지침

주거건축물	색채 범위	· 지붕색 : 재료색 권장, N4 이하, YR · Y 명도3~5 / 채도40이하 · 벽체색 : 재료색 권장, YR · Y 명도40이상 / 채도40이하, N계열
	배색 예시	
상업·업무건축물	색채 범위	· 지붕색 : YR, Y 명도3~5 / 채도40이하 · 벽체색 : YR, Y 명도40이상 / 채도60이하, N계열
	배색 예시	
공공건축물	색채 범위	· 지붕색 : N4이하, Y 명도 3~5 / 채도20이하 · 벽체색 : YR, Y 명도40이상 / 채도40이하, N계열
	배색 예시	
산업·기타건축물	색채 범위	· 지붕색 : N5이하, Y 명도3~5 / 채도40이하 · 벽체색 : YR, Y 명도40이상 / 채도40이하, 무채색
	배색 예시	
공공시설물	색채 범위	· 석재, 목재 등 자연재질 권장 · N계열, 10YR 명도5~4 / 채도20이하
	배색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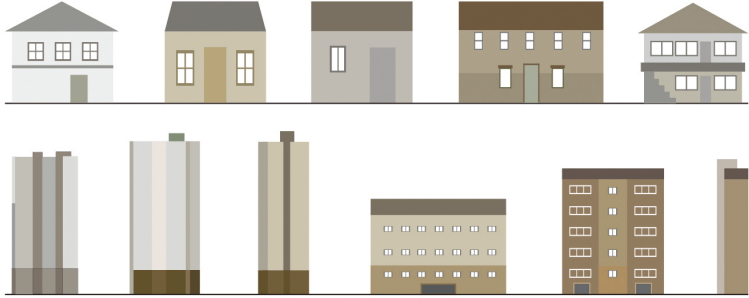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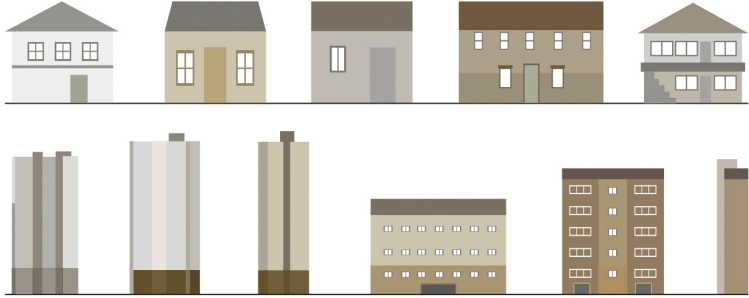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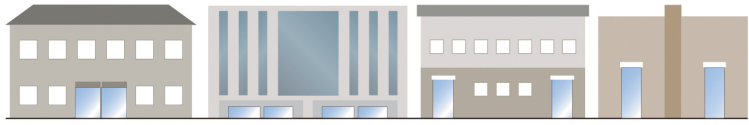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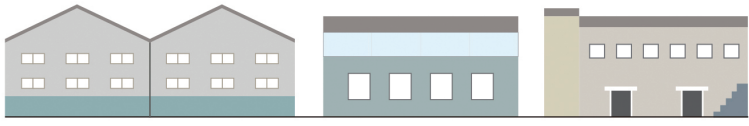
⑤ 해안권역

• 지향이미지 : 은은한, 개방적인

- 지붕색은 YR,계열 명도 5 이하 채도 4 이하, 무채색 권장
- 주조색은 전색상계열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넓은 외벽면의 벽체색은 채도 4 이하 권장
- 보조색은 전색상계열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좁은 외벽면에는 채도 6 이하 권장
- 공공시설물색은 지역 특색 및 권역별 지향이미지에 따라 개성있게 적용
- 재료는 친환경 석재와 목재를 권장하며, 지붕의 경우 자연소재의 경사지붕 권장

색채범위		권장색 예시		
지붕색	· YR, Y계열 명도3~5 / 채도4 이하, N4이하 	10YR 5/1	10YR 5/2	10YR 5/4
		10YR 4/1	10YR 4/2	10YR 4/4
		10YR 3/1	10YR 3/2	10YR 3/4
벽체색	· 주조색 : 전색상계열 명도4이상 / 채도4이하, N계열 · 보조색 : 전색상계열 명도4이상 / 채도6이하 	7.1Y 9.3/0.7	7.4Y 8.7/0.5	6.2Y 7.8/0.5
		3.0Y 8.7/1.4	4.0Y 7.9/1.1	2.6Y 7.0/1.3
		1.5Y 8.3/1.3	2.0Y 7.8/1.2	9.7YR 6.9/2.2
		8.1Y 8.0/2.4	1.8Y 8.1/3.2	0.4GY 7.8/1.8
		0.7G 7.8/0.7	3.6B 7.8/0.9	2.4PB 6.7/2.1
공공시설물색	· 공통 : N계열, Y 명도4~6 / 채도2이하 · B 명도4~6 / 채도4이하 	N4	6.8Y 6.7/0.5	5.9Y 5.9/0.5
		2.5Y 6/2	2.5Y 5/2	2.5Y 4/2
		10B 6/4	10B 5/4	10B 4/4
배색예시	· 건축물 			
				
				

○ 용도별 적용지침

주거건축물	색채 범위	· 지붕색 : 재료색 권장, N4 이하, YR · Y 명도3~5 / 채도40이하 · 벽체색 : 재료색 권장, YR · Y 명도40이상 / 채도40이하, N계열
	배색 예시	
	배색 예시	
상업·업무 건축물	색채 범위	· 지붕색 : YR, Y 명도3~5 / 채도40이하 · 벽체색 : YR, Y 명도40이상 / 채도60이하, N계열
	배색 예시	
공공건축물	색채 범위	· 지붕색 : N4이하, Y 명도 3~5 / 채도20이하 · 벽체색 : YR, Y 명도40이상 / 채도40이하, N계열
	배색 예시	
산업·기타 건축물	색채 범위	· 지붕색 : N5이하, Y 명도3~5 / 채도40이하 · 벽체색 : YR, Y 명도40이상 / 채도40이하, 무채색
	배색 예시	
공공시설물	색채 범위	· 석재, 목재 등 자연재질 권장 · N계열, 10YR 명도5~4 / 채도20이하
	배색 예시	

2.6.2 건축재료 및 권장색채 가이드라인

1) 기본방향

- 권장재료 및 재료색 가이드라인은 상위계획인 「충청남도 건축물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권장재료 및 재료색의 색채범위 제시
- 건축재료는 마감재료의 특성에 따라 적용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지붕, 벽체, 바닥포장, 시설물 등은 제시된 색채범위 안에서 재료 및 색채를 선택하도록 권장

용도별	요소별	내 용
주거건축물	단 독	지붕 ● 경사지붕에는 권역별 지붕색채와 어울리는 평기와 또는 금속기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미관을 저해하는 고채도의 색채는 지양한다. ● 아연계 강판, 스틸, 동기와 등의 자재 사용을 권장한다.
		외벽 ● 석재, 목재, 벽돌 등 친환경 재료를 권장한다. ● 외벽에 금속패널, 도장과 같은 인공재료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붕색채와 유사한 톤으로 적용한다.
	공 동	지붕 ● 경사지붕에는 평기와 또는 금속기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아연계 강판, 스틸, 동기와 등의 자재 사용을 권장한다.
		외벽 ● 유리색은 입면의 70% 이상 차지할 경우 고채도의 유리색 사용을 금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색채를 선정하여 사용한다. ● 저층부는 다양한 재료와 색채로 변화감을 연출하고, 중층부와 상층부와의 조화로우움을 조성한다.
상업 및 업무 건축물	외벽	● 석재, 목재, 유리와 같은 재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 유리색은 입면의 70% 이상 차지할 경우 반사율을 10% 이하로 낮추고 금속패널과 그 외의 재료는 채도 30이하의 저채도의 색으로 마감한다.
공공건축물	외벽	● 건축물의 성격과 특성에 어울리는 석재, 목재, 유리와 같은 자연재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 지역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재료를 적용하되 공공성을 해치는 이질적인 재료는 지양한다.
산업 및 기타 건축물	지붕	◎ 주변경관을 저해는 고채도의 재료는 지양한다. ● 자연소재 사용을 권장하며, 인공소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채도 30이하의 저채도의 소재를 적용한다.
	외벽	● 외장재 사용은 유리를 포함한 3종류 이내의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 전면도로에서 축벽이 인지되는 경우 전면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한다. ●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할 경우 저층부에는 석재, 목재, 돌 등의 자연소재를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건축물의 고급스러움을 연출한다.
	기타	● 공장, 창고, 축사 등은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친환경 자연재료를 활용하거나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 자연경관, 인접한 건축물과 유사한 재료, 형태, 색채를 적용하여 주변환경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우움을 조성한다.
공공시설물	재료	● 목재, 석재 등의 자연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색채	● 권역별 지역 특성에 따른 테마색은 공공시설물의 강조색에 적용하여 권역별 차별화를 나타낸다. ● 공공시설물의 바탕색과 표기요소는 명도와 채도의 대비를 크게 하여 색각이상자 및 고령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권장사항, ◎ : 규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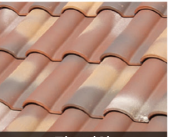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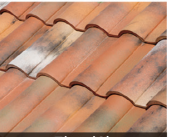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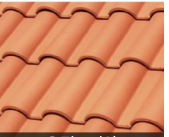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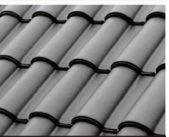
2) 지붕재료 및 권장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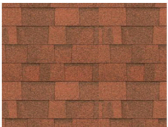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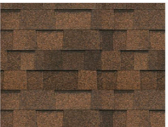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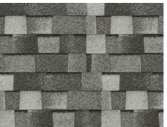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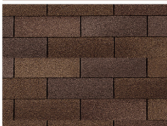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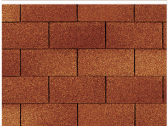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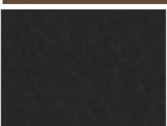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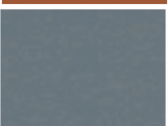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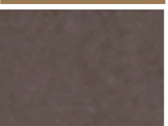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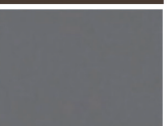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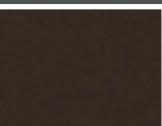
- 지붕재료는 유광재료는 지양하고 천연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기타 재료를 사용할 경우 제시된 색채 범위 안에서 색상을 선택

분 류		색채범위	비 고
1	점토기와	YR, Y, 명도 3~7 / 채도 7이하, N4 이하	물성에 의한 재료색채는 채도 7이하 허용
2	금속기와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채범위 R, YR, Y, 명도 3~5 / 채도 5이하, N4 이하	고채도 5이상 색채지양
3	기와형칼라강판		
4	슬레이트형 칼라강판		
5	아스팔트 싱글	YR, Y, 명도 3~5 / 채도 5 이하, N4 이하	고채도 5이상 색채지양
6	아연도강판(징크 등)	R, YR, Y, B 명도 3~5 / 채도 2 이하, N2 이하	

○ 지붕재료 및 권장색채(예시)

◎ 규제사항

점토기와						
	점토기와	점토기와	점토기와	점토기와	점토기와	◎ 점토기와
	3.4YR 5.8/6.4	6.0YR 6.2/5.2	5.8YR 4.6/1.8	3.4YR 5.8/6.4	8.6YR 5.9/3.5	2.0YR 6.5/6.9
						
	점토기와	점토기와	점토기와	점토기와	점토기와	◎ 점토기와
	8.3YR 6.8/2.4	5.7YR 5.4/4.9	4.7YR 4.3/3.1	4.5R 4.5/0.5	4.6Y 3.0/0.4	4.3GY 5.1/2.5
금속기와, 슬레이트형 칼라강판						
	금속기와 · 칼라강판	금속기와 · 칼라강판	금속기와 · 칼라강판	금속기와 · 칼라강판	금속기와 · 칼라강판	◎ 금속기와 · 칼라강판
	3.9Y 3.8/0.4	8.9YR 4.8/2.1	2.4YR 4.5/4.6	5.7YR 5.4/4.9	6.0YR 6.2/5.0	0.3BG 4.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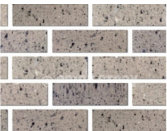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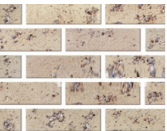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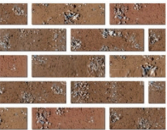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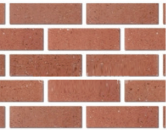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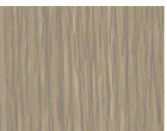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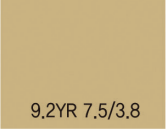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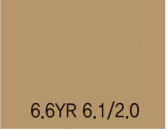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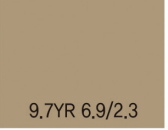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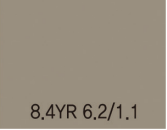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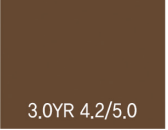
아스팔트 싱글						
	아스팔트싱글(이중)	아스팔트싱글(일반)	아스팔트싱글(이중)	아스팔트싱글(이중)	아스팔트싱글(이중)	아스팔트싱글(이중)
	6.4YR 5.0/3.4	3.9YR 5.0/4.9	3.7YR 4.7/4.5	8.1YR 4.2/3.6	6.2Y 4.6/0.4	3.9Y 3.8/0.4
						
	아스팔트싱글(사각)	아스팔트싱글(사각)	◎아스팔트싱글(사각)	아스팔트싱글(사각)	아스팔트싱글(육각)	아스팔트싱글(육각)
	5.3Y 5.0/0.4	8.1YR 4.2/3.6	2.3YR 4.9/5.0	6.7YR 5.0/3.4	5.8YR 4.0/1.7	9.6YR 4.6/0.4
						
	아연도강판(징크)	아연도강판(징크)	아연도강판(징크)	아연도강판(징크)	아연도강판(징크)	아연도강판(징크)
아연도 강판	3.9Y 3.8/0.4	4.6Y 3.0/0.4	9.7B 4.5/0.5	2.6YR 4.5/1.8	6.2Y 4.6/0.4	4.2R 3.8/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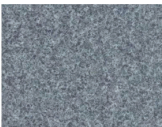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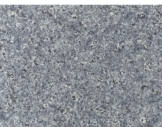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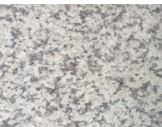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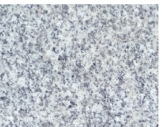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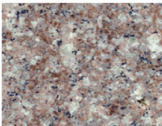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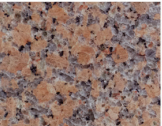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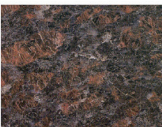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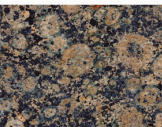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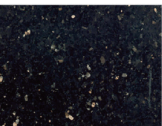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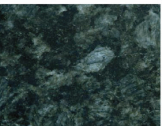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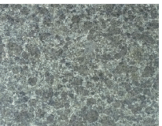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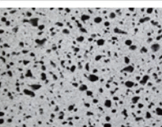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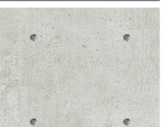
3) 벽체재료 및 권장색채

- 벽체의 재료는 석재, 벽돌, 블록, 목재 등의 자연적인 재료를 권장하며, 기타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제시된 색채범위 안에서 색상을 선택

분 류		색채범위	비 고
1	도장 및 도장방식에 의한 재료 색채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채범위	도장, 드라이비트, 금속패널, 비닐사이딩류, 인공석재류, 타일류 등
2	물성에 의한 재료색채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채범위 채도 50이하	벽돌, 블록, 천연석재, 목재, 부식강판, 노출콘크리트, 시멘트압축성형패널
3	이외의 별도의 색채계획	건축허가 시 개별적 검토	-

- 권장재료 및 색채예시

벽돌						
	점토벽돌	점토벽돌	점토벽돌	고벽돌	점토벽돌	고벽돌
	8.5N 8.5/0.1	6.8Y 6.9/0.3	9.9YR 7.7/1.6	5.4YR 6.6/2.5	8.5YR 6.3/4.1	8.6YR 6.6/3.8
						
	고벽돌	점토벽돌	고벽돌	고벽돌	고벽돌	점토벽돌
	N6,0	2.8YR 5.0/3.4	5.8YR 4.6/1.8	3.0YR 5.7/3.6	2.3YR 5.2/3.0	6.0YR 6.2/5.0
목재						
	메이플	오크정목	오크판목	낙엽송	오크그레이	월넛
	9.2YR 7.5/3.8	6.6YR 6.1/2.0	9.7YR 6.9/2.3	7.9YR 5.7/4.3	8.4YR 6.2/1.1	3.0YR 4.2/5.0
						

화강석						
	고흥석연마	고흥석버너	포천석연마	포천석버너	황가진주	거창석
	5.8Y 5.2/0.4	6.5Y 5.9/0.5	0.5Y 7.2/0.7	6.8Y 6.9/0.3	8.3YR 6.8/1.2	8.6B 6.6/0.5
						
	노원홍연마	노원홍버너	진주홍	오련홍	카파오연마	카파오버너
	8.3R 5.2/1.8	2.6YR 7.0/1.1	5.3R 6.6/2.0	5.4YR 6.6/2.5	8.3R 5.2/1.8	3.7YR 7.1/3.7
						
	탄브라운	발틱브라운	오련회	카페임페리얼	문경석연마	문경석버너
	8.4R 3.8/1.5	1.9YR 5.3/2.0	2.2YR 6.2/0.9	1.9YR 5.5/0.8	2.6YR 7.0/1.1	2.9YR 7.7/1.0
						
	씨블랙	마천석연마	블랙갤럭시	버터플라이그린	실버벌	마천석버너
	N1.5	N3.0	N2.5	4.1BG 4.1/2.6	10.0B 4.5/0.5	5.9GY 4.9/0.8
기타						
	제주석	샌드스톤(레드)	샌드스톤(베이지)	라임스톤	노출콘크리트	송판노출콘크리트
	6.5Y 5.9/0.5	4.2YR 7.9/3.1	3.2YR 8.2/1.0	9.9YR 7.7/1.6	3.9Y 7.9/0.2	8.1Y 7.4/0.6

4) 공공시설물 재료 및 권장색채

- 보행자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육교, 교량 등의 재료는 석재, 벽돌, 블록, 목재 등의 자연적인 재료를 권장하며, 기타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제시된 색채범위 안에서 색상 선택

분 류		색채범위	비 고
1	도장 및 도장방식에 의한 재료 색채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채범위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도육교 · 교량의 거더, 기둥, 난간부의 색채 별도 적용
2	물성에 의한 재료색채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채범위 채도 40이하	투수블럭, 사고석, 천연석재, 합성목재
3	이외의 별도의 색채계획	건축허가 시 개별적 검토	—

- 시설물재료 및 권장색채(예시)

투수블럭 사고석						
	투수블럭	투수블럭	투수블럭	투수블럭	투수블럭	투수블럭
	9.8YR 7.8/0.6	9.1YR 6.0/0.6	3.9Y 3.8/0.4	3.5R 5.4/3.6	3.0YR 5.7/3.6	6.2YR 5.1/3.3
						
	투수블럭	투수블럭	투수블럭	사고석	사고석	사고석
	6.2Y 7.8/0.5	8.3YR 6.9/1.3	1.6Y 4.9/1.2	1.1YR 7.4/2.1	8.5Y 8.3/ 0.2	1.9RP 5.7/0.1
합성목재 (데크용)						
	샌드브라운	오크	체리	카페임페리얼	멀바우	방킬라이
	1.2Y 7.4/3.8	8.4YR 5.0/3.3	0.5Y 6.0/3.5	9.9YR 5.2/2.5	5.8YR 4.6/1.8	7.9YR 5.7/4.3

5) 재료색채 및 규제 사항

분 류		색채범위	규제사항
1	지붕재료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채범위	홍성군의 대표기조색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지붕색은 지양
2	목재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채범위	목재에 인공적인 도장은 지양
3	유리	건축물의 색채와 주변환경을 고려한 색채범위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못하는 색채 지양
4	석재	주변환경을 고려한 색채범위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못하는 색채 지양
5	금속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채범위	홍성군의 대표기조색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색채는 지양

2.6.3 색채가이드라인 활용매뉴얼

1) 색채표기방법의 이해

- 한국산업규격(KS A0062)에 의해 채택된 먼셀색체계는 색의 삼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에 의한 색채 표시법으로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가표준색으로 지정
- 권장예시는 한국산업표준색표집과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페인트회사의 도료집을 병행하여 제시
 - 색의 삼속성

색상
Hue

색을 구별하기 위한 색의 명칭

– 빨강(R), 주황(YR), 노랑(Y), 연두(GY), 초록(G), 청록(BG), 파랑(B), 남색(PB), 보라(P), 자주(RP)로 표기하며 유채색에만 있다.

– 먼셀의 색상은 1~10을 붙여 10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기준색은 5로 한다.

명도
Value

색의 밝기를 나타내는 척도

– 명도는 무채색과 유채색에 모두 있으며 무채색이 명도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 색의 밝은 정도는 1~9로 표기하며, 숫자가 클수록 명도가 밝고, 작을수록 어둡다.

채도
Cro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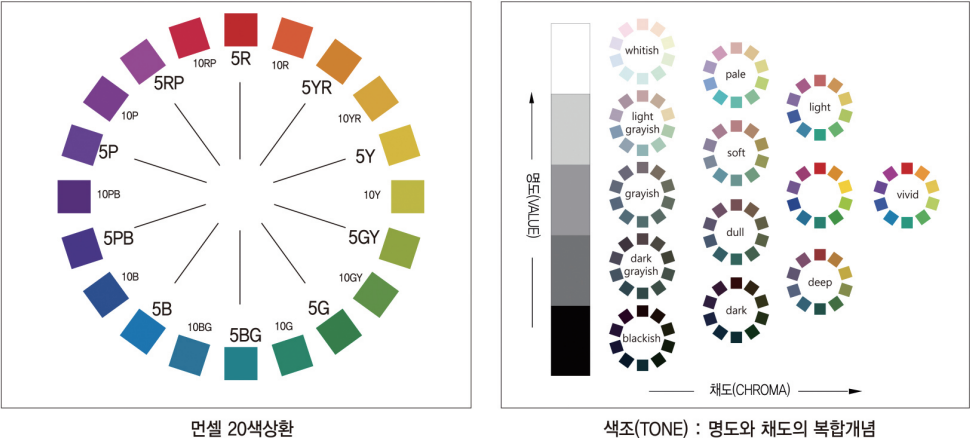
색의 순도(포화도)

– 무채색이 많이 포함될수록 채도는 낮아지며 유채색에만 적용된다.

– 채도는 0~14로 표기하며, 숫자가 클수록 채도가 높고, 작을수록 채도가 낮다.

– N계열 색채의 뜻은 채도 1이하로 색기미가 없어서 무채색과 같은 계열을 의미한다.

• 색상과 색조(HUE & TONE)



• 먼셀기호의 표기법

HV/C

색상

명도

채도

색상

명도

채도

5Y 8/10

「5Y 8의 10」이라고 읽는다.

R	빨강(Red)	yR	다홍(yellowish Red)	YR	주황(Yellow red)	rY	귤색(reddish Yellow)
Y	노랑(Yellow)	gY	노랑연두(greenishYellow)	GY	연두(Green Yellow)	yG	풀색(yellowish Green)
G	초록(Green)	bG	파란초록(bluish Green)	BG	청록(Blue Green)	gB	바다색(greenish Blue)
B	파랑(Blue)	pB	감청(purplish Blue)	PB	남색(Purple Blue)	bP	남보라(bouish Purple)
P	보라(Purple)	rP	붉은보라(reddish Purple)	RP	자주(Red Purple)	pR	연지(purplish Red)

2) 체크리스트 활용(예시)

○ 관리자 입장에서의 체크리스트로 계획 검토와 작업 지시용

■ 해당 용도 체크

- | | | |
|--------------------------------|-------------------------------------|--|
|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상업 및 업무건축물 |
| ☐ 공공건축물 | ☐ 산업 및 기타건축물 | ☐ 공공시설물 |

■ 적용 방법

- | | | |
|------------------------------------|---|---------------------------------------|
| ☐ 역사 · 문화권역 | ☒ 비즈니스 · 행정권역 | ☐ 친환경 · 농촌테마권역 |
| ☐ 특화 · 산업권역 | ☐ 해안권역 | |

지붕색	■ 색채범위 ■ 색채체크 ☒ 5Y 4/1 ☐ ☐ ☐ 색상 : YR, Y계열, N40이하 명도 : 3~5 채도 : 채도20이하
벽체색	■ 색채범위 ■ 색채체크 ☒ 5.9Y 8.9/0.5 ☒ 3.0Y 8.7/1.4 ☒ 6.6B 7.8/0.4 ☒ 7.3Y 6.7/0.5 색상 : 전색상계열 명도 : 명도50이상 채도 : 주조색은 채도40이하 보조색은 채도 60이하
강조색	■ 색채범위 *주조색, 보조색과 조화를 이루는 전색상계열로 고채도의 색채는 지양한다. *강조색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역별 테마색을 적용을 권장한다.

－ 권역별 대표색채에서 강조색 선정

테마색	<table border="1"> <tr> <td>7.5Y 6.7/0.5</td> <td>6.5Y 5.9/0.5</td> <td>2.5Y 6/2</td> <td>10PB 4/4</td> </tr> <tr> <td>2.5Y 5/2</td> <td style="border: 2px solid red;">2.5Y 4/2</td> <td style="border: 2px solid red;">10PB 5/4</td> <td>10PB 3/4</td> </tr> </table>	7.5Y 6.7/0.5	6.5Y 5.9/0.5	2.5Y 6/2	10PB 4/4	2.5Y 5/2	2.5Y 4/2	10PB 5/4	10PB 3/4
7.5Y 6.7/0.5	6.5Y 5.9/0.5	2.5Y 6/2	10PB 4/4						
2.5Y 5/2	2.5Y 4/2	10PB 5/4	10PB 3/4						

3) 체크리스트 작성

○ 공통

- 건축물과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색채계획을 시행하고자 하는 민간 및 건축물 허가 주체인 공무원이 색채 지침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로 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
- 항목별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색채가이드라인 적용 유무를 확인하고 피드백 할 수 있도록 권장

평 가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사항없음

소분류	세부항목	평가	권장	지양
건축물	- KS색표기법(먼셀색체계)으로 표기하였는가?		○	
	- 해당권역의 건축물 색채범위 및 권장색을 적용하였는가?		○	
	- 색채계획도면에 색기호 및 색견본을 제시하고 있는가?		○	
	-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색채를 적용하였는가?		○	
	- 자연재료 및 친환경재료를 적용하였는가?		○	
	- 고채도의 색채로 시각적 공해를 유발하지 않았는가?		○	
	- 퇴색이나 변색을 고려한 색채 및 재료가 적용되었는가?		○	
	- 유지 및 관리방안의 명기되어 있는가?			○
	- 권역별, 용도별, 재료별 계획이 적용되었는가?		○	
	- 권역별, 용도별, 재료별 계획이 잘 적용되었는가?		○	
공공 시설물	- 자연재료를 우선으로 적용하였는가?		○	
	- 시각장애자와 고령자를 고려하여 시인성 높은 색채사용하였는가?		○	
	-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를 적용하였는가?		○	
	- 권역별 테마색은 사인물과 시설물에 강조색으로 색채를 적용하였는가?		○	

○ 심의위원용

- 건축물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색채계획을 경관·공공디자인 심의용으로 활용
- 항목별 체크리스트 심의를 통해 색채가이드라인 적용 유무를 확인하고 피드백 할 수 있도록함

평 가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사항없음

소분류	세부항목	평가	권장	지양
건축물	- KS색표기법(먼셀색체계)으로 표기하였는가?		○	
	- 해당권역 건축물의 색채범위 및 권장색을 적용하였는가?		○	
	- 색채계획도면에 색기호 및 색견본을 제시하고 있는가?		○	
	- 재료색은 재료보드를 만들어 제시하고 있는가?		○	
	- 자연환경과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색채를 적용하였는가?		○	
	- 자연재료 및 친환경재료를 적용하였는가?		○	
	- 퇴색이나 변색을 고려한 색채 및 재료가 적용되었는가?		○	
	- 고채도의 색채로 시각적 공해를 유발하지 않았는가?			○
	- 유지 및 관리방안이 명기되어 있는가?		○	
	- 권역별, 용도별, 재료별 계획이 잘 적용되었는가?		○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비율을 고려하여 색채를 적용하였는가?		○	
	- 인접 건축물 및 가로와 조화를 이루도록 적용하였는가?		○	
	- 배색 코디네이션을 제공하고 요소별 색채적용이 표기되었는가?		○	
공공 시설물	- 자연녹화를 우선으로 적용하였는가?		○	
	- 시각장애자와 고령자를 고려하여 색채의 시인성을 높였는가?		○	
	-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를 적용하였는가?		○	
	- 권역별 테마색은 사인물과 시설물에 강조색으로 색채를 적용하였는가?		○	

○ 관리자용

■ 적용 권역

☐역사 · 문화권역
☐특화 · 산업권역

☐비즈니스 · 행정권역
☐해안권역

☐친환경 · 농촌테마권역

■ 해당 용도 체크

☐공동주택
☐산업 및 기타건축물

☐상업 및 업무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 지붕 유무 체크

☐유

☐무

지붕색	■ 색채범위	■ 색채체크	☐	
	색상 :		☐	
	명도 :		☐	
	채도 :		☐	
벽체색	■ 색채범위	■ 색채체크	☐	
	색상 :		☐	
	명도 :		☐	
	채도 :		☐	
강조색	· 해당권역의 권장색에서 강조색 선정 또는 배색에서의 색상 적용			
공공시설물	■ 권역별 색채범위 내에서 적용			
강조색	■ 권역별 테마색은 강조색으로 적용			

■ 범위 외의 색채의 경우(권장색 제시)

■ 색채범위(지붕)	■ 색채범위(벽체)
색상 :	색상 :
명도 :	명도 :
채도 :	채도 :

○ 사용자용

- 적용 권역

□역사 · 문화권역

□해안권역

□비즈니스 · 행정권역

□특화 · 산업권역

□친환경 · 농촌테마권역
- 해당 용도 체크

□단독주택

□산업 및 기타건축물

□공동주택

□상업 및 업무건축물
- 지붕 유무 체크

□유

□무

지붕색	■ 색채범위 색상 : 명도 : 채도 : ■ 색채체크 ☐ ☐ ☐ ☐
-----	--

■ 범위 외의 색채의 경우, 권장색 제시

■ 색채범위(지붕) 색상 : 명도 : 채도 :	■ 색채범위(벽체) 색상 : 명도 : 채도 :
---	---

4) 권역별 색채 팔레트

(1) 역사 · 문화권역

지붕색	벽체_주조색	벽체_보조색
N001-008	N009-016	N017-024
N-001 5Y 5/1	N-009 3.5Y 9.3/0.6	N-017 1.6Y 5.6/1.1
N-002 5Y 4/1	N-010 3.2Y 9.3/1.5	N-018 1.2Y 4.0/0.8
N-003 5Y 3/1	N-011 1.8Y 8.7/1.5	N-019 1.2Y 7.4/3.8
N-004 2.5Y 5/2	N-012 9.8YR 8.0/1.1	N-020 0.5Y 6.0/3.5
N-005 2.5Y 4/2	N-013 9.6YR 7.6/1.5	N-021 9.6YR 5.3/2.6
N-006 2.5Y 3/2	N-014 3.2Y 7.8/1.4	N-022 10YR 6/2
N-007 10YR 4/2	N-015 8.1Y 7.4/0.6	N-023 10YR 5/2
N-008 10YR 3/2	N-016 2.6Y 7.0/1.3	N-024 10YR 4/2

(2) 비지니스 · 행정권역

지붕색	벽체_주조색	벽체_보조색
N025-032	N033-040	N041-048
N-025 5Y 5/1	N-033 5.9Y 8.9/0.5	N-041 2.5Y 7.0/1.3
N-026 5Y 4/1	N-034 8.7Y 8.9/0.1	N-042 9.7YR 6.9/2.3
N-027 5Y 3/1	N-035 7.9Y 7.8/0.5	N-043 7.3Y 6.7/0.5
N-028 2.5Y 5/2	N-036 3.0Y 8.7/1.4	N-044 8.6B 6.6/0.5
N-029 2.5Y 4/2	N-037 4.0Y 7.9/1.1	N-045 2.4PB 6.7/2.1
N-030 2.5Y 3/2	N-038 2.6Y 7.0/1.3	N-046 5.5P 6.7/2.1
N-031 10YR 5/1	N-039 6.6B 7.8/0.4	N-047 4.8RP 7.0/1.0
N-032 10YR 4/1	N-040 8.2B 7.3/0.6	N-048 3.7RP 6.1/1.0

(3) 친환경농촌 · 테마권역

지붕색	벽체_주조색	벽체_보조색
N049-056	N057-064	N065-072
N-049 10YR 4/1	N-057 4.9Y 9.5/0.2	N-065 2.6Y 7.0/1.3
N-050 10YR 4/2	N-058 7.0YR 7.4/2.3	N-066 1.6Y 5.6/1.1
N-051 10YR 4/4	N-059 2.9Y 8.5/1.6	N-067 1.2Y 4.0/0.8
N-052 10YR 3/1	N-060 1.0Y 8.6/1.0	N-068 6.8Y 6.2/1.7
N-053 10YR 3/2	N-061 2.2Y 8.6/2.4	N-069 3.7Y 6.7/1.9
N-054 10YR 3/4	N-062 3.1Y 8.4/1.4	N-070 1.2Y 7.4/3.8
N-055 2.5Y 4/2	N-063 6.4Y 8.3/1.2	N-071 0.7Y 6.6/3.6
N-056 2.5Y 4/4	N-064 10Y 6.9/1.6	N-072 0.5Y 6.0/3.5

(4) 특화 · 산업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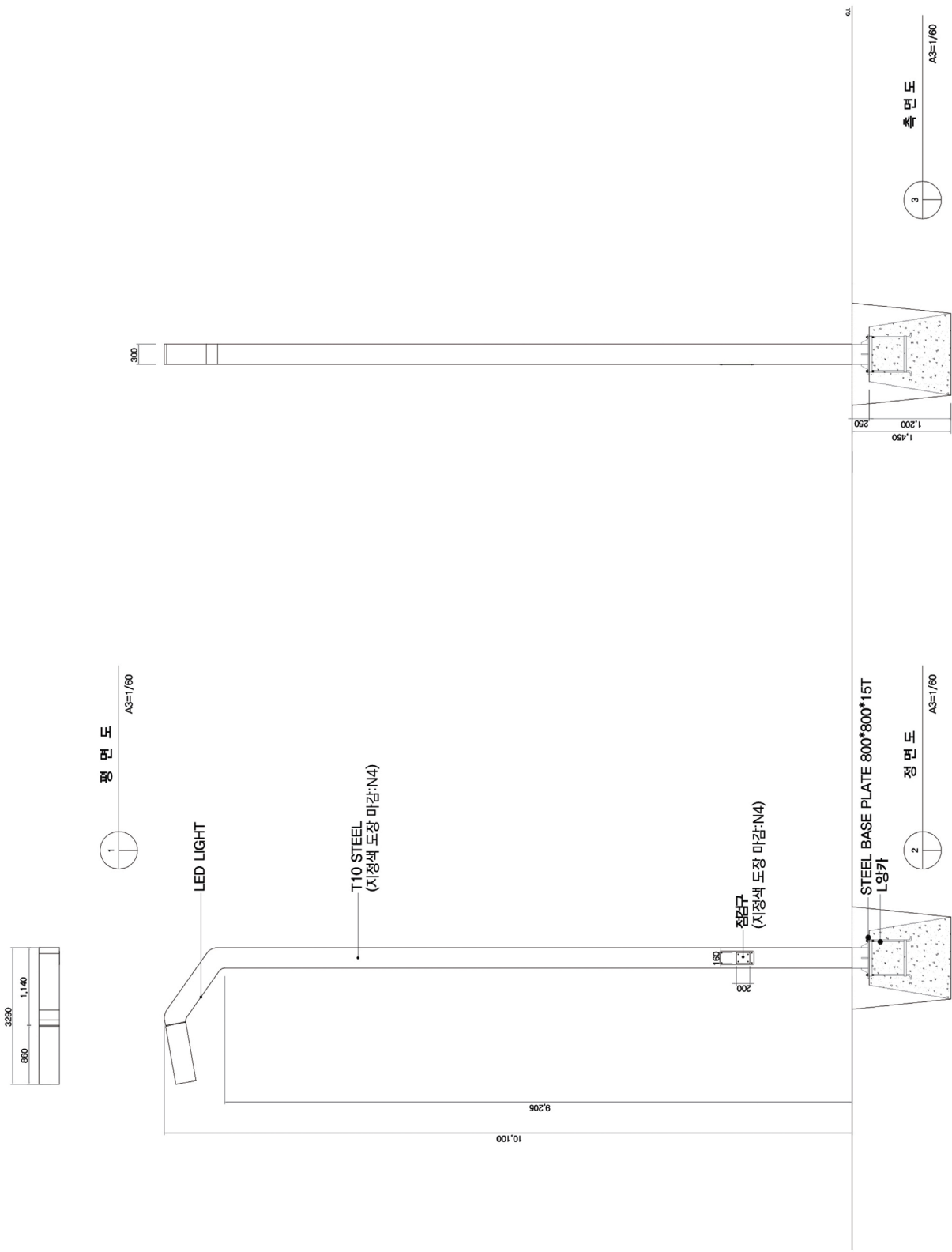
지붕색	벽체_주조색	벽체_보조색
N097-104	N105-112	N113-120
N-097 10YR 5/1	N-105 7.4Y 8.4/0.6	N-113 1.8Y 6.2/1.2
N-098 10YR 5/2	N-106 3.5Y 7.9/1.1	N-114 1.6Y 5.6/1.2
N-099 2.5Y 5/2	N-107 2.5Y 7.0/1.3	N-115 9.0GY 6.1/1.4
N-100 10YR 4/1	N-108 1.5GY 7.9/1.1	N-116 1.1GY 6.2/1.0
N-101 10YR 4/2	N-109 7.0Y 7.8/2.0	N-117 0.8G 6.2/0.7
N-102 2.5Y 4/2	N-110 9.7YR 8.4/1.5	N-118 3.5BG 6.2/0.8
N-103 10YR 3/1	N-111 2.9Y 8.5/1.6	N-119 1.2BG 6.6/0.4
N-104 10YR 3/2	N-112 9.6YR 7.6/1.5	N-120 3.6PB 6.0/1.3

(5) 해안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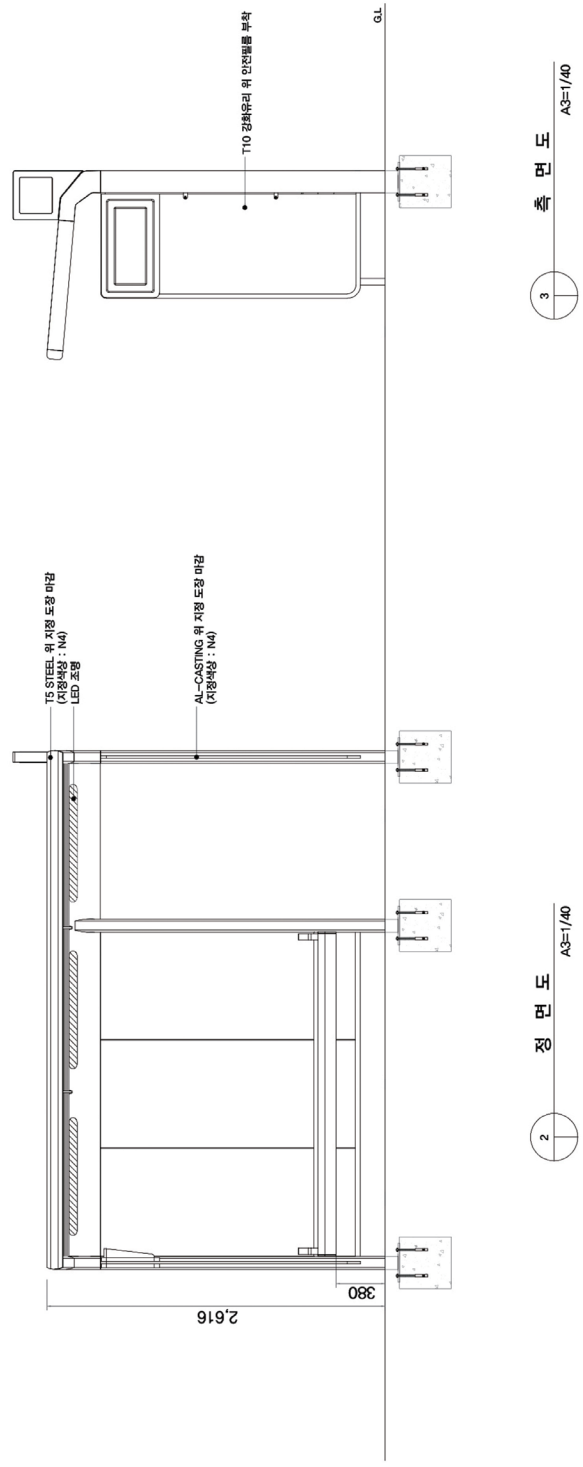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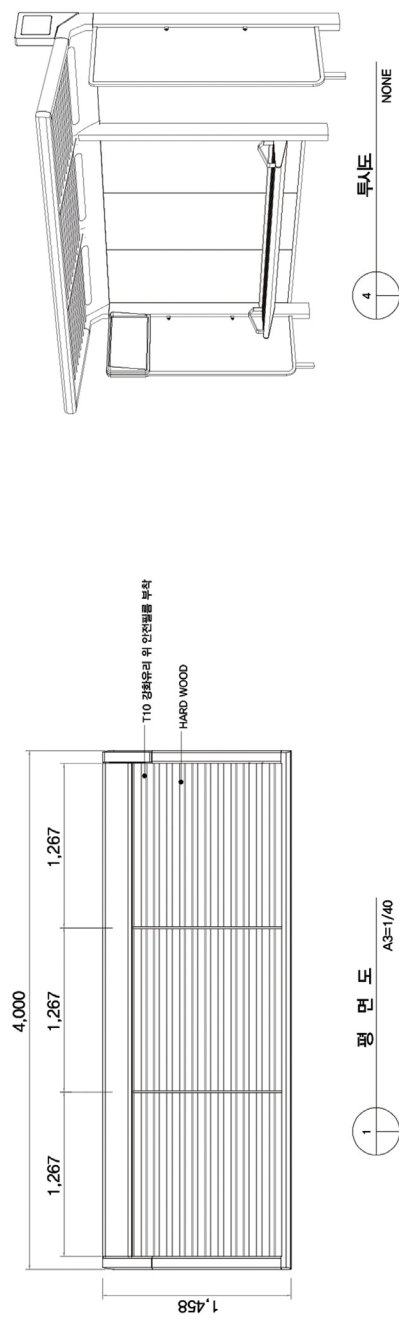
지붕색	벽체_주조색	벽체_보조색
N073-080	N081-088	N089-096
N-073 10YR 5/1	N-081 7.1Y 9.3/0.7	N-089 8.1Y 8.0/2.4
N-074 10YR 5/2	N-082 7.4Y 8.7/0.5	N-090 1.8Y 8.1/3.2
N-075 10YR 5/4	N-083 6.2Y 7.8/0.5	N-091 0.4GY 7.8/1.8
N-076 10YR 4/1	N-084 3.0Y 8.7/1.4	N-092 3.7Y 6.7/1.9
N-077 10YR 4/2	N-085 4.0Y 7.9/1.1	N-093 0.7G 7.8/0.7
N-078 10YR 4/4	N-086 2.6Y 7.0/1.3	N-094 3.6B 7.8/0.9
N-079 10YR 3/1	N-087 2.0Y 7.8/1.2	N-095 2.4PB 6.7/2.1
N-080 10YR 3/2	N-088 9.7YR 6.9/2.2	N-096 8.6B 6.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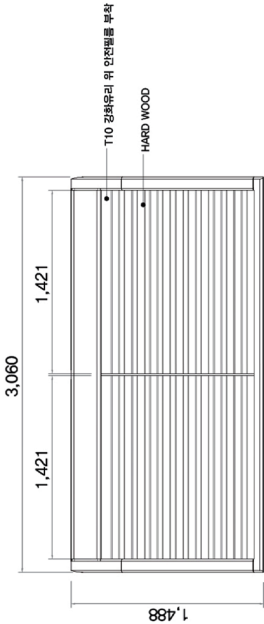
(6) 시설물색채

공통적용색	테마색	테마색
N121-128	N129-112	N113-120
N-121N9,5	N-12910YR 6/2	N-13710YR 5/10
N-1226,8Y 6,7/0,5	N-13010YR 5/2	N-13810R 3/6
N-1235,9Y 5,9/0,5	N-13110YR 4/2	N-13910B 6/4
N-1242,5Y 6/2	N-1326,2Y 7,8/0,5	N-14010B 5/4
N-1252,5Y 5/2	N-1337,0Y 7,5/0,6	N-14110B 4/4
N-1262,5Y 4/2	N-1345,3Y 5,2/0,5	N-14210GY 5/2
N-1277,5Y 5/2	N-1352,5GY 5/6	N-1432,5G 4/2
N-128N4	N-1365GY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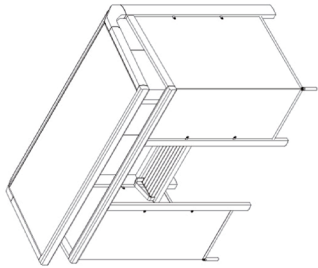


2. 버스정류장_도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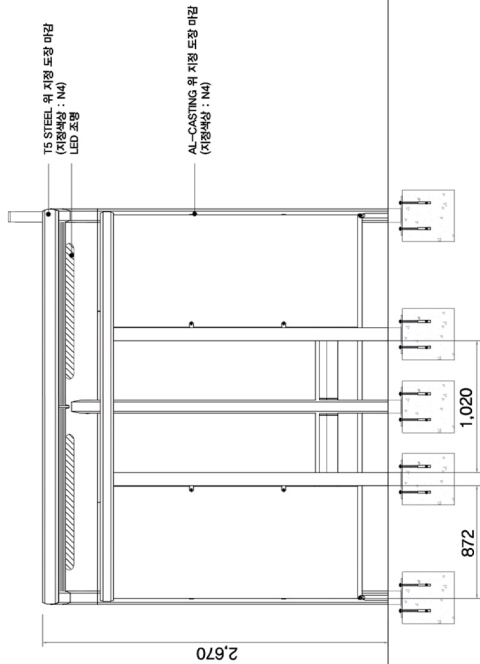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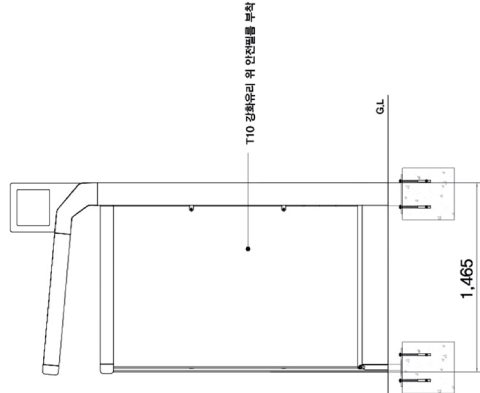
1 평 면 도 A3=1/40



4 투시도 N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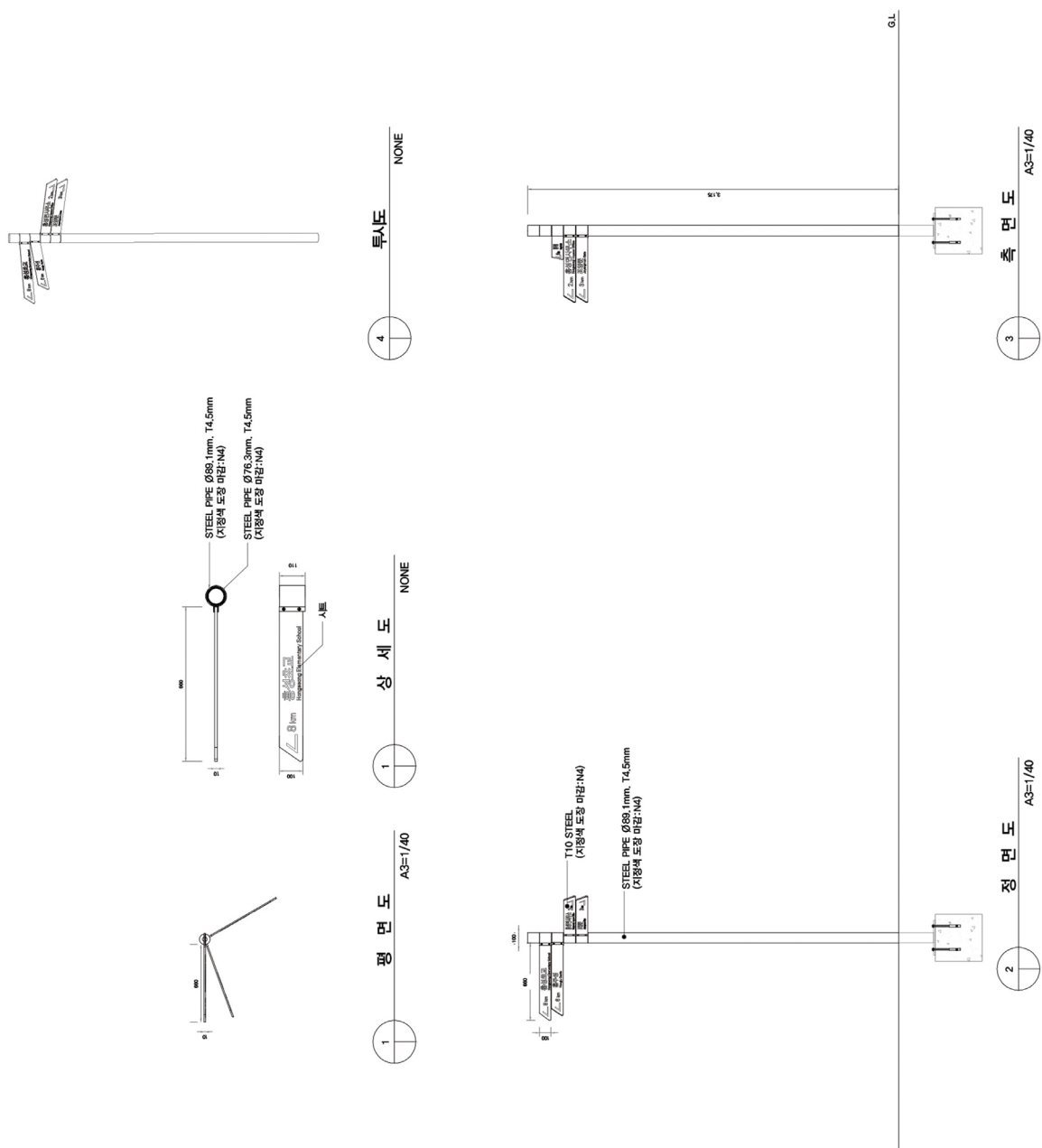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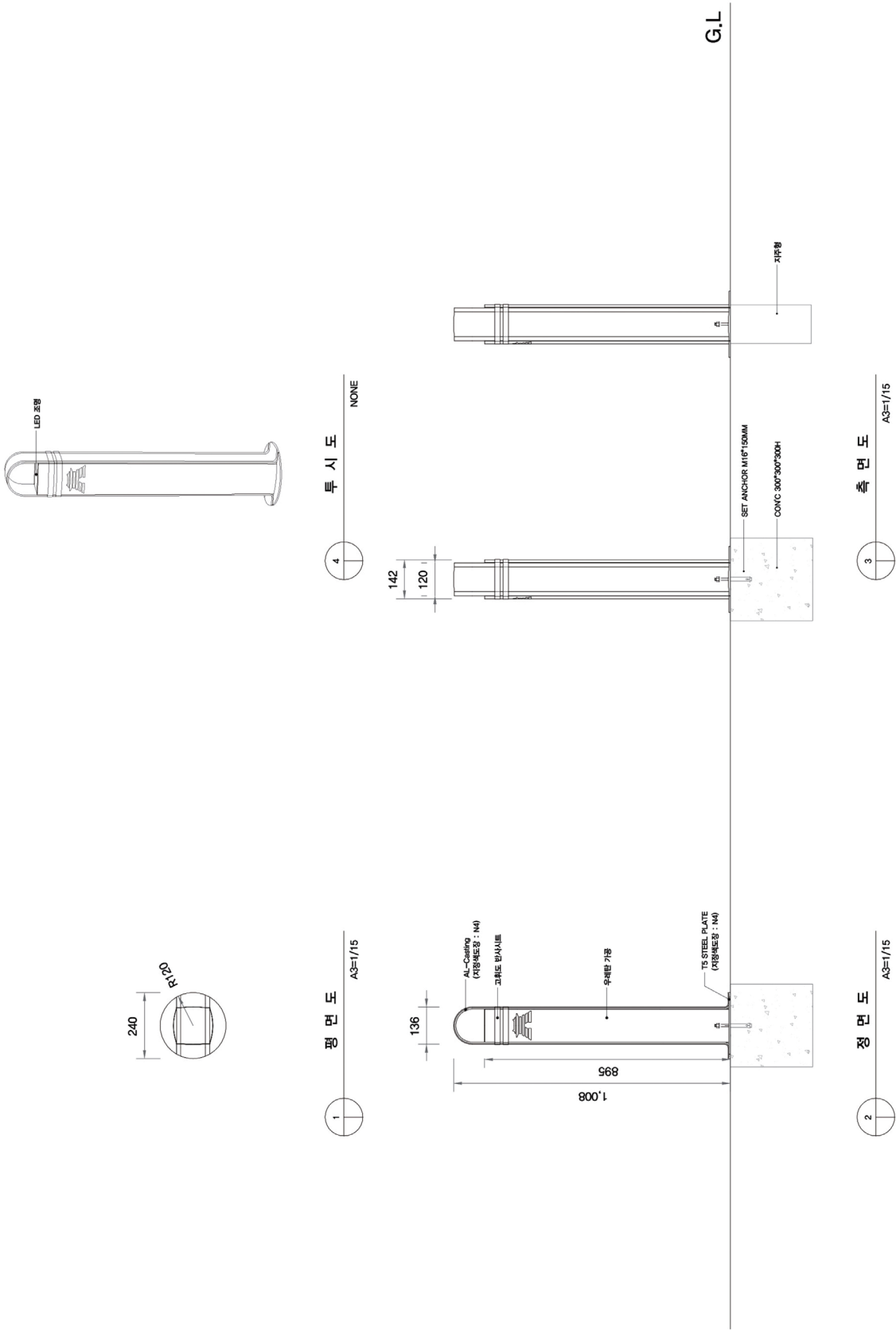
2 정 면 도 A3=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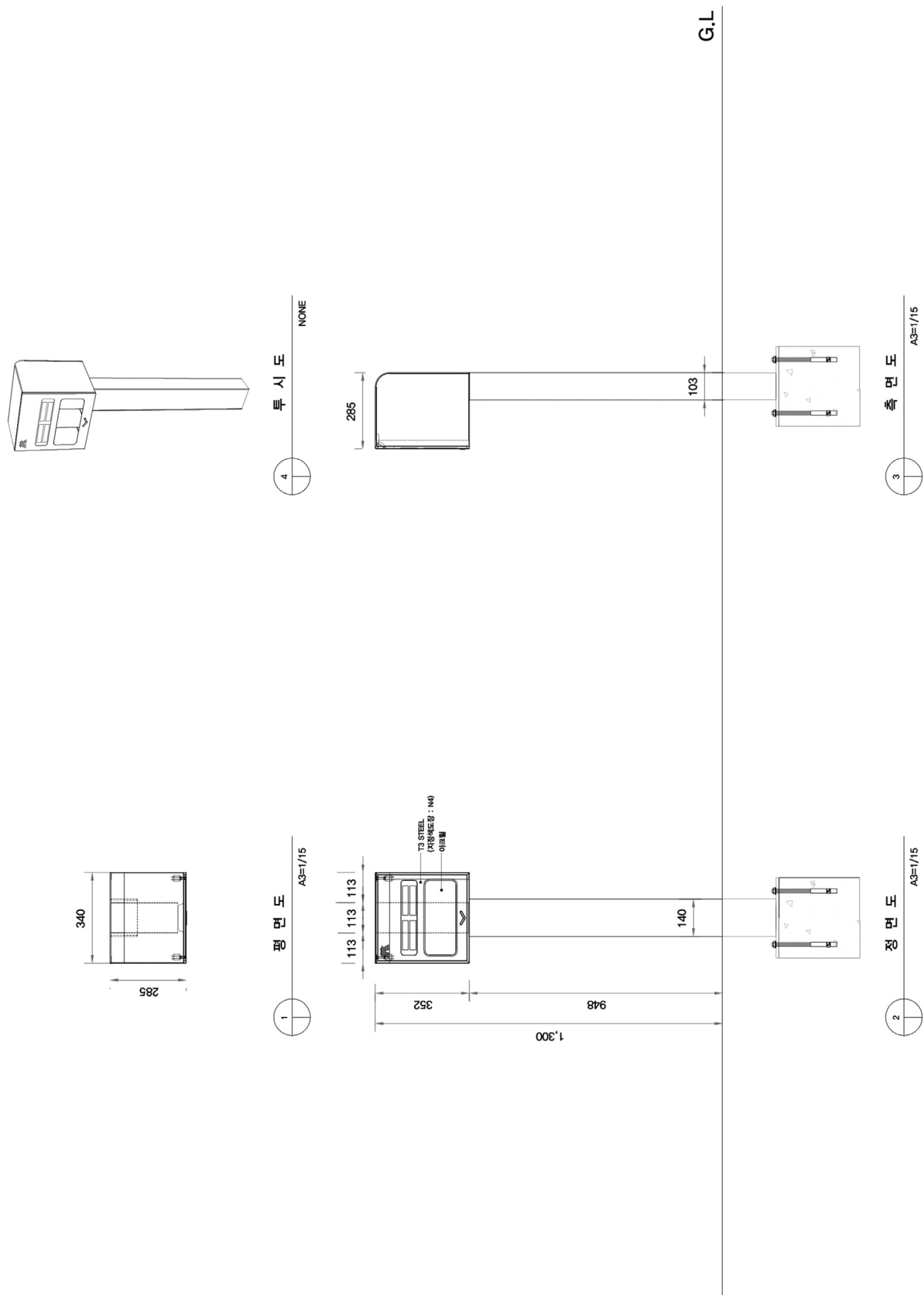
3 측 면 도 A3=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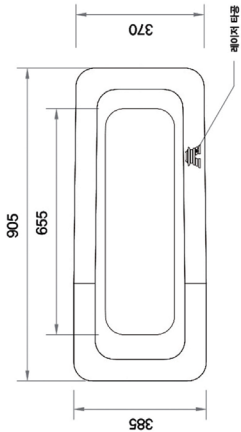
4. 안내사의인





6. 생활정보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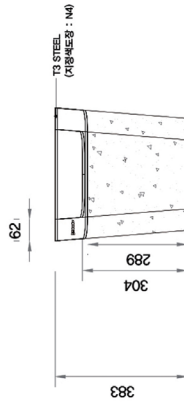
1 평 면 도 A3=1/15



4 투 시 도 N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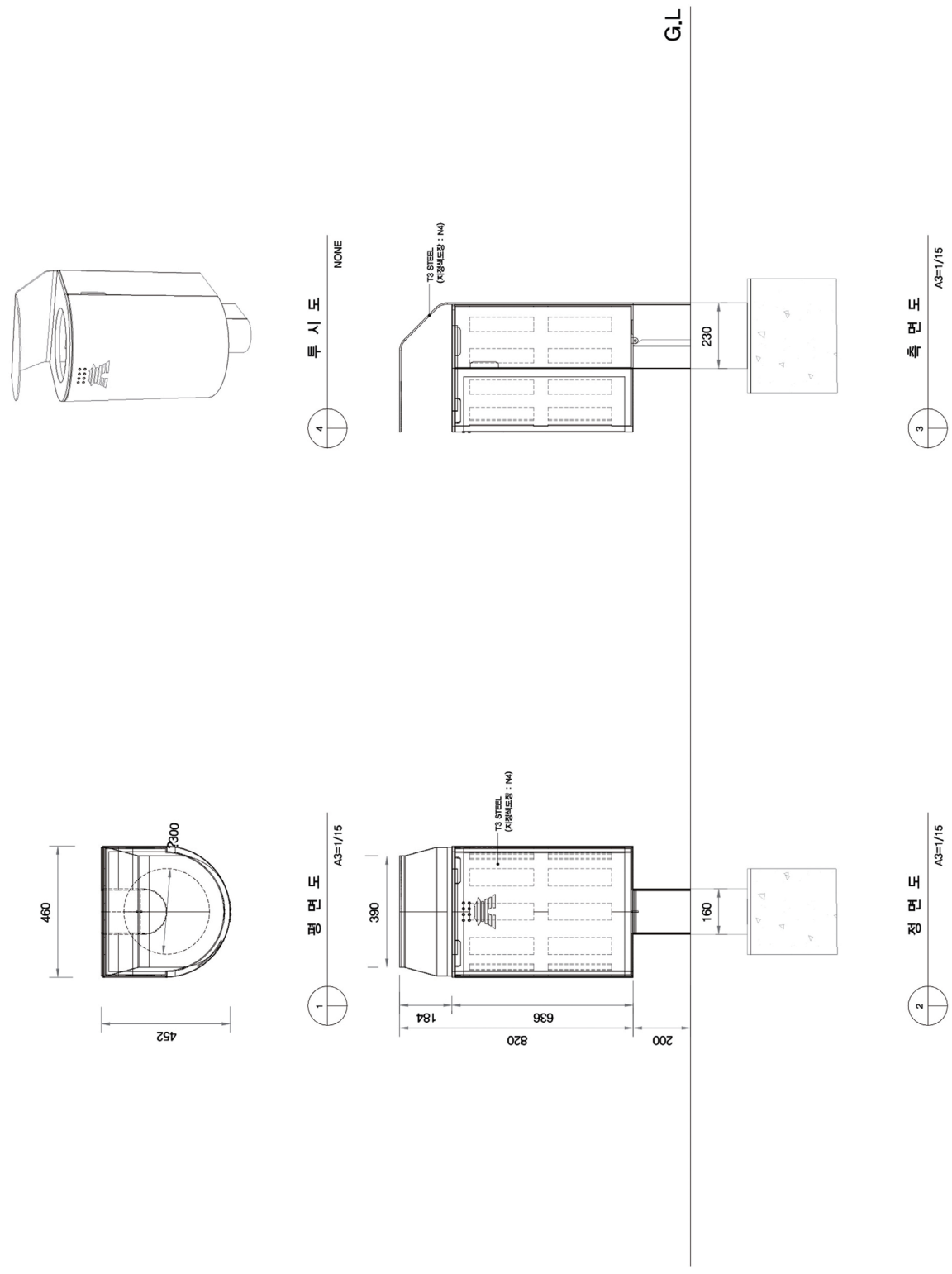
2 정 면 도 A3=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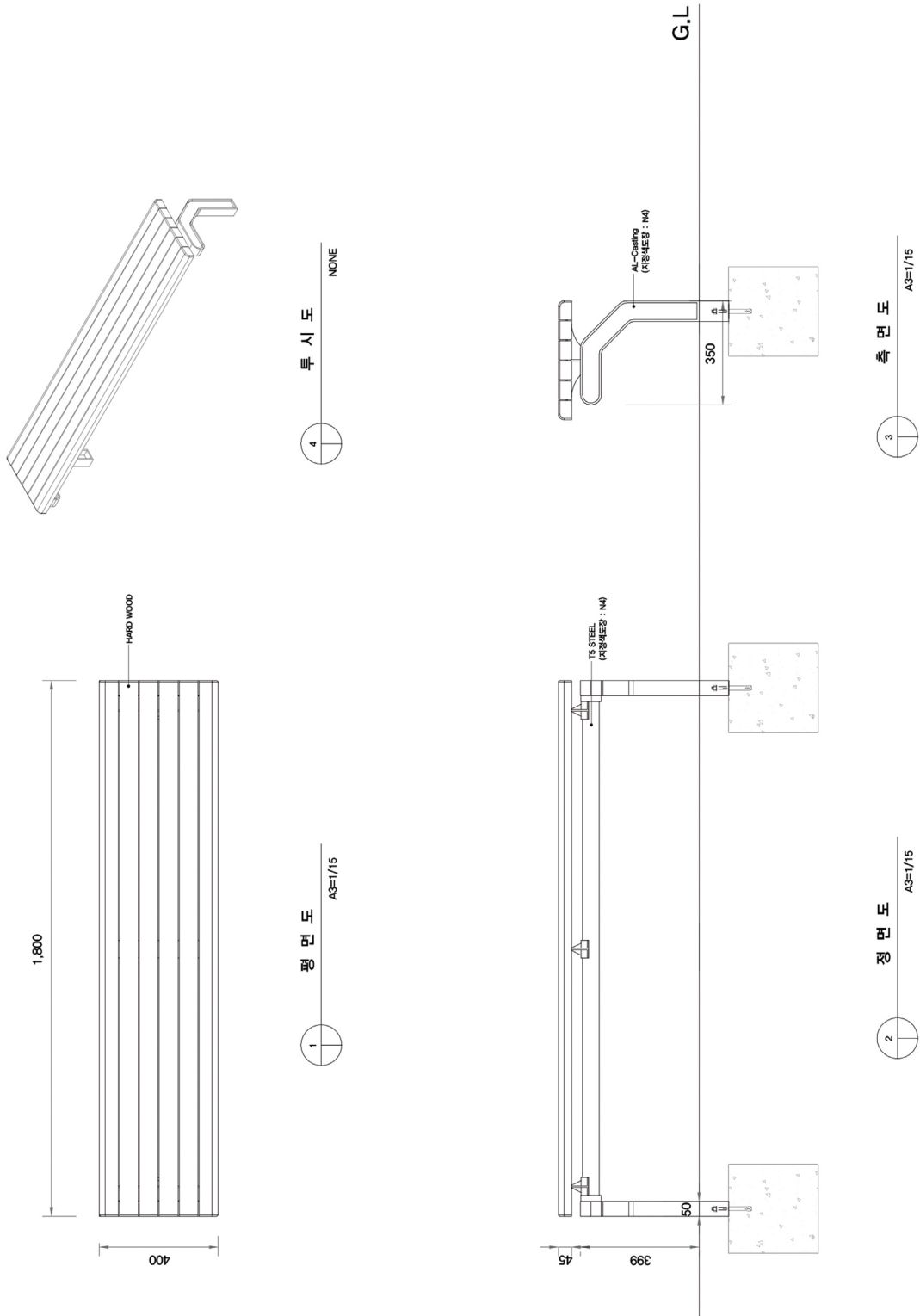


3 측 면 도 A3=1/15

G.L

8. 휴지통





1. 워크숍(1차)

1) 개요

구분	내용
일시	2016. 07. 01.(금) 14:00~16:00
장소	충남연구원 3층 회의실
참석자	총 10명 (내부 연구진 3명, 토론자 4명, 발제자 3명) - 발제자 : 이충훈 선임연구위원 _ 충남연구원 남택영 교수 _ 대덕대학교 황종현 박사 _ 건축문화연구원 윤세운 소장 _ 소울랜드 스케이프 - 토론자 : 김동하 교수 _ 청주대학교 박희면 교수 _ 한국산업기술대 손훈수 박사 _ 한양대학교 - 연구진 : 윤정미 연구위원 _ 충남연구원 임준홍 연구위원 _ 충남연구원

2) 회의주제

발표주제	1. “기본구상 및 통합관리방향” – 이충훈 2. “공공디자인 특화개념” – 남택영 3. “권역별 공간 분석” – 황종현 4.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추진방향 – 윤세운
토론 주제	- 개념정립, 디자인 특화부분을 어떻게 이끌어나아가야하는지, 가이드라인에서 안전문제, 범죄예방에 대한 공간 부분들을 구체화

3) 회의록

참석자	내용
박희면 교수	- 기본계획에서 홍성을 내포 문화하고 어떤 관계로 풀어줄 것인지, 내포라는 것이 정립이 되고 관계성에 대해 다뤘으면 함. 가이드라인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관리의 효율성이 없음. 범위, 조직 등 기본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의 기준이나 평가위원회가 있어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 집행하는 방법이 필요. 실행을 하려면 체크 리스트, 자가진단과 같은 것들이 필요. - 아이덴티티를 홍성군에서 만들면 시와 군에서 활용하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만들면 적용하기 힘들고 지역특성상 다양성이 없을 수도 있음. 특성을 추출한 키워드에 반영하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함. 의견수렴이 어렵기 때문에 합동설명회가 필요. - 고령화 사회라고해서 유니버설뿐만이 아니라 safety, green, 참여, 소통과 같은 요소들이 다 적용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체를 아우르면서 고령사회의 특징을 나타내야하는데 도로에만 국한되어있는 것 같다. 공공공간의 대상 정리가 필요. 실질적으로 공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함. 지역의 현실적인 상황분석을 명확하게 해야 함. - 경관 쪽에 지역구분이 되어있는데 그게 공공디자인하고 잘 맞아야하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대상 요소별로 분석해서 적용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함. 기본계획에서 개념, 컨셉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가이드라인이나 목표가 기본계획의 목표와 일치성이 되어야하고 경관, 공공디자인도 분류체계가 권역별이나 대상요소별이 일치성을 가지고 가야함. - 공공디자인 통합관리가 무엇인가? 통합도시 이미지 구축과 같이 포괄적인 것 보다는 목표치를 달리 두는 것이 필요함. 추진분야가 일반적인 부분으로 되어있는데 관리차원에서 정책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 권역의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누고, 실행을 위해 합동, 참여, 주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들어봐야 함 - 예산에 따라 디자인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히 서포트해줄 수 있어야한다.
손훈수 박사	- 공공, 환경, 도시, 안전범죄 디자인 등 작은 카테고리가 아닌 큰 카테고리로 봐야하며 안전철학디자인이 추가한다면 홍성을 새로운 곳으로 편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전체적인 것은 좋지만 안전철학디자인을 새롭게 표방해서 홍성군의 기본개념에 넣었으면 함.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 소통이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경관이나 공공디자인에서 새로운 과학적이고 스마트한 시스템이 필요. 과학이 새로운 철학이 될 수 있고 그게 유니버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다시 풀었으면 함. 공공디자인의 실효성과 효과는 어디 있는가? 심미적으로 잘 만들어졌지만 기본적인 철학이 없다면 실용적, 기능적, 보편적인 면들을 좀 더 행정적인 면에서 추진한다면 사소한 것 하나라도 좋은 행정적인 방법으로 전략화 하지 않을까 - 액티비티디자인, 건강디자인과 같이 홍성에 표방할 수 있는 디자인 필요

김동하 교수	- 공공디자인 기본개념을 테마 별로 계획을 세우고 공통적인 부분들은 공통으로 가져가는 아이디어를 참고. 4가지 기본개념 중, 지역정체성은 인문역사문화쪽으로, 인간중심은 고령화 쪽에 맞도록 구체화 필요. R값을 홍성에 어떻게 대입시킬 것인가? R값 부분에 대해 표준화 시키고 그것을 중심으로 +, - 에 가벼운 범위를 주는 것이 가이드라인에 필요. 연결부위의 사출방법을 표준화시켜 제시하면 실제 적용하는 시군면단위에서도 사후관리 쉬움. 가이드라인에서 홍성군의 난립되어있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제시해야함 - 기능성-지나친 장식 배제, 통합성·무질서 조정, 안전성-위험요소 제거, 환경성-시각적공해요 소제거, 정체성·자연친화적, 재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단순하고 간결하면서도 재료에서도 충분히 정체성을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
윤세운 소장	- 경관·공공디자인계획에 있어서 실행력은 공무원만이 아닌 시민에게도 잘못이 있음.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디자인 의미를 공무원,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유지, 관리가 가능하게 해야 함
황종현 박사	- 공공디자인 안이 나오고 행정적으로 진행하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 주변에 있는 관련 사업들을 많이 파악하여 거기 맞는 디자인을 도출해야 함.
윤정미 박사	- 공통구역, 특화구역은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 홍성군 중장기 발전외의 특화구역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고민해야함.
이충훈 박사	- 기본가이드라인, 기본개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합관리차원에서 행정조직적인 부분, 조례정비, 시승격대비 디자인 전담부서를 체계적으로 만들고 공공디자인 평가진단지표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선도사업을 제안해서 추진해나가면 지금보다 체계성있고 통일된 도시 미관이 형성될 것. - 공간조성을하기 위해 홍성군의 특징적인 요소를 잡아 권역을 나누다보니 경관을 가져다 조사한 것. 공간분석하는 것이 목적. - 실행계획부분에서 디자인 전담체계, 부서체계, 디자인위원회, 법규 등이 필요하다 생각. 고령화 사회에서 공간, 시설물에 대해 명확하게 범위, 대상을 정해놓고 핵심적인 내용을 군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제한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 - 홍성군에서도 안전을 강조함. 디자인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고민 - 4개의 개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주셨는데 복잡성을 단순하게 해주는 통합된 유사한 기능을 몰아서 하나의 개념을 만드는 것. R값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많은 시설물에 나타나있지만 제작상의 기술력이 떨어지다 보니 부식됨. 도의 연속성, 시골의 특징을 어떻게 조율할까하는 부분은 중간 워크숍을 통해 토론 필요. - 작은 지역에서 권역을 너무 구체적으로 나누면 혼란스러워짐

2. 착수보고회

1) 개요

구분	내용
일시	2016. 07. 08.(금) 15:00~16:00
장소	홍성군청 회의실
참석자	총 22명 (내부 연구진 3명, 홍성군청 관계자 17명, 자문위원 2명)

2) 착수보고 후 의견 수렴

	보고회 의견	조치사항
군수님	- 도청이전 4년차에 접어들며 내포신도시는 도심지역으로 구도심은 역사문화도시로 구분 - 홍북면 신경리 지역이 2만이 넘어가고 전체인구가 10만 명이 예상되며 신도심, 구도심의 격차가 심화되고, 인구 쏠림 현상 등의 어려움 - 2018년이 홍주 1,000년이 되는 해로 천년에 대한 희망행사가 예정 - 역사문화관광은 홍성복원과 역사적 인물을 중심으로, 해안은 외지인 유인시책을 중심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며 통합관리 체계로 특화된 디자인, 비전과 방향 제시 필요 - 사후관리의 효율적 방안 모색 필요, 주민의 생활중심으로 필요·욕구 이해, 주민애착을 갖고 적용할 수 있는 방안 - 시내권(주차장주변) 홍주성에 어울리는 디자인 필요 - 의견을 보완하여 사후 적용과 실행이 잘될 수 있도록 단계적 실행이 가능한 연구 부탁 - 공공디자인 전문위원과 밀착하여 공공디자인 추진단계별 사업계획제시 필요	→ 컨셉 설정에 따른 권역별(5개) 표준디자인 및 색채 가이드라인 개발 제시 → 주민단체와 협의, 진행 / 홍성통, 군민디자인단 → 건축물 색채기준, 권역별 표준시설물 디자인 개발
부군수님	- 홍주천년으로 역사적 측면 역사문화의 요소가 가미된 차별화된 연구, 홍성만의 특색 있는 통합매뉴얼 필요 - 관문, 간선도로에 시설물 설치시 통합폴을 적용한 디자인(전신주, 가로등 등 일체형) 개발 필요, 안전한 보행, 간결한 도시이미지 구축	→ 시설물 가이드라인에 통합폴의 형태, 설치 및 배치 기준제시

	보고회 의견	조치사항
박현옥 교수	- 홍성군 각각의 지역적 특색과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역적 차별화가 이루어 져야 하지만 통합성과 일치성을 벗어나지 않아야한다. - 내포신도시와의 연계성, 차별성 고려 - 지역의 인구구조를 파악하여 시설물의 정보와 안전 검토 필요 - 설문조사는 기존 500부에서 700부 이상으로 하고, 설문 대상을 주민, 전문가, 관광객을 포함 - 공공시설물에 적용될 전용 서체(홍주서체)개발 제안 - 과업 완료 후 연구자료를 지역 읍면, 홍성군 홈페이지 등에 공유하여 유지관리에 유용하도록 한다. - 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을 실행하려면 건축재료를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 공공시설물 제안 후 설치지역을 설정하여, 5년 계획 20년 계획 등 단계별 정책제안 필요	→ 권역별 특성(디자인, 색채) 부여하되 홍성군 전체는 통일성 유지 → 유효표본수에서 1,000부 이하는 신뢰도 수준에서 차이가 없음 → 홍주서체 개발 필요성은 공감하나 전용서체는 행정, 홍보인쇄물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 등에 사용되므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 필요 - 행정서식용 - 홍주상징체 : 국문, 영문 - 유적지, 관광지 표지, 홍보물 제목 등 - 홍주전용서체 : 홍주고덕(공공시설 안내표지), 홍주명조(공공시설 안내 표지 본문, 인쇄홍보물 본문) → 페인트 업체와 업무제휴를 특성 협력 방안
정지원 교수	- 홍성군의 전체적인 유니버설 인포그래픽스 표현방법이 궁금 - 지역환경을 반영한 그래픽, 옥외광고 설치물의 홍보, 광고그래픽, 벽화, 가림막 등 가이드라인 조성방안 필요 - 범죄예방구역에 대한 노약자, 여성에 대한 플랜 필요 - 재난 안전등 그래픽처리방법의 가이드라인 설정 필요	→ 여성친화거리 개선안(가이드라인) 제시 → 정보매체, 공원 등의 가이드라인에 픽토그램 적용방안 제시



3. 실과 담당자 간담회(1차)

1) 개요

구분	내용
일시	2016. 07. 22.(금) 14:00~16:00
장소	홍성군청 회의실
참석자	총 13명 (내부 연구진 3명, 홍성군 실과 담당자 10명)

2) 실과 담당자 간담회

간담회 의견	조치사항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지 공공디자인 개선 필요 - 여성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화장실, 보행로, 전용주차장 표시 - 어린이 안전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2. 홍주 1000년 기념사업에 의한 홍성IC 진입부에 상징디자인물 필요 3. 친수공간 가이드라인에 하천가이드라인 반영 필요 4. 노인통행안전을 위한 컬러디자인 5. 역사인물 캐릭터를 관광안내사인에 적용하는 방안 6. 농·특산 브랜드를 적용한 사인매체 디자인 7. 건축물 셋백 기준제시 필요 8. 경관계획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에서 세부내용 전개구체화 9. 경관수목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식재기준 제시 10. 간판가이드라인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기준제시 필요 11. 조경식재시 건물 옥외광고물을 가릴 경우 규제나 개선 방안제시 12. 홍성읍 복문교에서 도청대로변의 진입게이트 조성으로 관문기능	1. 가이드라인 및 개선 구상도 제시 3. 가이드라인 작성 제시 4. 횡단보도 및 보행로 등에 내용 작성 5. 가이드라인 제시 10. 권역별 컨셉 및 기준제시 예정 11. 가이드라인 작성 제시 12. 진입관문 또는 복문 복원으로 랜드 마크화

4. 대상지 실태조사

1) 개요

구분	내용
조사일시	2016. 7. 25(월) ~ 7. 26(화) 09:00 ~ 18:00
조사 공간 권역	역사·문화권역(홍성읍, 결성면) : 홍성역~장군상 오거리, 홍성전통시장, 홍성천, 월계천, 홍성 읍성, 월계천, 홍성보건소, 결성면 사무소, 결성농요 농사박물관
	비즈니스·행정권역(홍북면·내포 신도시) : 도청대로, 교육청 사거리
	친환경 농촌·테마권역(홍동면, 장곡면, 금마면) : 문단환경농업마을, 장곡면사무소
	해안권역(서부면) : 궁리포구, 속동갯벌체험마을, 어사항, 남당항
	특화산업권역(광천읍, 갈산면, 구항면, 은하면) : 광천오거리, 광천역, 광천전통시장, 광천토굴새우젓 홍보전시관, 은하면사무소
조사자	홍성군 : 임중구 전문위원
	연구진 : 이충훈, 신선하, 김보람 (3명)
	외 부 : 김동하 교수(청주대), 문선욱 교수(청운대), 조경수 교수(남서울대), 김준연 교수(나사렛대), 윤세운 소장(소울랜드스케이프), 황종현 박사(건축문화연구원) (5명)



2) 조사내용

(1) 목적

- 공공디자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자료 구축
- 홍성군의 경관·공공디자인 문제점 파악을 통해 공공디자인 정책 반영
- 가이드라인 수립 및 표준형 디자인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 홍성군의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시 자료로 활용

(2) 조사 대상지

- 홍주성 경관중점 관리구역, 광천읍 경관중점 관리구역, 도청대로 경관관리구역, 홍동면 중심 귀농귀촌 경관 관리구역, 서부임해중점 경관관리구역

(3) 조사내용 및 평가항목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대상 공간, 시설물의 현황 분석
- 대상지 관련 도면 및 위성사진을 기본적인 맵으로 활용

○ 조사 내용은 정성적 분석 중심으로 구성

○ 환경 인지적 요인

- 주변 환경 및 공간구성요소에 대한 조사자의 시각적, 감각적 판단에 기반한 평가
- 개방성, 인지성, 조화성, 정체성, 심미성 등 5개 평가항목으로 구성

측정항목	대상지역 분석요소
개방성	- 물리적, 시각적 개방감 - 공간의 쾌적성 - 조망성, 관통성, 연속성
인지성	- 건축물, 공공시설물, 정보매체의 시각적 인지성 - 형태 및 디자인의 개성 - 정보 전달성
조화성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재료 및 색채사용
정체성	-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 - 형태, 색채, 재료의 차별성 - 상징성, 고유성이 디자인에 반영
조형성	- 공간의 연속성, 시각적, 형태적 균형성 등에 대한 미적 평가 - 공간의 아름다움

○ 공공성 요인

- 공공디자인 요소들이 시민에게 보편적, 기본적인 기능들을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가를 평가
-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지속 가능성, 통합성 5개 평가항목으로 조정

측정항목	대상지역 분석요소
접근성	- 공간(공원, 보행로), 건축물, 시설물로의 접근 용이성 - 교통수단으로부터 접근성 - 보행로와 연결 동선 확보 여부
안전성	- 개방적 시야 확보 요소 - 심리적 안전성 - 범죄 예방 요소(방범벨, 보행등, CCTV) -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성
편의성	- 인간 친화성, 휴먼스케일, 인지성 - 휴게시설, 편의 안내시설의 적절한 배치 - 유니버설적 요소(점자표시, 음성 요소, 유도블럭 등) 유무
지속 가능성	- 지속 가능성, 관리의 용이성 - 재료의 내구성, 효율성 - 친환경성
통합성	- 형태적 융합, 복합적 기능 - 건축물과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 간의 통합성 - 공공시설물과 정보 매체 요소 간 형태적 융합성

5. 진단지표구축 부분 자문회의

1) 개요

구분	내용
일시	2016.08.12.(금) 15:00~16:30
장소	충남연구원 3층 회의실
참석자	총 7명 (내부 연구진 3명, 홍성군청 관계자 1명, 자문위원 3명) - 연 구 진 : 이충훈 선임연구위원 이민정 책임연구원 신선하 연구원 - 홍성군청 : 임중구 전문위원 - 자문위원 : 채민규 명지대 교수 진영효 박사 두리공간환경연구소 이형복 박사 대전세종연구원

2) 회의록

참석자	내용
채민규 교수	- 사전은 사업 개발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사후는 사전에 사업이 사업 개발된 것을 집행하고 목적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것은 첫 번째가 공무원이 사업 목적에 대해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민들이 관에서 했던 공공디자인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침투되고 이해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음, 전문가들도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구분이 어려운 상태에서 주민들의 공공디자인 평가는 지금으로서는 어려움, 사전과 사후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에 집중하고 있음 - 홍성군이 지향하는 공공디자인의 목적과 기본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개발 되고 있는지를 진단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구축 한다면 개발된 사업이나 여러 가지 분석해 봤을 때 실제 관련된 사업이 없다는 스스로 진단을 해서 매년 사업이 진행되는 방향을 스스로 진단 할 수 있도록 활용 될 수 있음 - 과거 했던 사업들을 분석해서 사업 개발 판단을 하여 내년 사업 개발 계획, 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논리를 만들 때 어디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취약 부분에 맞춘 근거로써 사용으로 사전진단 활용할 수 있음 - 홍성군 공공디자인 이름 · 성격으로 경관위원회나 거치는 사업이 많지 않을 수 있어 공모된 사업 외에도 녹아야 되는 부분이 많음

참석자	내용
진영호 박사	- 본질적인 부분에서 공공디자인 진단지표 구축을 보면 공공디자인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같고 사업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면 그 목적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담겨져 있음. 다른 면으로는 디자인 자체를 진단하겠다는 혼선이 있어 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겠다. 라는 부분으로 뒤섞여 있음 - 관련 사업의 진단지표 구축이라든지 추가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명확하여야 할 것 같음. - 운용 및 활용 부분이 중요하며 컨트롤 타워에서 진단했을 때 내부, 외부에서 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한데..1~2년 동안은 외부기관에서 진단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봄
이형복 박사	- 우리나라의 경관위원회에는 경관계획의 내용보다 지식에 맞춘 심의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진단지표 구축에 필요성과 중요성이 있음 - 활용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것, 경관위원회 위원들, 담당 행정공무원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보단 간단한 것이 좋을 것 같고 위원회나 사업을 올릴 때 사전 검증한다고 보면 괜찮은 것 같다. - 실질적으로 진단지표가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실행을 하려면 조례나 토지적성평가와 같은 경우도 법, 지침이 내려가 DB구축이 되었고, 데이터베이스화되면 공무원들이 유사한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하여서 경관법, 공공디자인 진흥법에 의거하여 조례를 개정, 재정 하던지 사전에 의무사항이 되어야만 사업들의 사전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음
이충훈 박사	- 공무원분들이 현업에서 사용이 될 것이고 꼭 해야한다는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함. 2014년 지표를 만들면서 도 해당 부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였음. 타 지역 사례와 같이 사전에 진단 지표구축과 관련하여 검토가 되었으면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임 - 표준디자인형을 만드는데 사업 시설물을 개보수하거나 설치할 때 표준 디자인이 정확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매뉴얼 필요, 사후 점검 필요 - 큰 틀에서 볼 수 있겠지만 시설물 쪽에는 디테일한 부분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만들 필요 있음
임중구 전문위원	- 사업의 15~20% 정도는 시설물에 디자인이 반영되는데 실질적인 실무 담당 팀 외에는 반응이 없고 외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이 적용됐는지를 잘 모름 - 일차적으로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을 때 진단지표로 미리 체크가 되며 그 외적으로 진행 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표를 필요로 하는 것 - 실질적으로 진단항목이 있으면 군에서 시행할 때 세부적으로 체크 할 수 있는 것을 원함 - 체크리스트를 항목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필요, 색채 같은 경우 권역별로 색채 범위를 정해주고 시설이나 건축물에 적용할 때 예시를 적용해주면 체크가 가능하므로 체크리스트 필요 - 내포신도시 기준을 따라갈 수 있는 홍성군이나 예산군에서 체계가 되어있지 않아 일개의 팀에서 홍성군 전체를 관리하거나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실효성은 노력을 해야 함 -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본 용역을 반영하여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이 진행될 때는 검토나 자문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진단지표를 만들 - 중간지표 같은 경우 중간보다는 사전 진단지표가 실무에서는 더 유용하다고 판단됨

6. 실과 담당자 간담회(2차)

1) 개요

구분	내용
일시	2016. 10. 14.(금) 16:00~18:00
장소	홍성군청 안회당
목적	홍성군 공공디자인 통합관리매뉴얼 수립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수렴을 통한 계획의 실효성 증대
참석자	홍성군 실과 담당, 충남연구원 (내부 연구진 3명, 외부연구진3명) - 홍 성 군 청 : 이성원 공공디자인 팀장 임종구 공공디자인 전문위원 - 외부연구진 : 김동하 청주대학교 교수 조성배 청주대학교 교수 윤세운 소울랜드스케이프 소장 - 내부연구진 : 이충훈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병찬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전임책임연구원 신선하 충남연구원 연구원

2) 2차 간담회 내용 및 조치계획

내용	조치계획
① 공공정보매체 관련 안내사인의 색채지정문제	- 색채가이드라인의 시설물 배색팔레트의 주색을 적용 제시할 계획임
② 지주형 가로 설치시설물의 난립으로 개선방안 마련	- 통합폴 방식으로 개선
③ 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의 노후화 개선	- 표준형디자인 개발 예정이며 시설물 교체시 개선
④ 내포천에 농산물 캐릭터 및 문화관광과 캐릭터 등의 기능강화 및 활성화 방안	- 추후 홍성군 CI개선작업시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⑤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에서 권역별 색채, 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도록 바램	- 5개 권역별 공통지역과 특정지역으로 구분하여 정체성 부여
⑥ 공공시설물에 무채색을 적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홍성의 색채를 차별성 있게 도출하여 적용하는 것이 좋겠음	- 차별화된 색채에 의해서 시설물 자체를 너무 부각 시킬 필요는 없음. 다만 강조할 부분은 강조색에 의해서 강조할 필요는 있음
⑦ 홍성군의 '홍주 1000년'기념행사와 홍주시 승격을 대비하여 새로운 상징 체계를 개발하려고 함	- 홍성군 시각적 상징체계 수립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일정, 절차, 개발요소 등을 계획하는 것이 타당함
⑧ 노인안전 유니버설 컬러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가이드 라인에 제시바람	- 교통안내 표지판 및 도로안내 표지 등에 관련내용 제시할 계획임

3) 회의록

참석자	내용
윤세운 소장	- 서울시 상징색을 따라하여 무분별한 색채추출과 같은 자연경관으로 색채를 추출하는 것은 문제가 됨. 5개 권역의 이미지에 따라 색상 추출이 필요하며 차별화를 위해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 - 공공공간, 가로, 광장, 친수공간 등이 포함된 공공공간은 설치기준, 배치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필요하며,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매뉴얼화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공공간의 설치지침 제시, 법규지침 인지 후 법규지침을 반영하되 여성친화, 노령, 고령, 어린이 안전 법규, 지침과 어긋나지 않는 디자인 아이디어 제안 - 법규에 대한 해석을 매뉴얼화, 체계적인 정리 필요 - 건축물 Setback 기준 제시는 가이드라인에는 무리가 있음. - 시설물은 디자인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설치, 시공 이유에 대해 공유를 해야 하며, 향후 홍보와 교육도 중요(민간참여) 소프트웨어부분의 강조 - 고령친화는 홍성의 고령화로 제시가 필요함. 여성친화를 강조하기에는 주객전도가 될 수 있어 픽토그램, 주차장 적용방안 정도로 검토, 홍성과 여성친화의 매칭률은 떨어짐 - 색채 조명 안전장치 등 여성친화의 언급은 필요, 여성친화 고령화 등 강조할 필요는 있음
이충훈 선임연구위원	- 여성친화는 색채나 조명 안전장치 등의 언급은 필요하며 노인 안전, 색채부분은 강조가 되어야 할 것 - 시설물의 경제성을 위해 모듈화가 필요하며 관리부분 고려 - 지붕색은 색채팔레트를 만들어 생산업체와 시공업체와의 협력이 필요
이성원 팀장	- 권역을 지정하여 지붕색의 통일화가 요구되고 있음.
임중구 전문위원	- 권역별 테마는 모든 시설물에 적용하기에는 불가 - 고령화 관련하여 노인안전컬러디자인은 노인분들을 위한 색채를 시설물에 적용하는 것으로 고령화를 대비하고 특성화, 유니버설 디자인과도 같은 부분 - 여성친화는 상징적인 의미로 계획에 반영



7. 유니버설 디자인 전문가 워크숍(2차)

1) 개요

구분	내용
일시	2016. 11. 10(목) 14:00~16:00
장소	충남연구원 3층 회의실
참석자	총 7명 (내외부 연구진 4명, 홍성군청 관계자 1명, 전문가 2명) - 발 제 : 유니버설 디자인 권재성 교수/청주대학교 색채유니버설 디자인 이충훈/충남연구원 - 자 문 : 박현옥 청운대학교 교수 - 홍성군청 : 임중구 전문위원 - 연 구 진 : 이충훈 선임연구위원, 윤정미 연구위원, 신선하 연구원 윤세운 소울랜드스케이프 소장

2) 발표자료

- 유니버설 디자인
- 색채유니버설 디자인 (자료 별도 첨부)

3) 회의록

참석자	의견
박현옥 교수	- 선진사례의 결과물을 여과없이 적용하기 보다는 과정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홍성군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현실에서 고령자들에 대한 행태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것임 - 노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모여있는 도시공간에 대한 결절점을 중심으로 행태분석이 필요함 - 시설물은 설치지역에 따라서 형태 및 방법을 달리해야 함 - 사인물은 게스탈트적 측면, 즉 형태의 인지성, 반복성, 연속성, 색상 등을 검토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 - 아이콘, 픽토그램 등을 사인물에 적용하여 익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것도 중요함
윤세운 소장	- 도시공간에서 시설물 이용자들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함 - 보여지는 디자인에 너무 치중하는 경향들이 있음. 선행연구를 한 지자체를 그대로 답습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어 시설물에 중저채도를 많이 선호하고 권장하고 있는데, 사실 고채도가 필요하면 시설물은 그 나름대로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음. - 농촌의 고령자들을 위해 시인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의 색채검토 필요 - 디자인은 기능성을 우성하고 그 다음에 심미성을 추구하는 것이 좋음

참석자	의견
윤정미 박사	- 농촌의 고령자들을 위한 환경시설물 디자인의 개선이 필요함 - 기능에 충실한 디자인이 중요하며, 홍성군의 권역적 특성에 따라 시설물을 달리 설치하는 것이 중요함
임중구 위원	- 도로 빗물 배수구 설치기준과 같이 사업담당자들이 업무에 활용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함 -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을 노인과 일반인 모두를 위한 것으로 안전이 최우선을 두고 있음 - 색채배색을 통해서 공공시설물 또는 공공매체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 - 노인안전을 위해 노인전용차량 도색디자인을 추진중임 - 군에서는 기존의 시설물의 개선을 통해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임
황중현 박사	- 장애인과 노인을 배려하기보다는 비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이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음 - 이미 지어진 공공건축물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음. 따라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및 고령자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함
이충훈 박사	- 공공기관의 건물 앞은 방문객이 많이 왕래하는 공간인데 비해 주차장으로 이용되어 위험요소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고령자를 위한 교통표지판 크기를 20%확대하여 설치하고, 일본은 고령자용 실버마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하고 도로교통법으로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금지 또는 주의 표지판의 적색과 청색의 보색대비 색상을 일반인과 색각이상자 모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색상으로 개선 필요함



8. 내 · 외부 연구진 회의

1) 개요

구분	내용
일시	2016.12.01.(목) 14:00~16:00
장소	충남연구원 1층 회의실
참석자	총 13명 (내부 연구진 3명, 홍성군청 관계자 1명, 자문위원 3명) - 자 문 위 원 : 박연선 홍익대학교 교수 김상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남택영 대덕대학교 교수 - 홍 성 군 청 : 임중구 전문위원 - 외부연구진 : 김동하 청주대학교 교수 윤세운 소울랜드스케이프 소장 - 연 구 진 : 이충훈 선임연구위원, 박철희 선임연구위원, 윤정미 연구위원, 오병찬 전임책임연구원, 신선하 연구원, 김보람 연구원

2) 회의록

참석자	내용
박연선 교수	- 컬러는 깊이 있게 들어 갈수록 아이덴티티가 사라짐. 중부권역의 색채 반영도 고려해볼필요가 있음, 색채는 모자이크시 모든 색이 포함되기 때문에 걸러지지 않은 색상이 강조색으로 나타날수 있음, 권역을 세분화하면 홍성의 컬러 특성을 나타내기에 어려움 - 메인,주조 컬러는 충남의 색상을 사용하고 강조색만 제시하는 방안 제안 - 권역별로 홍성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며 성별, 연령대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주민 조사가 필요하며 생활에서 나오는 컬러를 강조해주면 홍성의 특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 - 권역별 시설물의 다양한 컬러를 홍성만의 컬러로 통일시킬 것 - 유니버설 디자인을 보도와 도로면의 단차에 대한 분명한 치수를 가이드라인에 제시하며 세밀하게 계획해야함 - 색 약자, 고령자들을 위한 색상도 구체적으로 명도차, 레드와 그린의 비율에 대한 제시가 필요, 지양해야 하는 컬러는 명확하게 제시
김상태 교수	- 충남도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이 유사하기 때문에 각자의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함. 공통적으로 컨셉을 잡고 권역별로 타당성을 검토, 분석 후 결론을 도출해내야 함. - 표준형 디자인에서 제시한 천년의 컨셉은 좋았으나 천년의 기간안에 역사를 담지 못했음. 단계별로 역사의 시간을 되새길 수 있는 방안 제시 - 빅데이터를 활용하듯 홍성 주민에 대한 설문이 중요하며, 컬러의 빈도수에 가중치를 주면서 홍성군이 타 시도에 비하여 나타나는 특성을 제시.

참석자	내용
남택영 교수	- 상위계획의 기본적인 것들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음 - 기본형태에 꺾인 부분이 현실적으로 제작하기 어려움. 응용형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기본색을 건축색으로 맞춰야하며 글씨의 크기나 간판 크기, 전화번호 표기 정도만 제안. 글씨 부분에 있어서 도심의 컬러 스펙트럼은 넓게 농촌은 좁게 주어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는 방안 고려
임중구 전문위원	- 권역이미지에 결성면(역사권역)이 빠져있음 - 장애인 이동에 대한 단차는 내용에 넣을 필요 있음. - 중점관리구역 4개 지역의 핵심지역에 개선예상도가 하나씩 필요. - 여성친화도시: 한쪽 면에 포켓주차공간이 필요할 것 같음.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어 위급상황 시 차가 인접해야하는데 일방통행에 양쪽이 보도일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시설물은 도심지는 단순하게 적용하고 농촌이나 광천쪽은 특화 적용방안 제안 - 천년 여행길의 이정표 대신 보도블럭의 색채나 패턴만으로 방향을 유도하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 공공시설물 외적으로 개인시설물에 교통, 보행자의 안전등 설치의 의무가 없어도 설치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검토 -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
윤정미 연구위원	- 전체적으로는 통일할 부분이 있고 권역별로 차별화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해야함 - 농촌과 도시의 성격은 다르지만 공통으로 가는 부분도 필요 - 색채의 배색예시부분에 단독주택의 예시도 넣어주면 좋을 것 -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사업 구분 제안
박철희 선임연구위원	- 임중구 위원에 제안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보다 그동안의 연구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더 필요함. - 표준형 시설물의 컨셉에 주민들의 공감에 어려울 수 있기에 사전 주민과 공무원과 컨셉에 대한 회의가 필요
이충훈 선임연구위원	- 권역별로 주색, 보조색을 제시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벽체색, 지붕색의 차이는 없음. 시설물은 특화 권역에만 차이를 준 것. 공통적인 색에서 강조색의 폭을 넓게 주는 것도 고려 - 갯벌색은 충남 공공디자인 상위계획에서 정해진 색이며, 권역별 색채의 다양성은 차별화를 주기 위해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제안한 예시. - 농촌에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 훼손될 경우가 있음. 건축물마다 간판형태에 차이가 있으며 실현 가능성에대한 검토를 진행하겠음



9. 중간보고회

1) 개요

구분	내용
일시	2017. 2. 6.(월) 09:00~10:00
장소	홍성군청
참석자	군수, 부군수, 실과장

2) 회의록

참석자	내용
군수	- 홍성군의 인구가 10만 258명으로 시승격을 준비 중이며, 충남중심도시로 도시이미지 개선, 제교로 중요성 인식으로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홍주천년 맞음의 해, 홍주성 복원사업 홍주지명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역사문화관광도시, 내포신도시와 원도심 활성화로 특화디자인을 적용하고 시설의 통일성, 유지 관리 경제성, 실행에 어려움이 없는 계획으로 추진해주시 바람, 시각적 이미지 색채, 색상이 아주 중요함. 권역별 색상 등 각 부서에서 계획단계에서 부터 협력, 계획수립, 실과의 공동노력 필요 - 여성친화, 친환경 영업특구 등 '건강도시' 이미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함.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반영, 보완하여 최종보고회에 반영 해 주길 바람
부군수	- 홍주천년의 해, 시 승격, 도시경관개선, 통일된 이미지 구축, 복잡한 가로환경, 시설물개선, 간판, 가로등, 전신주 등 통합관리 매뉴얼에 담아서 통합된 이미지 구축 필요 - 홍성만의 정체성이 담긴 가이드라인, 부서별 다양한 시책과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등과 연계하여 매뉴얼을 다듬도록, 최종보고회 전까지 실과 의견을 담길
건설교통과장	- 실행이 안되면 의미가 없으며, 전 부서에서 설계단계에서 디자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넣는 방안을 고려
보건소장	- 홍주천년, 여성친화도시 사업 등 사업이 진행중이며 보건소에서도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 계획수립 중, 건강도시 사업과 협력해서 내용을 담아주면 좋은 계획이 될 것임



10. 워크숍(3차)

1) 개요

구분	내용
일시	2017.3.09.(목) 14:00~16:00
장소	충남연구원 3층 회의실
참석자	총 5명 (내부 연구진 3명, 외부연구진 1명, 자문위원 1명) - 자 문 위 원 : 최성호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외부연구진 : 윤세운 소울랜드스케이프 소장 - 내부연구진 : 이충훈 선임연구위원, 신선하 연구원, 김보람 연구원

2) 회의록

참석자	내용
최성호 교수	- 경관만으로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노인, 청소년, 교통, 위생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부서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와의 협력이 필요하여 어려움. 그러나 군단위에서는 좀 더 해결하기 쉽다는 것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공공디자인 실행체계에서 경관은 내부인의 시각에서, 공공디자인은 외부인의 시각에 초점을 두고 만든다면 좋지 않을까? 미시경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더 큼. - 최종적으로 관리체계매뉴얼을 만들 때 경관과 공공디자인을 구분해서 쓰고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음. 도시브랜드에 대해 먼저 실체를 이해하고 방향을 수립하고 경관구축, 문화관광, 사회문제를 전체 카테고리를 펼쳐놓고 봐야함. 관리와 제어는 경관계획이나 경관가이드라인 중심으로 풀고 체험이나 상징문제는 공공디자인법을 활용해서 기획이나 마스터플랜을 하는 게 좋음. - 노인안전컬러디자인 선도사업은 노인안전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를 내세워 접근하는 것이 정부 사업공모에 유리함. - 문화관광에 대한 부분을 뽑아내서 사업의 특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사회문제 해결 쪽으로 추가 해서 접근할 수 있는 사업군들을 발굴하여 기존의 경관사업과 트랙을 3개 정도 구성하면 되지 않을까. (노인문제, 학교폭력, 범죄예방, 다문화 등)
윤세운 소장	- 도시재생의 논리가 흥성군에 붙이기 좋음. - 마케팅, 기획, 콘텐츠를 찾는 방법이 필요함. 구도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아이템(보부상, 향구 등)을 잡는 게 유리.
이충훈 선임연구위원	- 도시브랜드도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공공디자인도 도시브랜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같이 가야함. 여성친화, 평생학습, 친환경 영업특구 등 '건강도시' 이미 지화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함.



11. 실과 담당자 간담회(3차)

구분	내용
일시	2017.3.16.(목) 14:00~16:00
장소	홍성군청 회의실
참석자	총 15명 - 실과담당자 - 외부연구진 : 윤세운 소울랜스케이프 소장 - 내부연구진 : 이충훈 선임연구위원, 신선하 연구원

간담회 의견	조치사항
- 사전진단지표의 경우는 매뉴얼에서 이야기하는 여성친화 라던가 건강도시, 친환경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체크 되는 부분 보완 필요 - 장애인 화장실 위치나 일정 설계기준을 담아 시각장애인 들이 사용을 할 때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내용설정 제시되어야 함 - 색채에 차별을 두면 두뇌활동을 활발히 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계단에 표시를 해서 계단활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친화, 친환경 등 추구방향은 설정 되어 있는데 사전진단지표 등 사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내용 필요 - 선도사업으로 여성친화거리 시범경관사업이 있는데 조 양문의 시뮬레이션 이미지만을 봐서는 어떻게 해야하 는지 막연하며 가이드라인은 추진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인데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음	- 체크리스트와 진단지표 내용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 으나 현재 여성친화, 건강도시 등 유니버설과 관련된 부분 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은 어디까지 들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최종단계에서 검토를 하겠음 - 홍성군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중점관리 구역에 중점사업이 되어있어 그 중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와 정합성,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뽑아내서 제시하였으며, 이중 이미 제된 사업도 있고 이를 통해 새롭게 제안하고 있는 사업도 있음 - 전용도로 통합폴설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노면설치부분, 녹지공간, 시케인을 이용한 속도저감 등 변화있게 해주는 것들과 공원의 범죄예방을 위한 보안등 등, 여성친화거리에 대한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들어갈 것 - 가로수 식재는 인도 폭 부분은 다시 검토, 실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단지표는 세분화 될 수 있도록 내용을 확인



12. 최종보고회

1) 개요

구분	내용
일시	2017.8.28.(월) 09:00~10:00
장소	홍성군청
참석자	군수, 부군수, 실국 · 과장

2) 회의록

참석자	내용
군수	- 기존에 공모를 통해 있는 버스정류장을 또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어 현재 문제점이 없다면 차근 차근 연계성을 갖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도시재생사업은 성곽중심으로 구도심재생 사업과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해주길 바람 - 공공디자인 통합관리는 실행의지가 중요하며 디자인 분야와 협의,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시승격을 대비하여 도시이미지개선, 정체성 확보를 위해 이 용역을 추진하였음 - 천년이야기 기록사업, 역사문화관광도시, 특화된 디자인 등 실무에 반영이 가능한 세부계획, 실행성 있는 계획으로 실과에 활용되도록 반드시 공공디자인팀과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행하기 바람
행정복지국장	- 공공시설물디자인에 표기된 홍주지명은 여러 가지사항을 고려하여 현재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음
건설교통과장	- 버스정류장의 구조적인 안전문제 검토가 필요하며, 안내사인, 쓰레기통의 회색색상을 밝고 깨끗한 색으로 변경하는것도 고려해 주기 바람
보건소장	- 사업 진행단계에서 각 부서 팀들의 세부 사업들에 대한 논의와 협의과정을 거쳐 정책을 수행 할 수 있으면 함
농수산과장	- 아름다운 어촌어항 만들기 개선사업에서 남당항의 상가 간판이 무분별하여 개선되었으면 좋겠음
임종구 전문위원	- 홍성군 공공디자인 통합관리매뉴얼은 중장기적 계획으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부터 조례제정, 조직개편까지의 내용을 담아서 실행력을 높이고 실효성있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임

참고자료

1.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 2015
2.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사업 사후진단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2016
3.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2013
4. 홍성군 경관계획, 2016
5. 홍성군 중·장기발전종합계획, 2013
6. 2020년 홍성군 기본계획, 2011
7. 군산시 공공디자인기본계획, 2011
8. 김포시 공공디자인기본계획, 2010
9. 경기도 공공디자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진단지표, 2012
10.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15
11. 홍성군 노안안전 컬러디자인사업 최종보고서, 2016
12. 홍성군 월계천 '고향의 강' 경관개선 디자인, 2015
13. 홍주성 문화마당, 홍성다도거리, 홍주문화밸리 조성 기본계획, 2014
14. 이희진, 색각이상자를 고려한 서울시 공공시설물 배색디자인, 2011
15. English Heritage, Streets for all : A guide to the management of London's streets, 2015
16. English Heritage, Street Design for All, 2014

발행기관 : 홍성군

홍성군수 김석환
부군수 하광학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공공디자인팀장 이성원
 이순광
공공디자인 전문위원 임중구
공공디자인 주무관 이 진
 오지환

수행기관 : 충남연구원

연구기간 : 2016.05.24~2017.06.30

연구책임 이충훈 선임연구위원

연구진 박철희 선임연구위원

임준홍 연구위원

윤정미 연구위원

김원철 책임연구위원

신선하 연구원

김보람 연구원

산학협력단 김동하 교수 청주대학교

조성배 교수 청주대학교

비상임연구위원 윤세운 소장 소울랜드스케이프

최영신 교수 한밭대학교

황종현 박사 건축문화유산연구원

자문위원 김준연 교수 나사렛대학교

남택영 교수 대덕대학교

박연선 교수 홍익대학교

박현옥 교수 청운대학교

박희면 교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형복 박사 대전세종연구원

정지원 교수 한서대학교

조경수 교수 남서울대학교

진영효 박사 두리공간환경연구소

채민규 교수 명지대학교

최성호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오병찬 전임책임연구원 충남공공디자인센터

박혜은 책임연구원 충남공공디자인센터

홍성군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매뉴얼